日本의 法人稅 基本通牒

1994·5

韓國租稅硏究院

內部硏究用 資料

日本의 法人稅 基本通牒

1994. 5

韓國租稅硏究院

內部硏究用 資料

日本의 法人稅 基本通牒

1994. 5

韓國租稅硏究院

法人税 基本通牒(1969年 5月 1日 直審(法)25(例規))

改正 1970年 7月 16日 直審(法) 58
1971年 6月 15日 直審(法) 20
1971年 6月 15日 直審(法) 21
1973年 9月 10日 直法 2−81
1974年 9月 30日 直法 2−71
1975年 10月 6日 直法 2−21
1976年 10月 14日 直法 2−39
1977年 10月 31日 直法 2−33
1978年 10月 31日 直法 2−24
1979年 10月 18日 直法 2−31
1980年 5月 15日 直法 2−8
1980年 12月 25日 直法 2−15
1981年 11月 20日 直法 2−16
1982年 12月 24日 直法 2−2
1983年 6月 3日 直法 2−3
1983年 12月 12日 直法 2−2
1984年 12月 17日 直法 2−3
1985年 12月 9日 直法 2−2
1986年 12月 22日 直法 2−3
1988年 1月 21日 直法 2−1
1988年 11月 18日 直法 2−14
1989年 8月 28日 直法 2−7
1990年 1月 23日 直法 2−1
1990年 11月 29日 直法 2−6
1991年 12月 25日 課法 2−4

法人税 基本通牒의 制定에 대하여 法人税 基本通牒을 別冊과 같이 規程함과 동시에 法人税에 관한 과거의 取扱通牒을 別表와 같이 改正 또는 廢止했으므로 그에 따르기 바람.

이 法人税 基本通牒의 制定에 있어서 從來의 法人税에 관한 通牒에 대해 全面的으로 檢討하여 整備·統合하는 한편, 그 內容面에 있어서 通牒의 規定이 適正한 企業會計 慣行을 尊重하고 個別的 事情에 맞는 彈力的인 課稅處

理를 할 수 있는 基準이 되도록 배려했다.

즉, 첫째, 從來의 法人稅 通牒規定 중에서 法令의 解釋上 必要性이 적다고 인정되는 留意的 規定을 積極的으로 削除하고 또 適正한 企業會計 慣行이 成熟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事項에 대해서는 企業經理에 맡기기로 하여 規定化를 省略하기로 했다.

둘째, 規定의 內容에 대해서도 개개의 事案에 妥當한 彈力的 運用을 期하기 위해 一義的으로 規定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와 같은」, 「예를 들면」 등의 表現으로 具體的인 事項이나 事例를 豫示하고 또 「相當部分」, 「대강…… %」 등의 表現을 하여 機械的·平面的인 處理가 되지 않도록 配慮했다.

따라서 이 通牒의 具體的인 運用에 있어서 法令規定의 趣旨, 制度의 背景만이 아니고 條理, 社會通念도 감안하여 개개의 具體的 事案에 妥當한 處理가 되도록 留念하기 바람. 적어도 通牒 規定 中의 部分的 字句에 대해 形式的 解釋을 고집하여 全體의 趣旨에서 逸脫한 運用을 하거나 通牒 中에 豫示되어 있지 않다든가 通牒에 規定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만으로 法令規定의 趣旨나 社會通念 등에 맞지 않는 解釋을 하지 않도록 留意하기 바람.

目　　次

第1章 總　則 …… 15

第1節 納稅地 및 納稅義務 …… 15
第2節 事業年度 …… 17
第3節 同族會社 …… 18
第4節 資本 등의 金額 및 去來 …… 20
第5節 利益積立金額 …… 22
第6節 假決算에서의 經理 …… 23

第2章 收益, 費用 및 損失의 計算 …… 24

第1節 收益計算에 관한 通則 …… 24
1. 在庫資產의 販賣에 의한 收益 …… 24
2. 請負에 의한 收益 …… 25
3. 固定資產의 讓渡 등에 의한 收益 …… 29
4. 有價證券의 讓渡에 의한 收益 …… 33
5. 利子, 配當, 使用料 등에 관련된 收益 …… 33
6. 其他 收益 …… 39
第2節 費用 및 損失計算에 관한 通則 …… 42
1. 賣上原價 …… 42
2.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 48
3. 損失 …… 50
第3節 收益 및 費用 歸屬時期의 特例 …… 51
1. 割賦販賣 등 …… 51

2. 延拂條件附 讓渡 등 ····· 54
3. 長期工事의 請負 ····· 57
第4節 리베이트 ····· 57
1. 賣上리베이트 ····· 57
2. 購入리베이트 ····· 59
第5節 其他 ····· 60

第3章 受取配當 등 ····· 62

第1節 受取配當 등의 金額 ····· 62
1. 利益의 配當 등 ····· 62
2. 看做配當 ····· 66
第2節 負債利子의 計算 ····· 67
1. 支拂利子 ····· 67
2. 特定利子 ····· 69
3. 控除하는 負債에 대한 利子計算 ····· 72

第4章 其他의 益金 등 ····· 77

第1節 資產의 評價益 ····· 77
第2節 合併差益金 等 ····· 78
1. 合併差益金의 計算 등 ····· 78
2. 被合併法人의 合併事業年度 所得金額 등의 計算 ····· 82
3. 合併法人의 合併事業年度 所得金額 등의 計算 ····· 83
第3節 受贈益 ····· 85
1. 廣告宣傳用 資產 등의 受贈益 ····· 85
2. 未拂賞與의 免除益 ····· 86

第 5 章　在庫資産의 評價 …… 87

第 1 節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 87

1. 購入한 在庫資産 …… 87

2. 製造 등에 관련된 在庫資産 …… 88

第 2 節　在庫資産의 評價方法 …… 92

1. 原價法 …… 92

2. 低價法 …… 95

3. 在庫資産 評價額의 計算과 評價換 등과의 關係 …… 97

4. 評價方法의 選定 및 變更 …… 98

第 3 節　原價差額의 調整 …… 99

第 4 節　在庫의 手續 …… 103

第 6 章　有價證券의 評價 …… 104

第 1 節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 104

第 2 節　株式 取得價額의 特例 …… 109

第 3 節　有價證券의 評價方法 …… 111

第 4 節　信用去來 등에 의한 株式의 取得價額 …… 116

第 7 章　減價償却資産의 償却 등 …… 118

第 1 節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 118

1. 減價償却資産 …… 118

2. 少額의 減價償却資産 등 …… 122

第 2 節　減價償却의 方法 …… 123

第 3 節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등 …… 125

1.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 125
2. 耐用年數의 短縮 ····· 135
第4節 償却限度額 등 ····· 137
1. 通則 ····· 137
2. 償却方法을 變更한 경우의 償却限度額 ····· 138
3. 簡便償却 ····· 139
4. 增加償却 ····· 141
5. 陳腐化償却 ····· 142
6. 償却可能限度額까지 償却한 資産 ····· 144
第5節 償却費의 損金經理 ····· 145
第6節 特殊한 資産에 대한 償却計算 ····· 147
1. 鑛業用 減價償却資産의 償却 ····· 147
2. 代替資産에 대한 償却 ····· 149
3. 特別한 償却率을 適用하는 資産의 償却 ····· 150
4. 生物의 償却 ····· 151
第7節 除却損失 등 ····· 153
1. 除却損失 등의 損金算入 ····· 153
2. 綜合償却資産의 除却價額 등 ····· 154
3. 個別償却資産의 除却價額 등 ····· 156
第8節 資本的 支出과 修繕費 ····· 158
第9節 劣化資産 ····· 162

第8章 順延資産의 償却 ····· 166

第1節 順延資産의 意義 및 範圍 ····· 166
第2節 順延資産의 償却期間 ····· 171

第 3 節　償却費의 計算 ····· 176

第 9 章　其他 損金 ····· 179

第 1 節　資産의 評價損 ····· 179
1. 通則 ····· 179
2. 在庫資産의 評價損 ····· 180
3. 有價證券의 評價損 ····· 185
4. 固定資産의 評價損 ····· 192
第 2 節　報酬, 給料, 賞與 및 退職給與 ····· 194
1. 任員 등의 範圍 ····· 194
2. 任員에 대한 報酬 ····· 196
3. 經濟的인 利益의 供與 ····· 198
4. 賞與 ····· 200
5. 退職給與 ····· 203
6. 轉籍, 轉出者에 대한 給與 등 ····· 207
第 3 節　保險料 등 ····· 210
第 4 節　寄附金 ····· 217
1. 寄附金의 範圍 등 ····· 217
2.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 ····· 218
3. 其他 ····· 219
第 5 節　租稅公課 ····· 220
1. 租稅 ····· 220
2. 罰課金 ····· 223
3. 第2次 納稅義務에 의한 納付稅額 ····· 223
4. 賦課金, 納付金 등 ····· 223

第 6 節　貸損損失 …… 224
1. 貸金 등의 貸損 …… 224
2. 債權償却特別計定 …… 226
3. 返品債權特別計定 …… 233
第 6 節의 2　負擔金 …… 234
第 7 節　其他 經費 …… 236
1. 商品 등의 販賣에 필요한 景品 등의 費用 …… 236
2. 海外渡航費 …… 237
3. 會費 및 入會金 등의 費用 …… 239
4. 其他 …… 244

第10章　壓縮記帳 …… 246

第 1 節　壓縮記帳의 通則 …… 246
第 2 節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 247
第 3 節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 250
第 4 節　非出資組合이 賦課金으로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 251
第 5 節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 252
第 6 節　交換으로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 255
第 7 節　特定出資에 의해 取得한 有價證券의 壓縮記帳 …… 259

第11章　充當金 …… 264

第 1 節　通則 …… 264
第 2 節　貸損充當金 …… 264
第 3 節　返品調整充當金 …… 272
第 4 節　賞與充當金 …… 274

第 5 節　退職給與充當金 …… 281
1. 退職給與規程 …… 281
2. 退職給與充當金의 算入 …… 282
3. 退職給與充當金의 解體 …… 285
4. 退職年金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경우의 算入限度額 등 …… 287
5. 使用人이 轉籍 또는 轉出한 경우의 算入限度額 등 …… 289
第 6 節　特別修繕充當金 …… 293
第 7 節　製品保證 등 充當金 …… 296

第12章　移越缺損金 …… 304

第 1 節　靑色申告事業年度의 缺損金 …… 304
第 2 節　災害損失金 …… 304
第 3 節　私財提供 등이 있은 경우의 移越缺損金 …… 305

第13章　借地權의 設定 등에 따른 所得의 計算 …… 307

第13章의 2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 등 …… 316

第 1 節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 …… 316
第 2 節　外貨建去來에 관련된 會計處理 등 …… 322

第14章　特殊한 損益의 計算 …… 328

第 1 節　特殊한 團體의 損益 …… 328
1. 組合事業에 의한 損益 …… 328
2. 從業員團體의 損益 …… 330
第 2 節　協同組合 등의 事業分量配當 등 및 特別賦課金 …… 331

1. 事業分量配當 등 ····· 331
2. 特別賦課金 ····· 335
第3節 會社更生法의 適用에 따른 損益 ····· 335
1. 更生會社의 損益 등 ····· 335
2. 債權者 등의 損益 ····· 339

第15章 公益法人 및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의 收益事業 課稅 ····· 340

第1節 收益事業의 範圍 ····· 340
1. 共通事項 ····· 340
2. 物品販賣業 ····· 344
3. 不動產販賣業 ····· 346
4. 金錢貸付業 ····· 347
5. 物品貸付業 ····· 347
6. 不動產貸付業 ····· 348
7. 製造業 ····· 350
8. 通信業 ····· 350
9. 運送業 ····· 351
10. 倉庫業 ····· 351
11. 請負業 ····· 351
12. 印刷業 ····· 352
13. 出版業 ····· 353
14. 寫眞業 ····· 355
15. 席貸業 ····· 355
16. 旅館業 ····· 356

17. 飮食店業 ····· 358
18. 周旋業 ····· 358
19. 代理業 ····· 358
20. 仲介業 ····· 358
21. 都賣業 ····· 359
22. 鑛業 및 土石採取業 ····· 359
23. 浴場業 ····· 359
24. 理容業 ····· 360
25. 美容業 ····· 360
26. 興行業 ····· 360
27. 遊技所業 ····· 361
28. 遊覽所業 ····· 362
29. 醫療保健業 ····· 362
30. 技藝敎授業 ····· 366
31. 駐車場業 ····· 367
32. 信用保證業 ····· 368
33. 其他 ····· 368
第 2 節 收益事業에 관련된 所得의 計算 등 ····· 369

第16章 稅額의 計算 ····· 376

第 1 節 同族會社의 特別稅率 ····· 376
1. 特別稅率의 適用을 받는 同族會社의 範圍 ····· 376
2. 留保金額의 計算 ····· 377
第 2 節 所得稅額의 控除 ····· 379
第 3 節 外國稅額의 控除 ····· 386

1. 通則 ····· 386
2. 外國法人稅의 直接控除 ····· 387
3. 外國子會社에 관련된 外國法人稅의 間接控除 ····· 404
4. 其他 ····· 408
第4節 所得金額의 端數計算 ····· 411

第17章 申告, 納付 및 還付 ····· 412

第1節 申告 및 納付 ····· 412
第2節 還付 ····· 414

第18章 退職年金 등 積立金額의 計算 ····· 415

第19章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및 繼續하는 경우의 課稅 特例 ····· 418

第1節 解散하는 경우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418
第2節 合併하는 경우의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419

第20章 外國法人의 納稅義務 ····· 423

第1節 國內源泉所得 ····· 423
1. 國內에서 행하는 事業所得 ····· 423
2. 國內에 있는 資產의 所得 ····· 427
3. 人的役務提供事業의 所得 ····· 428
4. 不動產 등의 貸付에 의한 所得 ····· 430
5. 債券의 利子 등 ····· 431
6. 貸付金利子의 所得 ····· 431

7. 使用料 등의 所得 ····· 433
8. 其他 ····· 435
第 2 節 課稅標準 ····· 435
1. 國內에 支店 등을 가진 外國法人 ····· 435
2. 國內에서 長期建設作業 등을 하는 外國法人 ····· 436
3. 國內에 代理人 등을 둔 外國法人 ····· 437
4. 國內에 恒久的 施設을 가지지 않은 外國法人 ····· 438
5. 其他 ····· 439
第 3 節 國內源泉所得에 관련된 所得 金額의 計算 ····· 441
1. 通則 ····· 441
2. 損金의 計算 ····· 441
3. 其他 ····· 446
第 4 節 稅額의 計算 등 ····· 447
附 則 ····· 448

省略用語例

法人稅 基本通牒에서 使用한 다음의 省略用語는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法令 등을 나타낸다.

法 …… 法人稅法

令 …… 法人稅法施行令

規則 …… 法人稅法施行規則

措置法 …… 租稅特別措置法

措置法令 …… 租稅特別措置法施行令

措置法規則 …… 租稅特別措置法施行規則

通則法 …… 國稅通則法

通則法令 …… 國稅通則法施行令

通則法規則 …… 國稅通則法施行規則

耐用年數省令 …… 減價償却資產의 耐用年數 등에 관한 省令

第1章 總 則

第1節 納稅地 및 納稅義務

(法人이 아닌 社團의 範圍)

1-1-1 法 第2條 第8號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法人이 아닌 社團」이란, 多數者가 一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結合한 團體 中에서 法人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단순한 個人集合體가 아니고 團體로서 組織을 가지고 統一된 意志下에 그 構成員의 個性을 超越하여 活動하는 組織을 말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1981 直法 2-16 改正〕.

(1) 民法 第667條(組合契約)의 規定에 의한 組合

(2) 商法 第535條(匿名組合契約)의 規定에 의한 匿名組合

(法人이 아닌 財團의 範圍)

1-1-2 法 第2條 第8號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法人이 아닌 財團」이란 一定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出捐된 財産의 集合體로서 特定個人 또는 法人의 所有에 속해 있지 않고 一定 組織으로 統一된 意志下에 그 出捐者의 意圖를 實現하기 위해 獨立하여 活動하는 것 中에서 法人格이 없는 것을 말한다〔1981 直法 2-16 改正〕.

(人格이 없는 社團 등에 대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의 規定)

1-1-3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에 대해 代表者 또는 管理人의 規定이 있다는 것은 當該 社團 또는 財團의 定款, 寄附行爲, 規約 등에 의해 代

表者 또는 管理人이 정해져 있는 경우 외에 該當 社團 또는 財團의 業務에 관련된 契約을 締結하고 그 金錢, 物品 등을 管理하는 등 業務를 主宰하는 者가 事實上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에서 受益事業을 행하는 組織에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通常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留意해야 한다〔1981 直法 2－16 改正〕.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의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1－1－4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의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1981 直法 2－16 改正〕.

(1) 定款, 寄附行爲, 規則 또는 規約(以下 1－1－1에서는 「定款 등」이라 함)에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規定이 있는 경우 그 定款 등에 정해져 있는 所在地

(2) (1) 以下의 경우 그 事業의 本據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駐在하고 當該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이 행하는 業務가 企劃되고, 經理가 總括되고 있는 경우(當該 場所를 여기저기 移轉하는 경우에는 代表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被合併法人의 法人稅에 관련된 納稅地)

1－1－5 法人이 合併한 경우에 있어서 當該 合併에 관련된 被合併法人의 合併日後의 法人稅 納稅地는 當該 合併에 관련된 合併法人의 納稅地가 되므로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1 直法 2－16 改正〕.

(解散한 公益法人 등의 納稅義務)

1－1－6 公益法人 등 人格이 없는 社團 또는 外國法人이 解散한 경우에는 그 淸算 中의 各 事業年度의 所得 및 淸算所得에 대해서는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가 課稅되지 않으나 이들 所得 中에서 收益事業으로부터 생긴

所得 및 國內源泉所得에 관련된 所得에 대해서는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가 課稅되므로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1 直法 2－16 改正〕.

(淸算結了의 登記를 한 法人의 納稅義務)

1－1－7 法人이 淸算結了의 登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淸算의 結了는 實質的으로 判定해야 하는 것이므로 當該 法人은 各 事業年度의 所得 또는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納付해야 할 義務를 履行할 때까지 더 存續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1981 直法 2－16 改正〕.

第2節 事業年度

(設立 第1回 事業年度의 開始日)

1－2－1 法人 設立後 最初의 事業年度 開始日은 法人設立日에 따른다. 이 경우에 있어서 設立日은 設立이 登記에 의해 成立하는 法人은 設立登記를 한 날이고, 行政官廳의 認可 또는 許可에 의해 成立하는 法人이면 그 認可 또는 許可日로 한다.

(組織을 變更한 경우의 事業年度)

1－2－2 法人이 商法, 其他 法令의 規定에 의해 그 組織을 變更하여 다른 種類의 法人이 된 경우에는 組織變更前의 法人解散登記, 組織變更後의 法人設立登記에 관계없이 그 解散 또는 設立은 없었던 것으로 取扱한다. 따라서 當該 法人의 事業年度는 그 組織變更에 의해 區分되지 않고 繼續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解散, 繼續 또는 合併日)

1－2－3 法 第14條 第1號 〈看做事業年度〉의 「解散日」 또는 第4號의 「繼續日」이란 株主總會 또는 그에 준하는 總會 등에서 解散 또는 繼續日을 정했을 때에는 그 정한 날, 解散 또는 繼續日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解散 또는 繼續을 決議한 날, 解散事由의 發生에 의해 解散한 경우에는 當該 事由發生日을 말하고 同條 第2號의 「合併日」이란, 合併契約에 있어서 合併期日로 定한 날의 前日을 말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合併法人에서 合併日은 當該 合併期日로 定한 날을 말한다.

(設立無效 등의 判決을 받은 경우의 淸算)

1－2－4 法人이 設立無效 또는 設立取消의 判決에 의해 商法의 規定에 따라 淸算을 할 경우에는 當該 判決의 確定日에 解散한 것으로 한다.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이 財産의 全部를 分配한 경우의 殘餘財産 確定)

1－2－5 人格이 없는 社團 등이 事業年度의 中途에 事業을 하지 않게 되어 所有한 財産 全部를 分配할 경우에는 分配를 한 날에 解散하고 殘餘財産이 確定된 것으로 한다.

第3節 同族會社

(議決權이 없는 株式이 있는 경우의 同族會社 判定)

1－3－1 法 第2條 第10號 〈同族會社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株式」 및 「發行株式」에는 議決權이 없는 株式이 포함된다〔1980 直法 2－8 追加〕.

(名義株에 대한 株主 등의 判定)

1－3－1의 2 法 第2條 第10號 〈同族會社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株主

등」은 株主名簿 또는 社員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株主 등에 따르나 그 株主 등이 단지 名義人이 되고 當該 株主 以外의 者가 實際權利者일 경우에는 그 實際의 權利者를 株主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自己株式을 소유하는 法人에 대한 同族會社의 判定)

1－3－2 自己株式을 所有하는 法人에 대하여 同族會社인가 아닌가를 判定할 경우에는 法 第2條 第10號 〈同族會社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株主 등」에는 當該 法人을, 「發行株式의 總數」에는 當該 自己株式의 數를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生計를 維持하는 者)

1－3－3 令 第4條 第1項 第4號 〈同族關係者의 範圍〉에서 規定하는 「株主 등으로부터 받는 金錢 및 그 외의 資産에 의해 生計를 維持하고 있는 者」란 當該 株主 등으로부터 支給받는 金錢 및 그 외의 財産 또는 支給받은 金錢 및 그 외 財産의 運用에 의해 생기는 收入을 日常生活資金의 主要部分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生計를 함께 하는 것)

1－3－4 令 第4條 第1項 第5號 〈同族關係者의 範圍〉에서 規定하는 「生計를 함께 하는」이란 有形無形으로 援助하며 日常生活資金을 共通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꼭 同居를 必要로 하지는 않는다.

(同族會社의 判定 基礎가 되는 株主 등)

1－3－5 同族會社인가 아닌가를 判定할 때에는 꼭 그 持株比率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그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등을 選定할 必要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서대로 株主 등을 選定했을 경우에는 同族會社가 되지 않더라도 그 選定方法을 바꾸어 判定하면 同族會社가 될 때 그 會社는 法 第

2條 第10號 〈同族會社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同族會社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第4節 資本 등의 金額 및 去來〔1980 直法 2－8 改正〕

(資本의 增加日)

1－4－1 法人의 資本 또는 出資의 增加가 있을 경우에 그 資本 또는 出資의 增加日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따른다. 단, 外國法人에 대해 그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가 所在하는 國家의 法令에 이것과 다른 規定이 있을 경우에는 當該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1975 直法 2－21, 1980 直法 2－8, 1982 直法 2－11, 1991 課法 2－4 改正〕.

(1) 拂入 또는 現物出資에 의한 增資의 경우((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拂入期日(現物出資의 경우에는 現物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支給期日). 단,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當該 拂入期日의 翌日

(2) 利益 또는 準備金의 資本編入 또는 再評價積立金의 資本編入에 의한 增資의 경우에는 當該 編入에 관한 任員會議나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議決日. 단, 그 議決에 의해 增資日로 정한 날이 있으면 그날

(3) 利益 또는 準備金의 資本編入에 의한 併合 增資의 경우에는 利益 또는 準備金의 資本編入에 관련된 部分에 대해서는 (2)에 열거한 날, 拂入 또는 現物出資에 관련된 部分에 대해서는 (1)에 열거한 날

(4) 社債를 株式으로 轉換한 增資의 경우에는 轉換 請求를 한 날

(5) 新株引受權付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 行使에 의한 增資의 경우에는 拂入한 날

(加入金)

1－4－2 法 第2條 第17號② 〈資本積立金額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加入金」이란,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 또는 總會의 決議를 근거로 새로 組合員 또는 會員이 되는 者로부터 出資持分을 調整하기 위하여 徵收하는 것으로, 이것을 醵出하지 않았을 때에는 組合員 또는 會員의 資格을 取得하지 않을 경우의 加入金을 말한다〔1982 直法 2－11 改正〕.

(減資 등의 경우 超過還拂額의 損金不算入)

1－4－3 法人이 資本 혹은 出資의 減少, 株式의 消却 또는 退社 혹은 脫退(이하 1－4－3에서 이것들을 「減資 등」이라고 함)에 의해 支拂하는 金額 및 金錢 以外의 資産價額合計額이 그 株式의 額面金額(無額面株式에 대해서는 減資時 資本金額을 發行株式의 總數로 나눈 金額) 또는 出資金額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하는 金額은 損金額에 算入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金錢 以外의 資産價額은 當該 減資 등의 決議時에 當該 資産價額에 따르지만 當該 價額이 支拂時의 價額을 초과할 때에는 支拂時의 價額에 따를 수가 있다.

(資本 등 去來에 該當하는 利益 등의 分配)

1－4－4 法 第22條 第5項 〈資本 등 去來의 意義〉의 規定에 따라 資本 등의 去來에 該當하는 利益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는 法人이 確定한 決算에 利益 또는 剩餘金의 處分에 의해 配當한 것만이 아니라 株主 등에 대해 그 出資者라는 地位에 근거하여 供與한 一切의 經濟的 利益을 포함한 것이다.

(外貨建轉換社債의 轉換이 있는 경우의 資本積立金額)

1－4－5 外貨建轉換社債의 轉換에 의해 株式을 發行한 경우의 資本積立金額이 되는 金額은 그 轉換의 對象이 된 轉換社債의 帳簿價額에서 當該 株

式의 發行에 의해 資本에 編入된 金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1977 直法 2－33 追加, 1979 直法 2－31 改正〕.

(新株의 買入引受에 관련된 額面超過金)

1－4－6 法人이 增資新株를 그 發行價額으로 證券會社에 買入引受한 경우에 그 發行價額 中에서 資本에 編入되지 않는 金額은 法 第2條 第17號① 〈資本積立金額의 意義〉에 열거하는 金額에 該當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證券會社에 支拂하는 引受手數料額은 설령 그 買入引受에 관련된 增資新株의 全部 또는 一部를 最終的으로 當該 證券會社가 買入하여 拂入했다고 해도 令 第14條 第1項 第6號 〈新株發行費〉에서 規定하는 新株發行費에 該當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91 課法 2－4 改正〕.

(外國法人의 資本積立金額)

1－4－7 外國法人이 積立한 積立金額으로 法 第2條 第17號 〈資本積立金額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資本積立金額에 속하는 것은 法의 適用上 同號에서 規定하는 資本積立金額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積立金額이 同號에서 規定하는 資本積立金額과 類似한가 아닌가는 그 積立이 행하여졌을 때 當該 外國法人의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가 所在하는 國家의 法令이 定하는 바를 감안하여 判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第5節　利益積立金額

(納付해야 할 道府縣民稅 등의 計算)

1－5－1 利益積立金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留保하고 있는 金額에 포함되지 않는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以下 1－5－1에서 「道府縣民稅 등」이

라 한다)의 金額은 利益積立金額 計算을 할 때까지 確定된 法人稅額을 基礎로 計算한 金額(實際稅率에 의해 計算하는 것이 困難할 경우에는 標準稅率에 의해 計算한 金額)에 따른다. 이 경우에 그 후 道府縣民稅 등의 申告, 更正 또는 決定에 의해 過不足額이 생겼을 때에는 그 過不足額은 當該 申告, 更正 또는 決定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開始日에 調整한다.

第 6 節　假決算에서의 經理

(假決算에서 損金經理의 意義)

1－6－1 法 第72條 第1項 〈假決算을 한 경우 中間申告書의 記載事項 등〉에서 規定하는 期間(以下 「中間事業年度」라 함)에 관련된 決算(以下 「假決算」이라 함)에서 損金經理란 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報告하는 當該 期間에 관련된 決算書 및 그 作成의 基礎가 된 帳簿에 費用 또는 損失로 記載하는 것을 말한다〔1975 直法 2－21 追加〕.

(壓縮記帳 등의 經理方法)

1－6－2 壓縮記帳에 의한 壓縮額 또는 各種 準備金의 積立額을 利益 또는 剩餘金의 處分에 의해 積立하는 法人이 中間事業年度에 그 積立하려고 하는 金額을 株主 또는 出資者에 報告하는 當該 中間事業年度에 관련된 損益計算書의 脚註에 表示한 경우에는 그 表示한 金額은 利益 또는 剩餘金의 處分에 의해 積立한 것으로 取扱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第 2 章　收益, 費用 및 損失의 計算 〔1980 直法 2－8 改正〕

第 1 節　收益計算에 관한 通則〔1980 直法 2－8 改正〕

1. 在庫資産의 販賣에 의한 收益〔1980 直法 2－8 追加〕

(在庫資産의 販賣에 의한 收益의 歸屬時期)

2－1－1 在庫資産의 販賣에 의한 收益額은 引渡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在庫資産 引渡日의 判定)

2－1－2 2－1－1의 경우에 在庫資産의 引渡日은 예를 들어 出荷한 날, 상대방이 檢收한 날, 상대방에 使用收益이 생긴 날, 檢針 등에 의해 販賣數量을 確認한 날 등 當該 在庫資産의 種類 및 性質, 販賣에 관련된 契約內容 등에 따라 引渡日로 合理的이라고 인정되는 날 중에서 法人이 繼續하여 그 收益計上을 하려고 하는 날에 의한다. 이 경우에 當該 在庫資産이 土地 또는 土地上에 存在하는 權利이고 그 引渡日이 언제인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날 중에서 빠른 날에 引渡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1980 直法 2－8 追加〕.

(1) 代金의 相當部分(대략 50% 以上)을 收受하게 된 날

(2)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그 登記申請에 必要한 書類를 상대방에게 交付한 날 포함)을 한 날

(委託販賣에 의한 收益의 歸屬時期)

2－1－3 在庫資産의 委託販賣에 의한 收益額은 그 委託品에 대해 受託者가 販賣를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當該 委託品에 대한 賣上計算書가 賣上 때마다 作成되어 送付되는 경우에 法人이 繼續하여 그 收益을 當該 賣上計算書가 到達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受託者가 週, 旬, 月을 單位로 하여 賣上計算書를 作成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繼續될 때에는 「賣上 때마다 作成되어 送付되는 경우」에 該當한다〔1980 直法 2－8 改正〕.

(販賣代金額이 確定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見積)

2－1－4 法人이 販賣에 관련된 在庫資産을 引渡했을 경우에 그 引渡日이 속한 事業年度終了日까지 그 販賣代金額이 確定되지 않았을 때에는 同日의 現況에 의해 그 金額을 適正하게 見積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後 確定된 販賣代金額이 見積額과 다를 때의 差額은 그 確定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2. 請負에 의한 收益〔1980 直法 2－8 追加〕

(請負에 의한 收益의 歸屬時期)

2－1－5 請負에 의한 收益額은 特別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物件의 引渡를 要하는 請負契約에 있어서는 그 目的物 全部를 完成하여 상대방에 引渡한 날, 物件의 引渡를 要하지 않는 請負契約에 있어서는 그 約束한 役務全部를 完了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建設工事 등의 引渡日의 判定)

2－1－6 2－1－5에서 請負契約의 內容에 建設, 造船, 其他 이것들과 유

사한 工事(以下 2－1－9까지 「建設工事 등」이라 함)를 할 目的을 가진 것이 있을 때에는 그 建設工事 등의 引渡日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作業을 結了한 날, 상대방의 引受場所에 搬入한 날, 상대방이 檢收를 完了한 날, 相對方에 使用收益이 생긴 날 등 當該 建設工事 등의 種類 및 性質, 契約內容 등에 따라 그 引渡日로서 合理的이라고 認定되는 날 중에서 法人이 繼續하여 그 收益計上을 행하려고 하는 날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工事代金額이 確定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見積)

2－1－7 2－1－4를 當該 事業年度에 完成하여 引渡한 建設工事 등에 관련된 工事代金額이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確定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準用한다〔1980 直法 2－8 改正〕.

(値增金의 益金算入 時期)

2－1－8 法人이 請負한 建設工事 등에 관련된 工事代金에 대해 資材費의 引上 등에 따라 一定 値增金의 收入을 契約에서 정했을 때에는 그 收入해야 할 値增金額은 建設工事 등의 引渡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지만, 상대방과의 協議에 의해 그 收入하는 것이 確定된 値增金에 대해서는 그 收入해야 할 金額이 確定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部分完成基準에 의한 收益 歸屬時期의 特例)

2－1－9 法人이 請負한 建設工事 등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事實이 있을 경우에는 그 建設工事 등의 全部가 完成되지 않았어도 그 事業年度에 引渡한 建設工事 등의 量 또는 完成한 部分에 對한 工事收入을 그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하나의 契約에 의해 同種의 建設工事 등을 多量으로 請負맡은 경우로 그 引渡量에 따라 工事代金을 收入하는 趣旨의 特約 또는 慣習이 있을 경우

(2) 하나의 建設工事라도 그 建設工事 등의 一部가 完成되어 그 完成된 部分을 引渡할 때마다 그 比率에 따라 工事代金을 收入하는 趣旨의 特約 또는 慣習이 있는 경우

(機械設備 등의 販賣에 따라 設置工事를 행할 경우의 收益 歸屬時期의 特例)

2－1－10 法人이 機械設備 등을 販賣하는 것과 함께 그 設置工事를 한 경우에 그 設置工事가 상당규모이고 그 設置工事에 관련된 代價額을 契約其他에 근거하여 合理的으로 區分할 수 있을 때에는 機械設備 등에 관련된 販賣代金額과 設置工事에 관련된 代價額을 區分하여 각각에 대해 2－1－1 또는 2－1－5에 의해 收益計上할 수 있게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法人이 이 取扱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設置工事에 관련된 代價額을 포함한 全體의 販賣代金額에 대해 2－1－1을 따른다.

(不動產 仲介斡旋 報酬의 歸屬時期)

2－1－11 土地·建物 등의 販賣, 交換 또는 賃貸借(以下 2－1－11에서 「販賣 등」이라 함)의 仲介 또는 斡旋으로 받는 報酬額은 原則的으로 그 販賣 등에 관련된 契約의 效力이 發生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法人이 賣買 또는 交換의 仲介 또는 斡旋으로써 받는 報酬額에 대해 繼續하여 當該 契約에 관련된 去來가 完了한 날(同日前에 實際로 收受한 金額이 있을 때의 當該 金額에 대해서는 그 收受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技術役務의 提供에 관련된 報酬의 歸屬時期)

2－1－12 設計, 作業의 指揮監督, 技術指導, 其他 技術役務의 提供으로

받는 報酬額은 原則的으로 그 約束한 役務全部의 提供을 完了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는 것이나, 그 技術役務의 提供에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事實이 있은 경우에는 그 支拂받을 報酬額이 確定될 때마다 確定된 金額을 確定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 단, 그 支拂받을 것이 確定된 金額 中에서 役務全部의 提供이 完了할 때까지, 또는 1年을 넘는 상당기간이 經過할 때까지 支拂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完了하는 날과 支拂받는 날 중에서 어느 쪽이든지 빠른 날까지 收益計上을 보류할 수 있다〔1980 直法 2－8 追加〕.

(1) 報酬額이 現地에 派遣하는 技術者 등의 數 및 滯在期間日數 등에 의해 算定되며, 一定期間마다 그 金額을 確定하여 支拂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2) 예를 들어 基本設計에 관련된 報酬額과 部分設計에 관련된 報酬額이 區分되어 있는 것과 같이 報酬額이 作業의 段階마다 區分되며, 그 金額을 確定하여 支拂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註) 技術役務의 提供에 관련된 契約과 관련하여 그 着手費用을 充當하려는 目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收受하는 準備金, 着手金 등은 後日 精算하여 剩餘金이 있으면 返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收受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運送收入의 歸屬時期)

2－1－13 運送業에서 運送收入額은 原則的으로 그 運送에 관련된 役務提供을 完了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法人이 運送契約의 種類, 性質, 內容 등에 따라 예를 들어 다음에 열거하는 方法 중에서 運送收入에 관련된 收益의 計上基準으로 合理的이라고 認定되는 것에 따라 繼續하여 收益計上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

法 2－8 追加〕.

(1) 乘車券, 乘船券, 搭乘券 등을 發賣한 날(自動發賣機에 의한 것은 集金을 한 때)에 發賣에 관련된 運送收入額을 收益計上하는 方法

(2) 船舶, 航空機 등이 積地를 出發한 날에 當該 船舶, 航空機 등에 積載한 貨物 또는 乘客에 관련된 運送收入額을 收益計上하는 方法

(3) 한번의 航海(船舶이 發港地를 出發하여 歸航地에 到着할 때까지의 航海를 말한다. 以下 2－1－13과 같음)에 通常 要하는 期間이 대략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한번의 航海에 관련된 運送收入額을 한번의 航海를 完了한 날에 收益計上하는 方法

(4) 한번의 運送에 通常 要하는 期間 또는 運送을 약속한 期間의 經過에 따라 日割 또는 月割 등에 의해 그 運送收入額을 收益計上하는 方法

(註) 1. 運送業을 영위할 둘 이상의 法人이 運賃의 交互計算 또는 共同計算을 하는 경우에 當該 交互計算 또는 共同計算에 의해 當該 둘 이상의 法人이 配分받아야 할 收益額에 대해서는 그 配分이 確定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할 수 있다.

2. 海上運送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船舶에 의한 運送에 관련하여 受拂하는 滯船料 또는 早出料에 대해서는 그 額이 確定한 날에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할 수 있다.

3. 固定資產의 讓渡 등에 의한 收益〔1980 直法 2－8 追加〕

(固定資產의 讓渡에 의한 收益의 歸屬時期)

2－1－14 固定資產의 讓渡에 의한 收益額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引渡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그 固定資產이 土地, 建物, 其他 이것들과 유사한 資產인 경우에 法人이 當該 固定資產의 讓渡에 관한 契約의 效力發生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本文의 取扱을 따를 경우에 固定資産의 引渡日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2－1－2의 例를 따른다.

(農地의 讓渡에 의한 收益 歸屬時期의 特例)

2－1－15 農地의 讓渡가 있었을 경우에 當該 農地의 讓渡에 관한 契約이 農地法上의 許可를 받지 않으면 그 效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法人이 그 讓渡에 의한 收益額을 그 許可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法人이 農地取得에 관한 契約을 締結한 경우에 農地法上의 許可를 받기 前에 當該 契約을 근거로 한 契約上의 權利를 他에 讓渡했을 때에 그 讓渡에 의한 收益의 計上時期에 대해서는 2－1－14에 의한다. 이 경우에 當該 權利 讓渡에 관한 契約에서 農地法上의 許可를 받는 것을 當該 契約의 效力發生條件으로 하는 趣旨의 規定이 있었다 하더라도 當該 規定은 當該 許可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契約解除條件으로 하는 趣旨의 規定으로 2－1－14의 但書를 適用한다.

(工業所有權 등의 讓渡 등에 의한 收益의 歸屬時期)

2－1－16 工業所有權 등(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및 商標權 또 이것들의 權利에 관련된 出願權 및 實施權을 말한다. 以下의 節에서 같음)의 讓渡 또는 實施權의 設定에 의해 받는 代價(使用料를 제외, 以下 2－1－16과 같음)의 額은 原則的으로 그 讓渡 또는 設定에 관한 契約의 效力發生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그 讓渡 또는 設定效力이 登錄에 의해 생기는 것일 경우에 法人이 그 登錄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그 代價의 額이 契約效力發生日 以後 一定期間內에 支拂받아야 할 使用料의 額에 充當되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使用料의 額에 充當되어 있지 않은 部分의 金額을 前受金 등으로 順延할 수 없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노하우의 契約金 등의 歸屬時期)

2－1－27 노하우의 設定契約을 할 때 支拂받는 一時金 또는 契約金額은

當該 노하우의 開始를 完了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노하우의 開始가 2回 以上에 걸쳐 分割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 一時金 또는 契約金의 支拂을 그기에 맞추어 分割하려고 할 때에는 그 開始를 할 때마다 그기에 맞추어 支拂받아야 하는 金額을 그 開始를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1. 그 一時金 또는 契約金額이 노하우의 開始 때문에 現地에 派遣하는 技術者 등의 數 및 滯在期間의 數 등에 따라 算定되고 또, 一定期間마다 그 金額을 確定하여 支拂받게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支拂받아야 할 金額이 確定될 때마다 確定된 金額을 그 確定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으로 算入한다.

2. 노하우 設定契約의 締結에 앞서 상대방에 契約締結의 選擇權을 貸與하기 위하여 支拂받는 소위 옵션料에 대해서는 그 支拂받는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3. 2－1－16의 (註)는 노하우의 設定契約을 할 때 支拂받는 一時金 또는 契約金에 대해 準用한다.

(固定資產을 讓渡擔保로 한 경우)

2－1－18 法人이 債務 辨濟의 擔保로써 所有하고 있던 固定資產을 讓渡한 경우에 있어서 그 契約書에 다음의 모든 事項을 명백히 하고 自己의 固定資產으로 經理하고 있을 때에는 그 讓渡는 없었던 것으로 取扱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후 要件의 어느 것인가를 빨려고 할 때 또는 債務不履行 때문에 그 辨濟에 충당했을 때에는 이같은 事實이 발생했을 때에 讓渡가 있었던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當該 擔保에 관련된 固定資產을 當該 法人이 從來대로 使用收益할 것.

(2) 通常 支拂한다고 認定되는 當該 債務에 관련된 利子 또는 여기에 상당하는 使用料의 支拂에 관한 規定이 있을 것.

(註) 形式上 再買入條件附 讓渡 또는 再賣買의 豫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도 上記와 같은 條件을 具備하고 있는 것은 讓渡擔保에 該當한다.

(共有地의 分割)

2－1－19 法人이 他者와 土地를 共有하고 있는 경우에 그 共有에 관련된 土地를 그 持分에 따라 分割했을 때에는 그 分割에 의한 土地의 讓渡는 없었던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그 分割에 소요한 費用은 그 支出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할 수 있다.

(法律의 規定에 근거하지 않은 區劃形質의 變更에 따른 土地의 交換分合)

2－1－20 일단의 土地 區域內에 土地(土地上에 存在하는 權利를 포함. 以下 2－1－20에서 같음)를 소유한 2人 以上의 者가 그 일단의 土地利用의 增進을 꾀하기 위해 土地의 區劃形質變更을 할 때 서로 그 區域內에 있는 土地의 交換分合(土地區劃整理法, 都市再開發法 등의 法律規定을 根據로 행하는 것은 제외. 以下 2－1－20에서 같음)을 할 경우에는 그 交換分合이 當該 區劃形質의 變更이 必要最小限의 範圍內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 交換分合에 의한 土地의 讓渡는 없었던 것으로 取扱한다. 이 경우에 當該 區域內에 있는 土地의 一部가 그 區劃形質의 變更에 필요한 費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讓渡됐을 때에는 當該 2人 이상의 者가 當該 區域內에 소유하고 있던 土地 面積의 比나 其他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각각 가지고 있던 土地의 一部를 讓渡한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3 直法 2－11 改正〕.

(註) 1. 區劃形質의 變更에 소요한 費用은 土地의 取得價額에 算入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2. 이 取扱은 當該 交換分合이 일단의 土地의 區劃形質 變更에 따라 이루어지는 道路, 其他 公共施設의 整備, 不整形地의 整理 등에 基因하여 이루어지는 狀況으로 보아 必要最小限의 範圍內인 것이 認定되는 것에 대해 適用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道路交換)

2－1－21 法人이 自己가 소유하는 土地의 利用上 障害가 되는 旣存의 公

路(他人이 가지고 있는 私道를 포함, 以下 2－1－21에서 같음)를 移轉할 目的으로 當該 土地의 一部에 當該 公路를 대신하는 道路를 建設하여 當該 道路 및 그 敷地에 관련된 土地와 當該 公路의 敷地에 관련된 土地를 交換한 경우에는 그 交換에 따른 土地의 讓渡는 없었던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그 道路의 建設 및 交換에 소요한 經費는 土地의 取得價額에 算入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4. 有價證券의 讓渡에 의한 收益〔1980 直法 2－8 追加〕

(有價證券의 讓渡에 의한 收益의 歸屬時期)

2－1－22 有價證券의 讓渡에 의한 收益額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引渡를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株式의 信用去來 등을 했을 때의 收益의 歸屬時期)

2－1－23 法人이 證券去來法 第49條 第1項 〈信用去來 등에서 保證金의 預託〉의 規定에 의한 信用去來 또는 發行日去來의 方法에 따라 株式을 強賣한 경우에 그 強賣에 관련된 株式의 讓渡에 의한 收益額은 當該 強賣에 관련된 去來의 決濟를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5. 利子, 配當, 使用料 등에 관련된 收益〔1980 直法 2－8 追加〕

(貸付金利子 등의 歸屬時期)

2－1－24 貸付金, 預金, 貯金 또는 有價證券(以下 2－1－24에서 「貸付

金 등」이라 함)에서 생긴 利子額은 그 利子의 計算時間의 經過에 따라 當該 事業年度에 관련된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주로 金融 및 保險業을 영위하는 法人 以外의 法人이 그 소유한 貸付金 등(當該 法人이 金融 및 保險業을 兼業하는 경우에는 當該 金融 및 保險業에 관련된 것을 제외)에서 생기는 利子로 그 支拂期日이 1年 以內의 一定期間마다 도래하는 金額에 대해 繼續하여 그 支拂期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6 直法 2－12 改正〕.

(註) 예를 들어 借入金과 그 運用資產으로서 貸付金, 預金, 貯金 또는 有價證券(信託財產에 編入된 이들 資產을 포함)이 條件이 붙은 상대관계에 있는 경우와 같이 그 借入金에 관련된 支拂利子額과 運用資產에서 생기는 利子額을 對應시켜 計上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運用資產에서 생기는 利子額에 대해서는 단서의 適用은 없는 것으로 한다.

(相當期間 未收가 繼續된 경우 등의 貸付金利子의 歸屬時期 特例)

2－1－25 法人이 소유한 貸付金 또는 當該 貸付金에 관련된 債務者에 대하여 다음의 어떤 事實이 생겼을 경우에는 當該 貸付金으로부터 생기는 利子額(實際로 支拂받는 金額을 제외) 中에서 當該 事業年度에 관련된 것은 2－1－24에 관계없이 當該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1) 債務者가 債務超過에 걸리고 其他 相當한 理由로 인해 그 支拂을 督促했음에도 불구하고 當該 貸付金에서 생기는 利子額 중에서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以前 1年(以下 2－1－25에서 「直近 1年」이라 함) 以內에 그 支拂期日이 到來한 것(以下 2－1－25에서 「最近 發生利子」라 함)의 全額이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未收로 되어 있고, 또 直近 1年 以內에 最近 發生利子 以外의 利子에 대해 支拂받은 金額이 전혀 없든지 또는 극히 少額일 때

(2) 債務者에 대해 會社更生法 規定에 의한 更生手續 또는 商法規定에 의한 會社整理, 其他 이것과 유사한 法律上의 整理手續이 開始된 것.

(3) 債務者에 대해 債務超過의 狀態가 相當期間 繼續되고 事業好轉의 전망이 없을 때, 當該 債務者가 天災事故, 經濟事情의 急變 등에 의해 多大한 損失을 입었을 때, 그 외 이것과 유사한 事由가 생겼기 때문에 當該 貸付金額 全部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그 回收가 어렵게 되었을 때

(4) 會社更生法 規定에 의한 更生計劃의 認可決定, 債權者集會의 協議決定 등에 의해 當該 貸付金額의 全部 도는 相當部分에 대해 相當期間(대략 2年 以上) 보류되었을 때

(註) 이 取扱으로 인해 益金額에 算入하지 않은 利子에 대해서는 그 후 여기에 대해 實際로 支拂받은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利子制限法의 制限超過利子)

2－2－26 法人이 利子制限法에 規定된 制限利率(以下 2－1－26에서 「制限利率」이라 함)을 넘는 利率에 의해 金錢의 貸付를 하고 있을 경우에 그 貸付에 관련된 貸付金으로부터 생기는 利子額의 收益計上에 대해서는 2－1－24 및 2－1－25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것에 따른다〔1980 直法 2－8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1) 當該 貸付金에서 생기는 利子額 중에서 當該 事業年度에 관련된 金額은 原則的으로 그 貸付에 관련된 約定利率에 의해 計算하는 것이나 實際로 받은 利子額을 除外하고 法人이 繼續하여 制限利率에 따라 그 計算을 행할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2) 當該 貸付金에서 생기는 利子額 중에서 實際로 支拂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支拂받은 金額을 利子로 益金에 算入한다.

(3) (1)로부터 當該 事業年度에 관련된 利子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計算의

基礎가 되는 貸付金額은 原則的으로 그 貸付에 관련된 約定元本額에 따라야 하나 法人이 繼續하여 이미 支拂받은 利子額 중에서 制限利率에 따라 計算한 利子額을 넘는 部分의 金額〔貸金業의 規制 등에 관한 法律 第43條 第1項〈任意로 支拂한 경우의 看做辨濟〉의 適用을 받는 金額은 제외〕을 元本額에 充當한 것으로 當該 貸付金額을 計算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註) 이 경우에는 貸倒充當金 計算의 基礎가 되는 事業年度終了時에 代金의 帳簿價額에 대해서도 같은 方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利益配當 등의 歸屬時期)

2－1－27 法人이 다른 法人으로부터 받은 利益配當, 商法 第293條의 5第1項〈中間配當〉에서 規定하는 金錢의 分配(以下「中間配當」이라 함), 剩餘金의 分配 또는 證券投資信託의 收益分配(以下 2－1－31까지 이것들을「利益의 配當 등」이라 함)額은 다음에 열거하는 區分에 따라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收益으로 한다. 단, 그 利益配當 등의 額이 外國法人으로부터 받은 것인 경우에는 當該 外國法人의 本店 또는 주된 事務所가 所在하는 國家의 利益配當 등에 관한 法令에 그 確定時期에 대해 이것과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當該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該 利益配當額을 確定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收益으로 한다〔1975 直法 2－21, 1980 直法 2－8, 1991 課法 2－4 改正〕.

(1) 利益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해서는 當該 配當 또는 分配를 하는 法人의 株主總會, 其他 正當한 權限을 가진 機關에서 當該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관한 決議日

(2) 中間配當에 대해서는 當該 中間配當에 관련된 任員會議의 決議日, 단, 그 決議에 의해 中間配當의 請求權에 관해 그 效力發生日로 정한 날이 있을 때에는 그날

(3) 證券投資信託의 收益分配 중에서 信託의 開始時부터 그 終了時까지의 것에 대해서는 當該 收益의 計算期間의 末日로 하여 證券投資信託의 終了 또는 證券投資信託의 一部 解約에 의한 收益分配에 대해서는 當該 終了 또는 解約日

(4) 法 第24條(配當額이라고 간주하는 金額)의 規定에 의한 看做配當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區分에 따라 각각 定한 날

① 株式의 消却 또는 資本의 減少 또는 退社, 脫退 또는 出資의 減少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 事實이 있었던 날

② 合併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合併登記日

③ 解散에 의한 殘餘財産의 分配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分配開始日(그 分配가 數回로 分割될 경우에는 각각의 分配開始日)

④ 利益積立金額의 資本 또는 出資에 編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編入에 관한 株主總會, 其他 正當한 權限을 가진 機關의 決議에 따라 그 編入日로 定한 날(當該 決議에서 當該日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決議日)

⑤ 淸算 中의 法人의 繼續 또는 合併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繼續 또는 合併登記日

(利益配當 등의 歸屬時期의 特例)

2－1－28 法人이 다른 法人으로부터 받는 利益配當 등의 額으로 그 支拂 때문에 通常 要하는 期間內에 支拂받는 것에 대해서 繼續하여 그 支拂받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收益으로 하는 경우에는 2－1－27에 관계없이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賃貸借契約에 근거한 使用料 등의 歸屬時期)

2－1－29 資産의 賃貸借契約에 根據하여 支拂받은 使用料의 額은 前受

에 관련된 額을 제외하고 當該 契約 또는 慣習에 따라 支拂받아야 하는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當該 契約에 대하여 係爭(使用料의 增減에 관한 것은 제외)이 있기 때문에 그 支拂받아야 하는 使用料가 確定되지 않고 當該 事業年度에 支拂받지 않았을 때에는 상대방이 供託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係爭이 解決되어 當該 使用料가 確定되어 支拂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收益計上을 保留할 수 있게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使用料 등의 額의 增減에 관하여 係爭이 있을 경우에는 本文의 取扱에 따라야 하나 이 경우에는 契約의 內容, 상대방이 供託한 金額 등을 감안하여 그 使用料 등의 額을 合理的으로 見積내는 것으로 한다.

(工業所有權 등의 使用料 歸屬時期)

2－1－30 工業所有權 등 또는 노하우를 他者에게 使用시킴으로써 支拂받는 使用料는 그 額이 確定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法人이 繼續하여 契約에 의해 當該 使用料를 支拂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送金이 許可되지 않는 利子, 配當 등의 歸屬時期의 特例)

2－1－31 國外의 者로부터 支拂받는 貸付金의 利子, 利益配當 또는 工業所有權 또는 노하우의 使用料(措置法 第66條의 6 第1項 〈內國法人에 관련된 特定外國子會社 등의 留保金額의 益金算入〉에서 規定하는 特定外國子會社 등으로부터 받는 것들은 除外, 以下 2－1－31에서 「國外로부터의 利子, 配當 등」이라 함)에 대하여 現地의 外貨事情, 其他 부득이한 事由에 의해 그 送金이 許可되지 않아 長期(대강 2年 以上)에 걸쳐 그 支拂을 받을 수 없다고 認定되는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 所

管法人에서는 管轄國稅局長)의 確認을 받아 送金이 許可될 때까지 그 收益計上을 보류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에 外國로부터의 利子, 配當 등의 額(그 額이 두 가지 以上 있을 때에는 각각의 額으로 한다. 以下 2－1－31에서 같음)의 一部에 대해 그 送金이 許可받게 되고 또한 그 許可된 金額의 合計額이 當該 外國으로부터의 利子, 配當額이 대략 50% 以上의 金額에 達했을 때에는 그 殘額을 그 達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外國으로부터의 利子, 配當 등의 全額 또는 一部를 現地에서 費用支出(金錢債權 以外의 資產取得을 포함)에 充當했을 경우에는 그 충당한 날에 충당한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의 送金을 許可한 것으로 이 取扱을 適用한다.

6. 其他 收益〔1980 直法 2－8 追加〕

(債權買入에 관련된 收益의 歸屬時期)

2－1－32 金錢債權을 그 債權金額에 미치지 않는 價額으로 取得한 경우(金融 및 保險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取得한 경우를 제외)에 그 債權金額과 取得에 필요한 價額과의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實質的으로 贈與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部分의 金額을 除外)은 當該 債權에 관련된 支拂期日이 到來할 때마다 그 支拂期日이 到來한 債權金額에 따라 益金額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商品交換券 등의 發行에 관련된 收益의 歸屬時期)

2－1－33 法人이 商品의 引渡 또는 役務의 提供(以下 2－1－33에서 「商品의 引渡 등」이라 함)을 약속한 證券 등(以下 2－1－33에서 「商品交換券 등」이라 함)을 發行함과 동시에 그 代價를 受領한 경우의 當該 代價額은 그 商品交換券 등을 發行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法人이 商品交換券 등(그 發行에 관련된 事業年度마다 區分하여 管理하는 것에 한함)의 發行에 관련된 代價額을 그 商品引渡 등(商品交換券 등에 商品의 引渡 등을 他者에게 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當該 商品交換券 등과 交換하는 金錢의 支拂을 포함, 以下 2－1－33에서 같음)에 따라서 그 商品引渡 등이 있었던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收益에 計上하여 그 發行에 관련된 事業年度終了日의 翌日부터 3년을 經過한 날(同日前에 有效期限이 到來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有效期限의 翌日로 한다)이 속한 事業年度終了時에 商品의 引渡 등을 끝내지 않은 商品交換券 등에 관련된 代價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收益에 計上하는 것에 대해 미리 管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 所管法人에서는 管轄國稅局長)의 確認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確認을 받음으로써 繼續하여 收益計上하는 경우는 이 범위가 아니다〔1980 直法 2－8 追加〕.

(將來의 逸失利益 등의 補塡을 充當하기 위한 補償金 등의 歸屬時期)

2－1－34 法人이 他者로부터 營業補償金, 經費補償金 等의 名目으로 支拂받은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金額의 支拂이 설령 將來의 逸失利益 또는 經費의 發生 등 當該 事業年度後의 各 事業年度에 생긴다고 예상되는 費用損失의 補塡을 충당하려는 目的이라고 해도 그 支拂받은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기 때문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保證金 등에서 返還되지 않는 額의 歸屬時期)

2－1－35 資產의 賃貸借契約 등을 根據로 保證金, 賃貸保證金으로 收納한 金額이라도 當該 金額 중에서 期間의 經過, 其他 當該 賃貸借契約 등의 終了前에 一定事由 發生에 의해 返還하지 않는 部分의 金額은 그 返還하지 않게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므로 留意해야 한다〔1980 直

法 2－8 追加〕.

(法令에 근거하여 交付를 받는 給付金 등의 歸屬時期)

2－1－36 法人이 支出하는 休業手當, 賃金, 職業訓練費 등의 經費를 補塡하기 위해 雇傭保險法, 雇傭對策法, 障礙者의 雇傭促進 등에 관한 法律의 法令規定에 근거하여 交付를 받는 給付金 등에 대해서는 그 給付의 原因이 된 休業, 就業, 職業訓練 등의 事實이 있었던 날이 속한 事業年度終了日에 그 交付를 받아야 하는 金額이 具體的으로 確定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金額을 見積내어 當該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1984 直法 2－3, 1988 直法 2－14 改正〕.

(註) 法人이 停年延長, 高齡者 및 身體障礙者 雇傭 등의 雇傭改善을 위해서 이들 法令의 規定에 근거하여 交付받는 奬勵金 등에 대해서는 그 支給決定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損害賠償金 등의 歸屬時期)

2－1－37 他者로부터 支拂받는 損害賠償金(債務履行遲滯에 의한 損害金을 포함, 以下 2－1－37에서 같음)은 그 支拂받는 것을 確定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지만, 法人이 그 損害賠償金額에 대해 實際로 支拂받은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當該 損害賠償金 請求의 基因이 된 損害에 관련된 損失額은 保險金 또는 共濟金에 의해 補塡되는 部分의 金額을 제외하고 그 損害가 發生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할 수 있다.

第2節 費用 및 損失計算에 관한 通則〔1980 直法 2－8 改正〕

1. 賣上原價 등〔1980 直法 2－8 改正〕

(賣上原價 등이 確定되지 않았을 경우의 見積)

2－2－1 法 第22條 第3項 第1號 〈損金額에 算入되는 賣上原價 등〉에서 規定하는 「當該 事業年度의 收益에 관련된 賣上原價, 完成工事原價, 其他 이들에 준하는 原價(以下 2－2－1에서 「賣上原價 등」이라 함)로 되어야 할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確定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同日의 現況에 따라 그 金額을 適正하게 見積하게 한다. 이 경우에는 그 確定되지 않은 費用이 賣上原價 등으로 되어야 할 費用인가 어떤가는 當該 賣上原價 등에 관련된 資産販賣, 讓渡 또는 役務提供에 관한 契約內容, 當該 費用의 性質 등을 감안하여 合理的으로 判斷하는 것이나, 설령 그 販賣, 讓渡 또는 提供에 관련해서 發生하는 費用이라도 단순히 事後的 費用의 性格을 가지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改正〕.

(造成團地 分讓의 경우 賣上原價額)

2－2－2 法人이 1團地의 宅地를 造成하여 2 이상의 事業年度에 걸쳐 分讓하는 경우 그 分讓에 관련된 賣上原價額의 計算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단, 法人이 이것과 다른 方法으로 賣上原價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方法이 예를 들어 分讓價額에 따른 方法 등 合理的인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繼續適用을 條件으로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分讓이 完了되는 事業年度의 直前 事業年度까지의 各 事業年度에는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賣上原價額으로 한다.

〈算 式〉

$$\left\{\text{工事原價의 見積額} - \left(\begin{array}{l}\text{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 損金額에 算入한 工事原價額의 合計額}\end{array}\right)\right\}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에 分讓한 面積}}{\text{總分讓豫定面積} - \left(\begin{array}{l}\text{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 分讓한 面積의 合計}\end{array}\right)}$$

(註) 1. 算式의 「工事原價의 見積額」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現況에 따라 그 工事全體에 대해 見積하는 工事原價額으로 한다.

2. 算式의 「總分讓豫定面積」에는 當該 法人이 使用하는 土地의 面積을 포함함.

(2) 分讓이 完了된 事業年度 全體工事原價額(當該 法人이 使用하는 土地에 관련된 工事原價額을 제외)에서 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 賣上原價로서 損金額에 算入한 金額의 合計額을 控除한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賣上原價額으로 한다.

(造成團地의 工事原價에 포함되는 道路, 公園 등의 建設費)

2-2-3 法人이 1團地의 宅地를 造成하여 分讓할 경우에 團地經營에 필요한 道路, 公園, 綠地, 水道, 排水路, 街燈, 汚水處理施設 등의 施設(그 敷地에 관련된 土地를 포함)에 대해서는 설령 當該 法人이 將來에 이들 施設을 名目的으로 所有하거나 또는 이들 施設을 公共團體 등에 歸屬시키기로 한다고 해도 이들 施設取得에 소요된 費用額(當該 法人의 所有名義로 하는 施設에 대해서는 이것을 處分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價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은 그 工事原價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자갈 採取地에 관련된 메우는 費用)

2-2-4 法人이 他者가 所有하는 土地로부터 자갈, 其他 土石(以下 2-2-4에서 「자갈 등」이라 함)을 採取하여 販賣(原材料 등으로의 消費를 포

함)할 경우에 當該 他者와의 契約에 의해 그 採取後의 跡地를 메워서 土地를 原狀復舊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採取를 開始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直前의 事業年度까지의 各 事業年度에 繼續하여 다음의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未拂金에 計上함과 동시에 當該 事業年度에 當該 土地로부터 採取한 자갈 등의 取得價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그 計算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算　式〉

$$\left[\begin{array}{l}\text{메우는 데 필요한 費用의 見積額} - \text{當該 事業年度의 各事業年度에 未拂金으로 計上한 金額의 合計額}\end{array}\right]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에 當該 土地로부터 採取한 자갈 등의 數量}}{\text{當該 土地로부터 採取하는 자갈 등의 豫定數量} - \text{當該 事業年度前의 各事業年度에 採取한 자갈 등의 數量 合計}}$$

(註) 算式의 「메우는 데 소요되는 費用의 見積額」 및 「當該土地로부터 採取하는 자갈의 豫定數量」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現況에 의해 適正하게 見積내게 한다.

(請負收益에 對應하는 原價額)

2－2－5 請負에 의한 收益에 對應하는 原價額에는 그 請負目的인 物의 完成 또는 役務履行을 위해 필요한 材料費, 勞務費, 外注費 및 經費의 合計額 외에 그 受注 또는 引渡하기 위해 直接 소요한 모든 費用이 포함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建設業을 영위하는 法人이 建設工事 등을 受注할 때 前渡金保證會社에 대해 支拂하는 保證料는 前渡金을 受領하기 위해 소요하는 費用이기 때문에 當該 建設工事 등에 관련된 工事原價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된다.

(未成工事支拂金計定에서 控除하는 假設材料의 價額)

2－2－6 建設工事用의 발판, 틀, 山留用材, 로프, 시트, 危險防止用 쇠網과 같은 假設材料의 取得價額을 未成工事支出金計定 金額에 포함하여 經理

하고 있는 建設業者가 建設工事 등이 完了됐을 때 또는 다른 建設工事用으로 提供하기 위해 이들 資材를 運送했을 경우에 當該 未成工事支出金計定 金額으로부터 控除해야 할 假設材料의 價額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의 어느 것에 해당될 때에는 그 計算이 繼續하고 있는 한 이것을 인정한다〔1974 直法 2－71, 1980 直法 2－8 改正〕.

(1) 當該 假設材料의 取得價額에서 損耗 등에 의한 減價의 見積額을 控除한 金額

(2) 當該 假設材料의 損耗 등에 의한 減價의 見積이 곤란한 경우에는 工事의 完了 또는, 다른 工事現場 등으로의 運送時에 當該 假設材料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

(3) 當該 假設材料의 再取得價額에 適正하게 見積한 殘存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

(註) 이 取扱은 運送한 모든 假設材料에 適用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므로 留意해야 한다.

(木造 現場事務所 등의 取得에 소요한 金額이 未成工事支出金計定 金額에 포함되어 있을 때의 處理)

2－2－7 建設業者 등이 建設工事用으로 提供한 現場事務所, 勞務者用宿舍, 倉庫 등의 假設建物로 木造建物의 取得價額을 建設工事 등에 관련된 未成工事支出金計定 金額에 포함시켰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따라 當該 未成工事支出金計定 金額에서 控除한다. 이 경우에 控除해야 할 金額을 未成工事支出金計定 金額에서 控除하는 것 대신 雜收入 등으로 經理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當該 建設工事 등의 完成에 따라 引渡日 以前에 當該 假設建物을 他에 讓渡하거나 다른 用途로 轉用한 경우에 그 讓渡價額에 상당하는 金額 또

는 轉用時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

(2) 當該 建設工事 등이 完成되어 引渡될 때 當該 假設建物이 있을 경우에 引渡時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當該 假設建物을 해체할 경우에는 그 해체에 따른 發生資材의 價額으로 見積되는 金額)

(金屬構造의 移動性 假設建物 取得價額의 特例)

2-2-8 建設業者 등이 建設工事用으로 提供한 金屬構造의 移動性 假設建物에 대해서는 그 償却費를 工事原價에 算入하지만, 이 경우에 當該 建物 償却計算의 基礎가 되는 取得價額은 當該 建物의 構成部分 중에서 그 移設에 따라 反復해서 組立하여 使用되는 것의 取得 때문에 소요한 費用에 의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註) 當該 建物의 組立, 撤去에 소요한 費用 및 電氣配線 등의 部屬設備로 他에 轉用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費用은 當該 建物을 利用하는 工事의 工事原價에 算入한다.

(技術役務提供에 관련된 報酬에 대응하는 原價額)

2-2-9 設計, 作業의 指揮監督, 技術指導, 其他 技術役務提供에 관련된 報酬에 對한 原價額은 當該 報酬額을 益金額에 算入하는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는 것이지만, 法人이 繼續하여 이들 技術役務提供 때문에 소요하는 費用 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을 그 支出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1) 固定費(作業量의 增減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費用을 말함)의 性質을 가진 費用

(2) 變動費(作業量에 따라 增減하는 費用을 말함)의 性質을 가진 費用 中에서 一般管理費와 유사한 것으로 그 額이 多額이 아닌 것과 상대방으로부

터 收受하는 準備金, 着手金 등(2－1－12의 (註)가 適用되는 것에 한함)에 관련된 것

(運送收入에 對한 原價)

2－2－10 運送業의 運送收入에 對한 原價는 當該 運送收入額을 益金額에 算入하는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는 것이지만, 法人이 繼續하여 運送에 소요한 費用(海上運送에 소요한 費用 중에서 貨物費, 燃料費, 港費, 其他 運送 때문에 直接 소요한 것은 제외)을 그 支出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商品交換券 등을 發行한 경우의 交換費用)

2－2－11 法人이 商品交換券 등(2－1－33에서 정하는 商品交換券 등을 말한다. 以下 2－2－11에서 같음)을 發行함과 동시에 그 代價를 受領한 경우(그 收益計上에 대해 2－1－33의 단서를 適用받는 경우는 제외)에 그 發行에 관련된 事業年度 以後의 各 事業年度終了時에 商品의 引渡 또는 役務提供(商品交換券 등에 관련된 商品引渡 또는 役務提供을 他者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의 當該 商品交換券 등과 交換하는 金錢의 支拂을 포함, 以下 2－2－11에서 「商品의 引渡 등」이라 함)이 끝나지 않은 商品交換券 등(有效期限을 經過한 것은 제외, 以下 2－2－11에서 「未交換券」이라 함)이 있을 때에는 그 未交換券에 관련된 商品의 引渡 등에 소요하는 費用의 見積額으로 다음의 區分에 따른 金額을 當該 各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에 그 損金額에 算入한 金額은 翌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1) 未交換券을 發行에 관련한 事業年度마다 區分하여 管理하는 경우 －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

〈算 式〉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未交換券 중에서 當該 事業年度 및 當該 事業年度開始日前 3年 以內에 開始한 各 事業年度에 發行한 것에 관련된 代價의 合計額] × 原價率

(2) (1) 以外의 경우 —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

〈算 式〉

[當該 事業年度 및 當該 事業年度開始日前 3年 以內에 開始한 各 事業年度에 發行한 商品交換券 등에 관련된 代價額의 合計額 − 左의 各 事業年度에 商品引渡 등을 행한 商品交換券 등 관련된 代價額의 合計額] × 原價率

(註) 1. (1) 및 (2)의 算式의 「原價率」은 각각 다음과 같이 計算한 比率이다.

① 商品의 引渡 또는 役務提共을 他者에게 행하게 된 경우

$$\frac{\text{分母의 商品交換券 등과의 交換으로 他者에게 支拂한 金額의 合計額}}{\text{當該 事業年度에 回收된 商品交換券 등에 관련된 發行 代價額의 合計額}}$$

② ① 以外의 경우

$$\frac{\text{分母의 金額에 관련된 當該 事業年度의 賣上原價 또는 役務提供의 原價額}}{\text{그 引渡 또는 提供을 약속한 商品 또는 役務와 種類 등이 같은 商品 또는 役務의 販賣 또는 提供에 관련된 當該 事業年度의 收益額의 合計額}}$$

2. 種類 등이 같은 商品 또는 役務에 관련된 商品交換券 중에서 發行時期에 따라 1單位當 發行代價額이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當該 商品交換券 등을 그 1單位當 發行代價額이 다른 것마다 區分하여 (1) 및 (2)의 算式과 原價率을 計算할 수 있다.

2.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1980 直法 2−8 改正〕

(債務確定의 判定)

2−2−12 法 第22條 第3項 第2號 〈損金에 算入되는 販賣費 등〉의 償却費 以外 費用으로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債務가 確定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規定이 있는 것을 빼고 다음에 列擧하는 要件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1980 直法 2－8 改正〕.

(1)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當該 費用에 관련된 債務가 成立되어 있을 것.

(2)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當該 債務에 근거하여 具體的인 給付를 해야 할 原因이 되는 事實이 發生했을 것.

(3)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그 金額을 合理的으로 算定할 수 있는 것일 것.

(損害賠償金)

2－2－13 法人이 業務의 遂行과 관련하여 他者에게 입힌 損害에 대해 賠償을 하는 경우에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賠償해야 할 金額이 確定되어 있지 않아도 同日까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한 金額(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대신에 제3자에게 寄託한 額을 포함)에 상당하는 金額(保險金 등으로 補塡이 명백한 部分의 金額은 제외)을 當該 事業年度의 未拂金에 計上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損害賠償金으로 支拂하는 경우의 年金額은 이것을 支拂해야 할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한다.

(短期의 前拂費用)

2－2－14 前拂費用(一定 契約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役務提供을 받기 위해 支出한 費用 중에서 當該 事業年度終了時까지 提供을 받지 않은 役務에 對한 것을 말한다. 以下 2－2－14에서 같음)은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되지 않으나 法人이 前拂費用으로 支拂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提供을 받는 役務에 관련된 것을 支拂한 경우에 그 支拂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계속하여 支拂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6 直法 2－12

改正].

(註) 예를 들어 借入金을 預金, 有價證券 등으로 運用하는 경우에 借入金에 관련된 支拂利子와 같이 收益計上과 對應시킬 必要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後段의 取扱은 適用하지 않는다.

(消耗品費 등)

2-2-15 消耗品, 其他 여기에 준하는 在庫資產 取得에 소요한 費用은 當該 在庫資產을 消費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지만, 法人이 事務用 消耗品, 作業用 消耗品, 包裝材料, 廣告宣傳用 印刷物, 見本品, 其他 이것들에 준하는 在庫資產(各 事業年度마다 대략 一定數量을 取得하고 또 經常的으로 消費하는 것에 한함)의 取得에 소요한 費用을 계속하여 取得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이 取扱으로 인해 損金에 算入하는 金額이 製品製造 등에 소요한 費用의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當該 金額은 製造原價에 算入하기 때문에 留意해야 한다.

3. 損失[1980 直法 2-8 改正]

(前期損額修正)

2-2-16 當該 事業年度의 各 事業年度에서 收益額을 益金에 算入한 資產販賣 또는 讓渡, 役務提供, 其他 去來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에 契約解除 또는 取消割引, 返品 등의 事實이 생긴 경우에도 이들 事實에 근거하여 생긴 損失額은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하기 때문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第3節 收益 및 費用 歸屬時期의 特例 〔1980 直法 2-8 改正〕

1. 割賦販賣 등〔1980 直法 2-8 追加〕

(賦拂方法)

2-3-1 法 第62條 第2項 〈割賦販賣 등의 要件〉에서 規定하는 「月賦, 年賦, 其他 賦拂의 方法」이란, 代價額에 대해 支拂받아야 하는 金額의 支拂期日(以下 이 條項에서 「履行期日」이라 함)이 契約金의 履行期日을 제외하고 月, 年 등 年 以下의 期間을 單位로 대강 規則的으로 到來하고 또 각각 履行期日에 支拂받아야 하는 金額이 상대방과의 當初契約에서 具體的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定型的으로 定한 約款에 근거한 販賣의 意義)

2-3-2 法 第62條 第2項 〈割賦販賣 등의 要件〉에서 規定하는 「定型的으로 定한 約款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販賣 또는 提供」이란 賦拂金額, 履行期日, 支拂方法 등 販賣 또는 役務提供 條件이 일정 형식에 의해 合理的으로 정해진 契約條項에 따라 多數者에 대해 普遍的으로 販賣 또는 提供해야 하는 경우의 販賣 또는 役務提供을 말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註) 賦拂金額이 合理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契約金, 보너스時期 등의 賦拂金을 제외하고 各 履行期의 賦拂金이 대략 均等하고 또 遞減 또는 遞增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該當한다.

2-3-3 削除〔1990 直法 2-1〕

(割賦損益計算의 基礎가 되는 販賣手數料 등의 範圍)

2-3-4 令 第119條 〈割賦基準의 方法〉에서 規定하는 販賣手數料(役務

提供에 소요한 手數料를 포함, 以下 이 條項에서 같음)에는 法人이 外部에 支拂하는 販賣手數料 외에 當該 法人의 使用人인 外交員 등에게 支拂하는 合給, 手數料 등 所得稅法 第204條 〈源泉徵收義務〉에서 規定하는 報酬 등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되나 그 支拂해야 하는 手數料가 賦拂金의 回收 때마다 回收高에 따라 確定하게 되어 있는 경우(契約金 또는 一定回數까지 賦拂金의 回收를 條件으로 手數料를 確定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의 當該 手數料는 包含되지 않는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註) 이 取扱에 의해 割賦損益計算의 基礎가 되는 販賣手數料에 포함하지 않은 手數料는 그 額을 確定할 때마다 그 確定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기 때문에 留意해야 한다.

(販賣手數料의 控除)

2－3－5 割賦販賣 등에 관련된 販賣手數料가 契約金 또는 一定回數까지 賦拂金이 回收되는 것을 條件으로 確定하고 또, 販賣數量 등에 따라 遞增하기 때문에 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서 한 割賦販賣 등에 관련된 販賣手數料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에 支拂해야 하며, 이미 支拂한 販賣手數料가 增加했을 경우에는 確定한 것 또는 增加한 販賣手數料는 當該 事業年度에 割賦販賣 등을 한 在庫資產 또는 役務提供의 代價額에서 控除하여 當該 割賦販賣 등에 관련된 利益額을 計算할 수 있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割賦基準의 計算單位)

2－3－6 令 第119條 〈割賦基準方法〉의 規定에 의한 割賦基準方法에 의한 收益額 및 費用의 計算은 原則的으로 그 割賦販賣 등을 한 在庫資產 또는 役務마다 행하는 것이지만, 法人이 계속하여 差益率이 대략 같은 것끼리, 其他 合理的인 구분끼리 일괄하여 計算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1980 直法 2－8 追加〕.

(時價 以上의 價額으로 資產을 交換購入한 경우의 代價額)

2－3－7 法人이 在庫資產의 割賦販賣 등을 할 때, 契約金으로 상대방이 소유한 資產을 交換購入한 경우에 當該 資產 取得時의 價額을 넘는 價額을 取得價額으로 할 때에는 그 넘는 부분의 金額에 대해서는 取得價額에 포함하지 않고, 그 割賦販賣 등을 한 在庫資產에 대해서는 넘는 部分의 金額에 상당하는 인하를 하여 販賣한 것으로 取扱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履行期日前에 受領한 어음)

2－3－8 割賦販賣 등 在庫資產 또는 役務提共에 賦拂金 중에서 當該 事業年度後에 履行期日이 到來하는 것에 대하여 法人이 어음을 受領한 경우에 그 受領한 어음의 金額은 令 第119條 第2號 〈그 事業年度에 支拂期日이 到來하는 賦拂金〉에 規定하는 「支拂받은 金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割賦販賣 등을 한 在庫資產 또는 役務提供의 一部에 대해 割賦基準方法에 의해 經理하지 않은 경우의 處理)

2－3－9 法 第62條 〈割賦販賣 등에 관련된 收益 및 費用의 歸屬事業年度〉 規定은 割賦販賣 등을 한 모든 在庫資產 또는 役務提供에 관련된 收益額 및 費用에 대해 割賦基準方法에 의해 經理하는 경우에 適用되는 것이지만, 法人이 그 割賦販賣 등을 한 在庫資產 또는 役務提供 중에서 그 일부에 관련된 收益額 및 費用에 대해 割賦基準方法을 適用하지 않고 그 割賦販賣 등을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에 그 全額을 計上하는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일부를 제외한 在庫資產 또는 役務提供에 대해 同

條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1) 割賦販賣 등을 한 在庫資産 또는 役務提供 중에서 履行期間이 短期間인 것 또는, 販賣나 役務提供代價額이 少額인 것에 대해서 割賦基準方法을 適用하지 않는 등 그 일부에 當該 方法을 適用하지 않는 것에 대해 合理的인 基準을 정해서 法人이 當該 基準에 따라 經理方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2) (1) 이외에 稅務署長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賦拂金의 支拂遲延 등에 의해 販賣한 在庫資産을 되찾았을 경우의 處理)

2－3－10 法人이 在庫資産을 割賦販賣한 後에 상대방의 代金支拂遲延 등의 理由로 契約을 解除하고 割賦期間 중도에 販賣한 在庫資産을 되찾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在庫資産을 되찾은 날이 속한 事業年度에 아직 支拂하지 않은 賦拂金額의 合計額에서 當該 金額에 포함되는 割賦損益을 제외한 金額을 가지고 資産을 計上하지만, 法人이 當該合計額 또는 그 在庫資産을 되찾을 때 處分豫定價額을 資産에 計上했을 때에는 그 計算을 인정하기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2. 延拂條件附讓渡 등〔1980 直法 2－8 追加〕

(延拂基準을 適用하는 資産의 讓渡)

2－3－11 法 第63條 第1項 〈延拂條件附讓渡 등에 관련된 收益 및 費用의 歸屬事業年度〉에서 規定하는 「資産의 延拂條件附讓渡」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受領에 관련된 거래로서 同條 第2項에서 정하는 延拂條件附讓渡의 要件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된다〔1980 直法 2－8 改正〕.

(1) 借地權 또는 地役權 設定의 代價로 支拂받는 權利金, 其他 一時金으로

서 令 第138條 第1項〈借地權設定 등에 의해 地價가 현저하게 低下한 土地 등의 帳簿價額의 일부 損金算入〉의 規定이 適用되는 것

(2) 建物을 賃貸借契約할 때 支拂받는 權利金, 其他 一時金

(3) 노하우를 設定契約할 때 支拂받는 一時金 또는 契約金

(延拂條件附讓渡 등의 要件)

2－3－12 法 第63條 第1項〈延拂條件附讓渡 등에 관련된 收益 및 費用의 歸屬事業年度〉의 規定이 適用되는 延拂條件附讓渡 또는 延拂條件附請負는 그 代價支拂이 月賦, 年賦, 其他 賦拂方法에 의해 3회 이상으로 分割하여 행할 것을 要하나 法 第62條 第1項〈割賦販賣 등에 관련된 收益 및 費用의 歸屬事業年度〉의 規定이 適用되는 割賦販賣 등의 경우와는 달리 各 履行期의 賦拂金額은 균등, 遞減 또는 遞增하는 것을 要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契約變更이 있는 경우의 取扱)

2－3－13 法 第63條 第1項〈延拂條件附讓渡 등에 관련된 收益 및 費用의 歸屬事業年度〉의 規定에 의해 收益額 및 費用의 計上에 대해 延拂基準方法을 適用하고 있는 延拂條件附讓渡 또는 延拂條件附請負에 대해서 나중에 契約變更이 있고 賦拂金의 履行期日 또는 각 履行期日마다 賦拂金額이 異動한 경우에 同項의 規定適用은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8 追加〕.

(1) 契約變更後에도 여전히 讓渡 또는 請負가 同項에서 規定하는 延拂條件附讓渡 또는 延拂條件附請負(以下 2－3－15까지「延拂條件附讓渡 등」이라 함)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그 變更後의 履行期日 및 各 履行期日마다 賦拂金額에 근거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延拂基準의 計算을 한다. 단, 變更前에 이미 履行期日이 도래한 賦拂金額에 대해서는 그렇지도 않다.

(2) 그 契約變更에 의해 讓渡 또는 請負가 延拂條件附讓渡 등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讓渡 또는 請負에 관련된 收益額 및 費用(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所得金額의 計算上 益金額 및 損金額에 算入되는 것은 제외)은 해당되지 않게 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 및 損金額에 算入한다.

(利益額에 異動이 있는 경우의 調整)

2-3-14 法 第63條 第1項〈延拂條件附讓渡 등에 관련된 收益 및 費用의 歸屬事業年度〉의 規定에 의해 그 收益額 및 費用의 計上에 대해 延拂基準方法을 適用하고 있는 延拂條件附讓渡 등에 관련된 代價 또는 原價 등에 대해 그 後 値增이나 引下 등 當該 延拂條件附讓渡 등에 관련된 利益額에 異動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異動이 생긴 날이 속한 事業年度(以下 2-3-14에서 「異動事業年度」라 함) 以後의 각 事業年度의 當該 利益額에 관련된 延拂基準方法 適用에 대해서는 그 異動 後의 利益額(異動事業年度前의 각 事業年度에 計上한 部分의 金額은 제외) 및 異動事業年度開始日 以後에 받아야 하는 賦拂金額의 合計額을 基礎로 2-3-13에 의해 計算한다. 단, 法人이 그 値增, 引下에 관련된 金額을 이들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함과 동시에 延拂基準方法에 대해서는 그 異動 前의 契約에 근거하여 計算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改正〕.

(延拂利益에 대한 割賦基準의 取扱)

2-3-15 第1項의 取扱은 2-3-2, 2-3-6 및 2-3-9를 제외하고 延拂條件附讓渡 등에 대해 準用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3. 長期工事의 請負〔1980 直法 2－8 追加〕

(再利益이 생기게 됐을 경우의 工事進行基準의 適用)

2－3－16 法 第64條 第1項〈長期工事의 請負에 관련된 收益 및 費用의 歸屬事業年度〉의 規定에 의해 收益額 및 費用의 計上에 대해 工事進行基準方法을 適用하는 長期工事가 그 目的物의 引渡日이 속한 事業年度前의 각 事業年度에 同項 第2號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후 當該長期工事에 대해 다시 利益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는 등 同號에 該當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해당하지 않게 된 事業年度 以後의 事業年度에 대해서는 當該 長期工事에 관련된 收益額 및 費用의 計上에 대해 다시 工事進行基準方法을 適用할 수 있게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하는 長期工事가 同號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 計上한 收益額 및 費用을 과거로 소급하여 修正하지 않기 때문에 留意해야 한다.

第4節 리베이트〔1980 直法 2－8 改正〕

1. 賣上리베이트〔1980 直法 2－8 追加〕

(賣上리베이트의 計上時期)

2－4－1 販賣한 在庫資産에 관련된 리베이트金額의 計上時期는 다음 區分과 같은 事業年度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그 算定基準이 販賣價額 또는 販賣數量에 따라서 또, 그 算定基準이 契約, 其他 方法에 의해 상대방에 明示된 買上리베이트로 販賣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 단, 法人이 繼續하여 賣上리베이트金額의 通知 또는 支拂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에 計上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賣上리베이트는 그 賣上리베이트金額의 通知 또는 支拂을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 단, 各 事業年度終了日까지 그 販賣한 在庫資産에 대해서 賣上리베이트를 支拂하는 것 및 그 賣上리베이트의 算定基準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法人이 그 基準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未拂金으로 計上함과 동시에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法第75條의 2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 延長의 特例〉의 規定에 의해 提出期限이 延長된 경우에는 그 延長期限으로 한다〕까지 상대방에게 通知했을 때에는 계속적용을 條件으로 이것을 認定한다.

(一定期間 支拂하지 않는 賣上리베이트의 計上時期)

2-4-2 法人은 賣上리베이트金額을 상대방과의 契約 등에 의해 特約店契約의 解約, 災害發生 등 特別한 사실이 생길 때까지 또는 5년을 넘는 一定期間이 經過할 때까지 상대방 名義의 保證金 등으로 맡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利益의 全部 또는 일부를 實質的으로 享受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賣上리베이트金額에 대해서는 2-4-1에 관계없이 이것을 現實로 支拂한 날(그날 전에 實質的으로 상대방에게 그 利益을 享受시키려고 한 경우에는 그 享受시키려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賣上리베이트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改正〕.

(實質的으로 利益을 享受하는 것의 意義)

2-4-3 2-4-2의 「상대방이 利益을 실질적으로 享受하는 것」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1975 直法 2-21, 1980 直法 2-8 改正〕.

(1) 상대방과의 契約 등에 근거하여 그 賣上리베이트金額에 通常의 金利를 붙이는 것과 동시에 그 金利 相當額에 대해서는 現實로 支拂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請求가 있으면 支拂하려고 하는 것.

(2) 상대방과의 契約 등에 근거하여 保證金 등을 대신하여 有價證券, 其他의 財産을 提供할 수 있게 한 것.

(3) 保證金 등으로 맡고 있는 金額이 賣上리베이트金額의 대략 50% 이하일 것.

(4) 상대방과의 契約 등에 근거하여 賣上리베이트金額을 상대방 名義의 預金 또는 有價證券으로 保管하고 있는 것.

2. 購入리베이트〔1980 直法 2－8 追加〕

(購入리베리트의 計上時期)

2－4－4 購入한 在庫資産에 관련된 購入리베이트金額의 計上時期는 다음 區分과 같은 事業年度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算定基準이 購入價額 또는 購入數量에 따르며 契約, 其他 方法에 의해 明示되어 있는 購入리베이트는 購入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

(2) (1)에 해당하지 않는 購入리베이트는 購入리베이트金額을 通知받은 날이 속한 事業年度

(一定期間 支拂받지 않는 購入리베이트의 計上時期)

2－4－5 2－4－2를 適用하는 賣上리베이트에 대응하는 購入리베이트에 대해서는 2－4－4에 관계없이 現實로 支拂(외상매입 등에 충당하는 것을 포함)받은 날(그날 전에 2－4－3에 의해 實質的으로 그 利益을 享受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享受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購入리베이트로 取扱한다. 단, 法人이 在庫資産을 購入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通知를 받은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購入리베이트로 經理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改正〕.

(法人이 計上하지 않은 購入리베이트의 處理)

2－4－6 法人이 購入한 在庫資産에 관련된 購入리베이트金額에 대해 2－4－4 또는 2－4－5에 정하는 事業年度에 計上하지 않은 경우의 購入리베이트金額은 當該 事業年度의 總購入高에서 控除하지 않고 益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第5節 其他〔1980 直法 2－8 改正〕

(決算 마감일)

2－5－1 法人이 商慣習, 其他 상당한 이유에 의해 각 事業年度에 관련된 收入 및 支出計算의 基礎가 되는 計算 마감일을 계속하여 그 事業年度終了日 이전 대략 10일 이내의 일정한 날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法人 設立期間中의 損益歸屬)

2－5－2 法人의 設立期間中에 생긴 損益은 當該 法人의 設立後 最初 事業年度 所得金額의 計算에 포함해서 申告할 수 있게 한다. 단, 設立期間이 통상 設立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長期間일 경우에 당해 설립기간중의 損益 또는 當該 法人이 個人事業의 계속으로써 設立된 것인 경우에 當該 事業에서 생긴 損益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않다〔1980 直法 2－8 追加〕.

(註) 本文의 取扱方法에 따라 申告하는 경우라도 當該 法人設立後 最初의 事業年度 開始日은 1－2－1에 의하기 때문에 留意해야 한다.

(典當鋪營業의 利子 및 流質物)

2－5－3 營業의 利子 또는 流質物의 計上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8 改正〕.

(1) 貸付金에 대한 利子로 流質期限까지 支拂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未收利子로 計上할 필요가 없다.

(2) 典當期限을 經過했기 때문에 取得한 典當物에 대해서는 그 典當物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은 益金에, 貸付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은 損金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典當物의 價額은 貸付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에 따라도 무방하다.

第3章　受取配當 등〔1980 直法 2-8 改正〕

第1節　受取配當 등의 金額

1. 利益의 配當 등

(自己株式의 配當)

3－1－1 法人이 소유하는 自己株式 또는 出資에 관련된 利益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해서도 法 第23條 〈受取配當 등의 益金不算入〉의 規定이 適用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改正〕.

(名義株의 配當)

3－1－2 法人이 任員, 使用人 등의 名義로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出資로 받는 利益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해서도 法 第23條 〈受取配當 등의 益金不算入〉의 規定이 適用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改正〕.

(名義改書 失念株의 配當)

3－1－3 法人이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讓渡했을 때 讓受人이 名義改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讓渡後에 행해진 配當決議에 의해 當該 株式의 利益配當額을 받았을 때에, 當該 利益配當額은 株主의 地位에 근거하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法 第23條 〈受取配當 등의 益金不算入〉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는다. 단, 配當權利落後 配當決議日 사이에 讓渡한 株式에 대해 當該 配當決議에 관련된 利益配當額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만은 않다〔1980 直法 2－8 追加〕.

(證券投資信託의 一部解約에 의한 收益分配의 意義)

3－1－4 令 第19條 第1項 第2號 〈證券投資信託의 收益分配 중에서 配當額으로 이루어진 部分의 金額〉에서 規定하는 「證券投資信託의 一部 解約에 의한 收益의 分配」란 證券投資信託의 委託者인 會社가 受託者인 信託會社(信託業務를 兼하는 銀行을 포함)에 대해 그 信託의 一部를 解約함에 따라 當該 委託者가 받을 收益의 分配 및 受益者로부터의 解約實行請求를 근거로 委託者가 受託者에 대해 그 信託의 일부를 解約함으로써 當該 受益者가 받는 收益分配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受益者인 法人이 委託者에 대해 解約實行을 請求하지 않고 그 信託에 관련된 受益證券을 讓渡한 경우에는 最終的으로 그 受益證券에 관련된 信託이 解約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75 直法 2－21 改正〕.

(舊株와 新株가 있는 경우의 短期所有株式數의 計算)

3－1－5 同一法人이 發行하는 株式 중에서 舊株와 新株가 있을 때 法 第23條 第2項 〈短期所有株式의 配當 등의 益金算入〉의 規定에 따라 益金에 算入되는 配當의 元本인 舊株와 新株의 數는 舊株와 新株를 同一種目의 株式으로 간주하여 令 第20條 〈益金에 算入되는 配當 등의 元本인 株式 등〉의 規定에 의해 計算한 株式數를 그 配當計算期間 末日에 소유하고 있는 舊株와 新株數의 比에 따라 按配한 數로 한다.

(轉換社債를 轉換한 경우의 短期所有株式의 判定)

3－1－6 轉換社債를 株式으로 轉換한 경우에 法 第23條 第2項 〈短期所有株式의 配當 등의 益金算入〉에서 規定하는 株式 등을 判定하는 데 있어서 株式 配當額의 計算基礎가 되는 期間末日 以前 1個月 以內에 取得했는지 어떤지는 株式으로 轉換한 날이 아니라 轉換社債를 取得한 날에 따라 判定하는 것으로 한다.

令 第20條 第1號 〈益金에 算入되는 配當 등의 元本인 株式 등〉에서 規定하는 「當該 末日後 2個月 以內」에 轉換社債가 轉換된 경우의 當該 轉換에 관련된 株式 등의 取得時期의 判定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1973 直法 2－81 追加〕.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을 행사했을 경우의 短期所有株式의 判定)

3－1－6의 2 3－1－6은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을 행사하여 株式을 取得한 경우에 法 第23條 第2項 〈短期所有株式의 配當 등의 益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데 準用한다〔1982 直法 2－11 追加〕.

(受益證券의 種目)

3－1－7 法 第23條 第2項 〈短期所有株式 등의 配當 등의 益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할 때 證券投資信託 受益證券의 種目區分은 유닛型의 證券投資信託의 受益證券에 대해서는 設定할 때마다, 오픈型의 證券投資信託의 受益證券에 대해서는 그 信託 때마다 하는 것으로 한다〔1973 直法 2－81 改正〕.

(信用去來에 관련된 配當落調整額)

3－1－7의 2 證券去來法 第49條 第1項 〈信用去來 등의 保證金의 預託〉에서 規定하는 信用去來(以下 「信用去來」라 함)에 의해 株式을 買入한 法人이 證券會社 또는 證券金融會社로부터 支拂받은 配當落調整額(信用去來에 관련된 株式에 대해 配當이 賦與된 경우에 證券會社 또는 證券金融會社가 強賣를 한 者로부터 徵收하거나 買入한 者에게 支拂하는 當該 配當에 相當하는 金額을 말한다. 以下 6－4－2 〈配當落調整額 등의 處理〉에서 같음)은 法 第23條 〈受取配當 등의 益金不算入〉에서 規定하는 配當 등의 額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975 直法 2－21 追加〕.

(配當 등의 額의 支拂義務가 確定되는 날)

3－1－7의 3 令 第22條의 2 〈特定株式 등의 判定〉에서 規定하는 「配當 등의 額의 支拂義務가 確定되는 날」(以下 3－2－13의2까지 「配當 등의 支拂義務確定日」이라 함)이란 配當 등의 額의 支拂有無에 대해 確定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配當 등의 額을 支拂할 경우(法 第24條 第1項 또는 第2項 〈配當 등의 額이라고 간주하는 金額〉의 規定에 따라 간주배당을 交付한 경우를 포함)에는 2－1－27(利益配當 등의 歸屬時期)의 (1), (2) 또는 (4)에서 정하는 날, 配當 등의 額을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는 2－1－27의 (1) 또는 (2)에서 정하는 날에 준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90 直法 2－1 追加〕.

(註) 中間配當을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 當該 中間配當의 支拂有無에 관한 任員會議가 開催되지 않을 때에는 3－2－13의 2의 取扱方式에 따른다.

(保有期間이 6個月이 안되는 特定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

3－1－7의 4 法 第23條 第1項 〈受取配當 등의 益金不算入〉에서 規定하는 特定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以下 3－2－13의 2까지 「特定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이라 함)이란 他의 同一法人에 관련된 株式 등의 保有가 令 第23條의 2 〈特定株式 등의 判定〉에서 規定하는 要件에 충족할 경우의 當該 他의 同一法人의 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法人이 소유한 他의 同一法人의 株式 등 一部에 대해 그 保有期間이 6個月이 안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도 當該 他의 同一法人의 株式 등의 他部分의 保有가 同條에서 規定하는 要件을 充足시킬 때에는 當該 他의 同一法人의 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 모든 것이 特定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에 해당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90 直法 2－1 追加〕.

2. 看做配當

(減資 境遇의 看做配當額 計算)

3－1－8 法人이 法 第24條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 〈減資 등의 配當額이라고 간주하는 金額〉에 열거하는 資産을 交付받음으로써 同項의 規定에 의한 看做配當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同項에 規定하는 合計額이 當該 合計額 중에서 當該 資産을 交付하는 法人의 資本金額(出資金額을 포함)으로 이루어진 部分의 金額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部分의 金額이 資本積立金 또는 利益積立金의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느냐는 交付하는 法人의 計算에 의한다〔1980 直法 2－8 追加〕.

(合併法人에 引繼된 資本積立金이 있을 때의 看做配當額 計算)

3－1－9 合併에 의해 法 第24條 第1項 〈配當 등의 額으로 看做하는 金額〉의 規定에 의한 看做配當額을 計算할 경우에 被合併法人의 資本積立金이 合併法人에 引繼되었을 때에는 同項에서 規定하는 「資本 등의 金額」은 引繼된 資本積立金을 控除한 金額이 된다. 이 경우에 引繼된 資本積立金이란 令 第9條 〈合併差益金 중에서 被合併法人의 資本積立金 및 合併減資益金으로 이루어지는 部分의 金額〉의 規定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말한다〔1973 直法 2－81, 1975 直法 2－21, 1980 直法 2－8 改正〕.

(利益의 資本編入)

3－1－10 法人이 商法 第293條 의 2 〈利益의 資本編入〉의 規定에 의해 利益을 資本編入한 경우에 그 資本의 編入에 대해서는 法 第24條 第2項 第2號 〈配當 등의 額으로 간주하는 金額〉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91 課法 2－4 追加〕.

(準備金 資本編入의 경우에 看做配當額의 計算)

3－1－10의 2 3－1－8은 法人이 商法 第293條의 3 〈準備金의 資本編入〉의 規定에 따라 準備金을 資本에 編入한 경우 當該 法人의 株主인 法人에게 法 第2條 第2項 〈配當 등의 額으로 간주하는 金額〉의 規定에 의한 看做配當額의 計算에 대해 準用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1991 課法 2－4 改正〕.

(組織變更의 경우의 資本編入)

3－1－11 法人이 商法, 其他 法令의 規定에 의한 組織變更을 할 때 資本 또는 出資를 增加한 경우에 增加한 金額 중에서 새로 株主 등으로부터 拂入시킨 金額 以外의 額은 變更前의 資本積立金 또는 利益積立金의 資本 또는 出資로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資產의 評價換에 의해 帳簿價額을 增額할 때에는 評價換에 의한 益金에 상당하는 利益積立金이 생기고 그 利益積立金이 資本 또는 出資에 편입된 것이 되므로 留意해야 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第2節 負債利子의 計算

1. 支拂利子

(支拂利子의 範圍)

3－2－1 法 第23條 第3項 〈負債利子의 控除〉에서 規定하는 「支拂하는 負債의 利子」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留意해야 한다〔1975 直法 2－21 改正〕.

(1) 외상매입을 어음에 의해 支拂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當該 어음 割引料를 負擔할 때 負擔한 割引料 相當額

(2) 從業員預託金, 營業保證金, 賃貸保證金, 기타 여기에 준하는 預託金의 利子

(3) 金融機關의 預金利子

(4) 相互會社가 支拂하는 基金利子

(5) 相互銀行 등의 給付補塡備金 算入額, 定期積金備金算入額(定期積金備金算入額에 준하는 算入額을 포함) 및 先納割引料

(6) 相互賦金契約에 의해 給付를 받은 金額이 納入해야 할 金額의 合計額에 미치지 않는 경우의 그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

(7) 信用事業을 영위하는 協同組合 등이 支出하는 事業分量配當 중에서 그 協同組合 등이 수납하는 預貯金(定期積立金을 포함)額에 따라 分配하는 것

(利子稅 또는 延滯金)

3-2-2 利子稅 또는 地方稅의 延滯金에 대해서 法人이 이것들을 法 第23條 第3項 〈負債利子의 控除〉에서 規定하는 「支拂한 負債利子」에 포함하지 않고 計算한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割賦購入資産 등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는 利子相當額)

3-2-3 割賦販賣契約 또는 延拂條件附讓渡契約(이것들과 유사한 契約을 포함)에 의해 購入한 資産에 관련된 割賦期間分의 利子에 상당하는 金額에 대해서는 法人이 이것을 當該 資産의 取得價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法 第23條 第3項 〈負債利子의 控除〉에서 規定하는 「支拂한 負債의 利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賣上割引料)

3－2－3의 2 외상매출금 또는 여기에 준하는 債權에 대해 支拂期日前에 支拂받음으로써 支拂한 賣上割引料는 法 第23條 第3項 〈負債利子의 控除〉에서 規定하는 「支拂한 負債利子」에 해당되지 않는다〔1980 直法 2－8 追加〕.

(輸入決濟어음 借入金利子)

3－2－4 貿易商社가 支拂한 輸入決濟어음 借入金의 利子는 그것이 委託買入契約에 관련된 것으로 그 利子 相當額을 委託者에게 負擔시키는 경우라도 法 第23條 第3項 〈負債利子의 控除〉에서 規定하는 「支拂한 負債의 利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當該 委託者가 負擔하는 利子 相當額을 當該 委託買附契約에 의해 取得한 資産取得價額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當該 委託者에 대해서는 當該 利子 相當額을 同項에서 規定하는 「支拂한 負債의 利子」의 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原價에 算入한 負債의 利子)

3－2－4의 2 固定資産, 其他의 資産取得價額에 算入한 負債의 利子 또는 順延資産으로 經理한 負債의 利子라도 當該 事業年度에 支拂한 것은 法 第23條 第3項 〈負債利子의 控除〉에서 規定하는 「當該 事業年度에 支拂한 負債의 利子」에 포함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社債發行差金에 대해서는 그 償却費를 「當該 事業年度에 支拂한 負債의 利子」에 포함한다.

2. 特定利子

(特定利子에서 제외되는 外國換의 賣持額에 관련된 利子의 計算)

3－2－5 規則 第8條의 5 〈特定利子의 範圍〉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同條 第1項 第1號 〈特定利子의 範圍〉에서 規定하는 直物外國換持高의 賣持額의 合計額이란 當該 事業年度에 속하는 各日 中에서 直物外國換持高의 賣持額이 생기는 當該 賣持額을 合計한 金額을 말하고, 當該 各日 中에서 直物外國換持高의 賣持額이 생기는 날과 買持額(外國換管理令 第4條 第2項 第1號에서 規定하는 直物外貨資產殘高가 同號에서 規定하는 直物外貨負債殘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超過하는 部分의 金額을 말한다)이 생기는 날이 있을 경우라도 當該 賣持額과 買持額을 通算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3 直法 2－11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金融 및 保險業을 주로 영위하는 法人의 判定)

3－2－5의 2 令 第22條 第3項 第2號② 및 第3號② 〈特定利子〉의 金融 및 保險業을 주로 영위하는 法人에는 政府金融機關 및 政府出資機關으로 그 設立根據法, 定款, 業務案內書 등으로 보아 融資業務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포함된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1983 直法 2－11, 1990 直法 2－1 改正〕.

(特定利子로 안되는 債券募集金의 利子)

3－2－6 金融機關이 募集方法에 의해 債券을 發行하는 경우에 그 拂入期日前에 수납한 소위 債券募集金에 대해 支拂한 利子額은 令 第22條 第3項 〈特定利子〉에서 規定하는 特定利子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90 直法 2－1 改正〕.

(證書貸付의 意義)

3－2－7 令 第23條 第3項 第2號② 〈特定利子인 長期借入金의 利子〉에서 規定하는 「證書貸付」란 借用證書를 借入하는 貸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어음併用證書貸付도 여기에 포함되나 어음에 의한 貸付로 이것

을 交替繼續하는 것에 대해 念書, 借入書 등을 징수하는 소위 證書併用어음貸付는 證書貸付에 該當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90 直法 2－1 改正〕.

(限度貸付契約證書에 의한 借入金)

3－2－8 令 第22條 第3項 第2號② 〈特定利子인 長期借入金의 利子〉에서 規定하는 「長期借入金(證書貸付에 의한 것……)」에는 限度貸付契約書에 의한 借入金은 포함되지 않으나 當該 借入金에 대해 債務承認證書를 交換했을 때에는 當該 借入金은 證書貸付에 의한 借入金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이 경우에 返濟期限이 3년 이상인가 어떤가는 當該 承認證書日付의 日을 計算의 始期로 判定한다〔1990 直法 2－1 改正〕.

(註) 限度貸付契約證書에 의한 借入金이란, 借入當初에 限度貸付契約證書를 교환하여 일정액의 借入金 범위를 만들어 어음 또는 現金의 方法에 의해 逐次分割하여 融資를 받은 후 그 借入金의 合計額이 限度額에 달했을 때에 債務承認證書를 교환하는 方法에 의한 借入金을 말한다.

(返濟期限의 判定)

3－2－9 令 第23條 第3項 第2號② 〈特定利子인 長期借入金의 利子〉에서 規定하는 「證書에 記載된 返濟期限이 3년 이상」인가 어떤가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와 같다〔1990 直法 2－1 改正〕.

(1) 借入金에 대해 年賦償還에 의해 返濟하는 경우에는 借入日부터 最終返濟期限까지의 期間에 따른다.

(2) 借入을 일정기간내에 分割하여 행할 경우에 각각의 借入金마다 返濟期限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借入金額에 대해 借入日부터 각각의 返濟期限까지의 期間에 따른다.

(3) 借入을 일정기간내에 分割하여 행할 경우에 借入金의 返濟期限이 모

두 同一期日로 정했을 때에는 각각의 借入日부터 返濟期限까지의 期間에 따른다.

(受取어음을 擔保로 借入한 負債의 利子)

3－2－10 去來의 代價로 받은 어음의 割引料는 特定利子에 해당되나 當該 受取어음을 割引하지 않고 擔保로 提供하여 借入한 負債의 利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荷換어음의 割引料 등)

3－2－11 荷換어음과 같이 去來代價를 徵收하는 手段으로 自己가 발행한 어음의 割引料는 令 第22條 第3項 第3號③ 〈特定利子인 어음의 割引料〉에 열거하는 割引料에 포함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77 直法 2－33, 1990 直法 2－1 改正〕.

3. 控除하는 負債에 대한 利子計算

(總資產의 帳簿價額計算)

3－2－12 令 第22條 第1項 第1號 〈總資產의 帳簿價額〉에서 規定하는 總資產의 帳簿價額計算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와 같다〔1980 直法 2－15 改正〕.

(1)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어 있는 移越損金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移越損金에 상당하는 金額은 總資產의 帳簿價額에 포함되지 않는다.

(2) 支拂承諾擔保計定 또는 保證債務擔保計定과 같이 단순한 對照計定으로 貸借對照表의 資產 및 負債部에 兩建經理된 金額이 있을 경우에는 當該 資產部에 經理된 金額을 總資產의 帳簿價額에서 控除한다.

(3) 貸損充當金計定金額이 貸金에서 控除하는 方法에 의해 徵收不能豫相

額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었을 때에는 그 控除前 金額을 注記方法에 의해 徵收不能豫相額으로,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加算한 金額을 각각의 貸金帳簿價額으로 할 수 있다.

(4) 貸借對照表에 計上된 債權償却特別計定 또는 返品債權特別計定金額(貸金에서 控除하는 方法에 의해 徵收不能豫相額으로 計上되어 있는 것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貸金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5) 貸損損失이 貸金에서 控除하는 方法에 의해 徵收不能豫相額으로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控除한 殘額을 貸金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6) 貸借對照表에 計上된 補修用 部品 在庫調整計定 또는 單行本 在庫調整計定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當該 補修用 部品 在庫調整計定 또는 單行本 在庫調整計定에 관련된 在庫資產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按分計算의 基礎가 되는 株式 등의 範圍)

3－2－13 令 第22條 第1項 第2號〈特定株式 등 이외의 株式의 帳簿價額〉에서 規定하는「特定株式 등 이외의 株式 및 出資」와「證券投資信託의 受益證券」또는 同條 第2項 第2號〈特定株式 등의 帳簿價額〉에서 規定하는「特定株式 등」에는 配當 등의 有無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 단, 信用去來에 의해 사들인 株式으로 그 決濟가 未了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1975 直法 2－2, 1990 直法 2－1 改正〕.

(註) 株式 등에 대해 配當 등의 支拂義務 確定日이 到來하지 않았을 때의 取扱에 대해서는 3－2－13의 2에 따른다.

(配當 등의 支拂義務確定日이 到來하지 않았을 경우 特定株式 등의 判定)

3－2－13의 2 令 第22條 第2項〈配當 등의 額에서 控除하는 特定株式 등에 관련된 負債利子額 計算〉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法人이 당해 事業年度終了時에 所有한 他의 同一法人이 發行하는 株式 등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에 배당 등의 支拂義務確定日이 到來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또는, 當該 事業年度에 2이상의 配當 등의 支拂義務確定日이 있을 때에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있어서 當該 株式 등이 同項 第2號〈特定株式 등의 帳簿價額〉에서 規定하는 特定株式 등(以下 3－2－13의 2에서 「特定株式 등」이라 함)에 해당하는가 어떤가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가장 가까운 날(當該 事業年度終了日을 포함)의 配當 등의 支拂義務確定日에 소유한 當該 他의 同一法人이 發行하는 株式 등에 근거하여 判定한다〔1990 直法 2－1 追加〕.

(註) 1. 本文의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가장 가까운 날」에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日後의 配當 등의 支拂義務確定日은 包含되지 않는다.

2. 法人이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特定株式 등에 해당하는 他의 同一法人의 株式 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當該 株式 등의 帳簿價額은 그 全額이 令 第22條 第2項 第2號에서 規定하는 特定株式 등의 帳簿價額이 된다.

3. 他의 同一法人이 發行하는 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이 2 이상 있을 경우에 當該 配當 등이 特定株式 등에 관련된 配當 등에 해당하는가 어떤가는 각각의 배당 등의 支拂義務 確定日에 있어 소유하고 있는 株式 등에 근거하여 判定한다.

(轉換社債를 轉換했을 경우의 取扱)

3－2－14 轉換社債를 轉換했을 경우에 商法 第222條의 但書規定에 의해 當該 轉換社債 發行法人의 定款에서 그 轉換請求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또는 그 直前 事業年度의 終了日에 轉換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利益配當을 計算하려고 할 때의 令 第22條 第1項 〈株式 등에 관련된 負債利子額〉의 規定 適用에 대해서는 그 轉換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事

業年度終了日(그날이 當該 轉換社債의 取得前일 경우에는 그 取得日)에 株式을 取得한 것으로 取扱한다〔1973 直法 2－81 追加〕.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 行使가 있는 경우의 取扱)

3－2－14의 2 3－2－14는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에 令 第22條 第1項 〈株式 등에 관련된 負債의 利子額〉의 規定을 適用하는 데 準用한다〔1982 直法 2－11 追加〕.

(特定利子의 元本인 負債)

3－2－15 令 第22條 第1項 第1號 〈總資産의 帳簿價額〉에서 規定하는 「特定利子의 元本인 負債額」에는 當該 事業年度에 利拂期가 到來하지 않은 등으로 利子를 支拂하지 않은 負債라도 그 利子가 特定利子에 해당할 때에는 그 負債額이 포함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73 直法 2－81 改正〕.

(株式 등에 관련된 負債利子의 簡便計算)

3－2－16 令 第22條 第4項 〈株式에 관련된 負債利子의 簡便計算〉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法人이 1989년 4월 1일부터 1991년 3월 31일 사이에 開始한 各 事業年度(以下 이 포함을 「基準年度」라고 함)中에 株式 등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配當 등의 額에서 控除해야 할 負債利子額이 없는 事業年度가 있을 때에는 當該 控除해야 할 負債利子額이 없는 事業年度의 負債利子額은 同項에서 規定하는 比率計算上 여기에 관계없는 것으로 한다〔1973 直法 2－81 , 1982 直法 2－11, 1990 直法 2－1 改正〕.

(負債利子控除比率 計算)

3－2－17 令 第22條 第4項 〈株式 등에 관련된 負債利子簡便計算〉에서 規定하는 比率(以下 3－2－18에서 「負債利子控除比率」이라 함)은 基準年度에 대해 令 第22條 第1項 또는 第2項 〈株式 등에 관련된 負債利子의 總

資産의 帳簿價額에 의한 計算〉에 의해 計算한 額을 基礎로 計算하는 데에 留意해야 한다〔1973 直法 2－81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合併의 경우의 基準年度)

3－2－18 負債利子控除比率을 計算하는 경우에 基準年度中에 合併이 있었을 때에는 合併法人과 被合併法人의 事業年度가 달라도 被合併法人에 대해서는 1989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事業年度에서 그 合併日을 포함한 事業年度까지의 各 事業年度를 基準年度로 計算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73 直法 2－81 追加, 1982 直法 2－11, 1990 直法 2－1 改正〕.

第 4 章　其他의 益金 등

第 1 節　資産의 評價益

(時價를 넘는 評價益의 益金不算入)

4－1－1 法人이 소유하고 있는 資産을 評價換하여 帳簿價額을 增額한 경우에 그 評價換이 法 第25條 第1項 〈資産 評價益의 益金不算入 適用除外〉에서 規定하는 評價換에 該當할 때에도 그 評價換 後의 資産 帳簿價額을 評價換했을 때 當該 資産의 價額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은 益金額에 算入하지 않기 때문에 當該資産의 帳簿價額을 넘는 부분의 金額은 增額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取得價額 修正 등과 評價益의 計上과의 關係)

4－1－2 다음에 열거하는 事業을 근거로 생긴 益金은 法 第25條 第1項 〈資産評價益의 益金不算入〉에서 規定하는 資産評價益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2 直法 2－11 改正〕.

(1) 公社債의 取得價額이 그 額面金額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商法 第285條의 5 〈社債, 其他 債券의 評價〉의 規定에 따라 그 帳簿價額에 대해 상당한 增額을 한 것.

(2) 合併法人이 合併에 의해 받은 資産의 收入價額을 被合併法人의 當該資産 合併直前의 帳簿價額을 넘는 價額으로 한 것.

(3) 減價償却資産으로 計上해야 할 費用을 修繕費 등으로 損金經理를 한 法人이 減價償却資産으로 받아들일 때 當該 費用을 減價償却資産의 帳簿價額으로 計上했기 때문에 과거의 償却費에 상당하는 金額만 增額된 것.

(4) 壓縮記帳에 의한 壓縮額을 充當金 또는 目的積立金으로 經理하는 法人이 그 充當金 또는 目的積立金을 해체한 것.

第2節 合併差益金 등

1. 合併差益金의 計算 등

(被合併法人이 2 이상일 때 合併差益金의 計算)

4-2-1 法人이 合併했을 때 合併에 관련된 被合併法人이 2이상 있을 때에는 그 合併差益金은 각각 被合併法人別로 計算하는 것에 留意한다.

(合併差益金의 計算과 看做交付金과의 關係)

4-2-2 法 第2條 第1號② 〈合併差益金〉에서 規定하는 「合併에 의해 交付한 金額」에는 法 第113條 〈合併했을 때의 看做交付金〉에서 規定하는 看做交付金도 포함한다.

(被合併法人의 未納法人稅 등)

4-2-3 法人이 合併한 경우에 被合併法人의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 以前의 각 事業年度 法人稅(延滯稅 및 利子稅를 제외),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로 그 合併時에 未納된 것이 있을 때에는 合併法人이 이들 未納稅額을 負債로 인계를 하지 않았어도 合併差益金의 計算上 이들 未納稅額은 合併法人이 合併에 의해 被合併法人에서 承繼한 負債로 한다.

(註) 이 取扱에 의했기 때문에 合併差損이 생기게 된 경우에 引受資產에 여유가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餘裕利益의 範圍內에서 當該 引受資產에 대해 合併差損額에 상당하는 金額만 引受價額이 增額된 것으로 하는 데에 留意해야 한다.

(簿外資産 등의 引受價額)

4－2－4 合併法人이 否認金이 있는 被合併法人의 資産, 負債 등에 대해 그 引受價額을 稅務計算上의 金額으로 修正하지 않고 被合併法人의 帳簿價額으로 할 경우(引受價額을 表示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는 合併差益金의 計算上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다.

(1) 被合併法人이 資産 또는 負債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稅務計算上 資産 또는 負債로 否認된 것(減價償却超過額이나 評價損 또는 評價益의 否認金에 관련된 것은 제외)에 대해 合併法人의 計算에도 불구하고 그 否認額에 상당하는 資産 또는 負債가 合併法人에 引受된 것으로 한다.

(2) 被合併法人이 算入한 充當金, 準備金으로서 算入限度超過額 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稅務計算上의 金額에서 合併法人에 引受된 것으로 한다.

(3) 被合併法人이 損金으로 計上한 費用 또는 損失로 損金에 算入되지 않은 것(否認金의 處理가 社外流出된 것 또는 減價償却超過額 또는 評價損否認金을 제외)에 대해서는 合併法人의 計算에 관계없이 그 否認額에 상당하는 資産이 合併法人에 引受된 것으로 한다.

(4) 被合併法人이 資産에 計上하고 있는 것에 대해 稅務計算上 資産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損金에 算入된 것에 대해서는 그 資産의 引受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

(順延資産의 引繼)

4－2－4의 2 支出에 관련된 順延資産 合併直前의 帳簿價額을 引受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償却超過額 등의 否認金을 修正할 경우의 特例)

4－2－5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이 計上한 帳簿價額에 따라 引受한 資産에 대해 合併後 被合併法人의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 以前의 각 事業年度

의 調査에 의해 償却超過額 또는 評價損이나 評價益에 관련된 否認金이 있는 것이 判明된 경우에 合併法人이 그 判明된 事業年度에 當該 引受한 資產에 대해 그 帳簿價額을 이들 否認金에 상당하는 金額만 修正할 것을 제의했을 때는 合併差益金의 計算에서는 引受한 當該 資產에 대해서는 稅務計算上의 金額에 따라 引受한 것으로 한다.

(缺損金額과 資本積立金額이 兩建되어 있는 경우의 合併差益金)

4-2-6 法人의 合併差益金에 대해 令 第9條 第1項〈合併差益金 중에서 被合併法人의 資本積立金 및 合併減資益金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金額〉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被合併法人이 缺損金과 資本積立金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資本積立金에서 缺損金을 控除한 殘額을 가지고 同項의 資本積立金으로 한다.

(資產의 過大評價에 의한 引受를 否認한 경우의 處理)

4-2-7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으로부터 引受받은 資產에 대해 合併時에 當該 資產의 價額合計額을 넘는 價額을 帳簿價額으로 함으로써 초과한 부분의 引受를 否認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971 直審(法) 20 改正〕.

(1) 被合併法人으로부터 利益積立金 및 資本積立金을 引繼받은 경우에는 그 引繼받은 이들 積立金 중에서 當該 否認金에 달할 때까지의 金額은 먼저 利益積立金, 다음으로 資本積立金의 引繼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2) 當該 否認金에 대해 (1)로 處理를 한 후에 殘額이 더 있는 경우에 그 殘額은 合併法人의 利益積立金에서 控除한다.

(合併할 때 營業權을 計上한 경우의 處理)

4-2-8 被合併法人에 移越缺損金이 있는 경우에 合併法人이 그 移越缺損金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金額을 營業權으로 引受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따른다〔1973 直法 2-81 改正〕.

(1) 被合併法人으로부터 引受받은 資產에 여유가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여유가 있는 資產을 引受價額에 營業權의 引受價額에 달할 때까지의 餘裕利益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을 帳簿價額에 따라 引受한 것으로 하고, 그 營業權의 引受價額에 대해서는 當該 餘裕利益에 상당하는 金額을 減額하는 것으로 한다.

(2) 營業權의 引受價額에 殘額이 더 있을 경우에는 그 殘額에 대해 當該 被合併法人의 營業權 價額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價額을 限度로 營業權의 引受를 인정한다.

(註) 合併法人이 引受한 營業權引受價額 중에서 引受를 認定하지 않는 부분의 金額에 대해서는 4－2－7을 따른다.

(併合株式의 消却損의 補塡順序)

4－2－9 法人을 合併한 경우에 被合併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를 合併法人 또는 他의 被合併法人이 가지고 있었기 대문에 合併法人이 當該 株式 또는 出資(以下 4－2－9의 2까지 「併合株式」이라 함)에 대해 合併에 의한 株式 또는 出資割當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생긴 當該 合併株式의 消滅에 의한 損失額은 合併差益金 및 引受資產의 餘裕利益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의 順序에 따라 補塡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減資益에 상당하는 金額

(2) 減資積立金

(3) 利益積立金

(4) 合併差益金 중에서 (1)에서 (2)까지 열거하는 金額 以外의 金額

(5) 引受資產의 餘裕利益

(併合株式에 新株의 割當을 하지 않은 경우의 合併減資差益金)

4－2－9의 2 合併法人이 併合株式에 대해 그 合併에 의한 株式 또는 出

資割當을 하지 않은 경우(令 第170條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被合併法人의 株式 등을 取得한 경우의 合併에 의한 淸算所得金의 計算〉의 規定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에 있어서 그 割當을 하지 않으므로써 생긴 減資益에 상당하는 金額이 當該 併合株式의 消滅에 의한 損失額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부분의 金額은 當該 合併法人의 그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所得의 金額計算上 益金으로 算入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合併에 의해 自己株式으로 된 株式의 消却損)

4－2－10 被合併法人이 合併法人의 株式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合併法人이 그 合併에 의해 自己株式으로 된 當該 株式을 消却했을 때에는 그 消却損額은 減資益으로 補塡하고도 殘額이 있을 때에 그 殘額은 損金額에 算入하지 않는다.

2. 被合併法人의 合併事業年度 所得金額 등의 計算

(被合併法人의 任員에 대한 退職給與)

4－2－11 合併할 때 退職한 被合併法人의 任員에게 支給하는 退職給與額이 合併承認總會에서 確定되지 않는 경우에 被合併法人이 退職給與로 支給해야 할 金額을 合理的으로 計算하여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에 未拂金으로 損金經理했을 때에도 이것을 認定한다.

(註) 被合併法人에서 當該 任員의 退職給與로 支給해야 할 金額을 合理的으로 計算하지 않을 경우에는 合併法人에서 그 額이 具體的으로 확정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經理할 수 있다.

(合併法人의 任員이 된 被合併法人의 任員 등에 대한 退職給與)

4－2－12 4－2－11은 被合併法人의 任員인 동시에 合併法人의 任員을 겸하고 있는 者 또는 被合併法人의 任員에서 合併法人의 任員이 된 者에 대

해 合併에 의해 支給하는 退職給與에 대해 準用한다.

3. 合併法人의 合併事業年度 所得金額 등의 計算

(被合併法人의 最後事業年度의 事業稅)

4－2－13 被合併法人의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에 관련된 事業稅는 合併法人에서 그 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한다.

(被合併法人의 償却超過額 등의 否認金)

4－2－14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으로부터 引受받은 資產에 대해 발생한 償却超過額, 評價換에 의한 否認金額, 特別償却不足額, 特別償却準備金 積立不足額 또는 退職給與 充當金算入不足額에 대해서는 合併法人의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 以後의 各 事業年度 所得金額의 計算上 이들 金額은 없는 것으로 한다.

(合併에 의해 引受된 減價償却資產의 耐用年數)

4－2－15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으로부터 인수받은 減價償却資產의 耐用年數는 當該 資產에 대해 정해진 耐用年數省令 別表에 열거한 耐用年數를 따른다. 단, 被合併法人이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耐用年數省令 第3條(中古資產의 耐用年數 등)의 規定에 의해 殘存耐用年數를 見積낼 경우에는 그 殘存耐用年數를 따를 수 있다.

(特別償却에 관련된 殘存適用期間의 引繼)

4－2－16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의 措置法 第45條의 2 第3項, 第47條 또는 第48條 〈老人保健施設用 建物의 割增償却 등〉에서 規定하는 特別償却을 하고 있던 減價償却資產으로서 適用期間을 經過하지 않은 것을 引受할 경우에 被合併法人의 合併直前 帳簿價額을 그 引受價額으로 할 때에는 그

殘存適用期間에 대해 이들 規定을 適用할 수 있게 한다〔1971 直審(法) 21, 1974 直法 2－71, 1979 直法 2－31, 1980 直法 2－15, 1991 課法 2－4 改正〕.

(被合併法人으로부터 引受한 減價償却資産의 特別償却)

4－2－17 被合併法人이 取得하여 事業用으로 제공한 措置法 第42條의 5 第1項, 第42條의 6 第1項, 第42條의 7 第1項 및 第43條에서 第45條의 2 (同條 第3項을 제외)까지 〈에너지 環境變化對應設備 등의 特別償却 등〉에서 정하는 減價償却資産에 대해 減價償却을 하지 않는 경우에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에서 引受받은 當該 減價償却資産에 대해 이들 規定에서 정하는 特別償却을 했을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要件에 當該할 때에 한해서 이들 規定에 준하여 이것을 인정하도록 한다〔1973 直法 2－81, 1979 直法 2－31, 1981 直法 2－16, 1983 直法 2－11, 1984 直法 2－3, 1986 直法 2－12, 1988 直法 2－1, 1988 直法 2－14, 1990 直法 2－1, 1990 直法 2－6, 1991 課法 2－4 改正〕.

(1) 被合併法人이 當該 減價償却資産을 事業用으로 提供한 날이 被合併法人의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에 속하고, 또 合併法人의 當該 合併日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事業年度의 期間內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被合併法人이 當該 減價償却資産을 事業用으로 제공한 날이 被合併法人 및 合併法人의 合併承認總會終了日 後일 것.

(被合併法人의 移越缺損金)

4－2－18 被合併法人의 法 第57條 또는 第58條 〈靑色申告書를 提出한 事業年度 缺損金의 移越 등〉의 規定을 適用받는 缺損金額으로 當該 被合併法人의 合併日이 속한 事業年度까지 이들 規定에 의해 損金算入이 이루어지지 않은 金額에 대해서는 合併法人이 각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第3節 受贈益

1. 廣告宣傳用 資產 등의 受贈益〔1980 直法 2－8 改正〕

(廣告宣傳用 資產 등의 受贈益)

4－3－1 販賣業者 등이 製造業者 등으로부터 資產(廣告宣傳用의 看版, 네온사인, 현수막과 같이 오로지 廣告宣傳用으로 제공된 것을 제외)을 無償 또는 製造業者 등의 當該 資產 取得價額에 미치지 않는 價額으로 取得한 경우에는 當該 取得價額 또는 當該 取得價額에서 販賣業者 등이 그 取得 때문에 支出한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經濟的 利益額으로 그 取得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한다. 단, 그 取得한 資產이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廣告宣傳用일 경우에는 그 經濟的 利益額은 製造業者 등이 지출한 取得價額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金額에서 販賣業者 등이 取得하려고 支出한 金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하여 當該 金額(同一의 製造業者 등으로부터 2이상의 資產을 取得했을 때에는 當該 金額의 合計額)이 30만엔 이하일 때에는 經濟的 利益額은 없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1989 直法 2－7 改正〕.

(1) 自動車(自動三輪車 및 自動二輪車를 포함)의 車體 大部分에 일정 色彩를 塗裝하여 製造業者 등의 製品 또는 社名을 表示하여 廣告宣傳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것.

(2) 진열대, 진열케이스, 냉장차 또는 容器로 製造業者 등의 製品名 또는 社名의 廣告宣傳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것.

(3) 展示用 모델하우스와 같이 製造業者 등의 製品見本인 것이 명백한 것.

(註) 廣告宣傳用의 看版, 네온사인, 현수막과 같이 오로지 廣告宣傳用으로 제공되는 資產에 대해서는 그 取得에 의한 經濟的 利益額은 없다.

(廣告宣傳用 資產의 取得에 충당하기 위해 金錢의 交付를 받은 경우의 準用)

4-3-2 4-3-1은 販賣業者 등이 製造業者 등으로부터 廣告宣傳用의 資產取得에 충당하기 위해 金錢의 交付를 받은 경우에 대해 準用한다.

2. 未拂賞與의 免除益

(未拂賞與를 支拂하지 않는 경우의 特例)

4-3-3 法人이 未拂賞與(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額에 算入되지 않는 賞與에 한함)에 대해 任員會議 등의 決議에 근거하여 전부 또는 대부분의 金額을 支拂하지 않는 경우에 支拂하지 않는 것이 소위 會社整理, 事業의 再建 및 業況不振 때문이고, 또 支拂하지 않는 金額이 支拂을 받는 金額에 따라 計算되는 등 일정의 基準에 의해 決定된 것일 때는 支拂하지 않게 된 金額(그 賞與에 대해 徵收되는 所得稅額이 있을 때에는 當該 稅額을 控除한 金額)에 대해서는 그 支拂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法人이 未拂配當金을 支拂하지 않는 경우의 支拂하지 않게된 金額에 대해서는 本文의 取扱이 適用 안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第 5 章　在庫資産의 評價

第 1 節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1. 購入한 在庫資産

(購入한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5－1－1 購入한 在庫資産의 取得價額에는 그 購入代價 외에 이것을 消費 또는 販賣用으로 제공하기 위해 直接 必要한 모든 費用이 포함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費用에 대해서는 이들 費用의 合計額이 少額(當該 在庫資産의 購入代價의 대략 3% 이내의 金額)인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다〔1980 直法 2－15 改正〕.

(1) 買入事務, 檢收, 整理, 選別, 損失 등에 소요된 費用

(2) 販賣所 등에서 販賣所 등으로 移管하기 위해 소요된 運賃, 荷造費 등의 費用

(3) 特別한 時期에 販賣하기 위해서나 長期에 걸쳐 保管하기 위해 소요하는 費用

(註) 1. (1)에서 (2)까지에 열거한 費用의 合計額이 少額인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事業年度別로 또 種類 등(種類, 品質 및 型別을 말함. 以下 5－2－16까지 같음)을 같이 하는 在庫資産(事業所別로 다른 評價方法을 選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事業所마다 種類 등을 같이하는 在庫資産으로 한다)別로 判定할 수 있다.

2. 在庫資産을 保管하기 위해 소요하는 費用(保險料를 포함) 중에서 (3)에 열거한 것 이외의 額은 그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다.

(在庫資産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되는 費用)

5－1－1의 2 다음에 열거하는 費用은 설령 在庫資産의 取得 또는 保有

에 관련하여 支出하는 것이라도 그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된다〔1980 直法 2－15 追加〕.

(1) 不動產取得稅額

(2) 固定資產稅 및 都市計劃稅額

(3) 特別土地保有稅額

(4) 登錄免許稅, 其他 登記 또는 登錄하는 데 소요하는 費用

(5) 借入金의 利子

(取得後의 事業年度에 購入代價가 確定된 경우의 調整)

5－1－2 在庫資產을 取得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에 그 購入代價가 確定되지 않았기 때문에 見積價額으로 在庫資產의 取得價額을 計算하고 있는 경우에 그 후의 事業年度에 購入의 代價가 확정됐을 때에는 그 確定된 金額과 見積價額과의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그 確定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 단, 그 差額이 多額일 경우에는 그 差額을 原價差額의 調整方法에 준하여 調整한다.

2. 製造 등에 관련된 在庫資產

(製造 등에 관련된 在庫資產의 取得價額)

5－1－3 製造 등에 관련된 在庫資產의 取得價額에는 그 製造 등을 위해 소요된 原材料費, 勞務費 및 經費의 合計額 외에 이것을 消費하거나 또는 販賣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直接 소요한 費用이 포함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費用에 대해서는 이들 費用의 合計額이 少額(當該 在庫資產의 製造原價의 대략 3% 이내의 金額)일 때에는 그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된다〔1980 直法 2－15 改正〕.

(1) 製造 後에 要하는 檢査, 檢定, 整理, 選別, 손질 등의 費用

(2) 製造場 등에서 販賣所 등에 移管하기 위하여 소요한 運賃, 荷造費 등의 費用

(3) 特別한 時期에 販賣하기 위해 長期間 保管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費用

(註) 1. (1)에서 (3)까지에 열거한 費用의 合計額이 少額인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事業年度別로 또 種類 등을 같이하는 在庫資產(工場別로 原價計算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工場別로 種類 등을 같이하는 在庫資產으로 한다)別로 判定할 수 있다.

2. 在庫資產을 保管하기 위해 소요하는 費用(保險料를 포함) 중에서 (3)에 열거한 것 이외의 額은 그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다.

(製造原價에 算入하지 않아도 되는 費用)

5－1－4 다음에 열거하는 費用은 製造原價에 算入하지 않아도 된다〔1975 直法 2－21, 1977 直法 2－33, 1980 直法 2－8, 1983 直法 2－11, 1990 直法 2－1 改正〕.

(1) 退職給與規程을 改正했기 때문에 改正이 이루어진 事業年度에서 退職給與 充當金計定에 算入한 金額을 改正後의 退職給與規程을 前事業年度終了日의 退職給與規程으로 간주하여 計算하는 경우에 當該 事業年度의 算入限度額을 넘을 때의 그 넘는 金額

(2) 使用人 등에 支給한 賞與 중에서 예를 들어 創立何周年記念賞與와 같이 特別히 支給된 賞與인 것이 明白한 金額(통상 賞與로 支給되는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은 제외)

(3) 試驗研究費 중에서 基礎研究 및 應用研究의 費用 및 工業化研究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치 않은 費用

(4) 措置法에서 정하는 特別償却(同法 第49條 第1項 〈坑內에 굴착한 坑道 등의 特別償却〉의 規定에 의한 特別償却을 제외)의 規定을 適用받는 資產의 償却費 중에서 特別償却限度額에 관련된 부분의 金額 및 令 第60條의

2〈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에 의한 陳腐化 資產의 償却費 중에서 陳腐化에 의한 償却費

(5) 工業所有權 등에 대하여 支拂하는 使用料가 賣上高 등에 근거하는 경우에 當該 使用料 및 當該 工業所有權 등에 관련된 契約金의 償却費

(6) 工業所有權 등에 대하여 支拂하는 使用料가 生產數量 등을 基礎로 정해져 있고 또 最低使用料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支拂되는 使用料 중에서 生產數量 등에 의해 計算되는 使用料를 넘는 部分의 金額

(7) 在庫資產의 評價損額(통상 發生하는 不良品에 대해 評價損에 상당하는 金額은 제외) 및 低價法에 의해 評價하는 경우에 原價法의 評價額에서 時價에 의한 評價額을 控除한 金額

(8) 事業稅

(9) 事業의 閉鎖, 事業規模의 縮小 등으로 인해 大量으로 整理한 使用人에 대해 支給하는 退職給與

(10) 生產을 상당기간에 걸쳐 休止한 경우의 그 休止期間에 대응하는 費用

(11) 償却超過額, 其他 稅務計算上의 否認金

(12) 障礙者 雇傭促進 등에 관한 法律 第26條 第1項 〈身體障礙者 雇傭納付金의 徵收 및 納付義務〉에서 規定하는 身體障礙者 雇傭納付金額

(13) 營業權의 償却費

(14) 工場 등이 支出한 寄附金額

(15) 借入金의 利子額

(製造間接費의 製造原價로의 配賦)

5－1－5 法人의 事業規模가 小規模인 것 등으로 인해 製造間接費를 製品, 半製品 또는 在工品으로 配賦하는 것이 困難한 경우에는 그 製造間接費를 半製品 및 在工品의 製造原價에 配賦하지 않고 製品의 製造原價에만 配

賦할 수 있다.

(賞與充當金과 使用人 賞與의 原價算入 關係)

5－1－6 法人이 賞與充當金計定을 設置한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에 賞與를 支給한 경우에 그 支給한 賞與額의 原價算入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와 같다.

(1) 그 支給한 賞與 中에서 製造原價에 算入해야 할 額이 賞與充當金計定의 金額(製造原價에 한함)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製造原價에 算入하고 當該 賞與充當金計定의 金額에 달할 때까지의 金額에 대해서는 製造原價에 算入하지 않는다.

(2) 支給한 賞與額으로서 製造原價에 算入해야 할 것이 當該 賞與充當金計定의 金額 以下일 때에 그 賞與額은 製造原價에 算入하지 않는다.

(法令에 근거하여 交付를 받는 給付金 등의 製造原價로부터의 控除)

5－1－7 法人이 그 支出하는 休業手當, 賃金, 職業訓練費 등의 經費를 補塡하기 위해 雇用保險法, 雇用對策法, 障礙者 雇用促進 등에 관한 法律 등의 法令 規定에 근거하여 給付金 등의 交付를 받은 경우(2－1－36의 取扱을 適用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給付의 對象이 된 사실에 관련된 休業手當, 賃金, 職業訓練費 등의 經費를 製造原價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交付를 받은 金額 中에서 製造原價에 算入한 休業手當, 賃金, 職業訓練費 등의 經費에 대응하는 金額을 當該 製造原價에서 控除할 수 있다〔1984 直法 2－3, 1988 2－14 改正〕.

(副産物, 作業쓰레기 또는 失敗作의 評價)

5－1－8 製品의 製造公正에서 副産物, 作業쓰레기 또는 失敗作(以下 5－1－8에서 「副産物 등」이라 함)이 생긴 경우에는 總製造費用에서 副産物

등의 評價額의 合計額을 控除한 시점에서부터 製品의 製造原價額을 計算하지만, 이 경우에 副產物 등의 評價額은 계속하여 當該 副產物 등에 관련된 實際原價로서 合理的으로 見積한 價額 또는 通常 成立하는 市場價額에 의한다. 단, 當該 副產物 등의 價額이 현저할 경우에는 備忘價額으로 評價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追加〕.

第 2 節　在庫資產의 評價方法

1. 原 價 法

(個別法을 選定할 수 있는 在庫資產)

5－2－1 在庫資產 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個別法(그 評價額을 基礎로 하는 低價法을 포함)에 의해 그 評價額을 計算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商品의 取得에서 販賣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을 통해 구체적으로 個品管理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製品·半製品 또는 在工品의 取得에서 販賣 또는 消費까지의 過程을 통해 구체적으로 個品管理가 이루어지고 또 個別原價計算이 실시되는 경우에 個品管理를 하는 것 또는, 個別原價計算을 實施하는 데 合理性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의 그 商品 또는 製品·半製品 또는 在工品

(2) 그 性質上 오로지 (1)의 製品 또는 製品의 製造用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保有하고 있는 原材料

(隨時後入先出法)

5－2－2 在庫資產을 引出할 때마다 引出한 후에 남는 在庫資產을 당해

引出한 날부터 가장 먼날에 取得한 在庫資產부터 차례로 引出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在庫資產의 取得價額을 計算하는 方法은 後入先出法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月別後入先出法)

5－2－3 1個月마다 後入先出法, 總平均法, 移動平均法 또는 單純平均法에 의해 計算한 價額을 當該 月末에 在庫資產의 取得價額으로 간주하여 翌月에 이것을 移越價額으로 順次計算하는 것으로 인해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在庫資產의 取得價額을 計算하는 方法은 각각 後入先出法, 總平均法, 移動平均法 또는 單純平均法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6個月마다의 後入先出法)

5－2－3의 2 6個月마다 後入先出法, 總平均法, 單純平均法 또는 賣價還元法에 의해 在庫資產의 取得價額을 計算하는 方法은 각각 後入先出法, 總平均法, 單純平均法 또는 賣價還元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80 直法 2－15 改正〕.

(註) 6個月마다의 移動平均法은 移動平均法에 해당하지 않는다.

(半製品 또는 在工品에 대한 賣價還元法)

5－2－4 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이 原價計算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半製品 및 在工品을 製造工程에 따라 製品賣價의 몇 할인가로 評價하는 경우의 評價方法은 賣價還元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賣價還元法의 適用區分)

5－2－5 賣價還元法에 의해 評價額을 計算하는 경우에는 그 種類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빼고 통상의 差益率이 대략 같은 在庫資產은 이것을 그 計算上의 1區分으로 할 수 있게 한다.

(賣價還元法에 의해 評價額을 計算하는 경우의 期中에 販賣한 在庫資産 代價의 總額計算)

5－2－6 賣價還元法에 의해 評價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令 第28條 第1項 第1號⑧ 〈賣價還元法〉에 規定하는 「當該 事業年度에 販賣한 當該 在庫資産 代價 總額」은 法人이 當該 事業年度에 販賣한 在庫資産의 實際 販賣價額의 合計額에 따르나 當該 事業年度에 使用人, 株主, 特定顧客 등 特定人에 대한 販賣價를 引下하는 경우에 그 者에 대한 販賣狀況을 個別로 管理하고 그 引下額이 명백할 때에는 引下額을 販賣價額에 加算하여 計算할 수 있게 한다.

(賣價還元法에 의해 評價額을 計算하는 경우의 通常 販賣價額의 總額計算)

5－2－7 賣價還元法에 의해 評價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令 第28條 第1項 第1號⑧ 〈賣價還元法〉에서 規定하는 「通常 販賣價額의 總額」은 法人이 當該 事業年度에 販賣한 在庫資産에 대해 引下, 리베이트 등을 하여 그것을 賣上金額에서 控除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도 引下, 리베이트 등을 考慮하지 않았을 때의 販賣價額의 總額에 의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原價率이 100%를 초과할 경우의 賣價還元法의 適用)

5－2－8 賣價還元法을 적용하는 경우에 令 第28條 第1項 第1號⑧ 〈賣價還元法〉에서 規定하는 原價率이 100%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率에 의해 期末在庫資産의 評價額을 計算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未着品의 評價)

5－2－8의 2 未着品(購入한 在庫資産으로 運送途中인 것을 말한다. 이하 5－2－12까지 같다)에 대해 그 取得 때문에 통상 소요하는 去來運賃, 荷役費, 其他 附隨費用 중에서 當該 事業年度終了時까지 支出이 되지 않았

기 때문에 取得價額에 算入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의 當該 未着品에 대해서는 이것과 種類 등을 같이하는 在庫資產이 있을 때에도 當該 在庫資產과는 種類 등이 다른 것으로 하여 令 第28條 〈在庫資產의 評價方法〉의 規定을 適用한다〔1980 直法 2－15 追加〕.

2. 低 價 法

(低價法에서의 低價事實의 判定單位)

5－2－9 低價法에서 低價事實의 判定은 在庫資產의 種類 등과 같은 것(在庫資產을 통상의 差益率과 같은 것 별로 구분하여 賣價還元法을 選定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差益率과 같은 것으로 한다)에 대해 행하여야 하나, 法人이 事業의 種類別로, 또 令 第29條 第1項 〈在庫資產 評價方法의 選定單位〉에서 規定하는 在庫資產의 區分別로 일괄하여 計算하는 경우에 이것을 인정한다. 단, 令 第28條 第2項 〈分離低價法〉의 規定을 適用하는 在庫資產에 대해서는 一括하여 計算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原價差額의 調整을 일괄하여 행할 때의 低價事實의 判定)

5－2－10 低價法에 의해 評價를 하고 있는 在庫資產에 대하여 原價差額의 調整을 일괄하여 하고 있는 경우의 低價事實의 判定은 原價差額을 調整한 구분에 포함되는 在庫資產 時價의 合計額과 原價差額調整後 評價額의 合計額에 근거하여 행하게 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購入한 在庫資產의 時價)

5－2－11 購入한 在庫資產에 低價法을 適用하는 경우에 令 第28條 第1項 第2號 〈低價法〉에서 規定하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그 取得 때문에

통상 소요하는 價額」(以下 5－2－16까지 「期末의 時價」라 함)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그 在庫資產이 所在하는 장소에서 이것과 種類 등을 같이 하는 在庫資產에 대해 통상의 去來方法에 의해 거래되는 數量을 購入하는 경우의 購入代價에 그 附隨費用을 加算한 金額에 의한다〔1980 直法 2－15 改正〕.

(未着品의 時價)

5－2－12 法人이 未着品에 대해 低價法을 適用하는 경우에 그 未着品에 대해 그 取得 때문에 통상 소요하는 引受運賃, 荷役費, 其他 附隨費用 中에서 當該 事業年度終了時까지 支出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取得價額에 算入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當該 未着品의 期末時價는 그 算入되지 않은 費用에 상당하는 費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製造 등에 관련된 在庫資產의 時價)

5－2－13 製造 등에 관련된 在庫資產에 대하여 低價法을 適用하는 경우의 期末時價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그 在庫資產이 製造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製造原價에 이것을 消費하거나 또는 販賣用으로 提供하기 위해 直接 소요하는 費用을 加算한 金額에 의한다. 단, 事業의 規模가 작기 때문에 本文에 의하는 것이 困難한 경우에는 法人이 계속하여 각 事業年度終了時에 통상 去來되는 在庫資產의 販賣價額에서 通常의 一般管理費, 販賣費 및 利益(통상의 利益을 計算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 販賣價額의 5% 相當額으로 한다)의 見積額의 合計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在庫資產의 期末時價로 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製品에 대하여 控除法에 의해 評價하는 경우의 半製品 또는 在工品의 時價)

5－2－14 法人이 製品에 대해 5－2－13의 단서에 의해 期末時價를 計算할 경우에 當該 製品에 관련된 半製品 또는 在工品의 期末時價는 當該 製品의 期末時價를 基礎로 그 진행 또는 완성의 정도에 따라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1980 直法 2－15 改正〕.

(標準價格과 市中時勢가 있는 在庫資產의 時價)

5－2－15 標準價格과 市中時勢가 있는 在庫資產에 대해 低價法을 適用하는 경우의 期末時價는 標準價格에 의해 取得한 것에 대해서는 그 標準價格, 市中時勢에 의해 取得한 것에 대해서는 그 市中時勢에 각각의 附隨費用을 加算한 金額에 의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各 事業年度終了時에 在庫資產이 어느 쪽의 時勢에 의해 取得된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期中 取得數量의 比, 其他 適正한 方法에 의해 區分한다.

(輸入原材料 등의 時價)

5－2－16 輸入原材料 등에 대해 低價法을 適用하는 경우의 期末時價는 그 輸入原材料 등과 種類 등을 같이하는 原材料 등을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國內에서 輸入에 의해 取得하기 위해 통상 소요하는 價額에 의한다〔1980 直法 2－15 改正〕.

3. 在庫資產 評價額의 計算과 評價換 등과의 關係

(期中에 評價換을 한 在庫資產의 帳簿價額 및 評價額의 計算)

5－2－17 法人이 事業年度 도중에 組織變更, 更生手續의 開始決定 등에 의해 그 소유하고 있는 在庫資產에 대해 評價換을 행한 경우에 評價換 直前

의 當該 資產의 帳簿價額은 그 評價換할 때를 事業年度終了時로 간주하여 選定하고 있는 評價方法에 따라 計算한 金額으로 하고, 評價換을 행한 在庫資產의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評價額은 評價換을 행했을 때에 그 評價換後의 金額에 의해 取得한 것으로 計上하는 것으로 한다.

4. 評價方法의 選定 및 變更〔1980 直法 2－8 改正〕

(評價方法의 選定單位의 細分)

5－2－18 法人은 在庫資產의 評價方法에 대해 事業所別로 또는 令 第28條 第1項 〈在庫資產 評價方法의 選定單位〉에서 행하는 在庫資產의 區分을 그 種類가 다른 것 별로, 其他 合理的인 區分別로 더욱 세분하여 각각 다른 評價方法을 選定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同項에서 정하는 在庫資產의 區分 또는 그 種類를 같이하는 在庫資產 中에서 個別法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구분하여 個別法을 選定할 수 있다.

(合併에 의해 引受받은 在庫資產의 評價方法)

5－2－19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으로부터 在庫資產을 引受받은 경우에 當該 在庫資產에 관련된 事業의 種類 中에서 當該 合併法人의 選定, 評價方法에 관련된 事業의 種類와 틀리는 것이 있을 때에는 當該 合併法人이 그 合併時에 當該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서 令 第29條 第2項 第3號 〈在庫資產 評價方法의 選定〉의 規定을 適用한다.

合併에 의해 增加한 事業所에 대해 事業所別로 評價方法을 選定하는 경우(合併前에 合併法人의 각 事業所에 관련된 評價方法이 전부 同一한 경우에 이것과 同一한 方法을 選定할 때는 제외)에 대해서도 똑같다〔1976 直法 2－39 追加〕.

(評價方法의 變更申請이 있는 경우의 「相當期間」)

5－2－20 일단 採用한 在庫資產의 評價方法은 特別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適用해야 하기 때문에 法人이 현재 따르고 있는 評價方法을 變更하기 위해 令 第30條 第2項 〈在庫資產 評價方法의 變更手續〉의 規定에 근거하여 그 變更承認申請書를 提出한 경우에 현재의 評價方法을 採用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變更이 合併에 따른 것인가 등 變更에 特別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同條 第3項의 相當期間을 經過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變更承認申請書의 提出을 현재의 評價方法을 採用하고 나서 3년을 經過한 후에 했을 경우라도 變更하는 데 대한 合理的인 理由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變更을 承認하지 않을 수 있다.

第3節 原價差額의 調整

(原價差額의 調整)

5－3－1 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製造 등을 한 在庫資產에 대해 算定한 取得價額이 令 第32條 第1項 〈在庫資產의 取得價額〉에서 規定하는 取得價額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差額(以下 이 節에서 「原價差額」이라 함) 중에서 期末在庫資產에 대응하는 部分의 金額은 當該 期末在庫資產의 評價額에 加算한다.

(原價差額의 範圍)

5－3－2 原價差額에는 材料費差額, 勞務費差額, 經費差額 외에 內部對替差額을 포함하는 것에 留意한다.

(原價差額의 調整期間)

5－3－2의 2 事業年度가 1년인 法人의 原價差額調整은 계속 適用을 條件으로, 각 事業年度를 當該 事業年度開始日부터 中間事業年度終了日까지의 期間(以下「上期」라 함)과 中間事業年度終了日의 翌日에서 確定事業年度(當該 中間事業年度를 포함한 事業年度를 말한다. 이하 같음) 終了日까지의 期間(以下「下期」라 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期間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5－3－3 및 5－3－4의 適用에 있어서는 上期 및 下期의 각 기간마다 그 기간에 발생한 原價差額에 의해 調整與否를 判定하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原價差額의 調整을 要하지 않는 경우)

5－3－3 原價差額이 少額(總製造費用의 대략 1% 상당액 이내의 金額)인 경우에 法人이 그 計算을 명확하게 한 明細書를 確定申告書에 添附했을 때에는 原價差額의 調整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 總製造費用의 計算이 곤란할 때에는 法人의 計算에 의한 製品引受高 合計에 在工品 및 半製品의 期末在庫高를 加算하여 在工品 및 半製品의 期首在庫高를 控除하여 計算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原價가 少額인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事業의 種類別로 判定하는 것이지만, 法人이 製品의 種類別로 原價計算을 행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製品의 種類가 달라질 때마다 判定할 수 있다.

(原價差額의 調整을 工場別로 할 때 調整의 省略)

5－3－4 原價差額이 事業의 種類別로 또는 製品의 種類가 다른것 別로 總製造費用의 대략 1% 상당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도 法人이 原價差額의 調整單位를 工場別로 더욱 細分할 때에는 各 工場에 있어서 當該 調整單位別로 原價差額 中에서 각각의 總製造費用의 1% 상당액 이내인 것에 대해

서는 5－3－3에 준하여 調整을 하지 않을 수 있다〔1980 直法 2－15 改正〕.

(原價差額의 簡便調整方法)

5－3－5 法人이 각 事業年度에 생긴 原價差額을 在工品, 半製品 및 製品의 順으로 調整하지 않고, 그 原價差額을 일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期末在庫資產에 配賦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15 改正〕.

〈算 式〉

$$\text{原價差額} \times \frac{\text{期末의 製品, 半製品, 在工品의 合計額}}{\text{賣上價額＋期末의 製品, 半製品, 在工品 合計額}}$$

(註) 1. 算式 中 分母 및 分子의 金額은 法人의 計算額에 따른다.

2. 이 算式은 事業의 種類別(法人이 原價差額이 少額인가 어떤가의 判定을 製品의 種類가 다를 때마다 행할려고 할 경우에는 製品의 種類가 다를 때마다)로 適用한다.

3. 法人이 直接原價計算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調整方法을 適用하지 않는다. 단, 이 調整方法을 適用하는 데 있어서 合理性이 있다고 인정하여 管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 所管法人에서는 管轄國稅局長)이 承認한 경우에는 이 調整方法을 適用할 수 있다.

(原價差額 簡便調整方法의 特例)

5－3－5의 2 5－3－2의 2의 適用을 받은 法人이 下期에 移越된 個個의 在庫資產에 原價差額을 配賦하지 않고 일괄하여 處理하는 경우에 있어서 下期에 原價差額의 調整을 5－3－5의 方法에 의할 때에는 同項의 算式 中 「原價差額」이라고 한 것은 「下期에 생긴 原價差額에 上期末의 在庫資產에 一括配賦한 原價差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賣上原價」라고 한 것은 「下期에 관련된 賣上原價」로 각각 바꾸어 適用하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內部對替差額의 調整)

5－3－6 法人이 內部對替差額의 調整을 他의 原價差額으로 구분하여 그 內部對替差額에 適合한 合理的인 調整方法에 의해 行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原價差額을 一括調整한 경우에 翌期의 處理)

5－3－7 法人이 原價差額을 個個의 在庫資產에 配賦하지 않고 一括하여 處理하고 있을 경우의 金額은 翌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할 수 있다.

(原材料引受差額 處理의 簡便計算方式)

5－3－8 法人이 原材料의 引受에 대하여 見積原價 등을 採用하고 있는 경우에 생기는 原材料引受差額에 대하여 原材料引出高와 期末原材料在庫高에 適正하게 配賦하고, 期末原材料在庫高에 대응하는 부분의 金額을 個個의 資產에 配賦하지 않고 一括하여 處理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註) 當期原材料引出高에 대응하는 原材料引受差額은 當期의 原價差額에, 期末原材料在庫高에 對應하는 原材料引受差額은 翌期의 製造原價에 포함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申告調整되는 貸方原價差額)

5－3－9 法人이 在庫資產에 대해 算定한 取得價額이 令 第32條 第1項〈在庫資產의 取得價額〉에서 規定하는 取得價額을 넘을 경우의 그 差額 중에서 法 또는 措置法의 規定에 의해 損金額에 算入되지 않기 때문에 確定申告할 때에 自己否認한 金額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當該 申告에 관련된 申告書에 調整을 행할 수 있게 한다〔1977 直法 2－33, 1980 直法 2－15 改正〕.

第 4 節　在庫의 手續〔1980 直法 2－15 追加〕

(在庫의 手續)

5－4－1 在庫資產에 대해서는 각 事業年度終了時에 實地在庫를 해야 하지만, 法人이 그 業種·業態 및 在庫資產의 性質 등에 따라 그 實地在庫 대신에 分計劃在庫, 其他 合理的인 方法에 의해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在庫資產의 在庫 等을 算定하려고 할 경우에는 계속 적용을 條件으로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15 追加〕.

第6章 有價證券의 評價

第1節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有利한 發行價額)

6－1－1 令 第38條 第1項 第2號 〈有利한 發行價額으로 取得한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에서 規定하는 「有利한 發行價額」이란, 當該 新株의 發行價額을 決定하는 날의 現況에서 當該 發行 法人株式의 價額에 比하여 社會通念上 그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價額을 밑도는 價額을 말하는 것이다〔1973 直法 2－81 追加〕.

(註) 1. 社會通念上 상당한다고 認定되는 價額을 밑도는가 어떤가는 當該 株式의 價額과 發行價額의 差額이 當該 株式價額의 대략 10% 상당액 이상인가 아닌가에 따라 判定한다.

2. 發行價額을 決定하는 날의 現況에서 當該 株式의 價額이란 決定日의 價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決定日前 1月間의 平均株價 등 發行價額을 決定하기 위한 基礎로서 相當하다고 인정되는 價額을 말한다.

(株主로서 取得한 것의 意義)

6－1－2 令 第38條 第1項 第2號 〈有利한 發行價額으로 取得한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에서 規定하는 「株主 등으로서 取得한 것」이란, 株主 등의 地位에 근거하여 平等하게 取得한 것을 말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73 直法 2－81 追加〕.

(轉換에 의해 取得한 株式의 取得價額)

6－1－3 轉換社債에 대해 轉換條件으로 규정되어 있는 轉換價額이 轉換社債 發行時 發行法人의 株式價額을 基礎로 合理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當該 轉換社債의 轉換에 의해 取得한 株式 1주당 取得價額은 그 轉換에 관련된 轉換社債의 轉換直前 帳簿價額(그 轉換에 있어서 端數處理 때문에 交付받는 金錢이 있을 때에는 그 金錢을 控除한 金額)을 轉換에 의해 取得한 株式의 數로 나누어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1973 直法 2－81 追加, 1980 直法 2－15, 1982 直法 2－11 改正〕.

(註) 本文의 「轉換社債의 轉換直前 帳簿價額」은 當該 轉換社債에 대해 그 轉換時를 事業年度終了時로 간주하여 選定한 評價方法(低價法을 選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基礎가 되는 原價法)에 의해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의 行使에 의해 取得한 株式의 取得價額)

6－1－3의 2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의 내용으로 정해진 株式의 發行價額이 當該 新株引受權附社債 發行時 發行法人의 株式 價額을 基礎로 合理的으로 정해진 경우에 當該 新株引受權의 행사에 의해 取得한 株式 1주당 取得價額은 원칙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과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當該 行使直前의 帳簿價額에 대해서는 6－1－3의 (註)를 準用한다〔1982 直法 2－11 追加〕.

(1) 金錢에 의해 拂入을 한 경우

〈算　式〉

$$\text{新株 1株當 拂入金額} + \frac{\left\{\begin{array}{l}\text{當該 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當該 行使直前의 帳簿價額이 當該 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面金額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部分의 金額}\end{array}\right.}{\text{當該 行使에 의해 取得한 新株의 數}}$$

(註) 新株引受權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算式 中의 「當該 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當該 行使直前의 帳簿價額이 當該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面金額을 초과한 경우 그 超過한 部分의 金額」을 「當該 新株引受權附의 當該 行使

直前의 帳簿價額」으로 바꿀 수 있다.

(2)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價額을 가지고 拂入이 있다고 하는 경우

〈算 式〉

$$\left[\begin{array}{l}\text{當該 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面金額} \times \dfrac{\text{當該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의 附與割合}}{\text{當該 行使에 의해 取得한 新株의 數}} - \text{當該 行使에 있어서 端數處理 때문에 交付를 받는 金錢 등의 額}\end{array}\right] + \text{當該 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當該 行使直前의 帳簿價額이 當該 拂入에 관련된 新株引受權附社債의 額面金額을 넘을 경우의 그 초과한 部分의 金額}$$

(有利한 發行價額으로 新株 등이 發行된 경우에 有價證券의 價額)

6－1－4 令 第38條 第1項 第2號 〈有利한 發行價額으로 取得한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에서 規定하는 有價證券의 拂入에 관련된 期日에 있어서 1주당 價額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와 같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15 改正〕.

(1) 新株가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경우는 그 新株의 拂入期日에서 當該 新株의 最終價格

(2) 舊株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었으나 新株가 上場되지 않은 경우는 新株의 拂入期日에 있어서 舊株의 最終價格을 基準으로 當該 新株에 대해 合理的으로 計算되는 價額

(3) (1) 및 (2) 以外의 경우는 그 新株 또는 出資의 拂入期日에 當該 新株에 대해 9－1－11에서 9－1－15까지(時勢變動의 기미가 있는 株式의 價額 등)에 준하여 合理的으로 計算되는 價額

(有價證券의 購入을 위한 附隨費用)

6－1－5 令 第38條 第1項 第3號 〈購入한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에서 規定하는 「其他 그 有價證券의 購入을 위해 소요한 費用」에는 有價證券을 取

得하기 위하여 소요한 通信費, 名義書換料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外國有價證券의 取得 때 徵收되는 有價證券取得稅, 其他 여기에 類似한 稅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15 改正〕.

(公社債의 經過利子)

6－1－6 法人이 國債, 地方債 또는 社債(소위 金融債 등 會社 이외의 法人이 特別한 法律에 의해 發行하는 債券으로 利子附인 것을 포함)를 그 利子의 計算期間 중도에 購入하여 直前 利拂期에서 그 購入時까지의 期間에 따라 그 債券의 發行條件인 利率에 의해 計算되는 經過利子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拂한 경우에 當該 金額을 이들 債券의 取得價額에 포함하지 않고 當該 債券의 購入後 最初로 到來하는 利拂期까지 前拂金으로 經理할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15, 1991 課法 2－4 改正〕.

(政府保證債의 應募豫約料에 상당하는 金額)

6－1－7 法人이 새로 發行된 政府保證債를 引受할 경우(證券會社의 募集에 따라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收入하는 應募豫約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發行價額에서 控除하여 납입하고 그 납입한 金額을 當該 政府保證債의 取得價額으로 經理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73 直法 2－81 改正〕.

(註) 金融機關 등이 政府保證債를 引受함으로써 收入하는 引受責任料 및 募集取扱料에 상당하는 金額 또는 國債를 引受함으로써 收入하는 手數料는 그 收入해야 할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轉換社債를 轉換한 경우의 經過利子의 取得價額算入)

6－1－8 法人이 轉換社債를 그 利子의 計算期間 중도에 購入했기 때문에 6－1－6의 取扱을 適用하여 經過利子에 相當하는 金額을 前拂金으로 經理

하고 있을 경우에 그 購入後 最初로 到來하는 利拂期前에 株式으로 轉換했을 때에 當該 前拂金은 株式의 取得價額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 단, 當該 經過利子에 대응하는 기간에 대해 益金이 算入되어야 할 利子의 支拂을 받는 경우의 當該 前拂金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않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15 改正〕.

(註) 同一種目의 轉換社債를 그 利子의 計算期間 중도에 2회 이상에 걸쳐 購入하고 각각의 經過利子에 상당하는 金額을 前拂金으로 經理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그 購入後 最初로 到來하는 利拂期前에 그 일부를 株式으로 轉換하거나 他에 讓渡한 때에는 다음 算式에 의해 當該 前拂金의 合計額 중에서 株式의 取得價額에 算入하거나 讓渡와 함께 損金에 算入하는 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算 式〉

$$\text{當該 前拂金의 合計額} \times \frac{\text{그 株式에 轉換하거나 讓渡한 轉換社債의 額面金額의 合計額}}{\text{그 購入한 轉換社債 額面金額의 合計額}}$$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을 행사한 경우의 經過利子의 取得價額算入)

6－1－8의 2 6－1－8은 新株引受權附社債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을 행사하여 株式을 取得한 경우(當該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價額을 가지고 納入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準用한다〔1982 直法 2－11 追加〕.

(公社債에 대해 減額을 하는 경우의 簡便法)

6－1－9 法人이 公社債(轉換社債 및 新株引受權附社債를 제외, 以下 6－1－9에서 같음)의 取得價額이 그 額面金額을 넘기 때문에 商法 第285條의 5 〈社債, 其他의 債券評價〉의 規定에 따라 그 帳簿價額에 대해 상당의 減額을 할 경우에 當該 事業年度에 同一種目의 公社債를 2회 이상에 걸쳐 賣買하기 때문에 그 減額하려고 하는 金額의 計算이 곤란할 때에는 繼續하여 種目을 같이하는 公社債別로 다음과 같이 그 減額하려고 하는 金額을 計

算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1)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소유하는 當該 公社債의 額面金額의 合計額이 當該 事業年度開始時에 소유하고 있던 當該 公社債의 額面金額의 合計額을 넘는 경우

〈算 式〉

$$\left[\text{額面超過額} \times \frac{\text{分母의 金額} - \left(\text{當該 事業年度開始時 當該 公社債의 額面金額 合計額}\right)}{\text{當該 事業年度終了時 當該 公社債의 額面金額 合計額}}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月數} \times \frac{1}{2}}{\text{當該 事業年度月數} \times \frac{1}{2} + \text{翌事業年度開始日에서 償還日까지의 月數}}\right] + \left[\text{額面超過額}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開始時 當該 公社債의 額面金額 合計額}}{\text{當該 事業年度終了時 當該 公社債의 額面金額 合計額}}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의 月數}}{\text{當該 事業年度開始日에서 償還日까지의 月數}}\right]$$

(2) (1) 이외의 경우

〈算 式〉

$$\text{額面超過額}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의 月數}}{\text{當該 事業年度開始日에서 償還日까지의 月數}}$$

(註) 1. 算式 中「額面超過額」이란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當該 公社債의 帳簿價額(選定하고 있는 評價方法에 의해 計算한 金額으로 하지만, 低價法을 選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基礎가 되는 原價法에 의해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의 合計額이 額面金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超過한 部分의 金額을 말한다.

2. 算式의 月數는 달력에 따라 計算하고 1個月 未滿의 端數는 1個月로 한다.

第 2 節 株式 取得價額의 特例

(利益 등의 資本編入과 株式分割이 행하여진 경우의 株式 取得價額)

6－2－1 法人이 소유하는 株式에 대해 商法 第293條의 2 〈利益의 資本

編入〉의 規定에 의한 利益의 資本編入 또는 同法 第293條의 3 〈準備金의 資本編入〉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利益積立金에 상당하는 金額에 한함)의 資本編入(以下 6－2－1에서 「利益 등의 資本編入」이라 함)과 同法 第218條 〈株式의 分割〉의 規定에 의한 株式分割이 이루어진 경우에 利益 등의 資本編入에 대해서는 令 第42條 〈利益積立金額의 資本編入의 경우의 株式取得價額〉의 規定을, 株式分割에 대해서는 令 第40條 第1項 〈株式의 分割 또는 併合의 경우의 株式取得價額〉의 規定을 각각 적용하는 것에 留意한다〔1991 課法 2－4 追加〕.

(註) 이 경우에 있어서 令 第40條 第1項에서 規定하는 舊株 1株의 從前帳簿價額은 令 第42條의 規定 適用後에 同條에서 規定하는 1株當의 取扱價額으로 하는 것에 留意한다.

(無償減資가 있는 경우의 株式 取得價額)

6－2－2 法人이 소유하는 株式(出資를 포함, 以下 6－2－2에서 「舊株」라 함)의 일부가 그 舊株를 發行한 法人의 無償減資에 의해 消滅한 경우에는 그 減資가 있던 날이 속한 事業年度 以後의 각 事業年度에 令 第34條 第1項 〈有價證券의 評價方法〉의 規定에 의한 舊株 評價額 計算에 대해서 그 計算의 基礎가 되는 舊株 1株當 帳簿價額은 舊株 1株의 從前帳簿價額에 減資 直前에 法人이 소유한 舊株의 數를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減資直後에 法人이 소유한 舊株의 數로 나누어 計算한 金額으로 하고, 또 그 舊株는 同日에 取得한 것으로 간주하여 取扱함.

(淸算中의 法人이 繼續한 경우 등의 代身株式 評價)

6－2－3 發行法人이 殘餘財産의 일부를 分配한 후에 當該 發行法人의 株式을 取得한 경우에 있어서도 法 第24條 第2項 第3號 〈解散法人의 계속 등에 의한 看做配當〉의 規定에 의해 配當 등의 額으로 간주되는 金額이 있

을 때에는 當該 株式에 대해 令 第43條 第2項〈解散法人의 계속에 의한 看做配當이 있는 경우의 株式 取得價額〉의 規定 適用이 있는 것에 留意한다.

(新株引受權을 讓渡했을 경우의 原價)

6－2－4 令 第41條〈增資에 의해 取得한 株式의 取得價額〉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있어서 令 第47條〈舊株 1株의 從前 帳簿價額〉의 「增資 등이 있을 때」는 新株割當의 基準이 됐을 때에 의하는 것이므로 法人이 株主의 地位에 근거하여 割當을 받은 新株引受權을 讓渡한 경우 또는 令 第139條의 8 第1項 各號〈1株 未滿의 株式處理의 경우에 所得計算의 特例〉에 열거하는 1株 未滿의 株式 또는 失權株에 代身金의 交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當該 讓渡의 代價에 관련된 原價로 하거나 法人의 經理를 條件으로 當該 代身金에 관련된 原價로 한다〔1975 直法 2－11, 1980 直法 2－15, 1982 直法 2－11 改正〕.

〈算　式〉

$$\left\{\frac{\text{舊株 1株當 從前의 帳簿價額} + \left[\text{新株1株當 拂入金額} + \frac{\text{資本 또는 出資에 編入한 利益積立金額}}{\text{新株의 總數}}\right] \times \text{舊株1株當 新株割當數} - \text{新株1株當 拂入金額}}{1 + \text{舊株 1株當의 新株割當數}}\right\} \times \text{讓渡한 新株引受權數, 1株未滿의 株式數 또는 失權株數}$$

(註) 算式 中의 「1株未滿의 株式數」란, 舊株數에 舊株 1株에 대해 割當된 新株의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數에 1株에 미치지 않는 端數가 있는 경우에 그 端數(端株原簿에 記載되지 않은 것에 한함)를 말함.

第3節　有價證券의 評價方法

(證券去來所의 範圍)

6－3－1 令 第34條 第1項〈有價證券의 評價方法〉에서 規定하는 證券去

來所에는 外國의 法令에 근거하여 設立된 證券去來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評價의 方法을 選定할 경우에 上場有價證券과 그 외의 것과의 區分)

6－3－1의 2 有價證券에 대하여 評價方法을 選定하는 경우에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과 上場되지 않는 有價證券과의 區分은 다음과 같다〔1975 直法 2－21 改正〕.

(1) 法人이 소유하는 株式 中에서 同一會社가 發行하는 것으로 舊株는 上場되어 있으나, 新株는 舊株로 併合될 때 上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新株는 上場된 株式으로 한다.

(2) 法人이 所有하는 債券 中에서 同一法人이 發行하는 것으로 發行日에 의해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것과 上場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法人이 上場된 債券을 上場되지 않은 債券에 포함하여 하나로 區分으로 할 때에는 그 區分을 認定한다.

(其他 여기에 준하는 관계있는 者의 範圍)

6－3－2 令 第34條 第3項 〈企業支配株式의 意義〉에서 規定하는 「其他 여기에 준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는 會社 以外의 法人으로 令 第4條 第2項 各號 및 第3項 〈特殊關係法人〉에서 規定하는 特殊關係가 있는 者가 포함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株主 1人 및 令 第4條에서 規定하는 特殊한 관계가 있는 個人 또는 法人이 소유하는 會社 以外 法人의 出資金이 當該 法人의 出資金의 50% 以上에 상당하는 경우의 當該 會社 以外의 法人은 여기에 해당한다.

(有價證券의 種類)

6－3－3 令 第34條 第1項 〈有價證券의 評價方法〉에서 規定하는 有價證

券의 種類는 대략 다음에 열거하는 區分에 의한다. 이 경우에 外國 또는 外國法人이 發行하는 有價證券에 대해서도 國家 또는 內國法人이 發行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有價證券과 각각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1980 直法 2－8, 1982 直法 2－11, 1990 直法 2－1 改正〕.

(1) 國債 및 地方債

(2) 社債(소위 金融債 등 會社 以外의 法人이 特別한 法律에 의해 發行하는 債券을 포함, 轉換社債 및 新株引受權附社債를 제외)

(3) 轉換社債

(4) 新株引受權附社債

(5) 株式(新株引受權을 포함)

(6) 證券投資信託 및 貸付信託의 受益證券

(7) (1)에서 (6)까지 열거하는 有價證券 以外의 有價證券

(信託을 하고 있는 有價證券)

6－3－3의 2 法人이 信託(金錢의 信託을 제외)을 하고 있는 財産 중에서 當該 法人이 소유하고 있는 有價證券의 種類 및 種目(以下 6－3－5에서 「種類 등」이라 함)을 같이하는 有價證券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信託에 관련된 有價 證券과 當該 法人이 소유하는 有價證券을 區分하지 않고 令 第34條 〈有價證券의 評價方法〉 및 第38條에서 第47條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등〉까지의 規定을 適用하기 때문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註) 金錢의 信託에 관련된 有價證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合同運用信託 및 證券投資信託에 관련된 有價證券
2. 法 第4條 第1項 〈退職年金 등 積立金額의 計算〉에서 規定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 등에 의한 信託에 관련된 有價證券
3. 指定單獨運用의 金錢信託에 관련된 有價證券

(證券業을 營爲하는 法人의 期末評價額 計算의 特例)

6－3－4 證券業을 영위하는 法人이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企業支配株式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에 대하여 事業所別로 다른 評價方法을 選定할 수 있다.

(低價法의 時價)

6－3－5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에 대해 低價法을 適用하는 경우에 令 第34條 第1項 第1號② 〈低價法〉에서 規定하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그 取得 때문에 通常 要하는 價額」(以下 6－3－5에서 「期末의 時價」라 함)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그 有價證券과 種類 등을 같이하는 有價證券에 관련된 規則 第22條 〈有價證券의 價額〉에서 정하는 最終價格(以下 6－3－5의 2까지 「最終價格」이라 함)에 購入手數料, 其他 當該 有價證券을 取得하기 위해 소요하는 費用을 加算한 金額에 의한다. 이 경우의 最終價格은 그 有價證券이 2이상의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것일 때에는 原則的으로 그 上場되어 있는 證券去來所 중에서 주된 證券去來所의 最終價格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1983 直法 2－3 改正〕.

(註) 1. 本文의 「購入手數料, 其他 當該 有價證券을 取得하기 위해 소요하는 費用」은 當該 有價證券을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일괄하여 取得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소요하는 이들 費用에 의할 수가 있다.

2. 外國의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外貨建有價證券의 期末時價에 대해서는 13의 2－2－8(外貨建有價證券의 時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留意한다.

(上場國債의 最終價格)

6－3－5의 2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國債에 대하여 大口賣買去來와 小口賣買去來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最終價格이 公表된 경우에 當該 國債의 最終價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區分에 따라, 각각 다음에 열거하

는 價格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 大口賣買去來 및 小口賣買去來 모두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最終價格이 있을 경우에는 大口賣買去來의 最終價格

(2) 大口賣買去來 또는 小口賣買去來의 어느 한편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最終價格이 있을 경우에는 當該 最終價格

(3) 大口賣買去來 및 小口賣買去來의 어느 쪽에도 當該事業年度終了日에 最終價格이 없을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日前 直近日에 (1) 또는 (2)에서 열거한 最終價格

(期中에 評價換을 한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評價額의 計算)

6－3－6 法人이 事業年度 도중에 組織變更, 更生手續의 開始決定 등에 의해 그 소유하고 있는 有價證券에 대해 評價換을 행한 경우에는 그 評價換直前의 當該 有價證券 帳簿價額은 그 評價換을 할 때를 事業年度終了時로 간주하여 選定된 評價方法에 의해 計算한 金額으로 하고, 評價換을 한 有價證券의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評價額은 그 評價換을 하였을 때에 評價換後의 金額에 의해 取得한 것으로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

(非上場有價證券이 上場有價證券으로 된 경우 등의 評價方法 選定)

6－3－7 法人이 소유하는 有價證券으로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않았던 것이 새로 上場된 경우의 當該 有價證券은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날에 取得한 것으로 令 第35條 第2項 〈有價證券의 評價方法의 届出〉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株式으로 企業支配株式에 해당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合併에 의해 引受한 有價證券의 評價方法)

6－3－8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으로부터 有價證券을 引受한 경우에 當

該 有價證券 評價方法의 選定에 대하여는 當該 合併法人이 合併時에 當該 有價證券을 새로 取得한 것으로 하여 令 第35條 第2項 〈有價證券 評價方法의 選定〉의 規定을 適用한다〔1976 直法 2－39 追加〕.

(評價方法의 變更申請이 있는 경우의 「相當期間」)

6－3－9 5－2－20은 有價證券의 評價方法에 대하여 變更承認申請書의 提出이 있는 경우에 令 第36條 第2項 〈有價證券 評價方法의 變更手續〉의 規定適用에 대하여 準用한다〔1980 直法 2－8 追加〕.

第 4 節 信用去來 등에 의한 株式의 取得價額

(買入에 관련된 株式의 取得價額)

6－4－1 令 第47條의 2 〈信用去來 등에 의한 株式의 取得價額〉에서 規定하는 「買入에 관련된 株式을 取得하기 위해 소요한 金額」에는 當該 買入에 소요한 委託手數料를 포함해야 하지만 當該 買入에 관련된 支拂日步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1975 直法 2－21 追加〕.

(配當落調整額 등의 處理)

6－4－2 信用去來와 관련하여 株式을 買入한 法人이 證券會社 또는 證券金融會社로부터 支拂받는 配當落調整額 및 新株引受權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은 當該 買入에 관련된 株式의 取得價額에서 控除하는 것으로 하고, 新株의 強賣를 한 法人이 證券會社 또는 證券金融會社에 支拂하는 配當落調整額 및 新株引受權價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當該 強賣에 관련된 株式의 讓渡價額에서 控除하는 것으로 한다. 단, 配當落調整額에 상당하는 金額에 대해

서는 法人이 계속하여 當該 買入에 관련된 配當落調整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益金에 算入하고, 當該 強賣에 관련된 配當落調整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損金에 算入하는 經理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75 直法 2－21 追加〕.

(註) 新株引受權價額이란 信用去來에 관련된 株式에 대해 事業年度引受權이 賦與된 경우에 證券會社 또는 證券金融會社가 強賣를 한 者로부터 徵收하여 買入한 者에게 支拂하는 當該 引受權에 상당하는 金額을 말한다.

(信用買株式에 대한 低價法의 不適用)

6－4－3 信用去來에 관련된 決濟를 強賣 또는 買入에 의할 경우 그 讓渡原價는 買入에 관련된 株式의 取得價額에 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法人이 각 事業年度終了時에 所有하고 있던 買入에 관련된 株式으로 그 決濟가 未了된 것에 대해 低價法을 適用할 수 없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第 7 章　減價償却資産의 償却 등

第 1 節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1. 減價償却資産

(書畵骨董 등)

7－1－1 書畵骨董(복제와 같은 것으로 단순히 장식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제외, 이하 7－1－1에서 같음)과 같이 時間의 경과에 의해 價値가 減少하지 않는 資産은 減價償却資産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書畵骨董에 해당한다〔1980 直法 2－8, 1989 直法 2－7 改正〕.

(1) 古美術品, 古文書, 出土品, 遺物 등과 같이 歷史的價値 또는 稀少價値를 가지며 代替性이 없는 것

(2) 美術關係의 年鑑 등에 登載되어 있는 作者의 制作에 관련된 書畵, 彫刻, 工藝品 등

(註) 書畵骨董에 해당하는가 어떤가가 명백하지 않은 美術品 등으로 그 取得價額이 1점 20만円(總畵에 있어서는 號 2만円) 未滿인 것에 대해서는 減價償却資産으로 取扱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貴金屬 素材의 價額이 大部分을 차지하는 固定資産)

7－1－2 유리纖維製造用의 白金製溶解爐, 光學유리製造用의 白金製 도가니, 수산화칼륨製造用의 銀製냄비와 같이 素材가 되는 貴金屬의 價額이 取得價額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또 一定期間 사용후는 素材로 還元하여 고쳐서 再使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減價償却資産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 資產을 고치는 데 소요하는 費用(地金의 補給 때문에 소요하는 費用을 포함)은 그 고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白金노즐은 減價償却資產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것과 유사한 工具로서 貴金屬을 主體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白金노즐에 준하여 減價償却을 할 수 있게 한다.

(稼動休止資產)

7－1－3 稼動을 하지 않고 있는 資產이라도 그 休止期間中 필요한 維持補修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움직일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減價償却資產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他의 場所에서 사용하기 위해 移設中인 固定資產에 대해서는 移設期間이 그 移設 때문에 通常 要하는 期間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減價償却을 계속할 수 있다.

(建設中인 資產)

7－1－4 建設中인 建物, 機械 및 裝置 등의 資產은 減價償却資產에 해당되지 않으나, 建設假計定으로 表示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完成한 部分이 事業用으로 제공되고 있을 때에는 減價償却資產에 該當되는 것으로 한다.

(常備하는 專用部品의 償却)

7－1－4의 2 예를 들어 航空機의 豫備엔진, 電氣自動車의 豫備밧데리 등과 같이 減價償却資產을 事業用으로 제공하기 위해 必要不可缺한 물건으로 常備되어 반복해서 사용되는 專用部品(通常 남에게 轉用되지 않는 것에 한함)은 當該 減價償却資產과 一體된 것으로서 減價償却을 할 수 있다〔1980 直法 2－8 追加〕.

(工業所有權의 實施權 등)

7－1－4의 3 法人이 他者가 소유하는 工業所有權(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및 商標權을 말함. 以下 같음)에 대해 實施權 또는 使用權을 取得한 경우에 그 取得 때문에 소요하는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工業所有權에 준하여 取扱한다. 이 경우에 그 實施權 또는 使用權의 그 取得後에 存續期間이 當該 工業所有權의 耐用年數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當該 存續期間의 年數(1年 未滿의 端數는 버림)를 그 耐用年數로 할 수 있다〔1980 直法 2－8 追加〕.

(織機의 登錄權利 등)

7－1－5 纖維工業에 있어서 織機의 登錄權利, 許可漁業의 出漁權, 택시業의 소위 넘버權, 內航海運業의 소위 建造充當權과 같이 法令의 規定, 行政官廳의 指導 등에 의한 規制에 근거하는 登錄, 認可, 許可, 割當 등의 權利를 取得하기 위하여 支出하는 費用은 營業權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예를 들어 當該 權利에 관련된 事業을 廢止하는 者에 대하여 殘存業者가 負擔하는 補償金과 같이 當該 權利의 維持 또는 保全을 위해 支出하는 費用에 대해서도 營業權으로 減價償却을 할 수 있다.

(無形減價償却資產의 事業用으로 제공한 時期)

7－1－6 令 第13條 第8號 〈無形減價償却資產의 範圍〉에서 열거하는 無形減價償却資產 중에서 漁業權 및 工業所有權에 대해서는 그 存續期間의 經過에 따라 償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取得日부터 事業用으로 제공한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改正〕.

(溫泉利用權)

7－1－7 法人이 溫泉水가 湧出하는 土地를 取得한 경우에 있어서 그 取得에 要한 金額에 當該 土地에 隣接한 溫泉水를 湧出하지 않는 土地의 價額에 比準하여 計算한 土地價額을 控除한 金額 또는 溫泉을 利用하는 權利를

取得하기 위하여 소요한 金額에 대해서는 水利權에 준하여 取扱한다. 단, 溫泉을 利用하는 權利만을 取得한 경우에 그 利用에 대해 契約期間의 規定이 있는 것(契約期間을 延長하지 않는 취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그 契約期間을 耐用年數로 償却할 수 있다.

(公共下水道施設 使用을 위한 負擔金)

7－1－8 法人이 下水道法 第2條 第3號〈公共下水道의 定義〉에서 規定하는 公共下水道를 使用하는 排水設備를 新設 또는 擴張하는 경우에 있어서 公共下水道管理者에 대해 그 新設 또는 擴張에 의해 必要한 公共下水道의 改築에 소요하는 費用을 負擔할 때의 負擔金에 대해서는 水道施設利用權에 준하여 取扱한다.

(電氣通信施設利用權의 範圍)

7－1－9 令 第13條 第8號⑯〈電氣通信施設利用權〉에서 規定하는 電氣通信施設利用權이란, 電氣通信事業法 施行規則 第3條 第2項〈電氣通信役務의 種類〉의 表에 열거하는 役務의 提供을 받는 權利 중에서 電話加入權(加入電話契約에 근거하여 加入電話의 提供을 받는 權利를 말한다) 및 여기에 준하는 權利를 제외한 모든 權利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電信役務」, 「專用役務」, 「데이타通信役務」, 「디지털 데이타傳送役務」, 「無線呼出役務」 등의 提供을 받는 權利는 여기에 해당한다〔1985 直法 2－11, 1990 直法 2－6 改正〕.

(註) 「여기에 준하는 權利」에는 예를 들어 同表에 열거하는 役務의 提供을 받는 權利 中에서 自動車電話, 携帶電話 등의 役務提供을 받는 權利가 포함된다.

(社歌 등)

7－1－10 社歌 등의 制作에 소요하는 費用은 그 支出을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1980 直法 2－8 追加, 1985 直法 2－11

改正〕.

2. 少額의 減價償却資産 등

(少額 減價償却資産의 取得價額 判定)

7－1－11 令 第133條 〈少額 減價償却資産의 取得價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取得價額이 20만円 미만인가 어떤가는 통상 1단위로 去來되는 그 단위, 예를 들어 機械 및 裝置에 대해서는 1대 또는 1基마다, 工具·器具 및 備品에 대해서는 1個·1組 또는 한벌別로 判定하고, 構築物 중에서 예를 들어 枕木·電柱 등 團體에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工事別로 判定한다〔1970 直審(法) 58, 1974 直法 2－71, 1989 直法 2－7 改正〕.

(使用機能期間이 1년 미만인 減價償却資産의 範圍)

7－1－12 令 第133條 〈少額 減價償却資産의 取得價額 損金算入〉의 使用可能期間이 1년 미만인 減價償却資産이란, 法人이 속한 業種(예를 들어 紡績業, 鐵鋼業, 建設業 등의 業種)에서 種類가 같은 減價償却資産의 使用狀況, 補充狀況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消耗性인 것으로 認識되어 있는 減價償却資産으로 그 法人의 평균적인 사용상황, 補充狀況 등으로 보아 그 使用可能期間이 1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種類가 같은 減價償却資産 중에서 材質, 型式, 性能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使用狀況, 補充狀況 등도 현저하게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當該 材質, 型式, 性能 등이 다른 것 別로 判定할 수 있다〔1974 直法 2－71 改正〕.

(註) 平均的인 使用狀況, 補充狀況 등은 대략 過去 3년간의 平均値를 基準으로 判定한다.

第 2 節 減價償却의 方法

(部分的으로 用途를 다르게 한 建物의 償却)

7－2－1 하나의 建物이 부분적으로 用途가 다를때 그 用途를 다르게 하는 部分이 각각 상당한 規模이고, 또 그 用途에 따라 償却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當該 建物에 대해 각각 그 用途를 다른 部分別로 다른 償却方法을 選定할 수 있게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特別한 償却方法의 選定單位)

7－2－2 令 第48條의 2 第1項〈減價償却資產의 特別한 償却方法〉의 規定에 의한 特別한 償却方法의 選定은 令 第51條 第1項〈減價償却資產의 償却方法 選定〉에서 정하는 區分別로 해야 할 것이나, 法人이 減價償却資產의 種類(그 種類에 대해 構造, 用途, 細目 또는 設備의 種類 區分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 構造, 用途, 細目 또는 設備의 種類 區分)別로, 또 耐用年數가 다른 것 別로 選定한 경우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改正〕.

(特別한 償却方法의 承認)

7－2－3 法人의 申請에 관련된 特別한 償却方法에 대하여 申請書의 提出이 있었을 때에는 그 申請에 관련된 償却方法이 申請에 관련된 減價償却資產의 種類, 構造, 屬性, 使用狀況 등으로 보아 減價償却資產의 償却에 대해 適合한 것인가 아닌가, 償却限度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殘存價額, 償却率, 生產高 등이 合理的으로 算定되고 있는가 어떤가 등을 감안하여 承認의 適否를 判定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方法이 다음에 열거하는 條件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承認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그 方法이 算術級數法과 같이 定率法 또는 定額法에 유사한 것일 때에는 그 償却年數가 法定耐用年數보다 짧지 않고 殘存價額이 取得價額의

10% 상당액 이상일 것

(2) 그 方法이 生産高, 使用時間, 使用量 등을 基礎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方法이 減價償却資産의 償却에 대해 定率法 또는 定額法보다 合理的인 것이고, 또 減價償却資産에 관련된 總生産高, 總使用詩間, 總使用量 등이 合理的으로 計算되는 것으로 殘存價額이 取得價額의 10% 상당액 이상일 것

(3) 그 方法이 代替法에 유사한 것일 때에는 申請에 관련된 減價償却資産의 屬性, 代替狀況 등이 代替法의 對象이 되는 減價償却資産과 유사한 것이고, 取得價額의 50%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定率法 등에 의해 償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合併에 의해 引受한 減價償却資産의 償却方法)

7-2-4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으로부터 減價償却資産을 引受한 경우에 當該 減價償却資産 償却方法의 選定에 대해서는 當該 合併法人이 그 合併時에 當該 減價償却資産을 새로 取得하거나 그 合併에 의해 增加하게 되는 事業所를 새로 設置하는 것으로 令 第51條 第2項 第3號에서 第5號 〈減價償却資産의 償却方法의 選定〉까지의 規定을 適用한다〔1976 直法 2-39 追加, 1980 直法 2-8 改正〕.

(被合併法人이 代替法 등의 承認을 받은 경우)

7-2-5 被合併法人이 代替資産 償却限度額 計算에 대해 代替法을 選定하는 것에 대해 令 第49條 第1項 〈代替資産에 관련된 償却方法의 特例〉에서 規定하는 承認을 받은 경우에는 合併後 當該 代替資産 償却限度額의 計算에 대해서는 合併法人이 承認을 받은 것으로 取扱할 수 있다. 被合併法人이 償却限度額의 計算에 대해 令 第48條의 2 〈減價償却資産의 特別한 償却方法〉 또는 第50條 〈特別한 償却率에 의한 償却方法〉에서 規定하는 承認

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다〔1976 直法 2－39 追加, 1980 直法 2－8 改正〕.

(償却方法의 變更申請이 있을 경우의 「相當期間」)

7－2－6 일단 採用한 減價償却資產의 償却方法은 特別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適用해야 하므로 法人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償却方法을 變更하기 위해서는 令 第52條 第2項 〈減價償却資產 償却方法의 變更手續〉의 規定에 근거하여 그 變更承認申請書를 提出한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償却方法을 採用하고서 3년을 經過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變更이 合併에 隨伴한 것 등 그 變更하는 것에 대해 特別한 理由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同條 第3項의 相當期間을 經過하지 않은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變更承認申請書의 提出이 현재하고 있는 償却方法을 採用하고서 3년을 경과한 후에 했을 경우라도 그 變更한 것에 대해 合理的인 理由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變更을 承認하지 않을 수 있다.

第3節 固定資產의 取得價額 등

1. 固定資產의 取得價額

(高價買入資產의 取得價額)

7－3－1 法人이 부당하게 高價로 買入한 固定資產 또는 出資時에 過大하게 評價하여 引受한 固定資產에 대해서 買入價額 또는 引受價額 중에서 실질적으로 贈與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金額이 있을 경우에는 買入價額 또는 引受價額에서 當該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取得價額으로 하는 것에 留意해

야 한다.

(借入金의 利子)

7－3－1의 2 固定資產을 取得하기 위해 借入한 借入金의 利子는 설령 當該 固定資產의 使用開始前의 期間에 관련된 것이라도 이것을 當該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借入金의 利子를 建設中인 固定資產에 관련된 建設假計定에 포함한 때의 當該 利子는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되는 것이다.

(割賦購入資產 등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는 利子相當部分)

7－3－2 割賦販賣契約(延拂條件附讓渡契約을 포함)에 의해 購入한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에는 契約에서 購入代價와 割賦期間分의 利子 및 賣主側의 代金回收를 위한 費用 등에 상당하는 金額이 명확하게 區分되어 있는 경우의 利子 및 費用 相當額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固定資產의 取得에 관련하여 支出하는 地方公共團體에 대한 寄附 등)

7－3－3 法人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에서 工場誘致 등으로 土地, 其他 固定資產을 取得하여 購入의 代價外에 그 取得에 관련하여 都道府縣과 市町村 또는 이들이 指定하는 公共團體 등에 寄附金 또는 負擔金 名義로 金錢을 支出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支出한 金額이 實質的으로 보아 그 資產의 代價를 構成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 그 支出한 金額은 그 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는 費用의 例示)

7－3－3의 2 다음에 열거하는 費用은 설령 固定資產의 取得에 관련하여 支出한 것이라도 이것을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다

〔1975 直法 2－21 追加, 1980 直法 2－8 改正〕.

(1) 다음에 열거하는 租稅公課 등의 額

① 不動產取得稅 또는 自動車取得稅

② 特別土地保有稅 중에서 土地의 取得에 대해 課稅되는 것

③ 新增設에 관련된 事業所稅

④ 登錄免許稅, 기타 登記 또는 登錄 때문에 소요하는 費用

(2) 建物의 建設 등으로 인해 행한 調査, 測量, 設計, 基礎工事 등으로 그 建設計劃을 變更한 것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것에 관련된 費用

(3) 일단 締結한 固定資產의 取得에 관한 契約을 解除하여 다른 固定資產을 取得하려 할 경우에 支出하는 違約金

(土地에 설치한 防壁, 돌계단 등의 費用)

7－3－4 埋立, 땅돋우기, 땅고르기, 切土, 防壁工事, 其他 土地의 造成 또는 改良을 위해 소요한 費用은 그 土地의 取得價額에 算入하는 것이나, 土地에 設置한 防壁, 돌계단 등이라도 그 規模, 構造 등으로 보아 土地와 區分하여 構築物이라고 인정되는 것의 費用은 土地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고 構築物의 取得價額으로 할 수 있다.

上水道 또는 下水道의 工事에 소요하는 費用에 대해서도 똑같다〔1980 直法 2－8 改正〕.

(註) 오로지 建物, 構築物 등의 建設 때문에 행하는 地質調査, 地盤強化, 땅돋우기, 特殊한 切土 등 土地의 改良 때문이 아닌 工事에 소요하는 費用은 當該 建物, 構築物 등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土地, 建物 등을 取得할 때에 支拂하는 入退料 등)

7－3－5 法人이 土地, 建物 등을 取得할 때 當該 土地, 建物 등의 使用者 등에 支拂하는 補償金, 其他 補償金으로 인해 소요하는 金額은 當該 土

地, 建物 등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土地와 함께 取得한 建物 등의 解體費 등)

7－3－6 法人이 建物 등이 있는 土地(借地權을 포함, 以下 7－3－6에서 같음)를 建物 등과 함께 取得한 경우 또는 自己가 소유하는 土地위에 있는 借地人의 建物 등을 取得한 경우에 取得後 대략 1년 以內에 當該 建物 등의 解體에 着手하는 등, 당초부터 그 建物 등을 解體하여 土地를 利用하는 目的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當該 建物 등의 해체시에 帳簿價額 및 解體費用의 合計額(廢材 등의 處分에 의해 얻은 金額이 있을 경우에는 當該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當該 土地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事後的으로 支出하는 費用)

7－3－7 新工場의 落成, 操業開始 등과 함께 支出하는 記念費用 등과 같은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後에 생기는 附隨費用은 當該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나 工場, 빌딩, 맨션 등의 建設과 함께 支出하는 住民對策費, 公害補償費 등의 費用(7－3－11의 2의 (2) 및 (3)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으로 당초부터 支出이 豫定되었던 것(每年 支出하게 되는 補償金을 제외)에 대해서는 설령 그 支出을 建設後에 행하는 것이라도 當該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借地權의 取得價額)

7－3－8 借地權의 取得價額에는 土地의 賃貸借契約 또는 轉貸借契約(이들 契約의 更新 및 更改를 포함, 이하 7－3－8에서 「借地契約」이라 함)에 있어서 借地權의 代價로 土地所有者 또는 借地權者에 支拂한 金額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단, (1)에 열거하는 金額이 建物 등의 購入代價의 대략 10% 이하의 金額일 때에는 무리하게 이것을 구

분하지 않고 建物 등의 取得價額에 포함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1) 土地의 위에 있는 建物 등을 取得한 경우에 그 建物 등의 購入代價 중에서 借地權의 代價로 인정되는 部分의 金額

(2) 賃借한 土地의 改良 때문에 한 땅돋우기, 땅고르기, 埋立 등의 整地에 소요한 費用

(3) 借地契約을 할 때 支出한 手數料, 其他의 費用

(4) 建物 등을 增·改築하는 데 있어서 그 土地의 所有者 등에 대해 支出한 費用

(治山工事 등의 費用)

7－3－9 天然林을 人工林으로 轉換하기 위해 필요한 땅다지기 또는 治山工事 때문에 支出한 金額(構築物의 取得價額에 算入되는 것을 제외)은 林地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公有水面을 埋立하여 造成한 土地의 取得價額)

7－3－10 法人이 公有水面을 埋立하여 取得한 土地의 取得價額에는 當該 埋立에 소요한 費用外에 公有水面埋立法 第12條 〈免許料〉의 規定에 의해 徵收된 免許料 및 同法 第6條 〈權利者에 대한 補償, 損害防止施設〉의 規定에 의한 損害의 補償에 소요한 金額, 其他 公有水面埋立을 할 權利의 取得 때문에 소요한 費用(以下 7－3－11에서 이들 費用을 「埋立免許料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

(자투리에 의해 埋立한 土地取得價額)

7－3－11 法人이 그 事業에서 생기는 자투리(찌꺼기) 등에 의해 造成된 埋立地의 取得價額은 그 자투리의 處理 때문에 소요한 運搬費, 築石費, 庭園石工事費 등(埋立免許料 등을 포함, 以下 7－3－11에서 「埋立費」라 함)

의 合計額(當該 合計額이 埋立工事가 完了하는 날의 埋立地의 價額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한다. 단, 法人이 다음 方法 中 어느 것을 취할 때는 이것을 認定한다.

(1) 埋立工事中의 各 事業年度에 支出한 埋立費를 埋立地의 原價로 算入하여, 事業年度終了日에 原價의 合計額이 埋立地가 同日에 完成된 것으로 할 경우 그 埋立地의 價額을 넘게 된 경우에 그 事業年度에 支出한 埋立費中에서 그 넘는 金額을 損金에 算入하여 計算한 原價를 取得價額으로 하는 方法

(2) 埋立費 中에서 埋立免許料 등과 자투리 등의 處理 때문에 築石費 및 庭園石工事費를 埋立地의 原價에 算入하여 그 자투리 등의 處理 때문에 소요된 運搬費와 같은 築石費 및 庭園石工事費 이외의 費用을 그 支出時마다 損金에 算入하는 것과 함께 法人이 그 埋立地의 所有權을 取得했을 때(所有權을 取得하기 전에 그 埋立地에 工作物을 設置하는 등 埋立地를 使用하기에 이르렀을 때의 그 使用部分에 대해서는 使用할 때)에 그 取得時의 埋立地의 價額(當該 價額이 埋立費의 合計를 넘을 때에는 當該 合計額)을 그 取得價額으로 修正하는 方法

(宅地開發 등을 할 때 支出하는 開發負擔金 등)

7－3－11의 2 法人이 固定資產으로 사용하는 土地, 建物 등의 造成 또는 建築 등(以下 7－3－11의 2에서 「宅地開發 등」이라 함)의 許可를 받기 위해 地方公共團體에 대해 그 宅地開發 등에 관련하여 행하는 公共的施設 등의 設置 또는 改良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해 支出하는 負擔金 등(여기에 대신하여 提供하는 土地 또는 施設을 포함, 순전히 寄附金의 性質을 가진 것을 제외, 以下 7－3－11의 2에서 같음)의 額에 대해서는 그 負擔金 등의 性質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取扱한다〔1980 直法 2－8 追加〕.

(1) 예를 들어 團地內의 道路, 公園 또는 綠地, 公道와의 隣接道路, 雨水調整池(流下水路를 포함) 등과 같이 直接土地의 效用을 形成한다고 인정되는 施設에 관련된 負擔金 등은 그 土地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2) 예를 들어 上水道, 下水道, 工業用水道, 汚水處理場, 團地近邊의 道路(인접도로를 제외) 등과 같이 土地 또는 建物 등의 效用을 넘어 獨立된 效用을 形成한다고 인정되는 施設로 當該 法人의 便益에 直接寄與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련된 負擔金 등은 각각 그 시설의 性質에 따라 無形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 또는 順延資產으로 한다.

(3) 예를 들어 團地의 周邊 또는 後背地에 設置되는 소위 緩衝綠地, 文敎福祉施設, 環境衛生施設, 消防施設 등과 같이 주로 團地外의 住民便益에 寄與한다고 인정되는 公共的 施設에 관련된 負擔金 등은 順延資產으로 하고 그 償却期間은 8년으로 한다.

(土地의 取得에 있어서 支出하는 負擔金 등)

7－3－11의 3 法人이 地方公共團體 등이 造成한 土地를 取得하는 데 있어서 土地의 購入代價外에 7－3－11의 2에 정하는 負擔金 등의 性質을 가진 金額으로 그 內容이 具體的으로 명확한 것을 支出한 경우에는 7－3－11의 2에 준하여 取扱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埋藏文化財의 發掘費用)

7－3－11의 4 法人이 工場用地 등의 造成과 함께 埋藏文化財의 發掘調査 등을 하기 위해 소요한 費用은 土地의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고, 그 支出을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단, 文化財가 埋藏되어 있는 土地를 그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의 價額보다 낮게 取得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發掘調査 등으로 소요된 費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1980 直法 2－8 追加〕.

(私道를 地方公共團體에 寄附한 경우)

7－3－11의 5 法人이 오로지 소유하고 있는 土地의 利用을 위해 設置되어 있는 私道를 地方公共團體에 寄附한 경우에는 當該 私道의 帳簿價額을 當該 土地의 帳簿價額에 對替, 그 寄附를 함으로써 입은 損失은 없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集中生産 등을 하기 위한 機械裝置의 移設費)

7－3－12 集中生産 또는 보다 나은 立地條件에서 生産을 하는 등으로 事業場의 機械裝置를 다른 事業場으로 移設한 경우 또는 캐스터링, 鍛壓프레스 등 多額의 設置費를 要하는 機械裝置를 移設한 경우(措置法 第65條의 2〈收用換地 등의 所得의 特別控除〉에서 規定하는 收用換地 등에 따라 移設한 경우를 제외)에는 運賃, 設置費 등 그 移設에 소요된 費用(解體費를 제외, 以下 7－3－12에서 「移設費」라 함)은 그 機械裝置의 取得價額에 算入하고, 當該 機械裝置 移設直前의 帳簿價額 中에 포함되어 있는 設置費(以下 7－3－12에서 「舊設置」라 함)에 상당하는 金額은 損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에 移設費의 合計額이 當該 機械裝置 移設直前 帳簿價額의 10%에 상당하는 金額 이하일 때에는 舊設置費에 상당하는 金額을 損金에 算入하지 않고 當該 移設費를 移設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註) 주로 新規 生産設備의 導入에 따라 행하는 旣存 生産設備의 配置換 때문에 하는 移設은 원칙적으로 集中生産 또는 보다 나은 立地條件에서 生産하는 등의 移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山林立木의 取得價額)

7－3－13 植栽를 위한 땅 다지기費, 種苗費, 植栽費(통상의 補植에 소요되는 費用을 포함), 扶育費, 間伐費 및 管理費 등 植栽를 위한 땅다지기부

터 成林에 이르기까지의 造林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은 山林立木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단, 대략 매년(장래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 輪伐을 행하는 것을 통례로 하는 法人의 造林에 소요되는 費用 중에서 扶育費, 間伐費 및 管理費에 대해서는 그 支出日이 속한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註) 이 取扱에 의하면 原則的으로 間伐費는 山林立木의 取得價額에 算入되므로 間伐材를 讓渡한 경우에는 讓渡原價는 없고 그 收益의 全額이 益金에 算入되나, 法人이 그 讓渡에 의한 收益을 益金에 算入되나, 동시에 間伐費 및 間伐에 관련된 山林立木의 帳簿價額 중에서 間伐材에 대응하는 金額의 合計(當該 收益을 한도로 한다)를 讓渡原價로 損金에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工業所有權의 取得價額)

7－3－14 法人이 自己가 행한 試驗研究에 근거하여 工業所有權을 取得한 경우에는 그 取得時에 順延資產으로 計上되어 있는 試驗研究費는 當該 工業所有權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1971 直審(法) 21, 1975 直法 2－21 改正〕.

(註) 1. 自己가 행한 試驗研究에 근거한 工業所有權의 出願料, 特許料, 其他 登錄에 소요한 費用은 取得價額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다.

2. 削除

(出願權을 取得하기 위한 費用)

7－3－15 法人이 남으로부터 出願權(工業所有權에 관한 特許 또는 登錄을 받을 權利를 말한다)을 取得한 경우에 取得의 代價에 대해서는 無形固定에 準하여 當該 出願權의 目的인 工業所有權의 耐用年數에 의해 償却할 수 있으나, 그 出願에 의해 工業所有權을 登錄하였을 때에는 當該 出願權의 未償却殘額(工業所有權을 取得하는 데 소요된 費用이 있을 때에는 그 額을 加算한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當該 工業所有權의 取得價額으로 한다〔1971 直審(法) 21 改正〕.

(電話加入權의 取得價額)

7－3－16 電話加入權의 取得價額은 第1種 電氣通信事業者와의 加入電話契約에 근거하여 支出하는 工事負擔金外에 屋內配線工事에 소요된 費用 등 電話機를 設置하기 위해 支出한 費用(當該 費用 支出의 目的이 資產을 自己의 所有로 하는 경우에 支出하는 것을 제외) 것에 留意한다.

(減價償却資產 以外의 固定資產의 取得價額)

7－3－16의 2 減價償却資產 以外의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 외에 令 第54條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 및 第55條 〈資本的 支出이 있은 경우에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 特例〉의 規定 또는 이들에 관한 取得의 例에 의한다〔1980 直法 2－8 追加〕.

(固定資產 原價差額의 調整)

7－3－17 法人이 在庫資產에 관련된 原價差額의 調整을 要하는 경우에 있어서 原材料 등의 在庫資產을 固定資產의 製作 또는 建設(개량을 포함)때문에 提供했을 때 또는 自己生產에 관련된 製品을 固定資產으로 使用했을 때의 當該 固定資產에 관련된 原價差額은 取得價額에 配賦하는 것으로 한다.

(固定資產에 대하여 引下 등이 있었던 경우)

7－3－17의 2 法人이 소유하는 固定資產에 대하여 引下, 리베이트 또는 割引(以下 7－3－17의 2에서 「引下 등」으로 함)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引下 등이 있었던 날이 속한 事業年度의 確定된 決算에서 다음의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의 範圍內에서 當該 固定資產의 帳簿價額을 減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算 式〉

$$\text{引下 등의 額} \times \frac{\text{引下 등의 直前의 當該 固定資產 帳簿價額}}{\text{引下 등의 直前의 當該 固定資產 取得價額}}$$

(註) 1. 當該 固定資產이 法 또는 措置法의 規定에 의한 壓縮記帳의 適用을 받은 것일 때에는 算式의 分母 및 分子의 金額은 壓縮記帳 後의 金額에 의하는 것에 留意한다.

2. 當該 固定資產에 대하여 그 引下 등이 있었던 날이 속한 事業年度 直前의 事業年度에서 移越된 特別償却不足額(特別償却準備金의 積立不足額을 포함, 以下 7－3－17의 2에서 같음)이 있을 때에는 當該 特別償却不足額이 생긴 事業年度에 그 引下 등이 있었던 것으로 한 경우에 計算되는 特別償却限度額을 基礎로 當該 移越된 特別償却不足額을 修正하는 것으로 한다.

2. 耐用年數의 短縮

(耐用年數 短縮 承認事由의 判定)

7－3－18 法人이 소유하는 減價償却資產이 令 第57條 第1項 各號〈耐用年數의 短縮〉에 열거하는 事由에 該當되는가 어떤가를 判定하는 경우에 있어서, 當該 各號의 「그 使用可能期間이 法定耐用年數에 比하여 현저하게 짧은 것」이란, 當該 減價償却資產의 使用可能期間이 法定耐用年數에 비하여 대략 10% 以上 짧은 年數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耐用年數의 短縮 對象이 되는 資產의 單位)

7－3－19 令 第57條 第1項〈耐用年數의 短縮〉의 規定은 減價償却資產의 種類(그 種類에 대해 構造, 用途, 細目 또는 設備의 種類 區分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構造, 用途, 細目 또는 設備의 種類로 區分)別로, 또 耐用年數가 다른 것 별로 적용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는 減價償却資產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1) 機械 및 裝置 2 이상의 工場에 동일한 種類에 속하는 設備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工場마다

(2) 建物, 建物附屬設備, 構築物, 船舶, 航空機 또는 無形減價償却資產 개개의 資產마다

(3) 他에 貸與하고 있는 減價償却資產은 그 貸與하고 있는 개개의 資產(當該 개개의 資產이 借主에게 있어서 하나의 設備를 構成하는 機械 및 裝置 중에 2 이상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當該 2 이상의 資產)마다

(註) 1. (1)의 「2 이상의 工場에 동일한 種類에 속하는 設備를 소유할 때」에는 2 이상의 工場에 각각 하나의 設備의 種類를 構成하는 機械 및 裝置가 獨立하여 存在할 때가 해당되고, 2 이상의 工場의 機械 및 裝置를 합쳐서 하나의 設備의 種類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하나의 設備를 構成하는 機械 및 裝置 중에 남으로부터 貸與를 받은 資產이 있을 때에는 當該 資產을 포함하지 않는 한 同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機械 및 裝置 以外의 減價償却資產 使用可能期間의 算定)

7－3－20 機械 및 裝置 以外의 減價償却資產에 관련된 令 第57條 第1項〈耐用年數의 短縮〉에서 規定하는 「使用可能期間」은 同項 各號에 열거하는 事由에 해당하게 된 減價償却資產 取得後 經過年數와 이들 事由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후의 見積年數와의 合計年數(1年 미만의 端數는 버림)로 한다. 이 경우에 見積年數는,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使用可能期間을 算定하려고 하는 때부터 통상의 維持補修를 가해 통상의 使用條件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 통상 예정되는 효과를 낼 수 없게 되어 更新 또는 廢棄된다고 예상되는 時期까지의 年數에 의한다.

(機械 및 裝置의 使用可能期間 算定)

7－3－21 機械 및 裝置에 관련된 令 第57條 第1項〈耐用年數의 短縮〉에서 규정하는 「使用可能期間」은 設備의 種類가 같은 機械 및 裝置에 속하는 개개 資產의 取得價額(再評價를 한 資產에 대해서는 그 再評價額. 단, 申請의 事由가 規則 第16條 第2號〈特揭되지 않은 設備의 耐用年數 短縮〉에 열거하는 事由 또는 여기에 준하는 事由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 再取得價額)을 償却基礎價額으로 7－3－20에 준하여 算定한 使用可能期間

(當該 機械 및 裝置에 속하는 개개의 資產 中에서 同項 各號에 기재한 事由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當該 機械 및 裝置의 法定耐用年數 算定의 基礎가 된 個別年數)을 當該 개개 資產의 耐用年數로서, 機械 및 裝置의 耐用年數의 算定式에 따라 그 機械 및 裝置의 전부를 종합하여 算定한 年數(1년 미만의 端數는 잘라버림)에 의한다.

(耐用年數 短縮의 承認이 있은 후에 取得한 資產의 耐用年數)

7－3－22 令 第57條 第1項〈耐用年數의 短縮〉의 規定에 의한 耐用年數 短縮의 承認에 관련된 減價償却資產이 規則 第16條 第2號〈特揭되지 않은 設備의 耐用年數의 短縮〉에서 열거하는 事由 또는 여기에 준하는 事由에 해당되는 것일 경우에 그 후 承認의 對象이 된 資產과 種類가 같은 資產을 取得했을 때 그 取得한 資產에 대해서도 承認에 관련된 耐用年數를 適用한다.

第 4 節　償却限度額 등

1. 通則

(改正耐用年數가 100년을 넘는 경우에 定率法의 償却限度額)

7－4－1 耐用年數省令 第4條 第2項〈償却率〉의 規定을 適用하여 計算한 改正耐用年數가 100년을 넘을 경우의 減價償却資產의 償却限度額은 당해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정해진 耐用年數省令 別表의 耐用年數에 따라 그 帳簿價額에 別表 第10의 償却率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에 當該 事業年度의 月數(事業年度의 중도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減價償却資產에 대해서는 當該 事業年度의 月數 中에서 事業用으로 제공한 후의 月數)를 곱하여 이것을 12分하여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

(轉用資產의 償却限度額)

7－4－2 減價償却資產을 事業年度의 중도에 從來使用된 用途에서 다른 用途로 轉用한 경우에 法人이 轉用한 資產의 전부에 대해 轉用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開始日에서 轉用後의 耐用年數에 의해 償却限度額을 計算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2. 償却方法을 變更한 경우의 償却限度額

(定額法을 定率法으로 變更한 경우의 償却限度額 計算)

7－4－3 減價償却資產의 償却方法을 定額法에서 定率法으로 變更한 후의 償却限度額은 그 變更한 事業年度開始日의 帳簿價額을 基礎로 하여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정해진 耐用年數에 따른 償却率에 의해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

(註)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移越控除되는 償却不足額이 있을 때 그 償却不足額은 變更한 事業年度開始日에 帳簿價額에서 控除한다.

(定率法을 定額法으로 變更한 경우의 償却限度額 計算)

7－4－4 減價償却資產의 償却方法을 定率法에서 定額法으로 變更한 후의 償却限度額은 다음 (1)에서 정하는 取得價額 및 殘存價額을 기초로 다음 (2)에서 정하는 年數에 따른 償却率에 의해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

(1) 變更한 事業年度開始日의 帳簿價額을 取得價額으로 간주하여 實際 取得價額의 10% 상당액을 殘存價額으로 한다.

(2) 耐用年數는 減價償却資產의 種類가 다른 것 別로 法人의 선택에 의해 다음 ① 또는 ②에서 定하는 年數에 의한다.

①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耐用年數

②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정해진 耐用年數에서 經過年數(變更한

事業年度開始日에 있어서 帳簿價額을 實際의 取得價額으로 나누어서 얻은 比率에 따른 當該 耐用年數에 관련되는 未償却殘額比率에 대응하는 經過年數)를 控除한 年數(그 年數가 2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註) 1. ②에서 정하는 經過年數의 計算은 規則 第18條 〈種類가 같은 減價償却資產의 償却限度額〉의 規定에 의해 하나의 償却計算單位로서 償却限度額을 計算하는 減價償却資產別로 한다.

2.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償却不足額이 있을 때에는 7－4－3의 (註)에 의한다.

(定率法을 定額法으로 變更한 후에 資本的 支出을 한 경우)

7－4－4의 2 償却方法을 定率法에서 定額法으로 變更한 후 償却限度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耐用年數에 대해 7－4－4의 (2)의 ②에 의한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資本的 支出을 한 후의 當該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耐用年數는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8 追加〕.

(1) 그 資本的 支出의 金額이 當該 減價償却資產의 再取得價額의 50％에 상당하는 金額 以下인 경우는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현재 適用하고 있는 耐用年數

(2) (1) 以外의 경우는 當該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정해진 耐用年數

3. 簡便償却

(簡便償却의 特例)

7－4－5 事業年度가 1년인 法人이 各 事業年度에 그 事業用으로 제공한 令 第59條 第2項 〈事業年度의 중도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을 適用한 資產(以下 7－4－5에서 「對象資產」이

라 함)에 대하여 同項의 適用을 받을 경우에 當該 事業年度에 관련된 對象資產의 償却限度額에 대해 繼續하여 다음에 따르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80 直法 2－8 改正〕.

(1) 中間事業年度의 償却限度額

中間事業年度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對象資產에 대해서는 그 1년당 償却限度額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金額 또는 當該 中間事業年度를 1事業年度로 간주하여 令 第58條 〈減價償却資產의 償却限度額〉의 規定에 의해 計算한 償却限度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2) 確定事業年度의 償却限度額

中間事業年度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對象資產에 대해서는 그 1년당 償却限度額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하고, 下期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對象資產에 대해서는 1년당 償却限度額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註) 이 取扱에 의할 경우에는 中間事業年度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對象資產이 없을 때라도 下期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對象資產에 대해서는 (2)를 適用하게 된다.

(資本的 支出이 있는 경우의 簡便償却)

7－4－5의 2 法人이 그 소유하는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資本的 支出을 한 경우에는 當該 資本的 支出의 金額에 관련된 償却限度額의 計算에 대해서도 令 第59條 第2項 〈事業年度의 중도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1980 直法 2－8 追加〕.

(合併引受資產에 대한 簡便償却의 不適用)

7－4－5의 3 事業年度 중도에 合併에 의해 引受한 減價償却資產에 관련된 當該 事業年度의 償却限度額 計算에 대해서는 令 第59條 第2項 〈事業年度의 중도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

適用은 없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簡便償却의 届出)

7－4－5의 4 令 第59條 第2項〈事業年度의 중도에 事業用으로 제공한 減價償却資産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에 의한 償却限度額 特例의 適用을 받으려고 할 경우의 稅務署長에 대한 届出은 確定申告書에 添附하는 償却額의 計算에 관한 明細書에 취지를 記載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1975 直法 2－21, 1980 直法 2－8 改正〕.

4. 增加償却

(增加償却의 適用單位)

7－4－6 令 第60條〈通常의 使用時間을 넘어 使用되는 機械 및 裝置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은 法人이 소유하는 機械 및 裝置에 대해 耐用年數省令에서 정하는 設備의 種類(細目의 규정이 있는 것은 細目)別로 적용한다. 단, 2 이상의 工場에 동일한 種類에 속하는 設備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장별로 적용할 수 있다.

(註) 但書의「2 이상의 工場에 同一한 種類에 속하는 設備를 소유하는 경우」의 意義는 7－3－19의 (註)에 의함.

(中間事業年度에 增加償却을 한 경우)

7－4－6의 2 法人이 中間事業年度에 令 第60條〈通常의 使用時間을 넘어 사용되는 機械 및 裝置의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에 의해 增加償却의 適用을 받는 경우에도 確定事業年度에 있어서는 다시 當該 事業年度를 통해 增加償却比率을 計算하여 同條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貸與받고 있는 機械 및 裝置가 있을 경우의 增加償却)

7-4-6의 3 法人이 소유하는 機械 및 裝置에 대해 1日當 超過使用時間을 計算하는 경우에 하나의 設備를 構成하는 機械 및 裝置 중에 貸與를 받고 있는 資產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當該 資產의 使用時間을 뺀 것에서부터 그 計算을 한다〔1980 直法 2-8 追加〕.

5. 陳腐化償却

(陳腐化의 意義)

7-4-7 令 第60條의 2 〈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特例〉에서 정하는 減價償却資產의 陳腐化란 法人이 소유하는 減價償却資產이 舊式化하여 當該 減價償却資產을 使用하면 高코스트·生產性의 低下 등에 의해 經濟的으로 採算이 惡化하는 것, 流行의 變遷·經濟的 環境의 變化 등에 의해 製品·서비스 등에 대한 需要가 減退하여 當該 減價償却資產의 經濟的 價値가 低下하는 등으로 그 更新 또는 廢棄가 必要한 狀況이 된 것을 말한다.

(현저한 陳腐化의 意義)

7-4-8 令 第60條의 2 第1項 〈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特例〉에서 정하는 減價償却資產이 현저하게 陳腐化한 경우란 法人이 소유한 減價償却資產의 陳腐化로 인해 減價償却資產의 使用可能期間이 減價償却資產의 償却에 대해 採用하고 있는 耐用年數(法定耐用年數보다 짧은 年數를 採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法定耐用年數)에 비해 대략 10% 이상 짧아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陳腐化償却의 計算單位)

7-4-9 令 第60條의 2 第1項 〈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에 의한 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産 償却限度額의 特例 適用單位에 대해서는 7－3－19〈耐用年數 短縮의 對象이 되는 資産單位〉에 준한다.

(陳腐化償却의 경우에 使用可能期間)

7－4－10 令 第60條의 2 第1項〈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産 償却限度額의 特例〉에서 規定하는「使用可能期間」의 計算에 대해서는 7－3－20〈機械 및 裝置 以外의 減價償却資産의 使用可能期間의 算定〉또는 7－3－21〈機械 및 裝置의 使用可能期間의 算定〉에 준한다. 이 경우에 當該 減價償却資産의 更新 또는 廢棄時期가 具體的인 資金計劃, 設備投資計劃 등에서 명확하고 또 그 計劃 등이 法人의 業種, 業態, 規模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그 計劃 등에 근거하여 使用可能期間을 算定한다.

(陳腐化資産에 資本的 支出이 있을 경우의 修正帳簿價額의 計算)

7－4－11 令 第60條의 2 第1項〈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産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있어서 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産에 대해 그 取得後 同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事業年度(以下 이 條項에서「適用年度」라 함)前의 事業年度까지 資本的 支出이 있을 때에는 그 減價償却資産에 관련된 同項 第2號에서 열거하는 帳簿價額은 다음에 열거하는 額 또는 이들의 計算方法에 유사한 方法에 의해 計算된 額에 따를 수 있다.

(1) 다음 ① 및 ②에 열거하는 額의 合計額

① 當初의 取得價額에 대해 使用可能期間을 基礎로 計算된 未償却殘額

② 適用年度前의 各 事業年度別로 資本的 支出의 合計額을 하나의 資本的 支出로 하여, 또 그 資本的 支出이 當該 各 事業年度開始日에 支出된 것으로 할 경우에 그 資本的 支出에 대해 使用可能期間을 基礎로 計算되는 未償却殘額의 合計

(2) 다음 ②에 대한 ①의 比率을 未償却殘額比率로 한 경우의 그 法人이 採用하고 있는 耐用年數에 관련된 未償却殘額比率에 대응하는 經過年數를 計算하여 減價償却資產의 使用可能期間에 대해 그 經過年數를 經過한 것으로 했을 때에 計算되는 未償却殘額比率을 그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適用年度前 各 事業年度에 支出된 資本的 支出이 있을 경우에는 그 資本的 支出의 合計를 加算한 金額, 以下 7－4－11에서 같음)에 곱하여 計算한 金額

① 適用年度開始日에 있어서 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產의 帳簿價額

②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

(註) 未償却殘額比率은 計算된 比率에 가까운 未償却殘額比率의 어느 것인가를 選擇할 수 있다.

(陳腐化資產의 償却超過額 등)

7－4－12 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令 第60條의 2 第1項〈陳腐化한 減價償却資產의 償却限度額의 特例〉의 規定 適用이 있을 경우에는 그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생긴 償却超過額 또는 評價損의 否認金은 適用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

6. 償却可能限度額까지 償却한 資產〔1980 直法 2－8 改正〕

(償却可能限度額까지 償却한 資產에 資本的 支出을 한 경우)

7－4－13 帳簿價額이 取得價額의 5% 상당액에 달한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資本的 支出을 한 경우에는 그 資本的 支出을 한 후의 取得價額 및 帳簿價額을 基礎로 다시 減價償却을 행할 수 있으므로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償却可能限度額까지 償却한 資產의 改良後 減價償却)

7－4－13의 2 法人이 令 第61條 第2項〈減價償却資產의 償却可能限度

額의 特例〉의 規定에 의한 償却을 하고 있는 資產에 대해 資本的 支出을 한 후의 償却限度額의 計算은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8 改正〕.

(1) 資本的 支出을 한 후의 帳簿價額이 資本的 支出後 當該 資產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當該 帳簿價額을 基礎로 새로 그때부터 使用不能이 된다고 인정되는 날까지의 期間을 基礎로 適正하게 見積한 月數에 의해 計算한다.

(2) 資本的 支出을 한 후의 帳簿價額이 資本的 支出後 當該 資產 取得價額의 5% 相當額을 넘을 때에는, 5% 相當額에 달할 때까지는 法定耐用年數에 의해 그 償却限度額을 計算하고, 5% 相當額에 달했을 때에는 새로 同項의 規定에 의해 稅務署長의 認定을 받은 月數에 의해 計算한다.

第5節　償却費의 損金經理

(償却費로써 損金經理를 한 金額의 意義)

7－5－1 法 第31條 第1項 〈減價償却資產 償却費의 計算 및 償却方法〉에서 規定하는 「償却費로 損金經理를 한 金額」에는 法人이 償却費의 科目을 가지고 經理한 金額外에 損金經理를 한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1989 直法 2－7 改正〕.

(1) 令 第54條 第1項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의 規定에 의해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에 算入해야 할 附隨費用 중에서 原價外處理를 한 金額

(2) 減價償却資產에 대하여 法 또는 措置法의 規定에 의한 壓縮限度額을 넘어 그 帳簿價額을 減額한 경우에 넘는 부분의 金額

(3)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支出한 金額으로 修繕費로 經理한 金額 중에 令

第132條〈資本的 支出〉의 規定에 의해 損金에 算入되지 않은 金額

(4) 無償 또는 低價로 取得한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그 取得價額으로 法人이 經理한 金額이 令 第5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得價額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미치지 못한 金額

(5)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計上한 除却損 또는 評價損의 金額 중 損金에 算入되지 않았던 金額

(6) 少額인 減價償却資產(대략 60만円 以下) 또는 耐用年數가 3년 이하인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을 消耗品費 등으로 損金經理를 한 경우에 그 損金經理 金額

(申告調整에 의한 償却費의 損金算入)

7－5－2 法人이 減價償却資產 取得價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資產에 計上하지 않고 損金經理를 한 경우(7－5－1에 의해 償却費로 損金經理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또는 贈與에 의해 取得한 減價償却資產 取得價額의 全部를 資產으로 計上하지 않은 경우에 이들 資產을 事業用으로 제공한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 또는 修正申告書(更正 또는 決定이 있어야 할 것을 豫知하여 提出된 期限後 申告書 및 修正申告書를 제외)에 添附한 令 第63條〈減價償却에 관한 明細書의 添附〉에 規定하는 明細書에 그 計上하지 않은 金額을 記載하여 申告調整을 하고 있을 때 그 記載한 金額은 償却費로 損金經理를 한 金額에 해당하는 것으로 取扱한다〔1971 直審(法) 20 改正〕.

(註) 贈與에 의해 取得한 減價償却資產이 令 第133條〈少額의 減價償却資產의 取得價額의 損金算入〉의 規定에 의해 그 取得價額의 전부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경우에는 損金經理를 한 것으로 한다.

第 6 節　特殊한 資産에 대한 償却計算

1. 鑛業用減價償却資産의 償却

(土石採取業의 採石用 坑道)

7－6－1 土石採取業에 있어서 採石用의 坑道는 令 第48條 第1項 第2號〈鑛業用減價償却資産의 償却方法〉에서 規定하는 鑛業用減價償却資産에 該當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追加〕.

(採掘權의 取得價額)

7－6－1의 2 法人이 소유하는 試掘權의 目的인 鑛物에 관련된 鑛區에 대해 採掘權을 取得한 경우에는 當該 試掘權의 未償却殘額에 상당하는 金額과 當該 採掘權의 出願料, 登錄免許稅, 기타 그 取得 때문에 直接 소요된 費用의 合計를 當該 採掘權의 取得價額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鑛業用 土地의 償却)

7－6－2 石炭鑛業에서 選炭하고 남은 돌더미用으로 제공하는 土地와 같이 鑛業經營上 직접필요한 土地로 鑛業의 廢止에 따라 현저하게 그 價値가 減少하는 것에 대해서는 法人이 그 取得價額에서 鑛業을 廢止한 경우에 殘存한다고 인정되는 價額을 控除한 金額에 대해 當該 土地에 관련된 鑛業權에 대하여 選定하고 있는 償却方法에 준하여 計算되는 金額 以內의 金額을 損金에 算入한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土石採取用 土地 등의 償却)

7－6－3 土石 또는 자갈을 採取하는 目的으로 取得한 土地에 대해서는 法人이 그 取得價額 중에서 土石 또는 자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生産高比

例法에 준하는 方法에 의해 計算된 金額 以內의 金額을 損金에 算入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鑛業用減價償却資產 償却限度額의 計算單位)

7－6－4 鑛業用減價償却資產에 관련된 生產高比例法에 의한 償却限度額은 鑛業權에 대해서는 1鑛區마다, 坑道에 대해서는 그 坑道마다, 其他의 鑛業用減價償却資產에 대해서는 1鑛業所別로 計算한다.

(生產高比例法을 定額法으로 變更한 경우에 償却限度額의 計算)

7－6－5 鑛業用減價償却資產의 償却方法을 生產高比例法에서 定額法으로 變更한 후의 償却限度額은 다음 (1)에서 정하는 取得價額 및 殘存價額을 基礎로 하여 다음 (2)에서 정하는 年數에 따라 償却率에 의해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

(1) 그 變更을 한 事業年度開始日에 帳簿價額을 取得價額으로 간주하여, 實際 取得價額의 10% 相當額(鑛業權 및 坑道에 대해서는 零)을 殘存價額으로 한다.

(2) 耐用年數는 다음 資產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年數에 의한다.

① 鑛業權(試掘權을 제외) 및 坑道는 變更을 한 事業年度開始日 以後에 採掘豫定數量을 基礎로 耐用年數省令 第1條 第2項 第2號, 第3號 또는 第4號 〈鑛業權 및 坑道의 耐用年數〉의 規定에 의해 稅務署長이 認定한 年數

② ① 이외의 鑛業用減價償却資產은 그 資產에 대해 정해진 耐用年數 또는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年數(그 年數가 2년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算　式〉

$$\text{法定耐用年數} \times \frac{\text{그 變更을 한 事業年度開始日에 있어서 當該 資産의 帳簿價額}}{\text{當該 資産의 實際 取得價額}}$$

(生産高比例法을 定率法으로 變更한 경우에 償却限度額의 計算)

7－6－6 鑛業用減價償却資産의 償却方法을 生産高比例法에서 定率法으로 變更한 후의 償却限度額은 7－4－3 〈定額法을 定率法으로 變更한 경우의 償却限度額의 計算〉에 준하여 計算한다.

(定額法 또는 定率法을 生産高比例法으로 變更한 경우에 償却限度額의 計算)

7－6－7 鑛業用減價償却資産의 償却方法을 定額法 또는 定率法에서 生産高比例法으로 변경한 후의 償却限度額은 그 變更을 한 事業年度開始日에 있어서 帳簿價額을 取得價額으로 간주하여 실제의 取得價額의 10% 相當額(鑛業權 및 坑道에 대해서는 零)을 殘存價額으로 當該 減價償却資産의 殘存耐用年數(當該 減價償却資産이 속한 鑛區의 當該 變更을 한 事業年度開始日 以後에 採掘豫定年數가 그 殘存耐用年數보다 짧은 경우에는 當該 鑛區의 當該 採掘豫定年數)를 基礎로 하여 計算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當該 減價償却資産의 殘存耐用年數는 7－4－4 〈定率法을 定額法으로 變更한 경우의 償却限度額의 計算〉 (2)의 ② 및 7－4－4의 2 〈定率法을 定額法으로 變更한 후에 資本的 支出을 한 경우〉의 例에 의한다.

2. 代替資産에 대한 償却

(代替法에 있어서의 代替)

7－6－8 令 第49條 第2項 第2號 〈代替法〉의 代替란 代替資産이 통상 사용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代替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規模의 擴張, 增強을 위한 代替 또는 災害, 其他의 事由에 의해 滅失한 것의 復舊

를 위한 代替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유의한다.

(殘存價額이 된 代替資産)

7－6－9 代替資産의 償却限度額의 計算에 대해 代替法을 採用하고 있는 경우에 當該 資産에 관련된 令 第49條 第2項 第1號 〈代替法〉의 金額 累計額이 그 資産 取得價額의 50% 상당액에 달했는가 어떤가는 規則 第10條 各號 〈代替資産의 範圍〉에 열거하는 資産의 구분별(그 規模의 擴張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위에 擴張別로)로 判定한다.

(撤去資産에 매기는 帳簿價額)

7－6－10 代替資産이 사용에 견디기 어렵게 되어 代替된 경우에 그 代替에 의한 撤去資産에 대해서는 帳簿價額을 매기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代替한 軌條를 跨線橋, 昇降場 및 積換場의 지붕 등의 材料로 사용한 때와 같이 새로 資産價値가 인정되는 용도로 제공했을 때엔 그 용도로 제공한 때에 있어서 다음 중 낮은 金額을 밑돌지 않는 金額을 새로운 資産의 取得價額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

(1) 當該 撤去資産의 取得價額(取得價額이 不明할 때에는 當該 資産과 種類 등이 같은 新品의 價額)의 5% 相當額

(2) 當該 撤去資産을 그 用途로 提供한 때의 時價

3. 特別한 償却率을 適用하는 資産의 償却

(償却限度額의 計算)

7－6－11 特別한 償却率에 의한 償却限度額은 그 償却率이 다른 것 別로 計算한다.

4. 生物의 償却

(成熟된 年齡 또는 樹齡)

7－6－12 法人이 소유하는 令 第13條 第9號 〈牛馬果樹 등〉에서 열거하는 生物의 減價償却은 當該 生物이 그 成熟年齡 또는 樹齡에 달한 달(成熟된 年齡 또는 樹齡에 달한 후에 取得한 것에 대해서는 取得한 달)부터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그 成熟된 年齡 또는 樹齡은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하지만 다음 표에 열거한 生物에 대해 그 判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열거하는 年齡 또는 樹齡에 따를 수가 있다.

(1) 牛馬 등에 대해서는 通常 事業用으로 제공하는 年齡으로 한다. 단, 현재 事業用으로 제공할 당시의 年齡이 그 年齡後일 때에는 현재 事業用으로 제공하게 된 年齡으로 한다.

(2) 果樹 등에 대해서는 當該 果樹 등의 償却額을 포함하여 통상의 경우에 대략 收入과 支出이 같은 상태라고 인정되는 樹齡으로 한다.

種類	用途	細目	成熟된 年齡 또는 樹齡
牛	農業使役用		滿 2歲
	小運搬使役用		〃
	繁殖用	役肉用牛	〃
		乳領牛	〃
	種付用	役肉用牛	〃
		乳用牛	〃
	其他用		〃
馬	農業使役用		滿 2歲
	小運搬使役用		滿 4歲
	繁殖用		滿 3歲
	種付用		滿 4歲
	競走用		滿 2歲
	其他用		〃

種　類	用　途	細　目	成熟된 年齡 또는 樹齡
綿　羊	種　付　用 一　般　用		滿 2歲 〃
豚	種　付　用 繁　殖　用		滿 2歲 滿 1歲
감 귤 나 무	溫　州		滿 15年
	其　他		〃
사 과 나 무			滿 10年
포 도 나 무			滿 6年
배 나 무			滿 8年
복숭아나무			滿 5年
櫻 桃 나 무			滿 8年
비 파 나 무			〃
밤 나 무			〃
매 화 나 무			滿 7年
감 나 무			滿 10年
살 구 나 무			滿 7年
자 두 나 무			〃
무화과나무			滿 5年
茶 나 무			滿 8年
올리브나무			〃
뽕 나 무		뿌리베기, 中베기 및 高베기	滿 3年
		立通	滿 7年
버 드 나 무			滿 3年
삼지닥나무			滿 4年
닥 나 무			滿 3年
모 시 풀			〃
호　　프			〃

(轉用後 償却限度額의 計算)

7-6-13 소, 말, 綿羊 및 염소를 耐用年數省令 別表 第4에 열거하는 하나의 用途에서 다른 用途로 轉用하는 경우의 轉用後 償却限度額은 그 轉用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開始日의 帳簿價額을 取得價額으로 하고 轉用後의 殘存使用可能期間에 따른 償却率에 의해 計算한다. 이 경우에 그 殘存使用可能期間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소에 대해서는 8년, 말에 대해서는 10년, 면양 및 염소에 대해서는 6년부터 각각 轉用할 때까지의 滿年齡(1년 미만의 端數는 잘라버림)을 控除한 年數를 그 殘存使用可能期間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第7節 除却損失 등〔1980 直法 2-8 改正〕

1. 除却損失 등의 損金算入〔1980 直法 2-8 追加〕

(解體한 建物 등의 帳簿價額의 損金算入)

7-7-1 法人이 소유하는 建物, 構築物 등으로 아직 使用할 수 있는 것을 解體하여 새로 여기에 대신하는 建物, 構築物 등을 取得한 경우(7-3-6 〈土地와 함께 取得한 建物 등의 解體費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解體한 資產의 解體直前 帳簿價額(解體時 廢材 등의 見積額을 제외)은 그 解體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有姿除却)

7-7-2 다음에 열거하는 固定資產에 대해서는 설령 當該 資產에 대해 解撤, 破碎, 廢棄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當該 資產의 帳簿價額에서 그 處分豫想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除却損으로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다〔1980 直法 2－8 追加〕.

(1) 그 使用을 廢止하고 今後 通常의 方法에 의해 事業用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固定資産

(2) 特定製品의 生産 때문에 專用되었던 金型 등으로 當該 製品의 生産을 中止한 것으로 인해 將來使用될 可能性이 거의 없는 것이 그 후의 狀況 등으로 보아 명확한 것

2. 綜合償却資産의 除却價額 등〔1980 直法 2－8 改正〕

(綜合償却資産의 除却價額)

7－7－2의 2 法人이 소유하는 綜合償却資産의 일부에 대해 除却, 廢棄, 滅失 또는 讓渡(以下 이 節에서 「除却 등」이라 함)가 있었던 경우에 當該 除却 등에 의한 損益計算의 基礎가 되는 帳簿價額은 그 除却 등에 관련된 各 資産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償却額이 配賦되지 않은 경우의 除却價額 計算의 特例)

7－7－2의 3 綜合償却資産의 일부에 대해 除却 등이 있는 경우에 當該 除却 등에 의한 損益 計算의 基礎가 되는 帳簿價額에 대해 法人이 계속하여 다음의 (1) 또는 (2) 중 하나의 金額을 따를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除却 등에 관련된 資産의 일부에 그 計算이 困難한 것 등이 있을 때의 當該 資産에 대해서는 그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의할 수 있다〔1974 直法 2－71, 1980 直法 2－8 改正〕.

(1) 除却 등에 관련된 各 資産의 個別耐用年數를 基礎로 計算되는 除却 등의 때에 未償却殘額에 상당하는 金額

(2) 除却額에 관련된 개개의 資産이 포함된 綜合償却資産의 綜合耐用年數를 基礎로 計算되는 除却 등을 할 때의 未償却殘額에 상당하는 金額

(註) 1. (1) 또는 (2)의 金額에 의할 경우에 있어서 除却 등에 관련된 各 資産이 特別償却, 割增償却 또는 增加償却의 規定 適用을 받은 것일 때에는 當該 資産에 이들 償却에 관련된 償却限度額에 相當하는 金額에 대해서도 償却이 있었던 것으로 未償却殘額을 計算하는 것에 留意한다.

2. 各 資産의 個別耐用年數는 機械 및 裝置에 대해서는 「機械裝置의 個別年數와 使用時間表」의 「機械 및 裝置의 細目과 個別年數」의 「同上算定基礎年數」를 말하고, 構築物에 대해서는 1970년 5월 25일 付直法 4-25외에 1課共同『「耐用年數의 適用 등에 관한 取扱通牒」의 制定에 대하여』通牒 付表 3 또는 付表 4에서 정하는 個別年數를 말한다. 단, 各 資産의 個別耐用年數가 이들 表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當該 資産과 種類 등이 같은 資産 또는 當該 資産과 유사한 資産의 個別耐用年數를 基準으로 見積하는 耐用年數로 한다. 또한, 개개의 資産이 속하는 綜合償却資産에 대해 耐用年數의 短縮 承認을 받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承認을 받은 耐用年數 算定의 基礎가 된 各 資産의 耐用年數로 한다.

(償却額이 配賦된 경우의 除却價額 計算의 特例)

7-7-3 法人이 各 事業年度에 計上한 綜合償却資産의 償却費를 그것에 포함되는 各 資産에 合理的 基準에 근거하여 配賦하고 帳簿價額을 基礎로 當該 個個의 資産의 除却 등에 의한 損益의 計算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

(註) 綜合償却資産의 償却費를 各 資産에 대해 綜合耐用年數를 基礎로 計算되는 償却限度額에 따라 配賦하는 것은 合理的 基準에 근거한 配賦에 해당한다.

(償却可能限度額까지 償却한 資産의 除却價額 計算의 特例)

7-7-4 法人이 各 事業年度에 計上한 綜合償却資産의 償却費를 여기에 포함되는 各 資産에 配部하고 當該 各 資産의 帳簿價額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 帳簿價額이 各 資産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달했을 때의 當該 各 資産은 이후 減價償却의 對象이 되지 않으므로, 그 取得價額 및 帳簿價額은 當該 綜合償却資産의 償却限度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取得價額 및 帳簿價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帳簿價額이 명확치 않은 資產으로 定額法 등을 採用하고 있는 것의 除却價額 計算의 特例)

7-7-4의 2 定額法 또는 生產高比例法에 의해 償却費를 計算하고 있는 綜合償却資產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各 資產의 帳簿價額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當該 資產에 대해 償却費의 配賦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帳簿價額이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달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該 資產의 取得價額 및 5% 相當額은 當該 綜合償却資產 償却限度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取得價額 및 帳簿價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달했는가 어떤가는 當該 資產 取得後의 經過年數, 과거에 償却의 實施狀況(償却不足額의 有無, 特別償却, 割增償却 등의 實施의 狀況) 등을 감안하여 合理的으로 判定한다〔1971 直審(法) 20 追加〕.

3. 個別償却資產의 除却價額 등〔1980 直法 2-8 改正〕

(個別償却資產의 除却價額)

7-7-5 減價償却資產의 種類, 構造와 用途, 細目 또는 耐用年數가 동일하기 때문에 規則 第18條 〈種類 등이 같은 減價償却資產의 償却限度額〉의 規定에 따라 하나의 償却計算單位로서 償却限度額을 計算하고 있는 2 이상의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그 일부 資產의 除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除却 등에 의한 損益 計算의 基礎가 되는 帳簿價額은 다음과 같다.

(1) 償却費가 各 資產에 合理的으로 配賦된 경우는 除却 등이 있었던 資產의 除却 등을 할 때의 帳簿價額

(2) 償却費가 各 資產에 配賦되지 않은 경우는 除却 등이 있던 資產에 대해 그 法定耐用年數를 基礎로 計算되는 除却 등을 할 때의 未償却殘額

(註) 個別償却資產에 대해서는 그 償却額을 各 資產에 合理的으로 配賦해야 하지만 工具, 器具 및 備品과 같이 그 配賦가 곤란한 것도 있어 이들에 대하여 (2)의 適用이 있다.

(償却可能限度額까지 償却한 資產의 除却價額 등에 대한 準用)

7-7-6 7-7-5 (1)에 해당하는 경우에 各 資產 中에서 帳簿價額이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달한 것이 있을 때의 取得價額 등의 除外에 대해서는 7-7-4를 準用한다〔1980 直法 2-8 改正〕.

(取得價額 등이 명확치 않은 少額 減價償却資產의 除却價額)

7-7-7 少額의 減價償却資產(令 第133條 〈少額 減價償却資產 取得價額의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은 것에 한함, 以下 7-7-8에서 같음)의 일부에 대하여 除却 등이 있었던 경우에 그 除却 등을 한 資產의 取得時期 및 取得價額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7-7-5 (2)에 의할 수가 없을 때의 除却 등에 의한 損益 計算의 基礎가 되는 帳簿價額은 除却 등을 한 資產과 種類 등이 같은 것의 前事業年度 取得價額 平均의 5% 相當額에 의한다〔1974 直法 2-71, 1980 直法 2-8 改正〕.

(除却數量이 명확하지 않은 貸與資產의 除却價額)

7-7-8 法人이 소유하는 少額의 減價償却資產이 현저하게 多量이고, 또 그 相當部分이 貸與되어 있고, 貸與되고 있는 것의 實在 除却 등의 상황을 個別的으로 管理할 수 없기 때문에 各 事業年度에 除却 등을 한 것 전부를 確認할 수 없는 경우에 法人이 그 除却 등의 數量을 過去의 實績을 基礎로 하는 등 合理的인 方法에 의해 推定하여 그 數量에 대해 7-7-7에 의해 除却 등에 의한 損益을 計算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74 直法 2-71, 1980 直法 2-8 改正〕.

(個別管理가 困難한 少額資産의 除却處理 등의 簡便計算)

7-7-9 法人이 그 取得價額이 少額(대략 40만円 미만)으로 個別管理가 곤란한 工具 또는 器具 및 備品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에 열거하는 方法에 의해 繼續하여 減價償却費 및 除却價額의 計算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9 直法 2-7 改正〕.

(1) 種類, 構造 또는 用途 및 細目의 區分(이하 7-7-9에서 「種類 등의 區分」이라 함)別로 計算이 可能하고 그 除却數量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種類 등의 區分이 같은 것을 일괄하여 減價償却費의 계산을 함과 동시에 取得時期가 오래된 것부터 順次除却하는 것으로 計算한 경우의 未償却殘額에 의해 그 除却價額을 計算하는 方法

(2) 個數管理가 곤란하고, 除却數量이 명확치 않고, 通常 使用可能期間이 경과하면 現物廢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種類 등의 區分이 같은 것을 取得한 事業年度別로 區分하여 그 區分別로 일괄하여 減價償却費를 計算하여 帳簿價額이 取得價額의 5% 相當額에 달한 事業年度와 耐用年數를 經過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와의 어느 쪽인가 늦은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에 除却處理를 하는 方法

第8節 資本的 支出과 修繕費

(資本的 支出의 例示)

7-8-1 法人이 소유한 固定資産의 修理, 改良 등으로 支出한 金額 中에서 當該 固定資産의 價値를 높이거나 耐久性을 늘리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金額이 資本的 支出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은 원칙적으로 資本的 支出에 해당한다〔1980 直法 2-8 追加〕.

(1) 建物의 避難階段의 設置 등 物理的으로 附加한 부분에 관련된 費用

(2) 用途變更 때문에 模樣 바꿈 등 改造 또는 改裝에 直接 소요된 費用

(3) 機械의 部分品을 특히 品質 또는 性能이 높은 것으로 交換한 경우에 交換에 소요된 費用 중 통상 교환할 경우에 그 교환에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費用을 넘는 金額

(註) 建物의 增築, 構築物의 擴張, 延長 등은 建物 등의 取得에 해당된다.

(修繕費에 포함되는 費用)

7-8-2 法人이 그 소유하는 固定資產의 修理, 改良 등을 위해 支出한 金額 중에서 當該 固定資產의 통상의 維持管理를 위해 또는 災害 등으로 인해 훼손된 固定資產에 대해 그 原狀復舊를 위해 소요됐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金額이 修繕費로 되는 것이나,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도 修繕費에 해당한다 〔1980 直法 2-8 改正〕.

(1) 建物을 이동하여 짓거나 또는 解體移築을 한 경우(이동하여 짓거나 또는 解體 移築을 豫定하여 取得한 建物은 제외)에 異動하여 짓거나 移築에 소요된 費用. 단, 解體移築에 있어서는 舊資材의 70% 以上이 그 性質上 再使用할 수 있는 경우이고, 當該 舊資材를 그대로 利用하여 從前의 建物과 동일한 規模 및 構造의 建物을 再建築하는 것에 한함

(2) 機械裝置의 移設(7-3-12 〈集中生產 등을 위한 機械裝置의 移設費〉의 本文 適用이 있는 移設을 제외)에 소요된 費用(解體費를 포함)

(3) 地盤沈下한 土地를 沈下前의 狀態로 回復하기 위해 하는 땅돋우기에 소요된 費用. 단, 다음에 열거하는 땅돋우기에 소요된 費用을 제외

① 土地의 取得後 즉시 땅돋우기를 한 경우

② 土地의 利用目的 變更, 其他 土地의 效用을 현저하게 增加시키기 위해 땅돋우기를 한 경우

③ 地盤沈下에 의해 評價損을 計上한 土地에 대하여 땅돋우기를 한 경우

(4) 建物, 機械裝置 등이 地盤沈下로 인해 海水 등의 侵害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토대높임, 땅높임 또는 移設에 소요되는 費用. 단, 토대높임 工事 등이 從來의 床面 構造, 材質 등을 改良하는 것 등 명백하게 改良工事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改良部分에 대응하는 金額을 제외

(5) 현재 使用하고 있는 土地의 排水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갈, 碎石 등의 敷設에 소요된 費用 및 자갈길 또는 자갈路面에 자갈, 碎石 등을 補充하기 위해 소요된 費用

(少額 또는 周期가 짧은 費用의 損金算入)

7-8-3 計劃에 근거하여 同一한 固定資産에 대하여 행하는 修理, 改良 등(以下 7-8-5까지 「하나의 修理, 改良 등」이라 함)이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修理, 改良 등으로 소요된 費用에 대해서는 7-8-1에 불구하고 修繕費로 損金經理를 할 수 있게 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9 直法 2-7 改正〕.

(1) 하나의 修理, 改良 등을 위해 소요된 費用(하나의 修理, 改良 등이 2 이상의 事業年度에 걸쳐 행해질 때에는 各 事業年度마다 소요된 金額, 以下 7-8-5까지 같음)이 20만円에 미치지 않는 경우

(2) 그 修理, 改良 등이 대략 3년 이내의 期間을 周期로 행해지는 것이 과거의 實績, 其他의 사정으로 보아 명확한 것일 경우

(註) 本文의 「同一한 固定資産」은 하나의 設備가 2 이상의 資産에 의해 構成되는 경우에는 當該 하나의 設備를 構成하는 개개의 資産으로 하고, 送配管·送配電線·傳導裝置 등과 같이 一定規模가 아니면 그 機能을 발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最小 規模로써 合理的으로 區分한 區分別로 한다. 以下 7-8-5까지 같음.

(形式基準에 의한 修繕費의 判定)

7-8-4 하나의 修理, 改良 등을 위해 소요된 費用 중에서 資本的 支出인

가 修繕費인가가 명확치 않은 金額이 있을 경우에 그 金額이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될 때에는 修繕費로 損金經理를 할 수 있게 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9 直法 2－7 改正〕.

(1) 그 金額이 60만円에 미치지 않는 경우의 合

(2) 그 金額이 修理, 改良 등에 관련된 固定資產의 前期末 取得價額의 대략 10% 相當額 以下인 경우

(資本的 支出과 修繕費 區分의 特例)

7－8－5 하나의 修理, 改良 등을 위해 소요된 費用 中에서 資本的 支出인가 修繕費인가가 명확치 않은 金額(7－8－3이나 7－8－4의 적용을 받는 것 또는 災害에 따라 支出하는 것을 제외)이 있을 경우에 法人이 계속하여 그 金額의 30% 相當額과 修理, 改良 등을 한 固定資產의 前期末 取得價額의 10% 相當額中 적은 金額을 修繕費로 하고, 殘額을 資本的 支出로 하는 經理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災害 등의 경우 資本的 支出과 修繕費 區分의 特例)

7－8－6 災害 등에 의해 毁損한 固定資產에 대해 支出한 費用 중에서 資本的 支出인가 修繕費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法人이 그 金額의 30% 相當額을 修繕費로, 殘額을 資本的 支出로 하는 經理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改正〕.

(機能復舊補償金에 의한 固定資產의 取得 또는 改良)

7－8－7 法人이 소유한 固定資產에 대하여 電波障害, 日照妨害, 風害, 騷音 등에 의한 機能低下가 있음으로 인해 그 原因子로부터 그 機能을 復舊하기 위해 補償金을 交付받았을 경우에 當該 補償金을 가지고 交付目的에 적합한 固定資產의 取得 또는 改良을 했을 때에는 그 取得 또는 改良에 충당

한 補償金 중 機能復舊 때문에 支出했다고 인정되는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은 修繕費 등으로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當該 補償金의 交付 대신에 그 原因者로부터 機能復舊를 위한 固定資産을 交付받거나 當該 原因者가 當該 固定資産의 改良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當該 報償金을 交付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終了時까지 機能復舊를 위한 固定資産을 取得 또는 改良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빠르게 그 取得 또는 改良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該 補償金 중 그 取得 또는 改良에 충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金額에 한해 그 取得 또는 改良을 할 때까지 假受金으로 經理할 수 있다.

(地盤沈下에 의한 防潮堤, 防波堤 등의 積上費)

7-8-8 法人이 地盤沈下에 기인한 防潮堤, 防波堤, 防水堤 등의 積上工事를 행한 경우에 數年內에 다시 積上工事를 해야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積上工事에 소요된 費用을 하나의 減價償却資産으로 償却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耐用年數를 經過한 資産에 대한 修理, 改良 등)

7-8-9 耐用年數를 經過한 減價償却資産에 대해 修理, 改良 등을 한 경우라도 그 修理, 改良 등에 支出한 費用에 관련된 資本的 支出과 修繕費의 區分에 대해서는 一般의 例에 의해 그 判定을 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追加〕.

第9節 劣化資産

(劣化資産의 意義)

7-9-1 劣化資産이란 生産設備 本體의 일부를 構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일체가 되어 반복하여 使用되는 資產으로 數量的으로 減耗하거나 質的으로 劣化하는 것을 말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다음의 것은 劣化資產에 해당한다.

① 冷媒
② 觸媒
③ 熱媒
④ 吸着材 및 脫着材
⑤ 溶劑 및 電解液
⑥ 가성소다製造에 필요한 水銀
⑦ 鑄物製造에 필요한 모래
⑧ 亞鉛鐵板製造에 필요한 溶融鉛
⑨ 알루미늄 電解用의 陽極카본 및 氷晶石
⑩ 發電用原子爐用의 重水 및 核燃料棒

(在庫資產으로 되는 劣化資產)

7-9-2 劣化資產 中 製造工程에서 生產過程에 참가하고 또 中間生產物의 物理的 또는 化學的 組成인 것에 대해서는 法人이 이것을 在庫資產으로 經理한 경우에 그것을 인정한다.

(註) 7-9-1 (註)의 (5) 또는 (6)에 열거한 것이 여기에 該當한다.

(劣化 등에 의해 全量을 一時에 交替하는 劣化資產)

7-9-3 劣化資產(7-9-2에 의해 在庫資產으로 經理한 것을 제외, 以下 이 節에서 同一) 中 주로 質的으로 劣化하는 등의 이유로 하나의 設備에 使用되는 數量의 전부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事業의 開始 또는 擴張을 위해 取得한 것에 대해서는 그 取得價額을 資產에 計上하고 그 取得價額에서 교체시에 處分豫想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投入時에서 交替時까지의 期間을 基礎로 해서 定額法 또는 生產高比例法에 준하여 償却한다.

(2) 하나의 設備에 使用되는 數量의 全部를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것의

取得價額을 資産에 計上하여 (1)에 의해 償却하고, 廢棄한 것의 帳簿價額에서 交替時에서의 處分豫想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損金에 算入한다.

(3) 劣化 등에 의해 減耗分의 補充을 한 경우에는 그 補充에 필요한 金額을 支出時에 損金에 算入한다.

(全量을 일시에 교체하지 않고 隨時補充하는 劣化資産)

7-9-4 劣化資産 中 주로 數量的으로 減耗하고 그 減耗分을 補充하여 長期間에 걸쳐 대략 동등한 狀態로 事業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法人이 다음 중 하나의 方法에 따라 繼續하여 經理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1) 事業의 開始 또는 擴張을 위해 取得한 것의 取得價額을 資産에 計上하고 그 資産의 減耗分을 補充하기 위해 필요한 金額을 支出時마다 損金에 算入하는 方法

(2) 事業開始 또는 擴張을 위해 取得한 것의 取得價額을 資産에 計上하고 그 取得價額의 50% 相當額에 달할 때까지 減耗率에 따라 計算한 償却額을 各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함과 동시에 그 資産의 減耗分을 補充하기 위해 필요한 金額을 支出時마다 損金에 算入하는 方法

(3) 事業의 開始 또는 擴張을 위해 取得한 것의 取得價額을 資産에 計上하고 그 資産의 減耗分을 補充한 때에는 그 補充을 위해 필요한 金額을 資産에 計上함과 동시에 그 資産의 帳簿價額 中 減耗分에 對應하는 金額을 損金에 算入하는 方法

(4) 各 事業年度終了時에 소유하고 있는 劣化資産을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에 준하여 評價하는 方法

(少額 劣化資産의 損金算入)

7-9-5 하나의 設備에 통상 사용되는 劣化資産으로 그 取得價額이 少額

(대략 60만円 미만)인 것은 事業用으로 사용할 때마다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1980 直法 2－8, 1989 直法 2－7 改正〕.

第8章 順延資産의 償却

第1節 順延資産의 意義 및 範圍

(定款에 記載되지 않은 設立費用)

8-1-1 法人이 設立을 위해 通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費用을 支出한 경우에 當該 費用을 當該 法人의 負擔으로 한다는 것을 定款 등에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해도 當該 費用은 令 第14條 第1項 第1號 〈創業費〉에 規定하는 「法人의 設立을 위해 支出한 費用으로 當該 法人이 負擔해야 할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980 直法 2-8 追加〕.

(資源開發을 위해 特別히 支出한 費用)

8-1-2 令 第14條 第1項 第5號 〈開發費〉에 規定하는 「資源의 開發을 위해 特別히 支出한 費用」에는 예를 들어 新鑛床의 探鑛을 위한 地質調査, 「보링」(boring) 또는 坑道의 굴삭 등에 필요한 費用과 같이 資源의 開發을 위해 직접사용한 비용외에 開發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特別히 借入한 借入金의 利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固定資産을 取得하기 위해 借入한 借入金의 利子는 설혹 當該 固定資産의 使用開始前의 期間에 관련된 것이라도 令 第14條 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順延資産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公共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한 費用)

8-1-3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① 〈公共的 施設 등의 負擔金〉에 規定한 「自己가 便益을 받는 公共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한 費用」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費用을 말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法人이 自己의 必要에 의해 행하는 道路, 堤防, 護岸 및 其他의 施設 또는 工作物(以下 8－1－3에서 「公共的 施設」이라 한다)의 設置 또는 改良(以下 8－1－3에서 「設置 등」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費用(自己가 利用하는 公共的 施設에 대해 그 設置 등을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以下 8－1－3에서 「國家 등」이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그 設置 등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 負擔金을 포함) 또는 法人이 自己가 소유하는 道路 및 其他의 施設 또는 工作物을 國家 등에 提供한 경우에 當該 施設 또는 工作物의 價額에 相當하는 金額

(2) 法人이 國家 등이 행하는 公共的 施設의 設置 등에 의해 현저하게 利益을 받은 경우에 그 設置 등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 負擔金(土地所有者 또는 借地權을 소유한 法人이 土地의 價格上昇에 基因하여 納付하는 것은 제외)

(3) 法人(鐵道業 또는 軌道業을 經營하는 法人은 제외)이 鐵道業을 經營하는 法人이 행하는 鐵道의 建設에 대해 支出하는 그 施設에 연결하는 地下道 등의 建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 負擔金

(共同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하는 費用)

8－1－4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① 〈公共的 施設 등의 負擔金〉에 規定하는 「自己가 便益을 받는 公共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하는 費用」이란 法人이 所屬하는 協會, 組合, 商店街 등이 행하는 共同的 施設의 建設 또는 改良에 필요한 費用의 負擔金을 말한다. 이 경우에 共同的 施設의 상당부분이 貸室에 사용되는 등 協會 등의 本來 용도 이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관련된 負擔金은 協會 등에 대한 寄附金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改正〕.

(資產을 賃借하기 위한 權利金 등)

8－1－5 다음과 같은 費用은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② 〈資產을 賃借하기

위한 權利金 등〉에 規定하는 順延資産에 해당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建物을 賃借하기 위해 支出하는 權利金, 補償金 및 其他의 費用

(2) 電子計算機 및 其他 機器의 賃借에 따라 支出하는 引受運賃, 關稅, 設置費 및 其他의 費用

(註) 建物의 賃借時에 支拂한 仲介手數料는 支拂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노하우의 契約金 등)

8－1－6 노하우의 設定契約時에 支出하는 일시금 또는 契約金의 費用은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③ 〈役務의 제공을 받기 위한 權利金 등〉에 規定한 順延資産에 해당한다. 단, 노하우의 設定契約에 契約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使用料에 충당한다는 條項이 있는 경우 또는 契約金의 支拂에 의해 一定期間은 使用料를 支拂하지 않는다는 條項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契約金 中 使用料에 충당된 부분의 金額 또는 그 支拂하지 않게 되는 使用料에 상당하는 부분의 金額은 그것을 順延資産으로 하지 않고 前拂費用으로 處理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註) 前拂費用으로 處理한 契約金에 대해 그 使用料에 충당해야 할 기간 또는 使用料를 支拂하지 않는 期間을 經過하여 殘額이 있을 때의 殘額은 當該 期間을 經過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開發費用)

8－1－7 他者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받거나 他者에 委託하여 소프트웨어를 開發한 경우에 그 제공을 받기 위해 또는 委託하기 위해 필요한 費用은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③ 〈役務의 提供을 받기 위한 權利金 등〉에 規定한 順延資産에 해당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法人이 소프트웨어의 開發에 관련하여 他者에게 支拂한 費用 中 다음에 열거한 것은 本文에 열거한 費用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開發하기 위해 他者로부터 技術者의 派遣을 받은 경우(실질적으로 當該 他者에게 開發을 委託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除外)에 그 派遣을 받기 위해 필요한 費用
2. 스스로 開發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他者에게 코우딩만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코우딩을 위해 필요한 費用

(廣告宣傳用으로 사용하는 資產을 贈與함으로써 생긴 費用)

8-1-8 令 第14條 第1項 第9號 〈廣告宣傳用資產을 贈與한 費用〉에 規定하는 「製品 등의 廣告宣傳用으로 사용하는 資產을 贈與함으로써 생긴 費用」이란 法人이 그 特約店 등에 대해 自己 製品 등의 廣告宣傳을 위해 廣告宣傳用 看板, 네온사인, 현수막, 진열대, 자동차와 같은 資產(展示用 모델하우스와 같이 見本으로서의 性格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 以下 8-1-8에서 同一)을 贈與한 경우(그 資產을 取得하는 것을 條件으로 金錢을 贈與한 경우 또는 그 贈與한 資產의 改良 등에 충당하기 위해 金錢 등을 贈與한 경우를 포함) 또는 현저하게 낮은 代價로 讓渡한 경우에 當該 資產의 取得價額 또는 當該 資產의 取得價額에서 그 讓渡價額을 控除한 金額에 상당하는 費用을 말한다〔1980 直法 2-8 改正〕.

(스키場의 게렌더 整備費用)

8-1-9 積雪地帶에서 스키場(그 土地가 主로 他者의 所有에 관련된 것에 한함)에 리프트, 로프웨이 등의 索道事業을 운영하는 法人이 당해 스키장에 관련된 土地를 게렌더로 整備하기 위해 立木의 除去, 땅고르기, 웅덩이의 埋立, 잔디가꾸기 등의 工事를 한 경우에 그 工事에 필요한 費用은 令 第14條 第1項 第9號 〈其他 自己가 便益을 받기 위한 費用〉에 規定한 順延資產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 스키장에서 여관, 식당, 토산물점 등을 경영하는 法人이 當該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負擔한 경우에 그 負擔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1980年 直法 2－8 追加〕.

(註) 1. 既存의 게렌더에 대해 支出한 다음과 같은 費用은 그 支出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① 대략 시즌마다 행하는 傾斜角度의 變更 및 其他 그것에 유사한 工事를 위해 필요한 費用

② 崩落地의 修復, 補強 등의 工事를 위해 필요한 費用

③ 시즌마다 행하는 잡목의 제거, 잔디의 補植 및 기타 그것에 유사한 作業을 위해 필요한 費用

2. 自己의 土地를 스키장으로 整備하기 위한 土工工事(他者의 所有에 관련된 土地를 有料스키장으로 整備하기 위한 土工工事를 포함)에 필요한 費用은 構築物의 取得價額에 算入한다.

(出版權設定의 代價)

8－1－10 著作權法 第79條 第1項 〈出版權의 設定〉에 規定하는 出版權의 設定代價로서 支出한 金額은 令 第14條 第1項 第9號 〈기타 자기가 便益을 받기 위한 費用〉에 規定하는 順延資產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980 直法 2－8 追加〕.

(註) 예를 들어 만화의 주인공을 商品의 마크로 사용하는 등 타인의 著作物을 利用함에 있어서 著作權者 등의 허락을 얻기 위해 支出한 일시금의 비용은 出版權 設定의 代價에 준하여 取扱한다.

(同業者團體 등의 加入金)

8－1－11 法人이 同業者團體 등(社交團體를 제외)에 대해 支出한 加入金(構成員으로서의 地位를 他에 讓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加入金 및 出資의 性質을 갖는 加入金을 제외)은 令 第14條 第1項 第9號 〈기타 자기가 便益을 받기 위한 費用〉에 規定된 順延資產에 해당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構成員으로서의 地位를 남에게 讓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加入金 및 出資의 性質을 갖는 加入金에 대해서는 그 地位를 남에게 讓渡하거나 當該 同業者團體 등을 脫退할 때까지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職業運動選手의 契約金 등)

8-1-12 法人이 職業運動選手 등과 專屬契約을 하기 위해 支出한 契約金 등은 令 第14條 第1項 第9號 〈기타 自己가 便益을 받기 위한 費用〉에 規定하는 順延資產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세일즈맨, 호스티스 등의 스카우트 準備金 그 支出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簡易施設 負擔金의 損金算入)

8-1-13 國家, 地方公共團體, 商店街 등이 행하는 街路의 簡易鋪裝, 街燈, 방책 등의 간이시설로 주로 일반공중의 편익에 사용되는 것을 위해 充當된 負擔金은 順延資產이 아니라 그 負擔金을 支出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第2節 順延資產의 償却期間

(效果가 미치는 期間의 測定)

8-2-1 令 第64條 第1項 第2號 〈順延資產의 償却限度額〉에 規定한 「順延資產으로 되는 費用의 支出의 효과가 미치는 期間」이란 이 節에 別段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固定資產을 利用하기 위해 支出한 順延에 대해서는 當該 固定資產의 耐用年數, 일정의 契約을 할 때 支出한 順延資產에 대해서는 그 契約期間을 각각 基礎로 해 適正하게 見積한 期間에 다른다.

(順延資產 償却期間의 改訂)

8-2-2 固定資產을 利用하기 위해 支出한 順延資產으로 當該 固定資產의 耐用年數를 基礎로 하여 支出의 효과가 미치는 기간(以下 이 節에서는

「償却期間」이라 한다)을 算定한 것에 대해 그 후 當該 固定資産의 耐用年數가 改正된 때에는 그 改正된 事業年度 以後의 當該 順延資産의 償却期間은 改正後의 耐用年數를 基礎로 하여 算定한 年數에 따른다.

(順延資産의 償却期間)

8-2-3 令 第14條 第1項 第9號 〈公共的 施設의 負擔金 등의 順延資産〉에 열거한 順延資産 중 다음의 표에 열거한 것의 償却期間은 다음과 같다〔1971 直審(法) 20, 1973 直法 2-81, 1980 直法 2-8 改正〕.

該當條項	種　類	細　目	償却期間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① 〈公共的 施設 등의 負擔金〉에 열거한 費用	公共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된 費用 (8-1-3)	(1) 그 施設 또는 工作物이 負擔한 者에게만 사용되는 것인 경우	그 施設 또는 工作物 耐用年數의 10분의7에 상당하는 年數
		(2) (1) 이외의 施設 또는 工作物 設置 또는 改良의 경우	그 施設 또는 工作物 耐用年數 10분의4에 상당하는 年數
	公共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된 費用 (8-1-4)	(1) 그 施設이 負擔者 또는 構成員의 共同用으로 사용되는 것인 경우, 또는 協會 등의 本來 用途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	① 施設의 建設 또는 改良에 充當한 部分의 負擔金에 대해서는 그 施設 耐用年數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年數 ② 土地의 取得에 充當하는 部分의 負擔金에 대해서는 45年
		(2) 商店街 등에 共同의 아케이드, 차양, 아치, 장식용 가로등 등 負擔者의 共同用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一般公衆用으로 사용되는 것인 경우	5년(그 施設에 대해 정해져 있는 耐用年數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耐用年數)

該當條項	種　類	細　目	償却期間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② 〈資産을 賃借하기 위한 權利金 등〉에 열거한 費用	建物을 賃借하기 위해 支出한 權利金 등(8－1－5(1))	(1) 建物을 新築할 때 그 所有者에게 支拂한 權利金 등의 當該 權利金 등이 當該 建物의 賃借部分 建設費의 大部分에 상당하고 또 실제로 그 建物의 存續期間中 賃借할 수 있는 狀況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	그 建物의 耐用年數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年數
		(2) 建物의 賃借時에 支拂한 (1) 이외의 權利金 등으로 契約, 慣習 등에 의해 明渡時에 借家權으로 轉賣할 수 있는 것인 경우	그 建物의 賃借後 見積殘存耐用年數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年數
		(3) (1) 및 (2) 이외의 權利金 등의 경우	5年(契約에 의해 賃借期間이 5년 미만인 경우에 契約의 更新時에 다시 權利金 등을 支拂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 賃借期間)
	電子計算機, 기타 機器의 賃借에 따라 支出하는 費用(8-1-5 (2))		그 機器 耐用年數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年數(그 年數가 契約에 의한 賃借期間을 넘을 때는 그 賃借期間)

該當條項	種　　類	細　　目	償 却 期 間
令 第14條 第1項　第9號〈役務의 제공을 받기 위한 權利金 등〉에 열거한 費用	노하우의 契約金 등(8－1－6)		5年(設定契約의 有效期間이 5년 미만인 경우에 契約의 更新時에 다시 一時金 또는 契約金을 支拂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有效期間의 年數)
	소프트웨어의 開發費用(8－1－7)		5年
令 第14條 第1項　第9號〈廣告宣傳用資產을 贈與한 費用〉에 열거한 費用	廣告宣傳用으로 사용되는 資產을 贈與함으로 생긴 費用(8－1－8)		그 資產 耐用年數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年數(그 年數가 5년을 넘을 때에는 5年)
令 第14條 第1項　第9號〈기타 자기가 便益을 받기 위한 費用〉에 열거한 費用	스키장의 게렌더整備費用(8－1－9)		12年
	出版權 設定代價(8－1－10)		設定契約에 정해진 存續期間(設定契約에 存續期間이 정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年)
	同業者團體등의 加入金(8－1－11)		5年
	職業運動選手등의 契約金(8－1－12)		契約期間(契約期間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3년)

(註) 1. 法人이 道路用地를 그대로 또는 道路로서 鋪裝한 후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에 제공한 경우에 그 제공한 土地의 價額(鋪裝費를 포함)이 順延資產으로 되는 公共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한 費用에 該當할 때에는 그 償却期間의 基礎가 되는 「그 施設 또는 工作物의 耐用年數」는 15년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2. 償却期間에 1년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는 그 端數를 버린다.

(港灣浚渫 負擔金 등의 償却期間 特例)

8-2-4 公共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한 費用 중 企業合理化促進法(1952년 法律 第5號) 第8條 〈產業關聯施設의 整備〉의 規定에 근거하여 負擔하는 港灣浚渫에 따른 受益者負擔金 및 共同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을 위해 支出하는 費用 中 負擔者 또는 構成員이 속하는 協會 등의 本來 용도에 제공되는 會館 등의 建設 또는 改良을 위해 負擔하는 負擔金에 대해서는 8-2-3에 정한 償却期間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당분간 8-2-3에 관계없이 그 償却期間을 10년으로 한다.

(公共下水道에 관련된 受益者負擔金 償却期間의 特例)

8-2-5 地方公共團體가 都市計劃事業, 기타 이것에 준하는 事業으로 公共下水道를 設置하는 경우에 그 設置에 의해 현저하게 利益을 받는 土地所有者가 都市計劃法 및 기타 法令의 規定에 근거하여 負擔하는 受益者負擔金에 대해서는 8-2-3에 관계없이 그 償却期間을 6년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註) 法人이 下水道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해 負擔하는 負擔金의 取扱은 7-1-8 〈公共下水道施設의 使用을 위한 負擔金〉에 따르는 것에 留意한다.

第3節 償却費의 計算

(固定資産을 公共的 施設로 제공한 경우의 計算)

8-3-1 法人이 소유한 固定資産을 자기가 便益을 받는 公共的 施設로서 제공한 경우에 그 제공에 관련된 順延資産額은 當該 固定資産의 제공 직전에서의 帳簿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에 따를 수가 있다〔1980 直法 2-8 追加〕.

(償却費로 損金經理를 한 金額)

8-3-2 法人이 順延資産으로 되어야 할 費用을 支出한 경우에 그 全部 또는 一部를 償却費 以外의 科目으로 損金經理를 한 때에도 그 損金經理를 한 金額은 法 第32條 第1項 〈順延資産 償却費의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償却費로서 損金經理를 한 金額」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分割拂의 順延資産)

8-3-3 法人이 令 第14條 第1項 第9號 〈公共的 施設 負擔金 등의 順延資産〉에 열거한 順延資産으로 되어야 하는 費用을 分割하여 支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혹 그 總額이 확정되어 있는 때라 하더라도 그 總額을 未拂金에 計上하여 償却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단, 分割하여 支拂하는 期間이 短期間(대략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다〔1976 直法 2-39, 1980 直法 2-8 改正〕.

(長期分割拂 負擔金의 損金算入)

8-3-4 法人이 公共的 施設 또는 共同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에 관련된 負擔金으로 順延資産으로 되어야 하는 것을 支出한 경우에 當該 負擔金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負擔金으로 支出한 金額은 支出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1978 直法 2－24 追加, 1980 直法 2－8 改正〕.

(1) 負擔金이 그 負擔金에 관련된 順延資產의 償却期間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에 걸쳐 分割하여 徵收되는 것일 것

(2) 分割하여 徵收되는 負擔金이 대략 均等額일 것

(3) 負擔金의 徵收가 대략 支出에 관련된 施設의 工事着工後에 開始된 것일 것

(固定資產을 利用하기 위한 順延資產의 償却開始時期)

8－3－5 法人이 順延資產으로 되어야 하는 費用을 支出한 경우에 當該 費用이 固定資產을 利用하기 위한 것이고, 또 當該 固定資產의 建設 등에 着手하지 않았을 때는 그 固定資產의 建設 등에 着手한 때부터 償却한다〔1980 直法 2－8 改正〕.

(順延資產의 支出 對象이 된 資產이 滅失한 경우에 未償却殘額의 損金算入)

8－3－6 順延資產으로 된 費用의 支出對象이 된 固定資產 또는 契約에 대해 滅失 또는 解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滅失 또는 解約 등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當該 順延資產의 未償却殘額을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順延資產 償却額의 計算單位)

8－3－7 順延資產의 償却限度額은 費目이 달라질 때마다, 또 그 償却期間이 달라질 때마다 計算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法人이 계속하여 8－2－3의 표의 種類 및 細目欄의 구분마다 또 그 償却期間이 틀릴 때마다 順延資產을 구분하여 償却限度額을 計算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支出하는 費用이 20만円 미만인가 아닌가의 判定)

8－3－8 令 第134條〈順延資産이 되는 費用 중 少額인 것의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支出하는 金額이 20만円 미만인가 아닌가는 令 第14條 第1項 第9號① 〈公共的 施設 負擔金 등의 順延資産〉에 열거한 費用에 대해서는 하나의 設置計劃 또는 改良計劃에 대해 支出하는 金額(2회 이상에 分割하여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 支出하는 때에 예상할 수 있는 支出金의 合計), 同號 ② 및 ③에 열거한 費用에 대해서는 契約別로 支出하는 金額, 同號 ④에 열거한 費用에 대해서는 그 支出의 對象이 되는 資産의 1個 또는 1組마다 支出하는 金額에 의해 判定한다〔1970 直審(法) 58, 1974 直法 2－71, 1980 直法 2－8, 1989 直法 2－7 改正〕.

第9章 其他 損金

第1節 資産의 評價損

1. 通 則

(評價損의 判定單位)

9-1-1 法人이 소유한 資産에 대해 評價損을 計上한 경우에 그 評價損의 是否認額을 計算하는 單位는 다음에 열거한 資産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의 區分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其他의 資産에 대해서는 그것에 준하는 合理的인 基準에 따르도록 한다.

(1) 土地(土地上에 存在하는 權利를 포함)-1筆마다

(2) 建物-1棟마다

(3) 電話加入權(특수한 番號에 관련된 電話加入權을 제외)-電話局이 다를 때마다

(4) 在庫資産-種類 등이 다른 것마다, 또 令 第68條 第1號 〈在庫資産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경우〉에 열거한 사실이 다른 것마다

(5) 有價證券-種目마다

(取得價額의 修正과 評價損의 計上과의 關係)

9-1-1의 2 公社債(轉換社債 및 新株引受權附社債를 제외)의 取得價額이 그 額面金額을 넘기 때문에 商法 第285條의 5 〈社債, 기타 債券의 評價〉의 規定에 따라 그 帳簿價額에 대해 상당한 減額을 했기 때문에 생긴 損金은 法 第33條 第1項 〈資産 評價損의 損金不算入 등〉에 規定하는 評價損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에 유의한다〔1977 直法 2－33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評價損否認金 등이 있는 資產에 대해 評價損을 計上한 경우의 處理)

9－1－2 法人이 評價損否認金 또는 償却超過額이 있는 資產에 대해 令 第68條 各號 〈資產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경우〉에 열거한 사실이 생겨서 當該 評價損否認金 또는 償却超過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申告調整에 의해 損金에 算入한 金額은 評價損으로 損金經理한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改正〕.

(時價)

9－1－3 法 第33條 第2項 〈資產 評價損의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評價換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終了時에 當該 資產의 價額」은 當該 資產이 使用收益되는 것으로 하여 讓渡된 경우에 通常 매겨지는 價額에 따른다.

2. 在庫資產의 評價損

(在庫資產이 현저하게 陳腐化한 例示)

9－1－4 令 第68條 第1號②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현저한 陳腐化〉에 規定한 「當該 資產이 현저하게 陳腐化한 것」이란, 在庫資產 그 자체에는 物質的인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經濟的인 環境의 變化에 따라 그 價値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價額이 今後 회복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狀態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商品에 대해 다음과 같은 事實이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소위 季節商品으로 팔다가 남은 것에 대해 今後 通常 價額으로는 販賣할 수 없다는 것이 기왕의 實績 및 其他의 사정에 비추어 명백할 것

(2) 當該 商品과 用途面에서는 대략 같은 것이나, 型式, 性能, 品質 등이 현저하게 다른 新製品이 發表됨으로써 當該 商品에 대해 今後 通常의 方法에 의해 販賣할 수는 없게 되었을 것

(在庫資產에 대해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準하는 特別한 事實」의 例示)

9-1-5 令 第68條 第1號 〈在庫資產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事實〉에 規定하는 「①에서 ③까지에 준하는 特別한 事實」이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한다.

(1) 破損, 찌그러짐, 재고정리, 품질변화 등에 의해 通常의 방법으로는 販賣할 수는 없게 된 것

(2) 和議法의 規定에 따라 和議의 開始決定이 있어 在庫資產에 대해 評價換을 할 필요가 생긴 것

(在庫資產에 대해 評價損의 計上이 되지 않는 경우)

9-1-6 在庫資產의 時價가 단순히 物價變動, 過剩生產, 建値 變更 등의 사정에 따라 低下한 것만으로는 令 第68條 第1號 〈在庫資產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事實〉에 열거한 事實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의 設定)

9-1-6의 2 法人이 法令의 規定, 行政官廳의 指導, 業界의 申請 등에 근거하여 製品의 製造를 中止한 후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當該 製品에 관련된 補修用部品을 相當數量 一時에 取得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製造를 中止한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以下 9-1-6의 2에서 「保有開始年度」라 한다) 이후의 各 事業年度에 當該 事業年度終了時 補修用部品 帳簿價額의 合計가 다음의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넘을 때 그 넘는 부분에 상당하는 金額 以下의 金額을 損金經理에 의해 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에 算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算 式〉

保有開始年度開始時의 補修用 部品 帳簿價額의 合計額 × 다음 表의 保有期間의 年數 및 經過年數에 따른 率

保有期間의 年數 / 經過年數	2	3	4	5	6	7	8	9	10
1	0.784	0.885	0.922	0.942	0.953	0.961	0.967	0.971	0.974
2	0.100	0.636	0.784	0.849	0.885	0.907	0.922	0.933	0.942
3		0.100	0.538	0.702	0.784	0.832	0.863	0.885	0.900
4			0.100	0.469	0.636	0.727	0.784	0.822	0.849
5				0.100	0.419	0.582	0.678	0.741	0.784
6					0.100	0.380	0.538	0.636	0.702
7						0.100	0.350	0.501	0.599
8							0.100	0.326	0.469
9								0.100	0.306
10									0.100

【備考】

1. 이 表의 率은 다음에 의해 구해진 것이다.

$$1-\sum_{t=1}^{n} r(1-r)^{n-t}$$

n=保有期間의 年數

t=經過年數

$$r=1-\sqrt[n]{\frac{1}{10}}$$

2. 事業年度의 期間이 1년이 안될 경우 및 其他 經過年數에 1년 미만의 端數가 있는 경우에 구하는 率은 다음의 例에 따른다.

(例) 保有期間의 年數 8年 : 事業年度의 期間 6個月 : 經過年數 2년 6개월

經過年數 2년 6개월에 따른 率은 經過年數 2년에 따른 率(0.922)과 經過年數 3년에 따른 率(0.863)과의 사이에 있으므로 그 率은 $0.922-(0.922-0.863)\times\frac{6}{12}=0.893$(素數點 以下 3자리 미만의 端數 切上)으로 한다.

(註) 1. 算式의 「保有開始年度開始時에 補修用部品 帳簿價額의 合計額」은 保有開始年度 以後의 事業年度에 取得한 當該 製品에 관련된 補修用部品이 있는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의 合計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2. 算式 및 表의 「保有期間의 年數」는 當該 補修用部品이 法令의 規定 또는 行政官廳의 指導에 근거하여 保有되고 있는 것인 경우에는 當該 法令의 規定 또는 行政官廳의 指導에 의해 保有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年數로 하고 業界의 申請 및 其他의 事由에 근거하여 保有된 것인 경우에는 그 保有해야 할 年數로 하여 사전에 所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 所管法人에 대해서는 所轄國稅局長)의 확인을 받은 年數로 한다.

3. 算式 및 表의 「經過年數」는 保有開始年度開始日 以後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의 期間에 관련된 年數로 하고 1個月 미만의 端數는 1個月로 한다.

(補修用部品 在庫資產調整計定 金額의 益金算入)

9-1-6의 3 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 金額은 算入을 한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 明細書의 添附)

9-1-6의 4 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에 의해 算入을 행한 경우에는 算入을 행한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에 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 算入額의 計算에 관한 明細를 記載한 書類를 添附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單行本 在庫調整計定의 設定)

9-1-6의 5 出版業을 경영하는 法人이 各 事業年度終了時에 保有한 單行本 중 그 最終刷後 6개월 이상 경과한 것(取次業者 또는 販賣業者에게 寄託한 것은 제외, 以下 9-1-6의 5에서 「팔다 남은 單行本」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 以下는 當該 事業年度에서 損金經理에 의해 單行本 在庫調整計定에 算入할 수 있도록 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91 課法 2-4 改正〕.

〈算 式〉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팔다 남은 單行本 帳簿價額의 合計額 × 다음 表의 賣上比率 및 發行部數 各欄의 區分에 따른 算入率

賣上比率		發行部數		
		2,000部 未滿	2,000部 以上 5,000部 未滿	5,000部 以上
以上(%)	未滿(%)	算入率(%)		
20 以上		0	0	0
15	20	50	0	0
10	15	60	50	0
8	10	70	60	50
7	8	80	60	60
5	7	80	70	60
4	5	90	70	70
2	4	90	80	70
1	2	100	90	80
0.5	1	100	100	90
0.5 未滿		100	100	100

【備考】

1. 「賣上比率」이란, 發行部數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이전 6개월간에 販賣된 部數에서 當該 期間에 返品된 部數를 控除한 部數의 比率을 말한다.
2. 「發行部數」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前 6개월 이전에서의 最終刷 部數를 말한다.

(註) 算入率 100%를 적용하는 경우의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은 當該 金額에서 팔다 남은 單行本의 事業年度終了時에서 處分豫想價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單行本 在庫調整計定 金額의 益金算入)

9-1-6의 6 單行本 在庫調整計定 金額은 算入을 한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單行本 在庫調整計定 明細書의 添附)

9-1-6의 7 單行本 在庫調整計定에의 算入을 행한 경우에는 算入을 행한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에 單行本 在庫調整計定 算入額의 計算에 관한 明細를 記載한 書類를 添附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3. 有價證券의 評價損

(上場有價證券의 현저한 價額 低下의 判定)

9-1-7 令 第68條 第2號① 〈上場有價證券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경우〉에서 規定하는 「有價證券의 價額이 현저하게 低下한 것」이란, 當該 有價證券의 事業年度終了時 價額이 帳簿價額의 대략 50% 相當額을 下廻하게 되고 또 가까운 장래에 그 價額의 回復이 예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上場株式의 權利 價格에 相當하는 金額)

9-1-8 規則 第22條 後段 〈權利落株式의 價額〉에서 規定하는 「株式의 權利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은 다음에 열거한 區分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每日 新株의 最終價格이 證券去來所에서 公表되는 것은 事業年度終了日의 最終價格(同日에 公表된 最終價格이 없는 경우에는 同日前 直近에 公表된 最終價格, 以下 9-1-12까지 同一)에서 當該 新株에 대해 拂入해야 할 金額(株式配當에 따라 新株를 取得하는 경우에는 新株의 發行價額, 以下

9－1－8에서 同一)을 控除한 金額에 舊株 1株에 대해 引受하는 新株의 數를 곱하여 얻은 金額

(2) 每日 新株의 最終價格이 證券去來所에서 公表되지 않은 것은 事業年度終了日의 舊株 最終價格에서 當該 新株에 대해 拂入해야 할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舊株 1株에 대해 引受하는 新株의 數를 곱하여 얻은 金額

(非上場有價證券 發行法人의 資產狀態 判定)

9－1－9 令 第68條 第2號② 〈非上場有價證券 및 企業支配株式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경우〉에 規定하는 「有價證券을 發行하는 法人의 資產狀態가 현저하게 惡化한 것」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977 直法 2－33, 1979 直法 2－31 改正〕.

(1) 當該 有價證券을 取得하여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當該 發行法人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생긴 것.

① 商法의 規定에 따라 會社의 整理開始 命令 또는 特別淸算의 開始 命令이 있었을 것

② 破產法의 規定에 따라 破產의 宣告가 있었을 것

③ 和議法의 規定에 따라 和議의 開始決定이 있었을 것

④ 會社更生法의 規定에 따라 更生手續의 開始決定이 있었을 것

(2) 事業年度終了日에 有價證券 發行法人의 1株 또는 1口當의 純資產價額이 有價證券을 取得한 때의 發行法人의 1株 또는 1口當의 純資產價額에 비하여 대략 50% 이상 下廻하게 되었을 것.

(註) (2)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실에 留意한다.

1. 當該 有價證券의 取得이 2회 이상에 걸쳐 일어난 경우 또는 當該 發行法人이 增減資 등을 행한 경우에는 取得 또는 增減資 등이 있을 때마다 그 取得 또는 增減資 등에 의해 增加 또는 減少한 當該 有價證券의 數 또는 그 增減資 등이 있은 날에서 1株 또는 1口當의 純資產價額을 가미하여 當該 有價證券을 取得한 때의 1株 또는 1口當의 純資產價額을 修正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比較한다.

2. 當該 發行法人이 債務超過의 狀態에 있기 때문에 1株 또는 1口當의 純資產價額이 負(마이너스)인 경우에는 當該 負의 金額을 基礎로 하여 比較한다.

(外國有價證券 發行法人의 資產狀態 判定)

9-1-9의 2 外國法人이 發行하는 有價證券에 대해 9-1-9의 (2)에 의해 當該 有價證券 發行法人의 資產狀態가 현저하게 악화한 것인가 아닌가를 判定하는 경우에 當該 發行法人이 物價의 變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나라에 本店 또는 주된 事務所를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當該 有價證券을 取得한 때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사이에서 當該 國家 및 日本의 物價變動率을 合理的으로 감안한 것에 따라 9-1-9의 (2)에 정하는 當該 發行法人의 1株 또는 1口當의 純資產價額의 比較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當該 物價變動率을 감안한 比較가 곤란할 때에는 課稅上 弊害가 없는 한 當該 有價證券을 取得한 날에 當該 發行法人의 1株 또는 1口當 純資產價額(當該 發行法人이 그 會計帳簿의 作成에 使用하는 外國通貨表示 金額에 따라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以下 9-1-9의 2에서 同一) 및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當該 發行法人의 1株 또는 1口當의 純資產價額을 각각의 날에 外國換의 賣買時勢에 따라 엔貨로 換算한 金額에 근거하여 比較를 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追加〕.

(註) 1. 本文의 「純資產價額」은 當該 發行法人이 資產再評價를 행한 경우에도 그 再評價價額이 통상의 市場價額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再評價價額에는 따르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2. 本文의 「外國換의 賣買時勢」에 대해서는 13의 2-1-3의 (2)의 ② 〈取得時換算法〉에 정하는 電信賣買時勢의 仲値에 따른다.

(非上場有價證券의 현저한 價額 低下의 判定)

9-1-10 9-1-7은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않은 有價證券 및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有價證券으로서 企業支配株式에 해당하는 것의 價額이

현저하게 저하한 것의 判定에 대해 準用한다.

(增資拂入後의 株式 評價損)

9－1－10의 2 株式(出資를 포함, 以下 9－1－10의 2에서 동일)을 소유하는 法人이 當該 株式 發行法人의 增資에 관련된 新株를 引受하여 拂入을 한 경우에는 가령 當該 發行法人이 增資 直前에 債務超過 狀態에 있고, 또 그 增資後에도 債務超過 狀態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增資後에 當該 發行法人의 株式에 대해서는 令 第68條 第2號② 〈非上場有價證券 및 企業支配株式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경우〉에 열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그 增資에서 상당한 기간이 經過한 후에 또다시 當該 事實이 생겼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다〔1979 直法 2－31 追加〕.

(氣配時勢가 있는 株式의 價額)

9－1－11 登錄種目으로 되어 있는 株式(日本銀行出資證券을 포함) 또는 店頭管理種目으로 指定되어 있는 株式(이하 本文에서 이들을 「氣配時勢가 있는 株式」이라 한다)에 대해 法 第33條 第2項 〈資産 評價損의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각 事業年度終了時에서의 價額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以前 1개월간의 每日의 最終氣配時勢(證券業協會가 發表하는 最高價格과 最低價格과의 平均價格으로 한다. 以下 本文에서 同一)의 平均價格에 따른다. 이 경우에 다음에 열거한 것에 대한 취급방법을 제시한다〔1990 直法 2－6 改正〕.

(1) 新株權利落이 있었던 株式으로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아직 新株가 發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權利落 以後 新株가 發行될 때가지의 期間內의 當該 株式의 最終氣配時勢는 그 最終氣配時勢에 當該 株式의 權利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2) 當該 1개월간에 新株權利落이 있었던 株式으로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까지 新株가 發行된 것에 대해서는 權利落前 當該 株式의 最終氣配時勢는 그 最終氣配時勢에서 當該 株式의 權利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따른다.

(註) 「株式의 權利 價格에 相當하는 金額」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이전 1개월간(當該 事業年度終了日 이전 1개월 이내에 權利落이 된 경우에는 그 權利落이 된 날부터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以下 9－1－12에서 同一)에서 舊株의 每日의 最終氣配時勢 平均額에서 當該 新株에 대해 拂入해야 할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舊株 1株에 대해 引受하는 新株의 數를 곱해 얻은 金額에 따른다.

(新株의 權利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을 別個의 資産에 計上한 경우의 舊株價額)

9－1－12 新株의 權利落이 있었던 株式에 대해 事業年度終了日에 아직 當該 株式에 관련된 新株가 發行되지 않았을 경우에 新株의 權利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을 별도로 資産에 計上할 때에는 當該 權利落이 있었던 株式의 價額은 規則 第22條 後段 〈權利落 株式의 價額〉의 規定 또는 9－1－11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區分을 따른다.

(1)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株式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의 舊株 最終價格

(2) 氣配時勢가 있는 株式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前 1개월간 매일의 最終氣配時勢 平均額

(氣配時勢가 있는 株式 價額의 特例)

9－1－13 氣配時勢가 있는 株式의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서의 最終氣配時勢가 同日에서 1개월전 最終氣配時勢의 90% 相當額 以上인 경우에는 當該 氣配時勢가 있는 株式의 事業年度終了日의 價額은 9－1－11에도 불구하고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의 最終氣配時勢에 따를 수가 있다. 이 경우에 新株權利落이 있었던 株式으로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 아직 新株가 發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新株의 權利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을 별도로 資産에 計

上한 것을 제외하고, 當該 最終氣配時勢에 9－1－8에 준하여 計算한 當該 株式의 權利 價格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非上場株式으로 氣配時勢가 없는 것의 價額)

9－1－14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않은 株式 中 氣配時勢가 있는 株式 以外의 것(以下 9－1－15에서 「氣配時勢가 없는 株式」이라 한다)에 대해 法第33條 第2項 〈資產 評價損의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의 事業年度終了時에서의 當該 株式의 價額은 다음의 區分에 따른다〔1980 直法 2－8, 1990 直法 2－6 改正〕.

(1) 賣買實例가 있는 것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前 6월간에 賣買가 이루어진 것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價額

(2) 公開途上에 있는 株式(證券去來所가 大藏大臣에 대해 株式의 上場 承認申請을 하는 것을 명백히 한 날부터 上場日 前日까지의 株式 및 日本證券業協會가 株式을 登錄種目으로 登錄하는 것을 명백하게 한 날부터 登錄日前日까지의 株式)으로 當該 株式의 上場 또는 登錄時 株式의 公募 또는 賣出(以下 9－1－14에서 「公募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것((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은 證券去來所 또는 日本證券業協會의 內規에 따라 행하는 入札에 의해 決定된 入札後의 公募 등의 價格 등을 參酌하여 通常 去來라고 인정되는 價額

(3) 賣買實例가 없는 것으로 그 株式을 發行하는 法人과 事業의 種類, 規模, 收益의 狀況 등이 유사한 他法人의 株式價額이 있는 것((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은 當該 價額에 比準하여 推定한 價額

(4) (1)에서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또는 同日에 가장 가까운 날의 株式 發行法人의 事業年度終了時에서 1株當 純資產價額 등을 참작하여 通常 去來된다고 인정되는 價額

(氣配時勢가 없는 株式 價額의 特例)

9－1－15 法人이 氣配時勢가 없는 株式(9－1－14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에 대해 法 第33條 第2項 〈資產 評價損의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서 事業年度終了時 當該 株式의 價額에 대해 1964년 4월 25일付 直資 56, 直審(資) 17 「財產評價基本通牒」(以下 9－1－15에서 「財產評價基本通牒」이라 한다)의 178에서 189－6 〈去來時勢가 없는 株式의 評價〉까지의 예에 따라 算定한 價額에 따를 때에는 課稅上 弊害가 없는 한 다음에 따르는 것을 條件으로 이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1983 直法 2－11, 1990 直法 2－6, 1991 課法 2－4 改正〕.

(1) 當該 株式의 價額에 대해 財產評價基本通牒 179의 예에 따라 算定하는 경우(同 通牒 189－2의 (1)에서 同 通牒 179에 준하여 算定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當該 法人이 當該 株式의 發行會社에게 同 通牒 188의 (2)의 「中心的인 同族株主」에 해당할 때에는 當該 發行會社는 항상 同 通牒 178에 정하는 「小會社」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예에 따를 것.

(2) 當該 株式의 發行會社가 土地(土地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有價證券을 保有하고 있을 때는 財產評價基本通牒 185의 本文에 정하는 「1株當 純資產價額(相續稅評價額에 따라 計算한 金額)」의 計算에서 이들 資產에 대해서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價額에 따를 것.

(企業支配株式의 時價)

9－1－16 法人이 보유하는 企業支配株式에 대해 그 取得이 當該 株式 發行會社를 企業支配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때 當該 企業支配株式의 價額은 當該 株式의 通常 價額에 企業支配에 관련된 代價를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外貨建公社債의 評價損)

9-1-16의 2 法人이 保有한 外貨建公社債(轉換期間滿了前의 轉換社債 및 新株引受權附社債를 제외, 以下 9-1-16의 2에서 同一)에 관련된 外國通貨에 대해 令 第139條의 3 第2項 第1號 〈取得時換算法의 特例〉에 열거한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當該 事實로서 當該 外貨建公社債에 대해 令 第68條 第2號④ 〈有價證券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경우〉에 열거한 事實이 생긴 것으로 본다〔1980 直法 2-15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註) 外國換時勢의 현저한 變動이 있었는가 아닌가의 判定에 대해서는 13의 2-1-6의 2(取得時 換算法 - 換時勢의 현저한 變動이 있을 경우의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의 取扱 例에 따른다.

4. 固定資產의 評價損

(事業供用이 현저하게 遲延된 경우의 評價損)

9-1-17 法人이 보유한 固定資產이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그 取得時로부터 1년 이상 事業用으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當該 固定資產의 價額이 低下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該 固定資產에 대해 令 第68條 第3號 〈固定資產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事實〉에 열거한 「①에서 ⑤까지에 준하는 特別한 사실」이 생긴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固定資產에 대해 評價損의 計上이 되지 않는 경우의 例示)

9-1-18 固定資產의 評價損이 損金에 算入되는 것은 當該 固定資產에 대해 令 第68條 第3號 〈固定資產 評價損의 計上이 되는 경우〉에 열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當該 固定資產 價額의 低下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法 第33條 第2項 〈資產 評價損의 損金算入〉 規定의 適用이 없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과도한 使用 또는 修理의 不充分 등에 의해 當該 固定資產이 현저하게 損耗되어 있는 것.

(2) 當該 固定資產에 대해 償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償却不足額이 생긴 것.

(3) 當該 固定資產의 取得價額이 取得時의 事情 등에 따라 同種 資產의 價額에 비하여 높은 것.

(4) 機械 및 裝置가 製造方法의 急速한 進步 등에 의해 舊式化된 것.

(土地의 賃貸를 한 경우의 評價損)

9－1－19 法人이 소유한 土地의 賃貸時에 賃借人으로부터 權利金, 其他 一時金(賃借人에게 返還한다는 特約이 있는 것은 除外)을 收受함과 동시에 長期間에 걸쳐 當該 土地를 使用하게 함으로써 當該 賃貸後의 價額이 帳簿價額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令 第138條 第1項 〈借地權의 設定 등에 의해 地價가 현저하게 低下한 경우에 土地 등의 帳簿價額의 一部 損金算入〉 規定의 適用이 없는 때에도 그 미치지 못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賃貸를 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에 帳簿價額에서 減額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減價償却資產의 時價)

8－1－20 法人이 令 第13條 第1號에서 第7號 〈有形減價償却資產〉까지에 열거한 減價償却資產에 대해 法 第33條 第2項 〈資產 評價損의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事業年度終了時 當該 資產의 價額에 대해 當該 資產의 再取得價額을 基礎로 해서 그 取得時에서 當該 事業年度終了時까지 定率法에 따라 償却을 했을 경우에 計算되는 未償却殘額에 상당하는 金額에 따랐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第2節 報酬, 給料, 賞與 및 退職給與

1. 任員 등의 範圍

(任員의 範圍)

9-2-1 令 第7條 第1號 〈任員의 範圍〉에 規定하는 「使用人 以外의 者로 그 法人의 經營에 종사하는 者」에는 相談役, 顧問, 其他 그와 유사한 者로 法人內의 地位, 職務 등으로 보아 다른 任員과 마찬가지로 實質的으로 法人의 經營에 從事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

(代表權이 없는 理事)

9-2-1의 2 民法 第34條 〈公益法人의 設立〉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法人(以下 9-2-1의 2에서 「民法法人」이라 한다)의 理事가 令 第71條 第1項 第1號 〈使用人兼務任員이 아닌 任員〉에 열거한 任員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判定에 대해서는 當該 理事가 定款 또는 寄附行爲의 規定 또는 總會의 決議에 따라 代表權이 없다고 된 경우에는 同號에 열거한 任員에 해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에 留意한다.

民法法人 以外 法人의 理事로 같은 사정에 있는 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1980 直法 2-8 追加〕.

(專務取締役 등의 意義)

9-2-1의 3 令 第71條 第1項 第1號 〈使用人兼務任員이 아닌 任員〉에 열거한 專務取締役, 專務理事, 常務取締役 및 常務理事(以下 9-2-1의 3에서 「專務取締役 등」이라 한다)란 定款 등의 規定, 總會 또는 取締役會의 決議 등에 의해 專務取締役 등으로 職制上의 地位가 寄與된 任員을 말한다〔1980 直法 2-8 追加〕.

(使用人으로서의 職制上 地位)

9—2—2 法 第35條 第5項 〈使用人兼務任員〉에 規定한 「其他 法人의 使用人으로서의 職制上 地位」란 支店長, 工場長, 營業所長, 支配人, 主任 등 法人의 機構上 정해져 있는 使用人의 職務上 地位를 말한다. 따라서 取締役 등으로 總務擔當, 經理擔當과 같이 使用人으로서 職制上의 地位, 法人의 特定한 部門의 職務를 總括하고 있는 자는 使用人 兼 務任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1970 直審(法) 58 改正〕.

(機構上 職制가 정해져 있지 않은 法人의 特例)

9—2—3 事業內容이 단순하고 使用人이 少數라는 등의 사정에 의해 法人이 使用人에 대해 特別히 機構로써 職務上의 地位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當該 法人의 任員(法 第35條 第5項 괄호書 〈使用人兼務任員이 아닌 任員〉에 정해진 任員을 제외)으로 常時 從事하는 職務가 他使用人의 職務 內容과 同質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9—2—2에 관계없이 使用人兼務任員으로 取扱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70 直審(法) 58 追加〕.

(使用人兼務任員으로 되지 않은 同族會社의 任員)

9—2—4 令 第71條 第1項 第4號 〈使用人兼務任員이 아닌 同族會社의 任員〉에 規定하는 同族會社의 任員에는 스스로 當該 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를 소유하지 않으나, 그 任員과 法 第2條 第1項 第10號 〈同族會社의 定義〉에 規定하는 特殊한 關係가 있는 個人 또는 法人이 當該 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當該 任員이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令 第71條 第1項 第4號에 規定하는 株主그룹의 特殊比率의 計算에 대해서는 1—3—5 〈同族會社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등〉에 준한다.

(同順位의 株主그룹)

9-2-4의 2 令 第71條 第1項 第4號 〈使用人兼務任員이 아닌 同族會社의 任員〉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에 第1順位의 株主그룹과 同順位의 株主그룹이 있을 때는 當該 同順位의 株主그룹을 포함한 것이 第1順位의 株主그룹에 해당하고, 이것에 뒤따르는 株主그룹이 第2順位의 株主그룹에 해당하는 것에 留意한다〔1970 直審(法) 58 追加, 1980 直法 2-8 改正〕.

(註) 예를 들면 A株主그룹 및 B株主그룹의 持株比率이 각각 20%, C株主그룹 및 D株主그룹의 持株比率이 각각 15%인 경우에는 A株主그룹 및 B株主그룹이 第1順位의 株主그룹에 해당하고 그 持株比率은 40%가 되며, C株主그룹 및 D株主그룹이 第2順位의 株主그룹에 해당하고 그 持株比率은 30%로 된다.

(議決權이 없는 株式이 있는 경우의 使用人兼務任員의 判定)

9-2-4의 3 令 第71條 第2項 〈持株比率 등의 意義〉에 規定하는 「株式」 및 「發行濟株式」에는 議決權이 없는 株式이 포함된다〔1980 直法 2-8 追加〕.

2. 任員에 대한 報酬

(任員에 대하여 支給한 報酬의 範圍)

9-2-5 令 第69條 第1號 〈과대한 任員報酬〉에 規定하는 「그 任員에 대해 支給한 報酬」에는 소위 任員補修 이외에 當該 任員이 使用人兼務任員인 경우에 當該 任員에 대하여 支給하는 소위 使用人分의 給料, 手當 등을 포함하는 것에 留意한다.

(使用人으로서의 職務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任員報酬의 支給限度額을 정한 法人)

9-2-6 令 第69條 第2號 〈支給限度額을 넘는 任員報酬〉에 規定하는 「使用人으로서의 職務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當該 限度額을 정한 法人」이

란 定款, 株主總會, 社員總會 또는 이들에 준하는 것에서 任員報酬의 支給限度額에 使用人兼務任員의 使用人分 報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정하거나 決議한 法人을 말한다.

(使用人分 報酬의 適正額)

9-2-7 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한 使用人分 報酬를 令 第69條 第2號 〈支給限度額을 넘는 任員報酬〉에 정하는 任員報酬의 支給限度額에 포함되지 않는 法人이 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하여 使用人分 報酬를 支給한 경우에는 그 使用人分 報酬 中 當該 使用人兼務任員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使用人의 職務와 대략 유사한 職務에 종사하는 使用人에게 支給한 給料(그 給料가 特別한 사정에 따라 他의 使用人에 비하여 현저하게 多額인 경우에는 그 特別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때에 通常 支給되는 額)에 상당하는 金額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使用人分의 報酬로서 상당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當該 使用人兼務任員이 現在 從事하고 있는 使用人의 職務 내용 등으로 보아 比準해야 할 使用人으로서 적당한 者가 없을 때에는 當該 使用人兼務任員이 任員이 되기 直前에 받았던 給料, 그 후의 베이스업 등의 狀況, 使用人 中 最上位에 있는 者에게 支給한 給料 등을 참작하여 適正하게 見積한 金額에 따를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한 經濟的인 利益)

9-2-8 法人이 使用人兼務任員에게 供與한 經濟的인 利益(住宅 등의 貸與를 한 경우의 經濟的인 利益을 제외)이 다른 使用人에 대하여 供與된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 經濟的인 利益을 使用人으로서의 職務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海外在勤任員에 대한 滯在手當 등)

9-2-9 法人이 海外에 있는 支店, 出張所 등에 勤務하는 任員에 대하여

支給하는 滯在手當 등의 金額을 令 第69條 第2號 〈過大한 任員報酬額〉에 정하는 任員報酬의 支給限度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當該 滯在手當 등의 金額 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金額을 當該 任員에 대한 報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任員報酬 支給限度額의 增額에 다른 一括支給額)

9-2-9의 2 과거로 소급하여 任員報酬의 支給限度額을 增額改訂하는 것에 대하여 株主總會 등에서 決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決議가 定時에 開催되는 株主總會, 社員總會, 其他 이들에 준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고 그 增額改訂이 決議日이 속하는 事業年度開始日 以後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그 決議에 근거하여 소급 適用된 期間에 관련된 報酬의 增額分으로 一括하여 支給된 金額은 任員報酬로 取扱한다〔1977 直法 2-33 追加〕.

3. 經濟的인 利益의 供與

(債務의 免除에 의한 利益 및 其他 經濟的 利益)

9-2-10 法 第34條 第2項 〈任員報酬〉 및 法 第35條 第4項 〈賞與〉에 規定하는 「債務의 免除에 의한 利益 및 其他 經濟的인 利益」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이 法人이 이들의 行爲를 함으로써 實質的으로 그 任員에 대하여 給與를 支給한 것과 마찬가지의 經濟的 효과를 준 것(명백하게 株主 등의 地位에 근거하여 取得했다고 인정되는 것 및 病問安, 災害問安 등과 같은 純然한 贈與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를 말한다〔1971 直審(法) 20 改正〕.

(1) 任員에 대하여 物品 및 其他의 資產을 贈與한 경우에 그 資產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

(2) 任員에 대하여 所有資產을 낮은 價額으로 讓渡한 경우에 그 資產의 價

額과 讓渡價額과의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

(3) 任員으로부터 높은 價額으로 資産을 買入한 경우에 그 資産의 價額과 買入價額과의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

(4) 任員에 대하여 보유한 債權을 放棄하거나, 免除한 경우(任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그 放棄하거나, 免除한 債權額에 상당하는 金額

(5) 任員으로부터 債務를 無償으로 引受한 경우에 그 引受한 債務額에 상당하는 金額

(6) 任員에 대하여 居住用으로 사용하는 土地 또는 家屋을 無償 또는 낮은 價額으로 提供한 경우에 通常 取得해야 할 賃貸料와 실제 징수한 賃貸料와의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

(7) 任員에 대하여 金錢을 無償 또는 통상의 利率보다도 낮은 利率로 貸付한 경우에 通常 取得해야 할 利率에 따라 計算한 利子와 實際 徵收한 利子와의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

(8) 任員에 대하여 無償 또는 낮은 代價로 (6) 및 (7)에 열거한 것 이외의 用役을 제공한 경우에 통상 그 用役의 代價로써 收入하는 金額과 실제로 收入한 代價와의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

(9) 任員에 대하여 機密費, 接待費, 交際費, 旅費 등의 名義로 支給한 金額으로 用途가 不明한 것 또는 法人의 業務에 關係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10) 任員을 위해 個人的 費用을 負擔한 경우에 그 費用에 상당하는 金額

(11) 任員이 社交團體의 會員이 되기 위해 또는 會員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當該 社交團體의 入會金, 經常會費 및 기타 當該 社交團體의 運營을 위해 필요한 費用으로 當該 任員이 負擔해야 할 것을 法人이 負擔한 경우에 그 負擔한 費用에 상당하는 金額

(12) 法人이 任員을 被保險者 및 保險金 受取人으로 하는 生命保險契約을

締結하여 그 保險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한 경우에 그 負擔한 保險料에 상당하는 金額

(給與의 經濟的인 利益)

9-2-11 法人이 任員에 대해 9-2-10에 열거한 經濟的인 利益을 供與한 경우에 그것이 所得稅法上 經濟的인 利益으로서 課稅되지 않는 것이고, 當該 法人이 그 任員에 대한 給與로서 經理하지 않았을 때에는 給與로서 取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賞與

(使用人에 대한 賞與의 支給時期에 支給하는 경우의 意義)

9-2-12 法 第35條 第2項 〈使用人分賞與의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使用人에 대한 賞與의 支給時期에 支給하는 경우」란, 法人이 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해 그 使用人으로서의 職務에 대한 賞與를 當該 法人의 使用人에 대한 賞與의 支給時期와 同時에 支給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當該 賞與를 使用人에 대한 賞與의 支給時期에 支給하지 않고 未拂金으로 經理하고 利益處分에 따른 任員賞與의 支給時期에 支給한 경우에는 이것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定期 給與)

9-2-13 法 第35條 第4項 〈賞與〉에 規定하는 「定期 給與」란, 미리 정해진 支給基準(慣習에 의한 것도 포함)에 근거하여 每日, 每週, 每月과 같이 月 以下의 기간을 단위로 規則的으로 반복 또는 계속하여 支給되는 給與를 말한다. 단, 이들의 給與라도 통상 이루어지는 給與의 增額 以外에 特定한 달에만 增額支給되는 給與에 대해서는 當該 特定한 달에 支給된 額 中 各月

에 支給된 額을 넘는 部分은 臨時的인 給與로 한다〔1978 直法 2－24, 1980 直法 2－8 改正〕.

(註) 1. 예를 들면 每月支給되는 任員報酬가 前月의 賣上高에 따라 增減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任員報酬로 支給한 給與額 中 賣上高의 다소에 관계없이 支給되도록 되어 있는 金額을 넘는 部分은 定期 給與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를 들면 任員에 대하여 支給하는 報酬額를 年額 또는 半年額 등으로 정하고, 그 範圍內에서 各月마다 대략 定額의 報酬를 支給하는 외에 特定한 달에만 增額하여 支給한 경우에는 설혹 그 年額 등으로 정해진 金額이 當該 任員에 대한 報酬로 상당한 金額 範圍內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特定한 달에 支給된 額 中 各月에 支給된 額을 넘는 부분의 金額은 定期 給與에 該當하지 않는다.

(年俸 등으로서 每年 所定의 時期에 支給되는 給與)

9－2－14 法 第35條 第4項 〈賞與〉에 規定하는 「따로 定期 給與를 받는 것이 없는 者에 대해 계속하여 每年 所定의 時期에 定額을 支給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支給된 것」이란, 예를 들면 非常勤任員에 대해 年俸 또는 事業年度의 期間俸을 年1回 또는 年2回 所定의 時期에 支給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定期의 給與 이외에 추석이나 연말에 支給되는 給與는 설혹 그 支給時期 및 金額이 일정해도 同項에 規定한 臨時的인 給與에 해당하는 것에 留意한다.

(任員의 配當給, 能率給 또는 超過勤務手當)

9－2－15 法人이 그 任員에 대해 月俸, 年俸 등의 固定給 이외에 配當給, 能率給 또는 超過勤務手當(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한 超過勤務手當에 한함)을 支給한 경우에 이들의 支給이 使用人에 대한 支給基準과 同一한 基準에 따르고 있을 때의 給與는 法 第35條 第4項 〈賞與〉에 정해진 臨時的인 給與로 하지 않고 定期의 給與로 한다.

(經濟的인 利益에 대한 報酬와 賞與의 區分)

9-2-16 法人이 그 任員에 대하여 支給한 給與가 報酬인가 賞與인가는 當該 給與가 定期의 給與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判定하므로 經濟的인 利益 中 다음에 열거한 것은 報酬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

(1) 9-2-10의 (1), (2) 또는 (8)에 열거한 金額으로 그 額이 매월 일정한 것

(2) 9-2-10의 (6) 또는 (7)에 열거한 金額

(3) 9-2-10의 (9)에 열거한 金額으로 每月 定額에 의해 支給되는 交際費에 관련된 것

(4) 9-2-10의 (10)에 열거한 金額으로 每月 負擔하는 住宅의 光熱費, 家事使用人 給料 등

(5) 9-2-10의 (2) 및 (3)에 열거한 金額으로 經常的으로 負擔하는 것

(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한 使用人賞與의 適正額)

9-2-17 法人이 使用人兼務任員에게 支給한 使用人分 賞與 適正額의 判定에 대해서는 9-2-7을 準用한다.

(使用人이 任員이 된 直後 支給되는 賞與 등)

9-2-17의 2 使用人이었던 者가 任員이 된 경우 또는 使用人兼務任員이었던 者가 令 第71條 第1項 各號 〈使用人兼務任員이 아닌 任員〉에 열거한 任員이 된 直後에 그 者에게 支給한 賞與額 中 使用人 또는 使用人兼務任員이었던 기간에 관련된 賞與額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部分의 金額은 使用人 또는 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하여 支給한 賞與額으로 인정한다〔1980 直法 2-8 追加〕.

5. 退職給與

(任員에 대한 退職給與의 損金算入時期)

9－2－18 退職한 任員에 대한 退職給與額의 損金算入時期는 株主總會의 決議 등에 따라 그 額이 具體的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단, 法人이 退職給與額을 支給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서 支給한 額에 대해 損金經理한 경우에 그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8 改正〕.

(退職年金의 損金算入時期)

9－2－19 法人이 退職한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하여 支給한 退職年金은 當該 年金을 支給해야 할 때의 損金에 算入해야 할 것이므로, 當該 退職한 任員 또는 使用人에 관련된 年金의 總額을 計算하여 未拂金 등에 計上한 경우에도 退職時에 退職給與 充當金計定의 金額을 解體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當該 未拂金 등에 相當하는 金額을 損金에 算入할 수 없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法人이 退職한 任員에게 支給하는 退職年金의 總額을 未拂金 등에 計上한 경우에 退職年金을 支給할 때마다 그 未拂金 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體하여 支給한 退職年金에 충당하는 經理를 함과 동시에, 確定申告書에서 損金으로 算入한 때의 退職年金에 대해서는 損金經理를 한 것으로 取扱한다.

(具體的으로 확정하기 전에 未拂計上을 한 任員退職給與)

9－2－20 法人이 退職한 任員에게 支給한 退職給與額에 대해 그 額이 具體的으로 確定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前의 事業年度에서 取締役會 등에서 內定한 金額을 損金經理에 의해 未拂金에 計上한 경우에 그 未拂金에 計上한 金額은 損金에 算入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 退職給與額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또는 그 額을 支給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서 확정하거나 支給한 額에 대해 確定申告書에서 損金에 算入한 때 退職給與額에 대해

서는 損金經理를 한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改正〕.

(假拂經理를 한 任員退職給與의 損金不算入)

9－2－21 法人이 退職한 任員에 대한 退職給與를 그 額이 具體的으로 確定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以後의 事業年度에 支給한 경우에는 그 支給한 額에 대해 그 支給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假拂金 등으로 經理한 때에는 그 후의 事業年度에 當該 假拂金 등을 損金經理에 의해 消却한 때라 할지라도 그 消却한 金額은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改正〕.

(使用人兼務任員에게 支給한 退職給與)

9－2－22 法人이 退職한 使用人兼務任員에 대하여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를 任員分과 使用人分으로 區分하여 支給한 경우의 法 第36條〈過大한 任員退職給與의 損金不算入〉規定의 適用에 대해서는 合計額에 따라 支給額이 부당하게 高額인가 아닌가를 判定한다.

(適格退職年金契約 등에 근거한 給付가 있는 경우)

9－2－22의 2 退職한 任員이 法人으로부터 退職給與의 支給을 받은 이외에 과거의 使用人兼務任員으로서의 勤務에 따른 適格退職年金契約에 의거한 給付 또는 厚生年金基金으로부터의 給付를 받는 경우에는 當該 給付를 받은 金額(厚生年金基金으로부터의 給付額에 대해서는 厚生年金保險法 第132條 第2項〈年金給付의 基準〉에 열거한 額을 넘는 部分의 金額에 한한다)도 감안하여 그 退職給與額이 부당하게 高額인가 아닌가의 判定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1976 直法 2－39 追加, 1990 直法 2－6 改正〕.

(任員의 分掌變更 등의 경우의 退職給與)

9－2－23 法人이 任員의 分掌變更 또는 改選에 따른 再任時에 그 任員에

대해 退職給與로서 支給한 給與에 대해서는 그 支給이 예를 들어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있어서 한 것이라든가, 分掌變更 등에 따라 任員으로서의 地位 또는 職務의 內容이 激變하고 實質的으로 退職한 것과 마찬가지의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을 退職給與로 取扱할 수 있다〔1979 直法 2－31 改正〕.

(1) 常勤任員이 非常勤任員(常時勤務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代表權을 갖는 者 및 代表權을 갖지 않으나 實質的으로 法人의 經營上 주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除外)으로 된 것

(2) 取締役이 監査役(監査役이면서 實質的으로 法人의 經營上 主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및 法人의 株主 등으로 令 第71條 第1項 第4號 〈使用人兼務任員이 아닌 任員〉에 열거한 要件을 모두 만족하는 者를 제외)으로 된 것

(3) 分掌變更 등의 후에 報酬가 激減(대략 50% 이상의 減少)한 것

(退職給與의 中間支給)

9－2－24 法人이 中小企業退職金共濟制度 또는 適格退職年金制度로의 移行, 停年의 延長 등에 따라 退職給與規程을 制定 또는 改正하여 使用人(停年延長의 경우에는 舊停年에 도달한 使用人을 말한다)에 대하여 退職給與를 중간에 支給한 경우에 그 支給을 한 것에 대해 상당한 理由가 있고, 또 그 후에는 기왕의 在職年數를 가미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支給한 退職給與額을 그 支給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74 直法 2－71 改正〕.

(註) 이 경우의 中間支給에는 法人이 退職給與를 中間支給한 것으로 해 이것을 未拂金 등에 計上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使用人이 任員이 된 경우의 退職給與)

9－2－25 法人의 使用人이 그 法人의 任員으로 된 경우에 當該 法人이 정하는 退職給與規程에 근거하여 當該 任員에 대해 그 任員이 된 때에 使用人이었던 기간의 退職給與로서 計算된 金額을 支給한 때의 支給額은 退職給與로서 그 支給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1. 9－2－24의 (註)는 이 取扱을 適用하는 경우에 대해 準用한다.

2. 使用人 兼 務任員이 令 第71條 第1項 各號 〈使用人 兼 務任員이 아닌 任員〉에 열거한 任員으로 된 경우에 그 使用人兼務任員이었던 기간에 관련된 退職給與로 支給한 金額이 있을 때는 설혹 그 額이 使用人으로서의 職務에 대한 退職給與額으로 計算되었을 때라도 그 支給한 金額은 當該 任員에 대한 賞與로 본다.

(使用人에서 任員이 된 者에 대한 退職給與의 特例)

9－2－26 法人이 새로이 退職給與規程을 制定하거나, 종래의 退職給與規程을 改正하여 使用人에서 任員으로 된 者에 대해 退職給與를 支給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制定 등의 時點에 이미 使用人에서 任員으로 된 者 全員에 대하여 각각의 使用人이었던 期間에 관련된 退職給與로서 計算되는 金額을 그 制定 등의 時點에 支給하고, 그것을 損金에 算入한 때에는 그 支給이 다음 중 하나에 該當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과거에 이들에 대해 使用人이었던 期間에 관련된 退職給與의 支給(9－2－24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한 적이 없을 것.

(2) 支給한 退職給與額이 그 任員이 任員으로 되기 直前에 받은 給與額을 基礎로 하고, 그 후의 베이스업 狀況 등을 참작하여 計算된 退職給與額으로 타당한 額일 것.

(個人事業 當時의 在職期間에 대응한 退職給與의 損金算入)

9－2－27 個人事業을 引繼하여 設立한 法人이 個人事業 當時에서부터 계속하여 在職하는 使用人의 退職에 따른 退職給與를 支給한 경우에 그 退職이 設立後 상당기간 경과후에 일어난 것일 때에는 支給한 退職給與額을 損金에 算入한다.

6. 轉籍, 轉出者에 대한 給與 등

(轉出한 法人이 支出하는 給與負擔金)

9－2－28 法人의 使用人이 다른 法人으로 轉出한 경우에 그 轉出한 使用人(以下 「轉出者」라 함)에 대한 給與를 轉出前 法人(轉出者를 내보낸 法人을 말한다. 以下 同一)이 支給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轉出한 法人(轉出前 法人에서 轉出者의 轉出을 받은 法人을 말한다. 以下 同一)이 자기가 負擔해야 할 給與에 상당하는 金額(以下 9－2－29까지에서 「給與負擔金」이라 한다)을 轉出前 法人에게 支出한 때에는 當該 給與負擔金은 轉出한 法人의 轉出者(轉出한 法人에서 任員에 就任한 경우에는 그 任員)에 대한 給與로 取扱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이 取扱은 轉出한 法人이 실질적으로 給與負擔金의 性質이 있는 金額을 經營指導料 등의 名義로 支出하는 경우에도 適用한다.

(轉出한 法人이 支出한 給與負擔金에 관련된 報酬와 賞與의 區分)

9－2－29 轉出者가 轉出한 法人에서 任員이 된 경우에 轉出한 法人이 支出한 當該 任員에 관련된 給與負擔金이 報酬와 賞與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는 다음의 경우와 같다〔1980 直法 2－8 追加〕.

(1) 當該 給與負擔金이 轉出된 法人이 當該 轉出者에게 給與를 支給할 때마다 그 支給額의 範圍內에서 支出한 것인 경우는 轉出前 法人이 支給하는 給與가 定期의 給與인가, 臨時의 給與인가에 따른다.

(2) 當該 給與負擔金이 一定期間內에 轉出前 法人이 當該 轉出者에게 支給한 給與의 合計額을 基礎로 해서 그 範圍內에서 每月 또는 일괄하여 支出되는 것인 경우는 當該 給與負擔金 중에 轉出된 法人이 當該 期間內에 當該 轉出者에게 支給한 定期給與額에 달할 때까지의 金額은 報酬로 보고, 그것을 넘는 部分의 金額은 賞與로 본다.

(註) (2)의 경우에 轉出한 法人이 給與負擔金으로 支出한 金額이 轉出前 法人이 當該 轉出者에게 支給한 給與額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部分에 대해서 轉出한 法人에게는 給與負擔金으로서의 性格은 없는 것에 留意한다.

(轉出者에 대한 給與의 較差補塡)

9－2－30 轉出前 法人이 轉出한 法人과의 給與條件의 較差를 補塡하기 위해 轉出者에게 支給한 給與額(轉出한 法人을 통해 支給한 金額을 포함)은 當該 轉出前 法人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註) 轉出前 法人이 轉出者에 대해 支給하는 다음의 金額은 어느 것이든 給與條件의 較差를 補塡하기 위해 支給한 것으로 한다.

1. 轉出한 法人이 經營不振 등으로 轉出者에게 賞與를 支給할 수 없게 되어 轉出前 法人이 當該 轉出者에 대해 支給하는 賞與額
2. 轉出한 法人이 海外에 있기 때문에 轉出前 法人이 支給한 소위 不在宅手當

(轉出한 法人이 支給하는 退職給與의 負擔金)

9－2－31 轉出한 法人이 轉出者에 대해 轉出前 法人이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額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정한 負擔區分에 의거하여 當該 轉出者의 轉出期間에 對應하는 退職給與額으로 合理的으로 計算된 金額을 定期的으로 轉出前 法人에게 支出한 金額은 설혹 當該 轉出者가 轉出한 法人에서 任員이 된 경우라도 그 支出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轉出者가 轉出前 法人을 退職한 경우의 退職給與 負擔金)

9－2－32 轉出者가 轉出前 法人을 退職한 경우에 轉出前 法人이 支給한 退職給與額 중 그 轉出期間에 관련된 部分의 金額을 轉出前 法人에게 支出한 金額은 설혹 當該 轉出者가 轉出한 法人에서 계속하여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 勤務할 때라도 그 支出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追加〕.

(轉出前 法人이 轉出者의 退職給與를 負擔하지 않는 경우)

9－2－33 轉出한 法人이 轉出者에게 轉出前 法人이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額 中 轉出期間에 관련된 部分의 金額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負擔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는 그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8 追加〕.

(轉出者에게 관련된 適格退職年金契約의 賦金 등)

9－2－34 轉出前 法人이 適格退職年金契約을 締結한 경우에 轉出한 法人이 이미 정한 負擔區分에 근거하여 그 轉出者에게 관련된 賦金 또는 保險料(過去 勤務債務 등에 관련된 賦金 또는 保險料를 포함)를 轉出前 法人에게 支出한 金額은 支出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8 改正〕.

(轉籍者에 대한 退職給與)

9－2－35 轉籍한 使用人(이하 「轉籍者」라 한다)에 관련된 退職給與에 대해 轉籍前의 法人에서의 在職年數를 通算하여 支給하고자 하는 경우에 轉籍前의 法人 또는 轉籍後의 法人이 그 轉籍者에게 支給한 退職給與額(相對方 法人을 통해 支給한 金額을 포함)에 대해서는 각각의 法人에서의 退職給與로 한다. 단, 轉籍前의 法人 및 轉籍後의 法人이 支給한 退職給與額中에 이들 法人의 다른 使用人에 대한 退職給與의 支給狀況, 각각의 法人에

서의 在籍期間 등으로 보아 명백하게 相對方 法人이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했다고 認定되는 部分의 金額은 相對方 法人에게 贈與한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第3節 保險料 등〔1980 直法 2－15 改正〕

(退職給共濟賦金 등의 損金算入 時期)

9－3－1 法人이 支出한 令 第135條 各號 〈適格退職年金契約 賦金 등의 損金算入〉에 열거한 賦金, 保險料, 信託金 또는 預入金 등을 현실적으로 納付(特定業種退職金共濟組合에 대한 賦金에 대해서는 共濟手帖에 退職金共濟證紙의 附着) 또는 拂入하지 않은 경우에는 未拂金으로 損金에 算入할 수 없다는 점에 留意한다〔1970 直審(法) 58, 1976 直法 2－39, 1980 直法 2－15 改正〕.

(註) 中小企業退職金共濟事業團 또는 特定業種退職金共濟組合의 退職金共濟契約의 경우에도 契約에 관련된 被共濟者에는 法人의 任員으로 部長, 支店長, 工場長 등과 같은 使用人으로서의 職務를 보유한 者가 포함된다.

(社會保險料의 損金算入 時期)

9－3－2 法人이 納付한 다음에 열거하는 保險料 등의 額 中 當該 法人이 負擔해야 할 部分의 金額은 각각 다음에 열거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改正〕.

(1) 健康保險法 第71條 〈保險料의 徵收〉 또는 厚生年金保險法 第81條 〈保險料〉의 規定에 의해 徵收되는 保險料, 同法 第138條 〈賦金〉의 規定에 의해 徵收되는 賦金 또는 同法 第140條 〈徵收金〉의 規定에 의해 徵收되는 徵收金은 當該 保險料, 賦金 또는 徵收金 計算의 對象이 된 달의 末日

(2) 健康保險法 附則 第3條 〈特別保險料의 徵收〉의 規定에 의해 徵收된 特別保險料는 當該 特別保險料에 관련된 賞與 등의 支拂을 한 날

(勞動保險料의 損金算入 時期 등)

9－3－3 法人이 勞動保險의 保險料 徵收 등에 관한 法律 第15條 〈概算保險料의 納付〉의 規定에 따라 納付하는 概算保險料 또는 同法 第19條 〈確定保險料〉의 規定에 따라 納付하거나, 充當 또는 還付를 받은 確定保險料에 관련된 過不足額의 損金算入 時期는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15 追加〕.

(1) 概算保險料－概算保險料 중 被保險者가 負擔해야 할 部分의 金額은 立替金 등으로, 其他 部分의 金額은 當該 概算保險料에 관련된 同法 第15條 第1項에 規定한 申告書를 提出한 날(同條 第3項에서 規定하는 決定에 관련된 金額에 대해서는 그 決定이 있은 날) 또는 그것을 納付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

(2) 確定保險料에 관련된 不足額－概算保險料가 確定保險料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不足額 中 當該 法人이 負擔해야 할 金額은 同法 第19條 第1項에 規定한 申告書를 提出한 날(同條 第4項에서 規定한 決定에 관련된 金額에 대해서는 그 決定이 있은 날) 또는 그것을 納付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 단,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이전에 終了한 同法 第2條 第4項 〈定義〉에서 規定한 保險年度에 관련된 確定保險料에 대해서 생긴 不足額 中 當該 法人이 負擔해야 할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申告書의 提出前이라도 未拂金에 計上할 수 있도록 한다.

(3) 確定保險料에 관련된 超過額－概算保險料가 確定保險料를 넘는 경우에 그 넘는 部分의 金額 中 當該 法人이 負擔한 概算保險料에 관련된 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同法 第19條 第1項에 規定하는 申告書를 提出한 날(同條 第4項에서 規定한 決定에 관련된 金額에 대해서는 그 決定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養老保險에 관련된 保險料)

9－3－4 法人이 自己를 契約者로 하고 任員 또는 使用人(이들의 親族을 포함)을 被保險者로 하는 養老保險(被保險者의 死亡 또는 生存을 保險事故로 하는 生命保險을 말하며, 傷害特約 등의 特約이 있는 것을 포함하지만 9－3－6에 정하는 定期附養老保險은 포함하지 않는다. 以下 9－3－7까지 同一)에 加入하여 그 保險料(令 第135條 〈適格退職年金契約 등의 賦金의 損金算入〉 規定의 適用이 있는 것을 除外, 以下 9－3－4에서 同一)을 支拂한 경우의 保險料(傷害特約 등의 特約에 관련된 保險料를 除外)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15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1) 死亡保險金(被保險者가 死亡한 경우에 支拂되는 保險金을 말한다. 以下 9－3－5까지에서 同一) 및 生存保險金(被保險者가 保險期間의 滿了日 및 其他 一定한 時期에 生存해 있는 경우에 支拂되는 保險金을 말한다. 以下 9－3－4에서 同一)의 受取人이 當該 法人인 경우에 支拂한 保險料는 保險事故의 發生, 保險契約의 解除 또는 失效에 의해 當該 保險契約이 終了할 때까지는 資產에 計上하는 것으로 한다.

(2) 死亡保險金 및 生存保險金의 受取人이 被保險者 또는 그 遺族인 경우에 支拂한 保險料는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3) 死亡保險金의 受取人이 被保險者의 遺族이고, 生存保險金의 受取人이 當該 法人인 경우에는 支拂한 保險料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은 (1)에 의해 資產에 計上하고, 殘額은 期間의 經過에 따라 損金에 算入한다. 단, 任員 또는 部課長 및 其他 特定한 使用人(이들의 親族을 포함)만을 被保險者로 한 경우의 殘額은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定期保險에 관련된 保險料)

9－3－5 法人이 自己를 契約者로 하고 任員 또는 使用人(이들의 親族을 포함)을 被保險者로 하는 定期保險(일정기간내에 被保險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生命保險을 말하며, 傷害特約 등의 特約이 있는 것을 포함, 以下 9－3－7까지 同一)에 加入하여 保險料를 支拂한 경우에는 그 支拂한 保險料(傷害特約 등의 特約에 관련된 保險料를 除外)에 대한 取扱은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15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1) 死亡保險金의 受取人이 當該 法人인 경우에 支拂한 保險料는 期間의 經過에 따라 損金에 算入한다.

(2) 死亡保險金의 受取人이 被保險者의 遺族인 경우에 支拂한 保險料는 期間의 經過에 따라 損金에 算入한다. 단, 任員 또는 部課長 및 其他 特定한 使用人(이들의 親族을 포함)만을 被保險者로 하는 경우의 當該 保險料는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定期附養老保險에 관련된 保險料)

9－3－6 法人이 自己를 契約者로 하고 任員 또는 使用人(이들의 親族을 포함)을 被保險者로 하는 定期附養老保險(養老保險에 定期保險을 결부한 것을 말한다. 以下 9－3－7까지 同一)에 加入하여 支拂한 保險料(傷害特約 등의 特約에 관련된 保險料를 除外)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取扱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1) 當該 保險料가 生命保險證券 등에서 養老保險에 관련된 保險料와 定期保險에 관련된 保險料로 區分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保險料에 대해 9－3－4 또는 9－3－5의 例에 따른다.

(2) (1) 以外의 경우의 保險料에 대해서는 9－3－4의 例에 따른다.

(傷害特約 등에 관련된 保險料)

9－3－6의 2 法人이 自己를 契約者로 하고 任員 또는 使用人(이들의 親族을 포함)을 被保險者로 하는 傷害特約 등의 特約이 結付된 養老保險, 定期保險 또는 定期附養老保險에 加入하고, 當該 特約에 관련된 保險料를 支拂한 경우에 그 支拂한 保險料는 기간의 經過에 따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단, 任員 또는 部課長 및 其他 特定한 使用人(이들의 親族을 포함)만을 傷害特約 등에 관련된 給付金의 受取人으로 한 경우의 當該 保險料는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1984 直法 2－3 追加〕.

(保險契約의 轉換을 한 경우)

9－3－7 法人이 소위 契約轉換制度에 따라 加入한 養老保險 또는 定期附養老保險을 他의 養老保險, 定期保險 또는 定期附養老保險(以下 9－3－7에서 「轉換後 契約」이라 한다)으로 轉換한 경우에는 資産에 計上한 保險料(以下 9－3－7에서 「資産計上額」이라 한다) 중 轉換後 契約의 責任準備金에 충당되는 부분의 金額(以下 9－3－7에서 「充當額」이라 한다)을 넘는 金額을 그 轉換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資産計上額 中 充當額에 상당하는 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그 轉換이 있었던 날에 保險料의 一時拂을 한 것으로 하여 轉換後 契約의 내용에 따라 9－3－4에서 9－3－6까지의 例에 따른다〔1980 直法 2－15 追加〕.

(契約者配當)

9－3－8 法人이 生命保險契約(適格退職年金契約에 관련된 것을 포함)에 근거하여 支拂을 받은 契約者配當額에 대해서는 그 通知(据置配當에 대해서는 그 積立을 했다는 通知)를 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하지만 當該 生命保險契約이 9－3－4의 (1)에 該當하는 경우(9－3－6의

(2)에 의해 9－3－4의 (1)의 例에 의한 경우를 포함)에는 當該 契約者配當額을 資產에 計上한 保險料에서 控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1. 契約者配當額으로 소위 增加保險에 관련된 保險料에 充當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保險料에 대해서는 9－3－4에서 9－3－6까지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2. 据置配當 또는 未收의 契約者配當額에 붙어 있는 利子에 대해서는 그 通知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하는 것에 留意한다.

(長期의 損害保險契約에 관련된 支拂保險料)

9－3－9 法人이 保險期間이 3년 이상이고, 當該 保險期間滿了後에 滿期返戾金을 支拂한다는 규정이 있는 損害保險契約(이것과 유사한 共濟에 관련된 契約을 포함, 以下 9－3－12까지에서 「長期의 損害保險契約」이라 한다)에 의해 保險料(共濟賦金을 포함, 以下 9－3－12까지 같음)을 支拂한 경우에 그 支拂한 保險料 中 積立保險料에 상당하는 部分의 金額은 保險期間의 滿了 또는 保險契約의 解除 또는 失效時까지는 資產에 計上하는 것으로 하고, 其他 部分의 金額은 期間의 經過에 따라 損金에 算入한다〔1971 直審(法) 20 追加, 1980 直法 2－15, 1981 直法 2－16 改正〕.

(註) 支拂한 保險料 中 積立保險料에 상당하는 부분의 金額과 기타 부분의 金額과의 구분은 保險料拂入案內書, 保險證券添附書類 등에 구분되어 있는 것에 따른다.

(賃借建物 등을 保險에 든 경우의 支拂保險料)

9－3－10 法人이 賃借한 建物 등(任員 또는 使用人으로부터 賃借한 것으로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게 使用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제외)에 관련된 長期의 損害保險契約에 대해 保險料를 支拂한 경우의 當該 保險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71 直審(法) 20 追加, 1980 直法 2－15, 1981 直法 2－16 改正〕.

(1) 法人이 保險契約者로 되고, 當該 建物 등의 所有者가 被保險者로 되어 있는 경우는 9－3－9에 따른다.

(2) 當該 建物 등의 所有者가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로 되어 있는 경우는 保險料의 전부를 當該 建物 등의 賃借料로 한다.

(任員 또는 使用人의 建物 등을 保險에 든 경우의 支拂保險料)

9－3－11 法人이 任員 또는 使用人이 所有하는 建物 등(9－3－10 괄호書에 해당하는 建物 등을 포함)에 관련된 長期의 損害保險契約에 대해서 保險料를 支拂한 경우의 當該 保險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71 直審(法) 20 追加, 1980 直法 2－15, 1981 直法 2－16 改正〕.

(1) 法人이 保險契約者가 되고,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이 被保險者로 된 경우에 保險料 中 積立保險料에 상당하는 부분의 金額은 資產에 計上하고 其他 部分의 金額은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단, 其他 部分의 金額으로 所得稅法上 經濟的인 利益으로 課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法人이 給與로서 經理하지 않는 경우에는 給與로 取扱하지 않는다.

(2)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이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로 되어 있는 경우는 保險料의 전부를 당해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保險事故의 發生에 의한 積立保險料의 處理)

9－3－12 法人이 長期의 損害保險契約에 대해 資產으로 計上한 積立保險料에 상당하는 部分의 金額은 保險事故의 發生에 따라 保險金의 支拂을 받은 경우에도 그 支拂에 의해 當該 損害保險契約이 失效되지 않는 때에는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1 直審(法) 20 追加, 1980 直法 2－15 改正〕.

第4節 寄 附 金

1. 寄附金의 範圍 등

(子會社 등을 整理하는 경우의 損失負擔)

9－4－1 法人이 子會社 등의 解散, 經營權의 讓渡 등에 따라 當該 子會社 등을 위해 債務의 引受 및 其他 損失을 負擔하거나, 當該 子會社 등에 대한 債權을 放棄한 경우에 그 負擔 또는 放棄를 하지 않으면 금후보다 큰 損失을 입게 될 것이 社會通念上 명백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負擔 또는 放棄를 하게 되었다는 등, 그러한 일에 대해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負擔 또는 放棄를 함으로써 생긴 損失額은 寄附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無利子貸付 등)

9－4－2 法人이 子會社 등에 대해 金錢을 無償 또는 통상의 利率보다 낮은 利率로 貸付한 경우에도 그 貸付가 예를 들어 業績이 不振한 子會社 등의 倒産을 방지하기 위해 緊急히 행한 資産의 貸付로써 合理的인 再建計劃에 근거한 것일 것 등, 그 無償 또는 낮은 利率로 貸付한 것에 대해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貸付가 正常的인 去來條件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個人이 負擔해야 할 寄附金)

9－4－2의 2 法人이 損金으로 支出한 寄附金으로 그 法人의 任員 등이 個人的으로 負擔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負擔해야 할 者에 대한 給與로 한다〔1980 直法 2－8 改正〕.

(假拂經理한 寄附金)

9－4－2의 3 法人이 각 事業年度에서 支拂한 寄附金을 假拂金 등으로 經理한 경우의 當該 寄附金은 支拂한 事業年度에서 支出한 것으로 하여 法第37條 第2項 〈寄附金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8 改正〕.

(어음으로 支拂한 寄附金)

9－4－2의 4 令 第78條 〈未拂寄附金〉에 規定한 「支拂」이란, 法人이 그 寄附金을 현실적으로 支拂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當該 寄附金의 支拂을 위한 어음의 발행(裏書讓渡를 포함)은 현실의 支拂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80 直法 2－8 改正〕.

2.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

9－4－3 法 第37條 第3項 第1號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에 대한 寄附金이란,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이하 本文에서 「國家 등」이라 한다)에서 採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國立 또는 公立學校 등의 施設의 建設 또는 擴張 등의 目的으로 設立된 後援會 등에 대한 寄附金일지라도 그 施設이 完成後 遲滯없이 國家 등에 歸屬하는 것이 명백한 것은 이것에 해당한다.

(最終的으로 國家 등에 歸屬하지 않는 寄附金)

9－4－4 國家 등에 대하여 採納의 手續을 통해 支出한 寄附金이라 할지라도 그 寄附金이 特定한 團體에 交付되는 것이 명백한 것 등 最終的으로 國家 등에 歸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公共企業體 등에 대한 寄附金)

9－4－5 日本道路公團, 日本開發銀行 등과 같이 全額 政府出資에 의해 設立된 法人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全額 出資에 의해 設立된 法人에 대한 寄附金은 法 第37條 第3項 第1號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의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에는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8 直法 2－1 改正〕.

(災害救助法의 規定에 의해 救助의 委託을 받은 團體 등에 대한 義捐金 등)

9－4－6 法人이 災害救助法 第32條 〈日本赤十字社에의 委託〉의 規定에 따라 救助, 그 應援의 委託을 받은 日本赤十字社 또는 그것에 協力하는 募金團體(新聞·放送 등의 報道機關, 慈善事業團體 또는 宗教團體, 商工會議所 등)에 醵出한 義捐金 등에 대해서는 그 義捐金 등이 國家 등에 醵出되거나, 一般被災害에 配分되는 것이 募金要綱, 募金趣意書 등에서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일 때에는 法 第37條 第3項 第1號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의 國家 등에 대한 寄附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其他

(特定公益增進法人의 주된 目的인 業務에 관련한 寄附金의 判定)

9－4－7 法 第37條 第3項 第3號 〈特定公益增進法人에 대한 寄附金〉에 規定한 「當該 法人의 주된 目的인 業務에 관련한 寄附金」인가 아닌가는 當該 法人의 募金趣意書, 事業計劃書, 募金計劃書의 寫本을 綜合 勘案하여 判定한다〔1988 直法 2－14 改正〕.

(資產을 帳簿價額에 의해 寄附한 경우의 處理)

9－4－8 法人이 金錢 以外의 資產으로 支出한 寄附金은 支出時 當該 資

産의 價額에 따라 計算하지만, 法人이 金錢 以外의 資産으로 支出한 法 第37條 第3項 各號 〈指定寄附金 등〉에 정한 寄附金에 대해 그 支出한 金額을 帳簿價額에 計算하고 또 確定申告書에 記載한 경우에는 法人이 計上한 寄附金額이 當該 資産의 價額보다 낮기 때문에 그 一部에 대해 當該 確定申告書에 記載가 없게 될 때에도 그 記載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同項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第5節 租稅公課

1. 租稅

(租稅의 損金算入 時期)

9－5－1 法人이 納付해야 할 國稅 및 地方稅(法人의 각 事業年度 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것을 除外)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른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75 直法 2－21, 1980 直法 2－15, 1984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1) 申告納稅方式에 의한 租稅 － 納稅申告書에 記載된 稅額에 대해서는 當該 納稅申告書가 提出된 날이 속한 事業年度로 하고, 更正 또는 決定에 관련된 稅額에 대해서는 當該 更正 또는 決定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단, 申告期限 未到來의 酒稅 등에 대해 收入金額 또는 在庫資産의 評價額 中에 納付해야 할 稅額에 상당하는 金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申告期限 未到來의 事業에 관련된 事業所稅에 대해 製造原價, 工事原價, 其他 이들에 준하는 原價 中에 納付해야 할 稅額에 상당하는 金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法人이 當該 金額을 損金經理에 의해 未拂金에 計上했

을 때의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損金經理를 한 事業年度로 한다.

(2) 賦課課稅方式에 의한 租稅 — 賦課決定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단, 法人이 納付해야 할 稅額에 대해 納期의 開始日(納期가 分割하여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納期 開始日로 한다)이 속하는 事業年度 또는 實際로 納付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서 損金經理를 한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로 한다.

(3) 特別徵收方式에 의한 租稅 — 納入申告書에 관련된 稅額에 대해서는 그 申告日이 속한 事業年度로 하고, 更正 또는 決定에 의한 不足稅額에 대해서는 當該 更正 또는 決定이 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단, 申告期限 未到來의 것에 대해 收入金額 中에 納入해야 할 金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法人이 當該 金額을 損金經理에 의해 未拂金에 計上한 때의 當該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損金經理를 한 事業年度로 한다.

(4) 利子稅 및 地方稅法 第65條, 第72條의 45의 2 또는 第327條〈法人의 道府縣民稅 등에 관련된 納期限 延長의 경우의 延滯金〉의 規定에 의해 徵收된 延滯金 — 納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단, 法人이 當該 事業年度의 期間에 관련된 未納의 金額을 損金經理에 의해 未拂金에 計上한 때의 當該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損金經理를 한 事業年度로 한다.

(事業稅 損金算入 時期의 特例)

9—5—2 當該 事業年度 直前의 事業年度(以下 9—5—2에서 「直前年度」라 한다)의 事業稅額(9—5—1에 의해 直前年度의 損金에 算入되는 部分의 金額을 제외, 以下 9—5—2에서 같음)에 대해서는 9—5—1에 관계없이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그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해 申告, 更正 또는 決定(以下 9—5—2에서 「申告 등」이라 한다)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라도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當該 事業年度

의 法人稅에 대해 更正 또는 決定을 할 때에는 當該 損金에 算入하는 事業稅額은 直前年度의 所得 또는 收入金額에 標準稅率을 곱하여 計算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 當該 事業稅에 대해 申告 등이 있으므로 損金에 算入한 事業稅額에 대해 過不足額이 생겼을 때에는 當該 申告 또는 納付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1. 標準稅率은 地方稅法 第72條의 22 〈事業稅의 標準稅率 등〉의 標準稅率에 따른다.

2. 直前年度分 事業稅額의 損金算入만을 내용으로 하는 更正은 原則的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強制徵收 등에 관련된 源泉所得稅)

9－5－3 法人이 支拂하는 配當, 給料 등에 대해 源泉徵收에 관련된 所得稅를 納付하지 않았기 때문에 所得稅法 第221條 〈源泉徵收에 관련된 所得稅의 徵收〉의 規定에 의해 所得稅를 徵收당한 경우에 그 徵收된 所得稅를 租稅公課 등으로 損金經理한 때는 徵收의 基礎가 된 配當, 給料 등의 區分에 따라 追加支拂이 된 것으로 한다.

法人이 配當, 給料 등에 대해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않고 所得稅를 納付한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註) 法人이 그 徵收된 또는 納付한 所得稅를 假拂金 등으로 經理하고, 求償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經理를 認定한다.

(道府縣民稅 등의 減免 대신에 交付를 받은 補助金 등)

9－5－4 法人이 道府縣 또는 市町村에서 工場誘致條例 또는 그것에 준하는 條例에 근거하여 補助金, 奬勵金 등을 交付받은 경우에 當該 補助金, 奬勵金 등이 實質的으로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의 減免 대신에 交付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때의 當該 補助金, 奬勵金 등은 그 交付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하지 않는다.

2. 罰科金

(任員에 대한 罰科金 등)

9－5－5 法人이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해 課해진 罰金 또는 科料, 過料 또는 交通犯則金을 負擔한 경우에 그 罰金 등이 法人의 業務遂行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行爲 등에 대하여 課해진 것일 때에는 法人이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其他의 것일 때에는 그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1976 直法 2－39 改正〕.

3. 第2次 納稅義務에 의한 納付稅額

(第2次 納稅義務에 의해 納付 또는 納入한 金額의 返還을 받은 경우의 益金不算入)

9－5－6 法人이 法 第39條 第1項 各號 및 第2項 各號 〈第2次 納稅義務에 관련된 納付稅額의 損金不算入 등〉에 열거한 國稅 또는 地方稅를 納付하거나 納入함으로써 생긴 損失額이 同條의 規定에 따라 損金에 算入되지 않은 경우에 그 후의 事業年度에서 求償에 의해 金錢 및 其他 資產의 給付를 받았을 때는 給付받은 資產의 價額(同條 第2項 但書에 規定하는 경우에 該當하여 當該 損失額 中 損金에 算入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損金에 算入된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제외)에 상당하는 金額은 그 給付를 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賦課金, 納付金 등〔1977 直法 2－33 追加〕

(賦課金, 納付金 등의 損金算入 時期)

9－5－7 法人이 納付해야 할 다음에 열거한 賦課金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77 直法 2－33 追加, 1988 直法 2－14 改正〕.

(1) 公害健康被害의 補償 등에 관한 法律 第52條 第1項〈汚染負荷量賦課金의 徵收〉에 規定하는 汚染負荷量賦課金 － 當該 汚染負荷量賦課金에 대해 汚染負荷量賦課金申告書가 提出된 날(決定에 관련된 金額에 대해서는 決定의 通知가 있었던 날)

(2) 公害健康被害의 補償 등에 관한 法律 第62條 第1項〈特定賦課金의 徵收〉에 規定한 特定賦課金 － 當該 特定賦課金에 대해 決定의 通知가 있었던 날

(3) 障礙者雇傭의 促進 등에 관한 法律 第26條 第1項〈身體障礙者雇傭納付金의 徵收〉에 規定한 身體障礙者雇傭納付金 － 當該 身體障礙者雇傭納付金에 대해 身體障礙者雇傭納付金申告書가 提出된 날(告知에 관련된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告知가 있었던 날)

第6節 貸損損失

1. 貸金 등의 貸損

(貸金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切捨한 경우의 貸損)

9－6－1 法人이 보유하는 외상매출금, 貸付金 및 其他의 債權(以下 이 節에서 「貸金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의 貸金 등의 額 중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서 貸損으로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會社更生法의 規定에 따라 更生計劃의 認可 決定이 있었던 경우에서

그 決定에 의해 切捨하게 된 金額

(2) 商法의 規定에 의한 特別淸算에 관련된 協定의 認可 또는 整理計劃의 決定 또는 和議法의 規定에 의한 和議(強制和議를 포함)의 決定이 있었던 경우에 이들의 決定에 의해 切捨하게 된 金額

(3) 法令의 規定에 의한 整理手續에 따르지 않는 關係者의 協議決定으로 다음에 열거한 것에 의해 切捨하게 된 金額

① 債權者集會의 協議決定으로 合理的인 基準에 의해 債務者의 負債整理를 정한 것

② 行政機關 또는 金融機關 및 其他 第3者의 알선에 의한 當事者間 協議에 따라 締結된 契約으로 그 內容이 ①에 준하는 것

(4) 債務者의 債務超過 狀態가 상당기간 계속되고 그 貸金 등의 辨濟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債務者에 대해 書面에 의해 명백하게 된 債務免除額

(回收不能 貸金 등의 貸損)

9－6－2 法人이 보유한 貸金 등에 대해 그 債務者의 資產狀況, 支拂能力 등으로 보아 그 全額이 回收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명백하게 된 事業年度에 貸損으로 損金經理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當該 貸金 등에 대해 擔保物이 있을 때는 그 擔保物을 處分한 후가 아니면 貸損으로 損金經理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保證債務는 현실로 그것을 履行한 후가 아니면 貸損의 對象으로 할 수 없는 것에 留意한다.

(一定期間 去來停止後 辨濟가 없는 경우 등의 貸損)

9－6－3 債務者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債務者에 대해 보유하는 외상債權(외상賣出金, 未收請負金 및 其他 이들에 준

하는 債權을 말하며, 貸付金 및 기타 이것에 준하는 債權을 포함하지 않는다. 以下 9－6－3에서 같음)에 대해 法人이 當該 외상債權額에서 備忘價額을 控除한 殘額을 貸損으로 損金經理를 한 때에는 그것을 認定한다〔1971 直審(法) 20, 1980 直法 2－15 改正〕.

(1) 債務者와의 去來를 停止한 때(最後의 辨濟期 또는 最後의 辨濟時가 當該 停止를 한 때 이후인 경우에는 이들 중 가장 늦은 때) 以後 1년 이상 경과한 경우(當該 외상債權에 대해 擔保物이 있는 경우를 除外)

(2) 法人이 同一地域의 債務者에 대해 보유하는 當該 외상債權의 總額이 그 徵收에 필요한 旅費 및 기타의 費用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當該 債務者에 대해 支拂을 督促했음에도 불구하고 辨濟가 되지 않을 때

(註) (1)의 去來 停止는 계속적인 去來를 하였던 債務者에 대해 그 資產狀況, 支拂能力 등이 惡化하여 그 후의 去來를 停止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不動產去來와 같이 우연히 去來를 한 債務者에 대해 보유한 當該 去來에 관련된 외상債權에 대해서는 그 取扱의 適用은 없다.

2. 債權償却特別計定

(認定에 의한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設定)

9－6－4 法人이 보유한 貸金 등 또는 當該 貸金 등에 관련된 債務者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9－6－5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 以下의 金額을 해당하게 된 事業年度에서의 損金經理에 의해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管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所管法人에 대해서는 管轄國稅局長, 以下 9－6－4에서 같음)에 대해 그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算入된 金額에 대해 認定申請을 행함과 동시에, 管轄稅務署長이 當該 事業年度 確定申告書 提出後에 그 申請된 金額과 다른 金額을

認定한 때에는 곧바로 그 認定된 金額에 근거하여 修正申告書를 提出하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1977 直法 2－33, 1980 直法 2－15 改正〕.

(1) 債務者에 대해 債務超過의 狀態가 상당기간 계속되고, 事業好轉의 가능성이 없는 것, 當該 債務者가 天災事故·經濟事情의 急變 등에 의해 多大한 損失을 입은 일 및 其他 이들에 유사한 事由가 발생하여 當該 貸金 등의 額의 相當部分(대략 50% 이상)에 대해 回收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回收可能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金額

(2) 貸金 등의 額 中 擔保物의 處分에 의해 얻어지리라고 예상되는 金額以外의 金額에 대해 回收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그 擔保物의 處分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回收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 金額

(3) 貸金 등이 外國으로부터의 利子, 配當 등(2－1－31 〈送金이 許可되지 않는 利子, 配當 등의 歸屬時期의 特例〉에 정한 外國으로부터의 利子, 配當 등을 말한다)에 대해 計上한 未收金 등인 경우에 現地의 外貨事情 및 其他 어쩔수 없는 事由에 의해 送金이 許可되지 않기 때문에 그 計上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또 금후에도 같은 事由에 의해 長期(대략 2년 이상)에 걸쳐 그 支拂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인정될 때의 當該 貸金 등

(註) 1. 貸金 등에는 貸金 등에 대해 取得한 受取어음으로 當該 貸金 등에 관련된 債務者가 발행하거나 引受한 것을 裏書讓渡(割引을 포함)한 경우에서의 當該 受取어음에 관련된 旣存債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債權償却特別計定의 算入額을 徵收不能豫想額으로 表示한 경우의 取扱에 대해서는 11－2－14 〈徵收不能豫想額으로 表示한 貸損充當金〉에 준한다.

(形式基準에 따른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設定)

9－6－5 債務者에 대해 다음의 (1)에 열거한 사실이 發生한 경우에는 當該 事實이 發生한 날(同日後 當該 事實에 근거한 整理手續의 繼續 中에 당

해 사실의 발생을 알거나, 保證債務의 履行에 의해 求償權이 생긴 경우에는 그 안 날로 또는 생긴 날로 한다. 以下 9－6－5에서 같음)이 속하는 事業年度終了日에 當該 債務者에 대해 保有한 貸金 등의 額 中 當該 事實이 發生한 날에 보유하고 있던 다음의 (2)에 열거하는 金額의 50％에 상당하는 金額(當該 貸金 등에 대해 미리 算入한 債權償却特別計定의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金額을 控除한 金額) 以下의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에 損金經理에 의해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算入할 수 있다.

外國에 있는 債務者에 대해 다음의 (1)에 열거한 사실과 유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1971 直審(法) 20, 1977 直法 2－33, 1980 直法 2－15 改正〕.

(1) 債權償却特別計定의 대상이 되는 사실.

① 商法의 規定에 따라 會社의 整理開始의 申請 또는 特別淸算 開始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

② 破産法의 規定에 따라 破産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

③ 和議法의 規定에 따라 和議 開始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

④ 會社更生法의 規定에 따라 更生手續 開始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

⑤ 어음交換所(어음交換所가 없는 地域에서는 當該 地域에서 어음交換業務를 행하는 銀行團을 포함)에서 去來의 停止處分을 받았다는 것

(2) 債權償却特別計定의 對象이 되는 貸金 등의 額은 當該 債務者에 대해 보유하는 貸金 등의 額에서 다음의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한다.

① 當該 債務者로부터 받은 金額(支拂어음과 같이 債權과 相殺할 수 없는 債務에 관련된 金額을 除外)이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貸金 등으로 볼 수 없는 金額

② 質權, 抵當權, 所有權留保, 信用保險 등(以下 9－6－9까지 「質權

등」이라 한다)에 의해 擔保되어 있는 金額

③ 金融機關(保證機關을 포함, 以下 9－6－9에서 같음)의해 保證되어 있는 金額

④ 債務者로부터 第3者가 발행한 어음(債務者가 발행한 어음으로 第3者가 引受한 것을 포함, 以下 9－6－9에서 같음)을 受取한 경우에 그 어음의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

(註) 1. (1)에 열거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債務者의 資產, 負債 등의 狀況으로 보아 貸損이라고 예상되는 金額이 (2)에 열거한 金額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넘을 때에는 9－6－4에 의해 債權償却特別計定으로 算入할 수 있는 것에 留意한다.

2. 各 事業年度終了日까지 債務者가 발행한 어음이 不渡가 되어 當該 事業年度에 관련된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法 第75條의 2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延長의 特例〉의 規定에 의해 그 提出期限이 延長된 경우에는 延長된 期限)까지 當該 債務者에 대해 (1)의 ⑤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에서 債權償却特別計定으로 算入을 할 수 있다.

(貸金 등이 長期保留되었을 경우의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設定)

9－6－6 法人이 保有한 貸金 등이 9－6－1의 (1)에서 (2)까지에 열거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류 또는 年賦償還하도록 된 경우에는 當該 貸金 등의 額중 이들 사실이 있었던 事業年度終了日에서 5년 경과후에 辨濟되거나, 切捨하게 되는 金額(質權 등에 의해 擔保된 金額 또는 當該 貸金 등에 관련된 債權償却特別計定의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當該 事業年度(當該 事實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 날이 當該 事業年度後의 事業年度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알게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損金經理에 의해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算入할 수 있다〔1973 直法 2－81, 1980 直法 2－15 改正〕.

(狀況이 變化한 경우 등의 債權償却特別計定의 積增)

9－6－7 法人이 債權償却特別計定의 金額을 보유한 경우에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에 관련된 貸金 등 또는 當該 貸金 등에 관련된 債務者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當該 債務者에 대해 보유하는 貸金 등의 額中 각각 다음에 열거한 金額에서 이미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算入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상당하는 金額 以下의 金額을 그 해당하게 된 事業年度에서 損金經理에 의해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算入이 (1)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일 때는 9－6－4의 後段의 取扱을 準用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생긴 경우는 當該 代金 등의 額 中 回收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金額

① 當該 債務者의 資產, 負債 등의 상황이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을 설정한 때의 狀況에 비하여 명백하게 惡化한 일

② 9－6－5에 의해 債權償却特別計定을 설정한 경우에 그 후 回收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金額이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의 金額을 넘는 것이 명백하게 된 일

(2)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생긴 경우는 아래의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

① 9－6－5의 (2)에 의해 貸金 등에서 控除한 抵當權 등의 目的物 또는 어음이 災害 등에 의해 滅失, 損壞되거나 不渡가 된 일

② 債權償却特別計定을 설정할 때 會社更生法 第123條 〈更生擔保權〉의 更生擔保權으로 신고한 債權이 그 후 일반 更生債權으로 된 일

〈算 式〉

當該 事實이 생긴 때의 貸金 등의 額(9－6－5의 (2)에 정한 金額을 말한다) × $\frac{\text{그 債務者에 대해 이미 算入한 債權償却特別計定 金額의 合計額}}{\text{債務者에 대해 最後의 算入을 행했을 때의 貸金 등의 額(9－6－5의 (2)에 정한 金額을 말한다)}}$

(割賦未收金 등에 대한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設定)

9－6－8 割賦販賣 등을 한 在庫資産 또는 役務의 제공에 관련된 收益額 및 費用에 대해 割賦基準을 適用하는 法人이 割賦未收金(當該 事業年度末에 아직 履行期日이 到來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에 관련된 債務者에 대해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設定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생겼기 때문에 當該 割賦未收金에 관련된 收益額 및 費用을 益金 및 損金에 算入하지 않고, 當該 割賦未收金에 대응하는 原價를 기초로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設定을 한 때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延拂條件附讓渡 또는 延拂條件附請負에 관련된 收益額 및 費用에 대해 延拂基準을 適用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1977 直法 2－33 追加, 1980 直法 2－15 改正〕.

(債權償却特別計定의 對象이 된 貸金 등에 대해 辨濟가 있은 경우의 充當順序)

9－6－9 法人이 보유한 貸金 등에 대해 債權償却特別計定을 설정한 경우에 當該 貸金 등에 대해 그 辨濟로서 받은 金額이 있을 때는 그 辨濟가 다음의 부분에 대해 順次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債權償却特別計定 金額에 상당하는 部分 以外의 部分((2)에 해당하는 部分을 제외)

(2) 債權償却特別計定 金額에 상당하는 部分

(3) 質權에 의해 擔保된 部分 및 金融機關에 의해 保證된 部分

(註) 다음과 같은 경우의 金額은 辨濟로서 받은 金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① 債務者로부터 第3者가 발행한 어음을 受取한 경우에 그 어음의 金額

② 當該 貸金 등이 새로이 質權에 의해 擔保된 경우 또는 金融機關에 의해 保證된 경우에 그 擔保되거나 保證된 金額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解體)

9-6-10 法人이 보유하는 貸金 등에 대해 債權償却特別計定을 설정한 경우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發生한 때에는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 金額 中 각각 다음에 열거한 金額에 달할 때까지의 金額을 益金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當該 貸金 등의 額 中 9-6-9의 (2)에 열거한 部分에 대해 辨濟를 받은 경우에 辨濟를 받은 金額

(2) 當該 貸金 등에 대해 9-6-1에서 9-6-3까지에 의해 貸損이 생긴 경우에 그 貸損에 의한 損失額

(3) 9-6-4의 (3)에 열거한 사실에 근거하여 債權償却特別計定을 설립한 경우에 그 후 當該 貸金 등의 額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해 送金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許可된 金額(當該 金額이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 設定의 對象으로 한 貸金 등이 대략 50% 以上에 달했을 때는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의 殘額)

(4) 9-6-5의 (1)의 ①에서 ④까지에 열거한 申請에 근거하여 債權償却特別計定을 설정한 경우에 그 후 당해 申請에 대해 取下, 棄却 또는 却下가 이루어졌을 때(9-6-5의 (1)에 열거한 他의 整理手續을 移行하기 위해 행하였을 때를 除外)는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의 金額

(註) (3)의 경우에 當該 貸金 등의 額 全部 또는 一部를 現地에서의 費用支出(金錢債權 以外의 資產 取得을 포함)에 충당한 때는 充當한 날에 충당한 金額에 상당하는 金額의 送金이 허가된 것으로 取扱한다.

(明細書의 添附)

9-6-11 債權償却特別計定으로 算入을 행한 경우에는 算入을 행한 事業年度에 관련된 確定申告書에 債權償却特別計定 算入額의 計定에 관한 明細를 記載한 書類를 添附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貸金 등에 대해 辨濟 등이 있었기 때문에 債權償却特別計定 金額을 益金

에 算入하게 되는 事業年度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3. 返品債權特別計定

(返品債權特別計定의 設定)

9－6－12 出版業을 經營하는 法人으로 法 第53條 〈返品調整充當金〉에 따라 返品調整充當金計定을 설정할 수 있는 자가 雜誌(週刊誌, 旬刊誌, 月刊誌 등의 定期刊行物을 말한다. 以下 本文에서 같음)의 販賣에 관하여 그 仲介業者 또는 販賣業者(以下 本文에서 이들을 「販賣業者」라 한다) 사이에 다음의 (1) 및 (2)에 열거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特約을 締結한 경우에는 그 販賣한 事業年度에 9－6－13에 정한 算入限度額 以下의 金額을 損金經理에 의해 返品債權特別計定에 算入할 수 있다.

(1) 各 事業年度終了時에 그 販賣業者가 아직 販賣하지 않은 雜誌(當該事業年度終了時 直前의 發行日에 관련된 것을 除外, 以下 本文에서 「店頭販賣殘品」이라 한다)에 관련된 외상賣出金에 대응한 債務를 當該 時에 免除한 것.

(2) 店頭販賣殘品을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自己에게 歸屬시키는 일

(返品債權特別計定의 算入 限度額)

9－6－13 返品債權特別計定의 算入限度額은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으로 한다.

(1) 當該 法人이 返品調整充當金計定의 算入限度額을 令 第101條 第1項 第1號 〈외상賣出金 基準〉에 따라 計算한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雜誌의 販賣에 관련된 외상賣出金(當該 事業年度終了時 直前의 發行日에 관련된 것을 除外) 帳簿價額의 合計額에 同號에서 規定한 返品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店頭販賣殘品의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

(2) 當該 法人이 返品調整充當金計定의 算入限度額을 令 第101條 第1項 第2號 〈販賣高基準〉의 方法에 따라 計算한 경우 또는 返品調整充當金計定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以前 2월간 雜誌의 販賣代價額(當該 事業年度終了時 直前의 發行日에 관련된 것을 제외)의 合計額에 同號에 規定한 返品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店頭販賣殘品의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

(返品債權特別計定의 益金算入)

9－6－14 返品債權特別計定 金額은 算入한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明細書의 添附)

9－6－15 返品債權特別計定의 算入을 행한 경우에는 算入을 행한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에 返品債權特別計定 算入額의 計算에 관한 明細를 記載한 書類를 添附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第6節의 2 負 擔 金

(負擔金의 使用期間)

9－6의 2－1 令 第136條 〈特定한 損失 등에 충당하기 위한 負擔金의 損金算入〉에 規定한 「公益法人 등의 當該 事務에 관련된 資金 中 短期間에 사용되는 것」이란 當該 公益法人등의 定款, 業務方法書 등에서 5년 이내의 期間을 業務計劃期間으로 하고, 當該 期間內에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

는 資金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78 直法 2－24, 1991 課法 2－4 改正〕.

(註) 1. 業務計劃期間이 經過한 경우에 계속하여 同條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할 때에는 또다시 同條에 規定된 指定을 받을 必要가 있는 것에 留意한다.

2. 5년을 넘는 기간에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措置法 第66條의 11 〈特定 基金에 대한 負擔金 등의 損金算入 特例〉의 規定에 의해 大藏大臣의 指定을 必要로 한다는 것에 留意한다.

(特定의 損失 또는 費用을 補塡하기 위한 業務의 範圍)

9－6의 2－2 令 第136條 〈特定한 損失 등에 충당하기 위한 負擔金의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其他의 特定한 損失 또는 費用을 補塡하기 위한 業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 水產物 또는 配合飼料의 價格變動에 따른 損失의 補塡에 관련된 業務

(2) 行政指導 등을 근거로 公益法人 등이 행하는 構造改善事業

(3) 海面의 油濁에 의한 損失 補塡에 관련된 業務

(負擔金의 損金算入時期)

9－6의 2－3 法人이 令 第136條 〈特定한 損失 등에 충당하기 위한 負擔金의 損金算入〉에서 規定한 負擔金을 支出한 경우에 當該 負擔金의 損金算入時期는 當該 法人이 當該 負擔金을 현실적으로 支拂한 날(國稅廳長의 指定前에 支拂한 것에 대해서는 그 指定이 있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가 되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註) 1. 當該 負擔金을 支拂하기 위한 수표의 發行(裏書讓渡를 포함)은 현실적으로 支拂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國稅廳長官의 指定前에 支拂한 것에 대해서는 當該 指定日까지의 기간을 假拂金으로 處理하게 된다.

第7節 其他 經費

1. 商品 등의 販賣에 필요한 景品 등의 費用

(抽籤券附販賣에 필요한 景品 등의 費用)

9－7－1 法人이 商品 등의 抽籤券附販賣에 따라 當籤者에게 金錢 또는 景品을 交付하거나 旅行, 觀劇 등에 招待하는 경우에 필요한 費用은 當籤者로부터 抽籤券의 交換請求가 있은 날 또는 旅行 등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 단, 當籤者로부터의 請求를 기다리지 않고 法人이 金錢 또는 景品을 送付하는 경우에는 當籤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金品交換券附販賣에 필요한 費用)

9－7－2 法人이 商品 등의 金品交換券附販賣에 따라 金品交換券과 交換하여 金錢 또는 物品을 交付하는 경우에 그 金錢 또는 物品의 代價에 상당하는 額은 그 交換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

(金品交換費用 未拂金의 計上)

9－7－3 法人이 商品 등의 金品交換券附販賣를 한 경우에 그 金品交換券이 販賣價額 또는 販賣數量에 따른 點數 등으로 表示되어 있고, 가령 1枚가 제시되어도 金錢 또는 物品과 交換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9－7－2에 관계없이 다음의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販賣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損金經理에 의해 未拂金으로 計上할 수 있다.

〈算 式〉

1枚 또는 1點에 대해 交付하는 金額 × 그 事業年度에 發行한 枚數 또는 點數

(註) 1. 算式 中「1枚 또는 1點에 대해 交付하는 金額」은 物品만을 交換할 수 있는 경우에는 1枚 또는 1點에 대해 交付하는 物品의 購入單價(2 이상의 物品 中 하나를 選擇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그 最低購入單價)에 따른다.

2. 算式 中「그 事業年度에 發行한 枚數 또는 點數」에는 그 事業年度에 發行한 枚數 또는 點數 中 事業年度終了日까지 交換이 끝난 것이나 交換期間이 終了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物品交換費用 未拂金의 益金算入)

9-7-4 9-7-3에 의해 損金에 算入한 未拂金은 그 翌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단, 交換期間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期間이 終了되지 않은 것의 未拂金은 그 交換期間의 末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明細書의 添附)

9-7-5 9-7-3에 의한 未拂金을 計上하는 경우에는 그 計上을 하는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에 未拂金 計算의 基礎 및 金品交換券의 交換條件 등에 관한 事項을 記載한 明細書를 添附해야 한다.

2. 海外渡航費

(海外渡航費)

9-7-6 法人이 任員 또는 使用人이 海外渡航할 때 支給하는 旅費(準備金을 포함, 以下 本文에서 同一)는 그 海外渡航이 當該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한 것이고, 또 當該 渡航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金額에 한하여 旅費로서의 經理를 인정한다. 따라서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海外渡航의 旅費는 물론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海外渡航인 경우에도 그 旅費 中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金額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가 된다.

(註) 그 海外渡航이 旅行期間의 거의 전기간을 통해 명백하게 法人業務 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 그 海外渡航을 위해 支給한 旅費는 社會通念上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計算되어 있다든가 하여 不當하게 多額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그 全額을 旅費로서 經理할 수 있다.

(業務遂行上 必要한 海外渡航의 判定)

9-7-7 法人의 任員 또는 使用人의 海外渡航이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旅行目的, 旅行先, 旅行經路, 旅行期間 등을 綜合 勘案하여 실질적으로 판정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旅行은 원칙적으로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한 海外渡航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觀光渡航의 許可를 받은 旅行

(2) 旅行斡旋을 하는 者 등이 행하는 團體旅行에 應募하여 하는 旅行

(3) 同業者團體, 其他 그것에 준하는 團體가 主催하는 團體旅行으로 주로 觀光目的이라고 인정되는 것

(同伴者의 旅費)

9-7-8 法人의 任員이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海外渡航時 그 親族 또는 그 業務에 常時從事하지 않는 者를 同伴한 경우에 그 同伴者에 관련된 旅費를 法人이 負擔한 때에는 그 任員에 대한 給與로 한다. 단, 그 同伴이 예를 들어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게 그 海外渡航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同伴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旅行에 대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費用은 예외로 한다.

(1) 그 任員이 常時補佐를 필요로 하는 身體障礙者기 때문에 補佐人을 同伴하는 경우

(2) 國際會議에의 出席 등을 위해 配偶者를 同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旅行의 目的을 수행하기 이해 外國語에 뛰어난 者 또는 高度의 專門的 知識을 갖춘 者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適任者가 法人의 使用人 中에는 없기 때문에 그 任員의 親族 또는 臨時로 委囑한 者를 同伴할 때

(業務의 遂行上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旅行과 인정되지 않는 여행이 合併된 경우의 旅費)

9－7－9 法人이 任員 또는 使用人이 海外渡航을 한 경우에 그 海外渡航의 旅行期間中에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旅行과 인정되지 않는 旅行을 동시에 하였을 경우에는 그 海外渡航時 支給하는 旅費를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旅行期間과 인정되지 않는 旅行期間과의 比率 등에 따라 배분하고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旅行에 관련된 부분의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단, 海外渡航의 直接的인 動機가 特定한 去來先과의 相談, 契約의 締結 등 法人의 業務遂行을 위한 것이고, 그 海外渡航을 機會로 觀光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그 往復旅費(當該 去來先의 所在地 등 그 業務를 遂行하는 場所까지의 것에 한함)은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하여 그 海外渡航時 支給한 旅費에서 控除한 殘額에 대해 本文의 規定을 準用한다.

(業務의 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海外渡航 旅費의 特例)

9－7－10 法人의 任員 또는 使用人의 海外渡航이 9－7－7에 열거된 旅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海外渡航의 旅行期間內에 旅行先, 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法人의 業務에 直接關聯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人이 支給하는 海外渡航에 필요한 旅費 中 法人의 業務에 直接關聯이 있는 部分의 旅行에 대해 直接使用한 費用은 旅費로 損金에 算入한다.

3. 會費 및 入會金 등의 費用〔1980 直法 2－15 改正〕

(골프클럽의 入會金)

9－7－11 法人이 골프클럽에 支出한 入會金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따른다〔1974 直法 2－71, 1980 直法 2－15 改正〕.

(1) 法人會員으로 入會한 경우의 入會金은 資産으로 計上하는 것으로 한다. 단, 記名式의 法人會員으로 名義人이 特定 任員 또는 使用人이 法人의 業務에 관계없이 利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負擔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의 當該 入會金에 상당하는 金額은 그 사람들에 대한 給與로 본다.

(2) 個人會員으로 入會하는 경우의 入會金은 個人會員인 特定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본다. 단, 無記名式의 法人會員制度가 없기 때문에 個人會員으로 入會하고, 그 入會金을 法人이 資産으로 計上한 경우에 그 入會가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기 때문에 法人이 負擔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經理를 인정한다.

(註) 이 入會金은 골프클럽에 入會하기 위해 支出한 費用이므로 他人이 所有한 會員權을 購入한 경우에 그 購入代價外에 他人의 名義를 變更하기 위해 골프클럽에 支出한 費用도 포함한다.

(資産에 計上한 入會金의 處理)

9－7－12 法人이 資産에 計上한 入會金에 대해서는 償却을 인정하지 않으나 골프클럽을 脫退해도 返還받을 수 없는 경우의 當該 入會金에 상당하는 金額 및 그 會員이라는 地位를 他에 讓渡함으로써 생긴 當該 入會金에 관련된 讓渡損失에 상당하는 金額에 대해서는 脫退를 하거나, 讓渡를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15 改正〕.

(年會費, 其他 費用)

9－7－13 法人이 골프클럽에 支出하는 年會費, 年間「로커」(locker)料, 기타 費用(名義人을 變更하기 위해 支出한 名義書換料를 포함, 경기를 하는 경우에 直接 필요한 費用을 제함)에 대해서는 그 入會金이 資産으로 計上되어 있는 경우에는 交際費로 보고 그 入會金이 給與로 되는 경우에는 會員

인 特定의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본다.

(註) 경기를 하는 경우에 直接 必要한 費用에 대해서는 入會金을 資産에 計上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費用이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交際費로, 그 외의 경우에는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본다.

(레저클럽의 入會金)

9－7－13의 2 9－7－11 및 9－7－12의 取扱은 法人이 레저클럽(宿泊施設, 體育施設, 遊技施設, 기타 레저施設을 會員에게 이용하게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클럽으로 골프클럽 이외의 것을 말한다. 以下 9－7－14에 있어서도 同一)에 支出한 入會金에 대해 準用한다. 단, 그 會員으로서의 有效期間이 정해져 있고, 脫退時에 入會金 相當額을 返還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레저클럽에 支出한 入會金(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順延資産으로 償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77 直法 2－33 追加〕.

(註) 年會費 및 其他의 費用은 그 用途에 따라 交際費 등 또는 福利厚生費 또는 給與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

(社交團體의 入會金)

9－7－14 法人이 社交團體(골프클럽 또는 레저클럽은 제외, 以下 9－7－15에서도 同一)에 支出하는 入會金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1971 直審(法) 20, 1977 直法 2－33 改正〕.

(1) 法人會員으로 入會한 경우의 入會金은 支出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交際費로 한다.

(2) 個人會員으로 入會하는 경우의 入會金은 個人會員인 特定 會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단, 法人會員制度가 없기 때문에 個人會員으로 入會한 경우에 그 入會가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入會

金은 支出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交際費로 한다.

(社交團體의 會費 등)

9－7－15 法人이 入會한 社交團體에 支出한 會費 및 기타 費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971 直審(法) 20 改正〕.

(1) 經常會費에 대해서는 그 入會金이 交際費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交際費로, 그 入會金이 給與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會員인 特定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본다.

(2) 經常會費 以外의 費用에 대해서는 그 費用이 法人의 業務遂行上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交際費로, 會員인 特定 任員 또는 使用人이 負擔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본다.

(로터리클럽 및 라이온스클럽의 入會金 등)

9－7－15의 2 法人이 로터리클럽 또는 라이온스클럽에 대한 入會金 또는 會費 등을 負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다.

(1) 入會金 또는 經常會費로 負擔한 金額에 대해서는 支出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交際費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2) (1) 이외에 負擔한 金額에 대해서는 그 支出의 目的에 따라 寄附金 또는 交際費로 한다. 단, 會員인 特定 任員 또는 使用人이 負擔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負擔한 金額은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同業團體 등의 會費)

9－7－15의 3 法人이 그 所屬하는 協會, 聯盟 및 기타 同業團體 등(以下 9－7－15의 3에서 「同業團體 등」이라 한다)에 支出한 會費의 取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80 直法 2－15 追加〕.

(1) 通常 會費(同業團體 등이 그 構成員을 위해 행하는 弘報活動, 調査研究, 研修指導, 福利厚生 및 其他 同業團體로서의 통상의 業務運營을 위해 經常的으로 필요한 費用의 分擔額으로서 支出한 會費를 말한다. 以下 9－7－15의 3에서 同一)에 대해서는 支出을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 단, 當該 同業團體 등에서 받은 通常 會費에 대해 不當하게 多額의 剩餘金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該 剩餘金이 생긴 후에 支出하는 通常 會費에 대해서는 當該 剩餘金이 적정한 額이 되기까지는 前拂費用으로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其他의 會費(同業團體 등이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目的을 위해 支出한 費用의 分擔額으로 支出하는 會費를 말한다. 以下 9－7－15의 3에서 同一)에 대해서는 前拂費用으로, 當該 同業團體 등이 이들을 支出한 날에 그 費用에 따라 當該 法人이 支出한 것으로 한다.

① 會館 및 其他 特別한 施設의 取得 또는 改良

② 會員相互의 共濟

③ 會員相互 또는 業界의 關係先 등과의 懇親 등

④ 政治獻金 및 기타의 寄附

(註) 1. 通常 會費로 支出한 것이라도 그 全部 또는 一部가 當該 同業團體 등에서 (2)에 열거한 것과 같은 目的을 위한 支出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會費 中 충당된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의 金額에 대해서는 其他의 會費에 해당하는 것에 留意한다. 단, 同業團體 등에서의 支出이 當該 同業團體 등의 業務運營의 一環으로서 通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1)의 경우에서 同業團體 등의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賞與 또는 退職給與의 支給에 충당하기 위해 준비한 金額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剩餘金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4. 其他

(法人이 支出한 任員 등의 損害賠償金)

9－7－16 法人의 任員 또는 使用人이 한 행위 등에 의해 他人에게 입힌 損害에 대해 法人이 損害賠償金을 支出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損害賠償金의 대상이 된 行爲 등이 法人의 業務遂行에 관련된 것이고, 또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支出한 損害賠償金은 給與以外의 損金에 算入한다.

(2) 損害賠償金의 對象이 된 行爲 등이 法人의 業務遂行에 관련된 것이지만,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한 것인 경우 또는 法人의 業務遂行에 관련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 支出한 損害賠償金에 상당하는 金額은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債權으로 한다.

(損害賠償金에 관련된 債權의 處理)

9－7－17 法人이 9－7－16 (2)에 정하는 債權에 대해 그 任員 또는 使用人의 支拂能力 등으로 보아 求償되지 않을 사정이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金額을 貸損으로 損金經理를 한 경우(9－7－16 (2)의 損害賠償金 상당액을 債權으로 計上하지 않고 損金에 算入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단, 當該 貸損 등으로 한 金額 中 그 任員 또는 使用人의 支拂能力 등으로 보아 回收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金額에 대해서는 그것을 當該 任員 또는 使用人에 대한 給與로 한다.

(自動車에 의한 人身事故에 관련된 內入金의 損害賠償金)

9－7－18 自動車에 의한 人身事故(死亡 또는 傷害事故를 말한다)에 따라 損害賠償金(9－7－16의 (2)에 관련된 損害賠償金을 제외)으로 支出한 金額은 示談의 成立 등에 의한 確定前에도 그 支出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當該 損金에 算入한 損害賠償金에 상당하는 金額(그 人身事故에 대해서 이미 益金에 算入한 保險金이 있는 경우에는 그 累積額을 당해 人身事故에 관련된 保險金 見積額에서 控除한 殘額을 限度로 한다)의 保險金은 益金에 算入한다〔1971 直審(法) 20 追加〕.

(註) 保險金 見積額이란, 當該 法人이 自動車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 또는 任意保險契約을 締結한 保險會社에 대하여 保險金의 支拂을 請求하고자 하는 額을 말한다.

(社葬費用)

9－7－19 法人이 그 任員 또는 使用人이 死亡했기 대문에 社葬을 하고 費用을 負擔한 경우에 그 社葬을 행한 것이 社會通念上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負擔한 金額 中 社葬 때문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金額을 그 支出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註) 會葬者가 持參한 香典 등을 法人의 收入으로 하지 않고 遺族의 收入으로 할 때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用途不明의 交際費 등)

9－7－20 法人이 交際費, 機密費, 接待費 등의 名義로 支出한 金錢으로 그 用途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다〔1971 直審(法) 20 追加, 1980 直法 2－15 改正〕.

第10章 壓 縮 記 帳

第 1 節 壓縮記帳의 通則

(特別計定의 經理)

10－1－1 法 第43條 및 第48條〈國庫補助金 등에 관련된 特別計定 金額의 損金算入 등〉에 規定하는 特別計定의 經理는 損金經理에 의해 充當金計定에 算入하는 方法 또는 確定된 決算에서 利益 또는 剩餘金의 處分에 의해 目的積立金으로 積立하는 方法 中 어느 것을 택해도 좋으나 이들 方法外에 假受金 등으로 經理하는 方法에 의해도 좋다〔1980 直法 2－15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資產에 대해 除却 등이 있은 경우의 充當金 등의 解體)

10－1－2 壓縮記帳에 의해 壓縮額을 充當金 또는 目的積立金으로 經理處理한 資產에 대해 除却, 廢棄, 滅失 또는 讓渡(以下 10－1－2에서 「除却 등」이라 함)가 있었던 경우에는 當該 充當金計定의 金額 또는 目的積立金(當該 資產의 일부에 대해 除却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除却 등이 있었던 부분에 관련된 金額)을 解體하여 그 除却 등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充當金 등의 任意解體 경우의 償却超過額 處理)

10－1－3 壓縮記帳에 의한 壓縮額을 充當金 또는 目的積立金으로 經理한 法人이 當該 充當金計定金 또는 目的積立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解體하

여 益金에 算入한 경우에 그 解體한 充當金 또는 目的積立金 設定의 基礎가 된 資產에 관련된 償却超過額 또는 評價額의 否認金(當該 事業年度에서 생기는 償却超過額 또는 評價損의 否認金을 포함)이 있을 때에는 그 償却超過額 또는 評價損의 否認金 중 益金에 算入한 充當金計定 金額 또는 目的積立金에 달할 때까지의 金額은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1980 直法 2－15, 1982 直法 2－11 改正〕.

第2節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返還이 確定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判定)

10－2－1 法人이 交付받은 國庫補助金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一般的 條件이 붙어 있다는 것은 法 第42條 第1項 또는 第43條 第1項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 등〉의 規定 適用上 當該 國庫補助金 등에 대해 返還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 확정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判定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 交付 條件을 違反한 경우에는 返還해야 한다.

(2) 一定期間內에 상당한 收益이 생긴 경우에는 返還해야 한다.

(註) 補助金 등에 관련된 豫算執行의 適正化에 관한 法律 第15條 〈補助金 등의 確定 등〉의 規定에 따라 交付해야 할 補助金 등이 確定된 취지의 通知를 받은 國庫補助金 등은 返還할 필요가 없다고 確定된 國庫補助金 등에 해당한다.

(資本的 支出이 있는 경우의 壓縮限度額)

10－2－1의 2 固定資產에 대해 令 第82條 〈特別計定을 설정한 경우의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限度額〉의 規定에 의해 壓縮限度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當該 固定資產의 取得 또는 改良(以下 이 章에

서 「取得 등」이라 한다)한 後 國庫補助金 등의 返還이 필요없다고 確定된 날까지의 사이에 當該 固定資產에 대해 資本的 支出을 행했을 때의 同條 規定의 適用에 대해서는 當初의 取得價額 및 그 取得價額에 관련된 帳簿價額(改良의 경우에는 그 改良에 관련된 部分의 金額)을 基礎로 하여 計算하는 것이나, 法人이 同條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 當該 固定資產의 資本的 支出後의 取得價額 및 帳簿價額을 基礎로 하여 計算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15 改正〕.

(固定資產 取得 후에 國庫補助金 등을 받은 경우의 壓縮記帳)

10－2－2 法人이 國庫補助金 등의 交付를 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前의 事業年度에서 그 交付 目的에 適合한 固定資產을 取得한 경우에는 그 交付받은 事業年度의 當該 固定資產에 대해 法 第42條 第1項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壓縮限度額은 同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令 第2條 〈特別計定을 설정한 경우의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限度額〉의 規定에 준하여 計算한 金額에 따른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1. 特別償却準備金 積立의 대상이 된 固定資產에 대해 그 積立한 事業年度後의 事業年度에 國庫補助金 등의 交付를 받고 返還이 필요없다는 것이 確定된 경우에 法 第42條 第1項 또는 第44條 第1項 〈特別計定을 설정한 경우의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壓縮限度額은 다음의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

〈算式〉

$$\left[\begin{array}{l}\text{國庫補助金 등의 交付를 받고 또 返還이 필요없다는 것이 確定된 때의 當該 固定資產의 帳簿價額} \\ - \\ \text{그 交付를 받아 返還이 필요없다는 것이 確定된 때의 當該 固定資產에 관련된 特別償却準備金의 殘額}\end{array}\right] \times \frac{\text{그 交付를 받고 返還이 필요없다는 것이 確定된 國庫補助金 등의 額(分母의 金額을 限度로 한다)}}{\text{當該 固定資產의 取得 등에 필요한 金額}}$$

2. 當該 固定資產에 대해 國庫補助金 등의 交付를 받고 返還이 필요하지 않다

는 것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直前 事業年度에서 移越된 特別償却不足額(特別償却準備金의 積立不足額을 포함, 以下 10－2－2에서 同一)이 있을 때에는 當該 特別償却不足額이 생긴 事業年度에 壓縮記帳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計算되는 特別償却限度額을 基礎로 하여 當該 移越된 特別償却不足額을 修正하는 것으로 한다.

(地方公共團體에서 土地 등을 時價에 比해 현저하게 낮은 價額으로 取得한 경우의 壓縮記帳)

10－2－3 法人이 工場誘致 등을 위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에서 土地 및 其他 固定資產을 그 時價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價額으로 取得하고, 當該 價額(그 取得에 소요된 費用이 있을 때는 當該 費用을 加算한 金額)을 帳簿價額으로 한 경우의 當該 資產에 대해서는 法 第42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에 따라 壓縮記帳을 한 것으로 取扱한다.

(地方稅의 減免 대신에 交付받은 補助金 등)

10－2－4 法人이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에서 工場誘致條例 또는 그것에 준하는 條例에 근거하여 補助金, 奬勵金 등을 交付받은 경우에 當該 補助金, 奬勵金 등이 실질적으로 稅의 減免 대신에 交付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때의 當該 補助金, 奬勵金 등은 法 第42條 第1項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國庫補助金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山林의 取得 등에 충당하기 위해 交付받은 國庫補助金 등)

10－2－5 法人이 山林의 取得 또는 改良에 충당하기 위해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에서 交付받은 補助金은 法 第42條 第1項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한 國庫補助金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74 直法 2－71 追加〕.

第 3 節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資産의 壓縮記帳

(受益者의 範圍)

10－3－1 法 第45條 第1項〈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규정하는「受益者」에는 예를 들어 不動産業者 등이 開發한 團地에 필요한 施設로 同項에 規定한 것에 관련된 工事負擔金을 同項 各號에 열거한 事業을 운영하는 法人에 交付하고, 當該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金額을 當該 團地와 관련된 土地 등의 購入者에게 負擔하게 한 경우의 當該 不動産業者 등이 포함된다〔1980 直法 2－15 追加〕.

(固定資産의 取得 후에 工事負擔金을 받은 경우의 壓縮記帳)

10－3－2 法人이 工事負擔金을 交付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前의 事業年度에 그 交付 目的에 適合한 固定資産을 取得한 경우에는 그 交付받은 事業年度에서 當該 固定資産에 대해 法 第45條 第1項〈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壓縮限度額은 同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이다〔1980 直法 2－15 改正〕.

〈算　式〉

$$\text{工事負擔金을 交付받은 때의 當該 固定資産의 帳簿價額} \times \frac{\text{交付받은 工事負擔金額}}{\text{當該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工事負擔金을 받은 事業年度에 固定資産이 取得되지 않는 경우의 假受經理 등)

10－3－3 法 第45條 第1項 各號〈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 등의 壓縮 損金算入〉에 열거한 事業을 경영하는 法人이 그 事業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하기 위해 同項에 規定하는 受益者로부터 金錢 또는 資材를 提共받

은 경우에 그 提供을 받은 事業年度終了日까지 그 施設을 構成하는 固定資産을 取得할 수 없었다면 그 提供받은 金錢 또는 資材의 價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假計定으로 經理하고, 當該 固定資産을 取得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그것을 解體하여 益金에 算入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當該 固定資産에 대해서는 法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준하여 壓縮記帳을 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改正〕.

第 4 節　非出資組合이 賦課金으로 取得한 資産의 壓縮記帳

(2 이상의 事業年度에 걸쳐 納付金이 納付된 경우의 壓縮記帳)

10－4－1 法 第46條 第1項〈非出資組合이 賦課金을 取得한 固定資産 壓縮額의 損金算入〉의 非出資組合이 2 이상의 事業年度에 걸쳐 納付金을 納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納付金의 全額을 納付받기 전에 目的이 된 固定資産을 取得하고, 그 固定資産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한 方法에 따라 壓縮記帳을 한 때에는 그것을 인정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그 固定資産에 대해 納付金의 納付 때마다 10－3－2〈固定資産의 取得後에 工事負擔金을 받은 경우의 壓縮記帳〉에 준하여 壓縮記帳을 하는 方法

(2) 그 固定資産의 取得 등을 한 事業年度後에 納付받는 納付金額을 未收入金에 計上하고 事業年度에 壓縮記帳을 하는 方法

(納付金의 納付가 있은 事業年度에 固定資産의 取得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의 假受經理 등)

10－4－2 10－3－3 〈工事負擔金을 받은 事業年度에 固定資產이 取得되지 않는 경우의 假受經理 등〉은 非出資組合이 納付金의 納付가 있었던 事業年度에 그 目的이 된 固定資產을 取得할 수 없었던 경우에 準用한다〔1980 直法 2－15 改正〕.

第5節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保險金 등의 範圍)

10－5－1 法人이 支拂받은 保險金, 共濟金 또는 損害賠償金(이하 이 節에서 「保險金 등」이라 한다)으로 法 第47條 第1項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 適用이 있는 것은 固定資產의 滅失 또는 損壞(以下 이 節에서 「滅失 등」이라 한다)에 기인하여 받은 것에 限하므로, 설혹 固定資產의 滅失 등과 관련하여 支拂받은 것이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保險金 등에 대해서는 同項 規定의 適用이 없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 在庫資產의 滅失 등에 따라 받는 保險金 등

(2) 固定資產의 滅失 등에 따른 休廢業 등에 의해 減少하거나 생기게 되는 收益 또는 費用의 補塡에 충당하기 위해 支拂받는 保險金 등

(壓縮記帳을 하는 경우에 滅失損의 計上時期)

10－5－2 固定資產의 滅失 등이 있었던 경우에 그 滅失 등에 의해 支拂받는 保險金에 대해 第47條에서 第49條까지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 등〉의 規定 適用을 받고자 할 때는 當該 滅失 등에 의한 損失額(當該 滅失 등에 의해 支出한 經費를 포함)는 保險金을

見積計上할 경우를 제외하고 當該 保險金이 確定될 때까지는 假計定으로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다. 단, 그 支拂을 받은 保險金 등이 損害賠償金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980 直法 2－15 改正〕.

(同一種類인가 아닌가의 判定)

10－5－3 法 第47條 第1項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産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 適用上, 法人이 取得한 固定資産이 그 滅失한 固定資産과 同一種類의 固定資産인가 아닌가는 耐用年數省令 別表 第1에 열거한 減價償却資産에 대해서는 同表에 열거한 種類의 區分이 같은가 아닌가에 의하고, 同 別表 第2에 열거한 減價償却資産에 대해서는 同表에 열거한 設備 種類의 區分이 같은가 또는 유사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른다〔1980 直法 2－15 追加〕.

(代替資産의 範圍)

10－5－4 法 第47條 第1項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産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代替資産은 固定資産이 滅失하여 그것을 代替하기 위해 取得하는 固定資産에 한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滅失 등이 있었던 때에 실제로 自己가 建設, 製作, 製造 또는 改造中이었던 資産은 代替資産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改正〕.

(滅失 등에 따라 支出한 經費의 範圍)

10－5－5 令 第8條 第1項 第1號 〈保險金〉에 規定하는 「固定資産의 滅失 또는 損壞에 따라 支出하는 經費」에는 그 滅失 등이 있었던 固定資産의 破壞費, 燒跡의 整備費, 消防費 등과 같이 當該 固定資産의 滅失 등에 직접 관련하여 支出한 經費가 포함되나 類燒者에 대한 賠償金, 負傷者의 慰問金, 被災者에의 弔慰金 등과 같이 當該 固定資産의 滅失 등에 直接關聯되지 않

는 經費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2種類 이상의 資産 滅失 등에 따라 支出한 共通經費)

10－5－6 예를 들면 工場用 建物과 機械設備가 滅失한 경우와 같이 2 이상의 固定資産이 滅失한 경우에 이들 資産의 滅失에 따라 支出한 共通經費가 있을 때 그 共通經費에 대해서는 保險金의 比 및 기타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이들 資産에 配賦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資産의 滅失 등으로 支出한 經費의 見積)

10－5－7 法人이 갖고 있던 固定資産의 滅失에 따라 保險金 등을 支拂받은 경우에 아직 燒跡의 整理에 착수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當該 資産의 滅失 등에 따라 支出해야 할 經費가 確定되지 않았을 때는 그 經費를 見積하여 令 第85條 第1項 第1號 〈保險金〉의 金額을 計算하고 當該 資産의 滅失 등에 따라 支出해야 할 經費가 確定된 경우에는 그 額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그 確定된 經費에 따라 조정한다〔1980 直法 2－15 改正〕.

(先行取得한 代替資産 등에 대한 壓縮額의 損金算入)

10－5－8 法人이 保險金이 確定되기 전에 滅失한 固定資産에 관련된 代替資産을 取得한 경우에, 當該 代替資産에 대해 그 保險金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서 法 第47條 第1項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固定資産 등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할 때의 壓縮限度額은 令 第85條 第1項 〈保險金 등으로 取得한 代替資産 등의 壓縮限度額〉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이다〔1980 直法 2－15 改正〕.

〈算 式〉

$$\text{同項의 規定에 따라 計算한 壓縮限度額} \times \frac{\text{壓縮額 損金算入을 하고자 할 때의 固定資産의 帳簿價額(改良한 固定資産에 대해서는 그 改良에 관련된 部分의 帳簿價額)}}{\text{取得 등을 한 固定資産의 取得 등에 소요된 金額}}$$

第 6 節　交換으로 取得한 資産의 壓縮記帳

(遊休資産의 交換)

10－6－1 法 第50條 第1項〈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産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에 실제로 事業用으로 사용하지 않은 固定資産을 交換한 경우에도 適用이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建設 期間)

10－6－1의 2 法 第50條 第1項〈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産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그 交換 對象이 된 資産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가 아닌가의 判定에 대해서는 建物 등의 建設 期間은 所有期間에 포함하지 않는다〔1980 直法 2－15 改正〕.

(交換의 대상이 되는 土地의 範圍)

10－6－2 法 第50條 第1項 第1號〈交換의 對象이 되는 資産〉에 規定하는 土地에는 立木 및 其他 獨立하여 去來對象이 되는 土地의 定着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 土地가 宅地인 경우에는 庭木·돌담·庭園(庭園에 부속하는 亭子·庭內佛堂 및 기타의 이들에 類하는 部屬設備를 포함) 기타 이들에 類하는 것 중에 宅地와 일체가 되어 交換되는 것(同項 第2號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포함된다.

(交換의 대상이 되는 耕作權의 範圍)

10－6－2의 2 法 第50條 第1項 第1號〈交換의 對象이 되는 資産〉에 規定하는「農地法 第2條 第1項에 規定하는 農地上에 있는 耕作에 관한 權利」란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地上權, 永小作權 또는 賃借權으로 이들 權利의 移轉, 이들 權利에 관련된 契約의 解除 등을 하는 경우에는 同法 第3條 第

1項, 第5條 第1項 또는 第20條 第1項 〈農地 또는 採草放牧地의 權利移動制限 등〉의 規定 適用이 있는 것을 말한다〔1971 直審(法) 21 追加〕.

(交換의 對象이 되는 建物附屬設備 등)

10－6－3 法 第50條 第1項 第2號 〈交換의 對象이 되는 建物附屬設備〉에 規定하는 建物에 附屬하는 設備 및 構築物은 그 建物과 일체가 되어 交換되는 경우에 한해 同條의 規定이 適用되므로 建物에 附屬하는 設備 또는 構築物은 각각 單獨으로 同條의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借地權의 交換 등)

10－6－3의 2 예를 들면 自己가 가진 土地에 새로 借地權을 設定(令 第138條 第1項 〈借地權의 設定 등에 의해 地價가 현저하게 低下하는 경우에 土地 등의 帳簿價額 일부 損金算入〉 規定이 適用되는 設定에 한함)하고, 그 設定의 代價로서 상대방에게서 土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實質的으로는 固定資產의 交換이나 手續上으로는 權利 設定 등의 方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法 第50條 第1項 〈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2種類 이상의 資產을 交換한 경우의 交換借金 등)

10－6－4 法人이 2種類 이상의 固定資產을 동시에 交換한 경우, 예를 들면 土地 및 建物과 土地 및 建物을 交換한 경우에는 土地는 土地와 建物은 建物과 각각 交換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이들 資產은 전체로는 等價지만 土地와 土地, 建物과 建物의 時價가 각각 다를 때의 交換時 價額의 差額은 交換差金 등이 되는 것에 留意한다.

(資產의 일부를 交換하고 他部分을 讓渡한 경우 交換의 特例 適用)

10－6－5 法人이 갖고 있는 固定資產을 交換하는 경우에 일체로 되어 동일한 效用을 갖는 同種의 資產 中 그 일부에 대해서는 交換하고 他部分에 대해서는 讓渡로 처리한 때의 法 第50條〈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額 損金算入〉規定의 適用에 대해서는 當該 他部分을 포함하여 交換이 되었다고 간주하여 그 讓渡代金은 交換借金 등으로 한다.

(交換資產의 時價)

10－6－5의 2 예를 들어 交換 當事者가 통상 去來價額이 다른 2 이상의 固定資產을 相當等價로 交換한 경우에도 그 交換이 정상적인 去來條件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法 第50條〈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額 損金算入〉規定의 適用上 이들 資產 價額은 當該 當事者間에 合意된 것에 따르도록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讓渡資產의 讓渡直前 用途)

10－6－6 法 第50條 第1項〈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讓渡資產의 讓渡直前 用途는 法人이 當該 讓渡資產을 他用途에 사용하기 위해 改造하는 등 改造하여 他用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改造後의 用途를 말한다.

(取得資產을 讓渡資產의 讓渡直前 用途와 同一한 用途에 사용하였는가의 判定)

10－6－7 法人이 固定資產을 交換한 경우에 取得資產을 讓渡資產의 讓渡直前 用途와 同一한 用途에 사용하였는가 아닌가는 그 資產의 種類에 따라 대략 다음에 열거하는 區分에 의해 判定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土地에 대해서는 그 現況에 따라 宅地, 田畓, 鑛泉地, 池沼, 山林, 牧場 또는 原野, 기타의 區分

(2) 建物에 대해서는 居住用, 店舖 또는 事務所用, 工場用, 倉庫用, 其他用으로 區分

(3) 機械 및 裝置에 대해서는 그 機械및 裝置가 속하는 耐用年數省令 別表 第2에 열거한 設備의 種類의 區分

(4) 船舶에 대해서는 漁船, 運送船(貨物船, 油槽船, 藥品槽船, 客船 등을 말한다), 作業船(浚渫 및 모래採取船을 포함), 기타의 區分

(註) (2)의 適用에 대해서 店舖 또는 事務所와 住宅으로 併用하는 家屋은 居住專用 또는 店舖專用 또는 事務所專用의 家屋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取得資產을 讓渡資產의 讓渡直前 用途와 同一한 用途로 사용하는 時期)

10－6－8 法人이 갖고 있는 固定資產을 交換한 경우에 取得資產을 交換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 提出期限(法 第75條의 2 〈確定申告書 提出期限 延長 特例〉의 規定에 따라 그 提出期限이 延長된 경우에는 그 延長된 期限으로 한다. 以下 10－6－8에서 同一)까지 讓渡資產의 讓渡直前 用途와 同一한 用途에 사용한 때에는 法 第50條 第1項 〈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取得資產이 讓渡資產의 讓渡直前 用途와 同一한 用途에 사용하기 위해 改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法人이 當該 提出期限까지 그 改造 등의 發注를 하는 등 그 改造에 着手하고, 또 相當期間內에 改造 등을 끝마칠 예정인 경우에 한해 當該 提出期限까지 同一한 用途에 사용한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讓渡資產의 讓渡에 필요한 經費)

10－6－7 令 第92條 第1項 〈交換으로 생긴 差益金〉의 「讓渡資產의 讓渡에 필요한 經費」에는 交換時에 支出한 讓渡資產에 관련된 仲介手數料, 撤去費, 荷役費, 運送保險料 및 其他 讓渡에 필요한 經費 이외에, 土地의 交換

에 관한 契約의 一環으로 또는 當該 交換을 위해 當該 土地上에 存在하는 建物 등을 破壞한 경우에 그 破壞에 따라 생긴 損失額(그 破壞 때문에 借家人에게 支拂한 補償額을 포함)이 포함된다〔1980 直法 2－15 改正〕.

(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經理特例)

10－6－10 法 第50條 第1項 〈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法人이 同項에 規定하는 取得資產에 대해 그 帳簿價額을 損金經理에 따라 減額하지 않고, 同項에 規定하는 讓渡資產의 令 第92條 〈交換으로 생긴 差益金〉에 規定하는 讓渡直前의 帳簿價額과 그 取得資產의 取得 때문에 사용한 經費와의 合計額에 상당하는 金額보다 적지않은 金額을 그 取得價額으로 한 때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法 第50條 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것에 留意한다.

第 7 節 特定出資에 의해 取得한 有價證券의 壓縮記帳

(現物出資 대신에 金錢出資 形式으로 資產을 讓渡한 경우의 壓縮記帳)

10－7－1 法人이 새로이 法人을 設立하기 위해 現物出資를 하는 대신에 金錢을 出資하고 所有하는 金錢 以外의 資產을 새로이 設立된 法人(以下 이 節에서는 「新設 法人」이라 함)에 대해 設立後에 讓渡한 경우에 그 出資 및 當該 資產의 讓渡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는 그 讓渡한 資產을 當該 法人에 대해서는 法 第51條 第1項 〈特定 現物出資에 의해 取得한 有價證券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特定出資(以下 이 節에서는 「特定出

라 한다)에 의해 出資한 資産으로 간주하고 新設法人에 대해서는 當該 特定出資에 의해 받은 資産으로 간주하여, 同條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1991 課法 2－4 改正〕.

(1) 當該 法人이 當該 新設法人의 設立時에 發行株式의 總數 또는 出資金의 全額을 소유할 것

(2) 當該 資産의 讓渡가 그 出資時에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當該 新設法人의 設立後 遲滯없이 一時에 이루어질 것

(3) 當該 新設法人이 讓渡를 받은 當該 資産의 각각에 대해 令 第93條 第2號 〈現物出資資産의 收入價額〉의 金額에 준하는 金額을 그 帳簿價額으로 할 것

(註) 讓渡한 資産에 土地 또는 土地上에 存在하는 權利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租稅特別措置法 關係通牒(法人稅編) 66－6의 取扱에 따른다.

(借地權의 設定)

10－7－1의 2 法 第51條 第1項〈特定의 現物出資에 의해 取得한 有價證券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하는 「金錢 以外 資産의 出資」에는 借地權의 設定(令 第138條 第1項 〈借地權의 設定 등에 의해 地價가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土地 등의 帳簿價額의 일부 損金算入〉의 規定이 適用되는 設定에 한함)의 方法에 따라 當該 借地權을 出資目的으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10－7－1에 정하는 「金錢 이외의 資産」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991 課法 2－4 改正〕.

(註) 이 경우에 當該 借地權에 관련된 令 第93條 第2號 〈特定 現物出資의 要件〉에 規定하는 「出資直前의 帳簿價額」 및 令 第94條 〈特定 現物出資에 의한 差益金〉에 規定하는 「特定 出資直前의 帳簿價額」은 當該 借地權에 관련된 土地에 대해 令 第138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損金에 算入되는 金額을 말한다.

(債務의 引繼)

10－7－2 法人이 資産과 함께 그 債務를 特定出資의 대상으로 인계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 令 第94條〈特定 現物出資에 의한 差益金〉의 「特定出資에 관련된 資産의 當該 特定出資 直前의 帳簿價額 合計額」은 特定出資에 관련된 資産의 當該 特定出資 直前의 帳簿價額 合計額에서 그 引繼한 債務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10－7－1을 適用받는 경우에 新設法人이 引繼받은 資産에 붙여진 帳簿價額의 合計額에서 引繼받은 債務額의 合計額을 控除한 金額이 當該 新設法人의 設立時에서의 資本 등의 金額을 넘을 때에는 그 引繼를 받은 資産 中 넘는 部分에 대해서는 10－7－1이 適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債權償却特別計定 등의 引繼)

10－7－3 法人이 特定出資時에 當該 特定出資에 관련된 資産과 함께 當該 資産에 관련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金額을 新設法人에 引繼한 경우에는 그 引繼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 當該 新設法人이 引繼받은 이들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新設法人이 그 算入 등을 한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15, 1982 直法 2－11 改正〕.

(1) 債權償却特別計定의 金額

(2) 返品債權特別計定의 金額

(3) 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의 金額

(4) 單行本 在庫調整計定의 金額

(5) 壓縮記帳 대신에 算入 등을 한 充當金計定의 金額 또는 目的積立金

(註) 이들 金額을 引繼하지 않은 경우에 그 引繼하지 않은 金額은 特定出資를 한 法人에서의 益金에 算入한다.

(充當金 등의 引繼禁止)

10－7－4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金額은 特定出資時에 그것을 新設法人에 引繼할 수 없는 점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1990 直法 2－1

改正].

(1) 貸損充當金 등 法에 規定하는 充當金計定의 金額

(2) 海外投資 등 損失準備金 등의 措置法에 規定하는 準備金(特別償却準備金을 포함)

(3) 保險差益特別計定 등의 法 또는 措置法에 規定하는 壓縮記帳을 위한 特別計定金

(4) 利益積立金

(5) 資本積立金

(註) 使用人이 新設法人에 移籍 또는 轉出한 경우의 當該 使用人에 관련된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算入 등에 대해서는 11－5－23에서 11－5－29 〈使用人이 轉籍 또는 轉出한 경우의 算入限度額 등〉까지 適用된다.

(償却超過額이 있는 경우의 處理)

10－7－5 法人이 特定出資를 한 경우에 當該 特定出資의 對象이 된 資產의 帳簿價額이 稅務上의 帳簿價額에 근거해 있지 않은 때에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法人이 當該 特定出資의 對象이 된 資產에 관련된 償却超過額 등을 포함하지 않고 當該 資產의 帳簿價額을 計算한 경우와 같이 稅務計算上의 帳簿價額에 미치지 않는 金額을 基礎로 하여 當該 特定出資에 의해 取得한 株式(出資를 포함, 以下 10－7－5에서 同一)의 帳簿價額을 計算한 때에는 當該 株式에 대해 그 모자라는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益金에 算入함과 동시에 當該 償却超過額 등은 法人의 計算에 관계없이 損金에 算入한다.

(2) 法人이 當該 特定出資의 對象이 된 資產에 관련된 評價益의 否認金 등을 修正하지 않고 當該 資產의 帳簿價額을 計算한 경우와 같이 稅務計算上의 帳簿價額을 넘는 金額을 基礎로 하여 當該 特定出資에 의해 取得한 株式의 壓縮記帳을 했을 때는 그 否認金에 상당하는 金額을 當該 法人이 當該

特定出資를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하여 當該 否認金을 消滅한다.

(特定出資에 의해 取得한 有價證券의 壓縮記帳 經理 特例)

10－7－6 10－6－10〈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記帳 經理 特例〉는 法 第51條 第1項 〈特定 現物出資에 의해 取得한 有價證券의 壓縮額 損金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措置法 第66條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를 제외)에 대해 準用한다〔1991 課法 2－4 改正〕.

(特定出資에 의해 받아들인 減價償却資產의 耐用年數 見積 등)

10－7－7 新設法人이 特定出資에 의해 減價償却資產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資產에 대해 耐用年數省令 第3條 第1項 〈中古資產의 耐用年數 등〉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으나 出資를 한 法人이 그 資產에 대해 適用받고 있던 措置法 第45條의 2 第3項, 第47條 또는 第48條 〈老人保健施設用 建物의 割增償却 등〉에 規定하는 特別償却에 대해서는 설혹 適用期間이 經過하지 않은 경우에도 新設法人에 대해서는 適用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1 直審(法) 21, 1974 直法 2－71, 1979 直法 2－31, 1980 直法 2－15, 1991 課法 2－4 改正〕.

第11章 充當金

第1節 通 則

(貸損充當金 等의 差額算入의 特例)

11－1－1 法人이 貸損充當金 其他法에서 規定하는 充當金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의 解體額과 當該 事業年度의 算入額과의 差額을 損金經理에 의해 算入 또는 解體하여 益金에 算入하고 있는 境遇에도 確定申告書에 添附하는 明細書에 그 相殺前의 金額에 根據하여 明確하게 算入하고 있을 때에는 그 相殺前의 金額에 의해 그 算入 및 解體가 있었던 것으로 取扱한다.

第2節 貸損充當金

(外上賣出金, 貸付金에 準하는 債權)

11－2－1 法 第52條 第1項〈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其他 이들에 準하는 債權」에는 다음과 같은 債權이 포함된다〔1980 直法 2－15 改正〕.

(1) 未收의 讓渡代金, 未收加工料, 未收請負金, 未收手數料, 未收保管料, 未收地代家賃 等 또는 貸付金의 未收利子로 益金에 算入되었던 것

(2) 他人 때문에 立替支拂을 할 경우의 立替金(11－2－3의 4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

(3) 未收의 損害賠償金으로 益金에 算入된 것

(4) 保證債務를 履行한 境遇의 求償權

(註) 法人이 그 所有한 外上賣出金, 貸付金 等의 債權에 대하여 取得한 先日附手票를 同項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包含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計算을 認定한다.

(裏書讓渡를 한 受取어음)

11－2－2 法人이 그 所有하는 外上賣出金, 貸付金 等의 債權에 대하여 取得한 受取어음에 대해 裏書讓渡(割引을 包含. 以下 11－2－2에서 같음)를 한 境遇에는 當該 外上賣出金, 貸付金 等의 旣存 債權을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該當하는 것으로 取扱한다. 따라서 裏書에 의해 取得한 受取어음〈어음法(1932年 法律 第20號) 第18條 第1項 本文 또는 第19條 第1項 本文에 規定하는 裏書에 의해 取得한 것을 除外〉으로 그 取得의 原因이 外上賣出金, 貸付金 等의 旣存債權과 關係가 없는 것에 대하여 더 裏書讓渡를 한 境遇에는 그 受取어음의 金額은 法 第52條 第1項의 貸金에 包含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90 直法 2－6 改正〕.

(註) 이 取扱은 裏書讓渡된 受取어음의 金額이 財務諸表 等에서 確認될 수 있게 經理되어 있는 境遇에 適用한다.

(貸金에 該當되지 않는 債權)

11－2－3 다음에 列擧하는 것은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는 該當되지 않는다〔1975 直法 2－21, 1980 直法 2－15, 1985 直法 2－11, 1988 直法 2－14 改正〕.

(1) 預貯金 및 그 未收利子, 公社債의 未收利子, 未收配當, 其他 이들에 類似한 債權

(2) 保證金, 賃貸保證金(借地權, 借家權의 取得 等에 關聯하여 無利子 또는 低利率로 提供한 協力金 等을 포함), 預置金, 其他 이들과 類似한 債權

(3) 契約保證金, 前渡金 等과 같이 資產取得의 代價 또는 費用의 支出에 充當하려고 支出한 金額

(4) 前拂給料, 概算拂旅費, 前渡交際費 等과 같이 將來 精算되는 費用의 前拂로서 一時的으로 假拂金, 立替金 等으로 經理되고 있는 金額

(5) 金融機關에 있어서 他店換貸借의 決濟去來에 따른 未決濟換貸計定金額

(6) 證券會社 또는 證券金融會社에 對하여 借株의 擔保로 差入한 信用去來에 關聯된 株式의 賣却代金에 相當하는 金額

(7) 雇用保險法, 雇用對策法, 障碍者雇用促進 等에 關한 法律의 法令規定에 根據하여 交付받은 給付金 等의 未收金

(8) 購入리베이트의 未收金

(9) 保險會社의 代理店貸計定(外國代理店貸計定을 包含)의 金額

(10) 商品先物去來 또는 債權先物去來에 있어서 差金計定의 金額

(註) 假拂金 等으로 計上되어 있는 金額에 대해서는 그 實質的인 內容에 따라 貸金에 該當하는가 어떤가를 判定하는 것에 留意한다.

(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

11－2－4 令 第96條 第1項〈貸損充當金에 關聯된 貸金에서 除外된 債權〉에서 規定하는「當該 債權에 關聯되는 債務者로부터 引受한 金額이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에는 債務者로부터 引受한 金額이 그 債務者에 對해 所有하고 있는 債權과 相殺適狀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債權과 相殺的인 性格을 가진 것 및 그 債務者와 相互에 融資하고 있는 境遇의 그 債務者로부터 引受한 金額에 相當하는 債權도 包含되므로 다음에 列擧하는 金額은 여기에 該當한다.

(1)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과 外上買入 또는 支拂어음이 있는 境遇에 그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의 金額 中에서 外上買入金 또는 支拂어음에 相當하는 金額

(2)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과 外上買入金의 支拂 때문에 남으로부터 取得한 受取어음을 裏書讓渡했을 때의 그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의 金額 中에서 當該 裏書讓渡를 한 어음(支拂期日이 到來하지 않은 것에 限함)에 相當하는 金額

(3)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營業에 關聯된 保證金이 있을 境遇의 그 外上賣出金額 中에서 保證金에 相當하는 金額

(4)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借入金이 있을 境遇의 그 外上賣出金額 中에서 借入金에 相當하는 金額

(5) 同一人에 對한 完成工事의 未收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未成工事에 對한 引受金이 있는 境遇, 그 未收金 中에서 引受金에 相當하는 金額

(6) 同一人에 對한 貸付金과 外上買入金이 있는 境遇, 그 貸付金 中에서 外上買入金額에 相當하는 金額

(7) 使用人에 對한 貸付金과 그 使用人으로부터 引受한 預置金이 있는 境遇의 貸付金 中에서 預置金에 相當하는 金額

(8) 오로지 融資를 받는 手段으로 他로부터 受取어음을 取得하고, 그에 맞는 借入金을 計上한 境遇 또는 支拂어음을 發行한 境遇, 그 受取어음의 金額 中에서 借入金에 相當하는 金額

(9) 同一人에 對한 未收地代家賃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賃貸保證金이 있는 境遇, 그 未收地代家賃 中에서 賃貸保證金에 相當하는 金額

(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의 簡便計算)

11－2－5 令 第96條 第2項 〈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의 簡便計算〉의 規定은 1980年 4月 1日부터 1982年 3月 31日까지의 期間內에 開始한 各事業年度에 貸損充當金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關係없이 適用되는 것에 留意한다〔1974 直法 2－71, 1982 直法 2－11 改正〕.

(割賦未收金 等)

11－2－6 法人이 割賦販賣를 한 在庫資産의 收益에 대하여 割賦基準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當該 割賦販賣에 의해 생긴 割賦未收金은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法人이 各事業年度 終了時에 履行期日이 到來하지 않은 部分을 割賦未收金으로 하지 않고 在庫資産으로 經理하고 있을 때에도 그 在庫資産의 帳簿價格에 相當하는 金額은 貸金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延拂條件附讓渡 또는 延拂條件附請負에 關聯된 收益에 대하여 延拂基準을 適用할 때에도 똑같이 한다.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한 境遇의 工事利益에 對한 未收金)

11－2－7 法人이 長期工事의 收益에 대하여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하고 있을 境遇에는 설령 當該 收益에 對한 工事收入金을 未收金으로 計上하고 있을 때에도 當該 長期工事의 目的物을 引渡할 때까지는 當該 未收金은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債權償却特別計定을 設置했을 境遇의 貸金額)

11－2－8 法人이 債權償却特例計定을 設置한 境遇에는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額,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貸金에서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하는 것에 留意한다.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置한 境遇의 貸金額)

11－2－9 出版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置한 境遇에는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額은 當該 事業年度

(2)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과 外上買入金의 支拂 때문에 남으로부터 取得한 受取어음을 裏書讓渡했을 때의 그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의 金額 中에서 當該 裏書讓渡를 한 어음(支拂期日이 到來하지 않은 것에 限함)에 相當하는 金額

(3)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營業에 關聯된 保證金이 있을 境遇의 그 外上賣出金額 中에서 保證金에 相當하는 金額

(4)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借入金이 있을 境遇의 그 外上賣出金額 中에서 借入金에 相當하는 金額

(5) 同一人에 對한 完成工事의 未收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未成工事에 對한 引受金이 있는 境遇, 그 未收金 中에서 引受金에 相當하는 金額

(6) 同一人에 對한 貸付金과 外上買入金이 있는 境遇, 그 貸付金 中에서 外上買入金額에 相當하는 金額

(7) 使用人에 對한 貸付金과 그 使用人으로부터 引受한 預置金이 있는 境遇의 貸付金 中에서 預置金에 相當하는 金額

(8) 오로지 融資를 받는 手段으로 他로부터 受取어음을 取得하고, 그에 맞는 借入金을 計上한 境遇 또는 支拂어음을 發行한 境遇, 그 受取어음의 金額 中에서 借入金에 相當하는 金額

(9) 同一人에 對한 未收地代家賃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賃貸保證金이 있는 境遇, 그 未收地代家賃 中에서 賃貸保證金에 相當하는 金額

(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의 簡便計算)

11－2－5 令 第96條 第2項〈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의 簡便計算〉의 規定은 1980年 4月 1日부터 1982年 3月 31日까지의 期間內에 開始한 各事業年度에 貸損充當金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關係없이 適用되는 것에 留意한다〔1974 直法 2－71, 1982 直法 2－11 改正〕.

(割賦未收金 等)

11－2－6 法人이 割賦販賣를 한 在庫資産의 收益에 대하여 割賦基準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當該 割賦販賣에 의해 생긴 割賦未收金은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法人이 各事業年度 終了時에 履行期日이 到來하지 않은 部分을 割賦未收金으로 하지 않고 在庫資産으로 經理하고 있을 때에도 그 在庫資産의 帳簿價格에 相當하는 金額은 貸金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延拂條件附讓渡 또는 延拂條件附請負에 關聯된 收益에 대하여 延拂基準을 適用할 때에도 똑같이 한다.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한 境遇의 工事利益에 對한 未收金)

11－2－7 法人이 長期工事의 收益에 대하여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하고 있을 境遇에는 설령 當該 收益에 對한 工事收入金을 未收金으로 計上하고 있을 때에도 當該 長期工事의 目的物을 引渡할 때까지는 當該 未收金은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債權償却特別計定을 設置했을 境遇의 貸金額)

11－2－8 法人이 債權償却特例計定을 設置한 境遇에는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額,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貸金에서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하는 것에 留意한다.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置한 境遇의 貸金額)

11－2－9 出版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置한 境遇에는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額은 當該 事業年度

(2)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과 外上買入金의 支拂 때문에 남으로부터 取得한 受取어음을 裏書讓渡했을 때의 그 外上賣出金 또는 受取어음의 金額 中에서 當該 裏書讓渡를 한 어음(支拂期日이 到來하지 않은 것에 限함)에 相當하는 金額

(3)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營業에 關聯된 保證金이 있을 境遇의 그 外上賣出金額 中에서 保證金에 相當하는 金額

(4) 同一人에 對한 外上賣出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借入金이 있을 境遇의 그 外上賣出金額 中에서 借入金에 相當하는 金額

(5) 同一人에 對한 完成工事의 未收金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未成工事에 對한 引受金이 있는 境遇, 그 未收金 中에서 引受金에 相當하는 金額

(6) 同一人에 對한 貸付金과 外上買入金이 있는 境遇, 그 貸付金 中에서 外上買入金額에 相當하는 金額

(7) 使用人에 對한 貸付金과 그 使用人으로부터 引受한 預置金이 있는 境遇의 貸付金 中에서 預置金에 相當하는 金額

(8) 오로지 融資를 받는 手段으로 他로부터 受取어음을 取得하고, 그에 맞는 借入金을 計上한 境遇 또는 支拂어음을 發行한 境遇, 그 受取어음의 金額 中에서 借入金에 相當하는 金額

(9) 同一人에 對한 未收地代家賃과 그 者로부터 引受한 賃貸保證金이 있는 境遇, 그 未收地代家賃 中에서 賃貸保證金에 相當하는 金額

(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의 簡便計算)

11－2－5 令 第96條 第2項〈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의 簡便計算〉의 規定은 1980年 4月 1日부터 1982年 3月 31日까지의 期間內에 開始한 各事業年度에 貸損充當金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關係없이 適用되는 것에 留意한다〔1974 直法 2－71, 1982 直法 2－11 改正〕.

(割賦未收金 等)

11－2－6 法人이 割賦販賣를 한 在庫資産의 收益에 대하여 割賦基準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當該 割賦販賣에 의해 생긴 割賦未收金은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法人이 各事業年度 終了時에 履行期日이 到來하지 않은 部分을 割賦未收金으로 하지 않고 在庫資産으로 經理하고 있을 때에도 그 在庫資産의 帳簿價格에 相當하는 金額은 貸金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延拂條件附讓渡 또는 延拂條件附請負에 關聯된 收益에 대하여 延拂基準을 適用할 때에도 똑같이 한다.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한 境遇의 工事利益에 對한 未收金)

11－2－7 法人이 長期工事의 收益에 대하여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하고 있을 境遇에는 설령 當該 收益에 對한 工事收入金을 未收金으로 計上하고 있을 때에도 當該 長期工事의 目的物을 引渡할 때까지는 當該 未收金은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債權償却特別計定을 設置했을 境遇의 貸金額)

11－2－8 法人이 債權償却特例計定을 設置한 境遇에는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額,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貸金에서 當該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하는 것에 留意한다.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置한 境遇의 貸金額)

11－2－9 出版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置한 境遇에는 法 第52條 第1項 〈貸損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貸金額은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貸金에서 當該 返品債權特別計定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適用事業의 區分)

11－2－10 法人이 營爲하는 事業이 令 第97條 第1項 各號〈貸損充當金計定으로의 算入限度額〉에서 열거하는 事業 中에서 어느 事業에 該當하는가는 別途로 定해진 것을 빼고 대략 日本標準産業分類(總務廳)를 基準으로 判定한다〔1974 直法 2－71, 1979 直法 2－31, 1984 直法 2－3 改正〕.

(註) 1. 自動車販賣業에 있어서 業務用으로 主로 使用되는 自動車의 販賣는 原則的으로 都賣에 該當하나 이 自動車의 販賣라도 한번의 去來가 少量 또는 少額인 境遇에는 販賣事業은 小賣業으로 分類하여도 무방하다.

2. 木材市場을 營爲하는 法人으로 實質的으로 買入販賣를 行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것은「都賣業 및 小賣業」을 營爲하고 있는 것으로 判定한다.

(主된 事業의 判定基準)

11－2－11 令 第97條 第1項 各號〈貸損充當金計定으로의 算入限度額〉에서 列擧하는 事業의 2 以上을 兼營하고 있는 境遇에 貸損充當金計定으로의 算入限度額은 主된 事業에 대하여 定해진 比率에 의해 計算하고 各各의 事業마다 區分하여 計算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어느 事業이 主된 事業인가는 各各의 事業에 屬하는 收入金額 또는 所得金額의 狀況, 使用人의 數 等, 事業의 規模를 나타내는 事實, 經常的인 貸金의 多寡 等을 總合的으로 勘案하여 判定한다〔1979 直法 2－31, 1980 直法 2－15 改正〕.

(註) 法人이 2 以上의 事業을 兼營하고 있을 境遇에 當該 2 以上의 事業 中에서 하나의 事業을 主된 事業으로 判定했을 때에는 그 判定의 基礎가 된 事實이 顯著하게 變動이 없는 限 繼續하여 當該 1의 事業을 主된 事業으로 할 수 있다.

(所謂 製造都賣業의 算入率)

11－2－12 自己의 計算에서 原材料 等을 購入하여 이것을 미리 指示한

條件에 따라 下請加工하여 完成品으로 販賣하는, 所謂 製造都賣事業은 令第97條 第1項 第2號〈製造業의 算入率〉의 製造業에 該當한다〔1979 直法 2－31 改正〕.

(實績率에 의해 算入限度額을 計算할 境遇의 貸金額)

11－2－13 令 第97條 第2項 第1號〈實績率에 의한 貸損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貸金은 貸損充當金 算入의 對象이 되는 貸金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대해서는 各各 차후에 留意한다〔1979 直法 2－31 追加, 1980 直法 2－15, 1984 直法 2－3 改正〕.

(1) 예를 들어 11－2－3에서 列擧하는 債權, 海外投資 等 損失準備金의 積立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措置法 第55條 第4項 第1號 및 第55條의 2 第1項〈海外投資 等 損失準備金〉에서 規定하는 特定債權 等과 같이 貸損充當金 算入의 對象되지 않는 債權은 貸金에 包含하지 않는다.

(2) 當該 事業年度 開始日前 3年 以內에 開始한 各事業年度中에서 貸損充當金의 計算上, 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金額의 計算에 대해 令第96條 第2項〈實質的으로 債權으로 볼 수 없는 것의 簡便計算〉의 規定을 適用하고 있는 것이 있을 境遇에는 令 第97條 第2項 第1號에서 規定하는 各事業年度 終了時의 貸金 中에서 當該 適用하고 있는 事業年度에 關聯된 것에 대해서도 令 第96條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한 것에 의한다.

(貸損損失의 範圍－貸金에 該當하지 않는 債權의 貸損損失)

11－2－13의 2 令 第97條 第2項 第2號〈實績率에 의한 貸損充當金計定으로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貸金의 貸損에 의한 損失額은 貸損充當金의 算入對象이 되는 貸金의 貸損에 의한 損失額에 限하는 것이므로 11－2－13의 1에서 定한 貸損充當金의 算入의 對象이 되지 않는 債權의 貸損에 의한 損失額은 여기에 包含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79 直法 2

－31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貸損損失의 範圍－債權償却特別計定의 算入額)

11－2－13의 3 令 第97條 第2項 第2號 〈實績率에 의한 貸損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貸金의 貸損에 의한 損失額에는 9－6－4에서 9－6－8까지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設定〉에 의해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算入한 金額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1979 直法 2－31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註) 債權償却特別計定을 設置한 貸金에 대하여 貸損이 생긴 境遇에는 그 貸損에 의한 損失額에서 9－6－10의 2 〈債權償却特別計定의 解體〉에 의해 解體하여 益金에 算入한 債權償却特別計定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이 同號에서 規定하는 貸金의 貸損에 의한 損失額으로 된다.

(貸損損失의 範圍－返品債權特別計定의 算入額 等)

11－2－13의 4 다음에 列擧하는 金額은 令 第97條 第2項 第2號 〈實績率에 의한 貸損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貸金의 貸損에 의한 損失額에는 包含되지 않는다〔1979 直法 2－31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1) 9－6－12 〈返品債權特別計定의 設定〉에 의해 返品債權特別計定에 算入된 金額

(2) 外貨建債權의 換算에 의한 損失額

(3) 貸金의 貸損에 의한 損失額 中에서 保險金 等에 의해 補塡된 部分의 金額

(徵收不能 豫想額으로 表示된 貸損充當金)

11－2－14 法人이 貸損充當金 計定에의 算入表示 대신 徵收不能豫想額으로 表示된 境遇에도 貸損充當金計定에의 算入인 것이 總計定元帳 및 確

定申告書에서 明白하게 되어 있을 때에는 當該 徵收不能豫想額은 貸損充當金 計定에의 算入額으로 取扱한다〔1975 直法 2－21 改正〕.

第3節　返品調整充當金

(既製服 製造業의 範圍)

11－3－1 令 第99條 第3號 〈醫藥品 等의 製造業〉에서 列擧하는 既製服 製造業에는 紳士服, 制服, 婦人兒童服 等 一般에 既製服이라고 불리는 製造業外에 既製和服, 메리야스製 婦人服, 스포츠웨어, 其他 通常外로 着用되는 既製衣服의 製造業이 包含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磁氣音聲再生機用 레코드 製造業의 意義)

11－3－1의 2 令 第99條 第3號 〈醫藥品 等의 製造業〉에서 列擧하는 磁氣音聲再生機用 레코드 製造業이란, 所謂 錄音을 끝낸 카세트 테이프의 製造業과 같이 磁氣音聲再生機用 레코드를 머더 테이프 等에서 複製에 의해 多量으로 製造하는 事業을 말한다〔1974 直法 2－71 追加, 1980 直法 2－15 改正〕.

(註) 磁氣音聲再生機用 레코드란 所謂 카스테레오, 테이프, 레코더 等에 의해 音聲을 再生할 수 있는 磁氣테이프, 磁氣시트 等으로 錄音 끝낸 것을 말한다.

(特約을 맺고 있는 法人의 範圍)

11－3－1의 3 令 第99條 〈返品調整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事業의 範圍〉에서 列擧하는 事業(以下 이 節에서 「指定事業」이라 함)을 營爲하는 法人이 그 販賣先과의 사이에 文書에 의해 令 第100條(返品調整充當金計定의 設定要件)에서 列擧하는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特約을 맺고 있지 않은

境遇라도 慣習에 의해 그 販賣先과의 사이에 同條에 列擧하는 事項에 대해 特約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該 法人은 法 第53條 第1項〈返品調整充當金〉의 特約을 맺고 있는 것에 該當되는 것으로 한다〔1974 直法 2－71, 1980 直法 2－15 改正〕.

(外上賣出金의 範圍)

11－3－2 令 第101條 第1項 第1號〈外上賣出金 基準〉의 外上賣出金에는 그 外上賣出金에 대하여 取得한 受取어음(割引 또는 裏書讓渡를 한 것을 包含)을 包含한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11－2－2의 (註)는 이 取扱을 適用하는 境遇에 대해 準用한다.

(리베이트가 있는 境遇의 在庫資産 販賣代價額의 合計額 等의 計算)

11－3－3 法人이 指定事業에 關聯된 在庫資産이 販賣代價額에 대해 리베이트를 한 金額이 있을 境遇에 金額을 計算할 때에는 各各 다음과 같다〔1977 直法 2－33, 1980 直法 2－15 改正〕.

(1) 令 第101條 第1項 第2號〈販賣高 基準〉에서 規定하는 「各 事業年度 終了日 以前 2月間의 當該 指定事業에 關聯된 在庫資産의 販賣代價額의 合計額」은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한다.

(算式)

當該 事業年度에 있어서 리베이트를 한 金額의 合計 ×

$$\frac{\text{當該 2月間의 리베이트를 하기 前의 在庫資産의 販賣代價額의 合計}}{\text{當該 事業年度의 리베이트를 하기 前의 在庫資産의 販賣代價額의 合計}}$$

(2) 令 第101條 第2項〈返品率〉에서 規定하는 「當該 事業年度 및 當該 事業年度 開始日前 1年 以內에 開始한 各事業年度의 當該 指定事業에 關聯된 在庫資産의 販賣代價額의 合計」는 이들 事業年度에 있어서 리베이트를 한 金額을 控除하지 않았을 때의 金額에 의한다.

(3) 令 第101條 第3項 〈賣買利益率〉에서 規定하는 「當該 事業年度의 當該 指定事業에 關聯된 在庫資產의 販賣代價額의 合計」는 當該 事業年度에 리베이트를 한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의한다.

(註) 令 第101條 第1項 第1號 〈外上賣出金 基準〉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는 當該 法人의 使用人인 外販員에 對해 支拂하는 販賣配當金, 手數料 等으로 所得稅法 第204條 〈源泉徵收義務〉에서 規定하는 報酬 等에 該當하는 것도 包含된다.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定한 境遇의 期末 外上賣出金 等)

11-3-9 法人이 返品債權特別計定을 設定한 境遇에는 令 第101條 第1項 第1號 〈外上賣出金 基準〉에서 規定하는 外上賣出金의 帳簿價額에는 9-6-13의 1 〈返品債權特別計定의 算入限度額〉의 雜誌販賣에 關聯한 外上賣出金의 帳簿價額을, 同項 第2號(販賣高 基準)의 代價額에는 9-6-13의 2의 雜誌販賣代價額을 各各 包含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第4節 賞與充當金

(使用人 等의 範圍)

11-4-1 法人이 所謂 파트타이머 또는 臨時雇 等의 身分으로 雇用하고 있는 者라도 그 雇用關係가 繼續的인 것이고 他의 使用人과 같은 賞與支給의 對象으로 하는 者는 令 第103條 第1項 〈賞與充當金計定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使用人 等에 包含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支給한 賞與額)

11-4-1의 2 令 第103條 第1項 및 第2項 〈賞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

限度額〉의 「支給한 賞與額」에는 支給해야 할 債務가 確定되어 支拂金에 計上한 賞與額도 包含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冬期 燃料手當等의 一括支給)

11－4－1의 3 法人이 그 使用人 等에 對해 冬期에 支給해야 할 燃料手當 等을 一括하여 支給한 境遇에 있어서도 當該 一括하여 支給한 金額에 대해서는 繼續하여 令 第103條 第1項 및 第2項 〈賞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의 「支給한 賞與額」에 包含하지 않을 수 있다〔1980 直法 2－15 追加〕.

(在職使用人等의 數)

11－4－2 法人이 令 第103條 第1項 및 第2項 〈賞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 예를 들어 長期 缺勤者로 賞與支給對象이 아닌 者를 이들 項의 支給日에 있어 在職한 使用人의 數 및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에 在職하는 使用人數의 어느 것에도 包含되지 않는 等 使用人의 數의 계산에 대해 同一한 基準에 의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退職한 者가 있을 境遇에 法人이 同日後 到來하는 賞與의 支給時期에 當該者에게도 賞與를 支給하고 있을 때에는 當該者를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 在職하는 使用人 等에 包含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新入社員이 있을 境遇의 前 1年間의 1人當 賞與支給額 計算)

11－4－2의 2 法人이 새로 入社한 使用人 等(以下 11－4－2의 2에서 「新入社員」이라 함)에 對해 그 入社後 最初로 到來한 賞與支給時期에 少額의 賞與(그 支給率이 當該 支給時期에 있어 當該 新入社員 以外의 使用人 等에 對해 支給한 賞與의 平均支給率의 대략 20% 以內인 것에 限함)를 支給한 境遇에는 當該 賞與額 및 當該 新入社員數를 包含하지 않는 것으로 하

며 令 第103條 第1項 第1號〈賞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前 1年間의 1人當 賞與支給額」또 同項 第2號 및 同條 第2項 第2號에서 規定하는「計算한 金額」의 計算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支給對象期間을 定한 賞與의 支給規程을 適用받은 者와 받지 않은 者가 있을 境遇의 算入限度額)

11－4－3 使用人 中에서 支給對象期間을 定한 賞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을 適用받는 者와 받지 않은 者가 있을 境遇에는 賞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은 그 各各에 대해 令 第103條 第1項 또는 第2項(賞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의 規定에 따라 計算할 수 있다.

(賞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

11－4－4 令 第103條 第2項〈支給對象期間基準에 의한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賞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이란 賞與를 支給하는 境遇의 그 受給資格, 支給의 對象이 되는 期間, 支給時期 等 賞與支給에 關해 一連의 條項을 定한 規則으로 繼續하여 適用되는 것을 말한다〔1980 直法 2－15 改正〕.

(支給對象期間을 定하고 있을 것)

11－4－5 令 第103條 第2項〈支給對象期間基準에 의한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支給對象期間을 定하고 있음」이란 賞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에 있어서 使用人 等에 支給해야 할 賞與額 計算의 基礎라 할 期間을 具體的으로 定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支給對象期間을 定함과 適用事業年度와의 關係)

11－4－6 令 第103條 第2項〈支給對象期間基準에 의한 算入限度額〉의

賞與支給에 關한 規程에 있어서 支給對象期間을 定할 때는 同項의 規定을 適用하려고 하는 事業年度 終了日까지 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境遇에 法人이 支給對象期間을 定했을 때에는 그 支給對象期間이 以前부터 있었던 것으로 同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支給對象期間中에서 當該 事業年度에 關聯된 것에 對應하는 額의 計算)

11－4－7 令 第103條 第2項 第2號〈當期分 1人當 賞與支給額〉의「支給對象期間中에서 當該 事業年度에 關聯된 것에 對應하는 額」은 當該 支給對象期間에 關聯된 賞與額(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 在職하는 使用人 等에 支給한 金額에 限함)에 當該 支給對象期間의 月數 中에서 차지하는 當該 支給對象期間中 當該 事業年度에 包含되는 期間의 月數의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額으로 할 수 있다. 이 境遇의 月數는 달력에 따라 計算하는 것으로 하고 1月 未滿의 端數는 繼續適用을 條件으로 이것을 잘라버린다.

(支給對象期間이 重複되게 定해져 있는 境遇의 支給對象期間)

11－4－8 法人이 그 賞與支給에 關한 規程에 6個月마다 支給對象期間에 根據하여 所謂 秋夕·年末에 賞與를 支給하는 외에 事業年度의 期間인 1年을 支給對象期間으로 하는 決算賞與를 支給하는 것 같은 境遇에는 當該 規程에서 定하는 各 支給對象期間을 基礎로 賞與充當金의 算入限度額을 計算한다. 단, 예를 들어 秋夕의 賞與支給對象期間의 全期間을 年末의 賞與支給對象期間에 包含하는 것 같은 境遇에는 年末의 賞與支給對象期間은 秋夕의 賞與支給對象期間 終了日의 翌日에 開始한 것으로 取扱한다〔1977 直法 2－33 改正〕.

(賞與의 支給對象期間 中途에 支給한 賞與가 있을 境遇의 算入限度額 計算)

11－4－9 法人이 예를 들어 1年을 支給對象期間으로 定하고 있는 境遇

에 있어 그 6月目에 賞與를 支給한 것과 같이 賞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으로 定한 支給對象期間 中途에 當該 支給對象期間에 關聯된 賞與 一部를 支給한 境遇에 令 第103條 第2項 第2號 〈當期分 1人當 賞與支給額〉에서 規定하는 金額의 計算에 대해서는 當該 支給對象期間의 開始日부터 그 中途에 支給하는 賞與支給期日(勞動組合과의 協定 等에 의해 當該 賞與計算의 基礎로 하는 期間이 明確하게 定해져 있을 때에는 當該 期間의 末日)까지의 期間을 當該 賞與에 關聯된 支給對象期間으로 하고 當該 支給期日의 翌日부터 賞與支給에 關한 規程에서 定한 支給對象期間의 末日까지의 期間을 當該 規程에 根據하여 支給하는 賞與의 支給對象期間으로 取扱한다.

(註) 賞與의 支給對象期間의 末日前 대략 20日 以前에 그 支給對象期間에 關聯된 賞與를 支給하고 있는 境遇에는 支給對象期間의 中途에 支給한 것으로 한다.

(臨時賞與의 支給對象期間)

11－4－10 法人이 賞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에 있어서 미리 定한 支給期日에 通常의 賞與를 支給하는 외에 他의 期日에, 예를 들어 創立何周年記念賞與 等으로 支給한 賞與(以下 11－4－12에 있어서 「臨時賞與」라 함)가 있을 境遇에는 令 第103條 第2項 第2號 〈當期分 1人當 賞與支給額〉의 規定適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미리 定한 賞與支給期日에 關聯된 支給對象期間에 대해 賞與를 支給한 것으로 取扱한다〔1975 直法 2－21 改正〕.

(新入社員의 支給對象期間의 特例)

11－4－11 法人이 當該 事業年度에 있어서 그 使用人 等에 支給한 賞與額(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 在職하는 使用人 等에 支給한 賞與額에 限함) 中에서 그 賞與에 關聯된 支給對象期間의 中途 또는 終了日後에 入社한 使用人 等에 支給한 것이 있을 境遇에는 令 第103條 第2項 第2號(當期分 1人當 賞與支給額)의 規定의 適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그 賞與가 支給對象期間의 中途에 入社한 使用人 等에 對해 그 支給對象期間 中에서 入社後의 期間에 關聯되어 支給된 것이라도 그 使用人 等은 當該 支給對象期間의 全期間을 通해 在職하고 있었던 것으로 同號의 「支給對象期間 中에서 當該 事業年度에 關聯된 것에 對應하는 額」을 計算할 수 있다.

(2) 그 賞與가 支給對象期間 終了後에 入社한 使用人 等에 對해 當該 支給對象期間에 關聯된 것으로 支給된 것일 境遇에는 그 賞與額은 同號의 「支給對象期間 中에서 當該 事業年度에 關聯된 것에 對應하는 額」에 包含하지 않을 수 있다.

(臨時賞與를 支給한 境遇의 算入限度額의 特例)

11－4－12 法人이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 以前 1年間에 臨時賞與를 支給한 境遇의 當該 事業年度에 關聯된 令 第103條 第1項 各號 〈달력基準에 의한 算入限度額〉 또는 同條 第2項 各號 〈支給對象期間基準에 의한 算入限度額〉의 金額 計算에 대해서는 當該 臨時賞與의 支給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단, 當該 臨時賞與를 그 計算의 基礎에 包含시키는 境遇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各事業年度 中에서 그 取扱을 適用하지 않은 事業年度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만은 않다〔1975 直法 2－21 追加, 1980 直法 2－15 改正〕.

(註) 所謂 決算賞與라도 過去의 實績 等으로 보아 그 支給되는 것이 正常狀態인 것은 이 境遇의 臨時賞與에 該當하지 않는다.

(轉出者에 關聯된 賞與充當金의 計算)

11－4－13 轉出元法人이 轉出者에 對해 支給하는 賞與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轉出先法人에 負擔시키고 있는 境遇, 또는 轉出者에 對한 賞與의 較差補塡으로 支給하는 金額이 있는 境遇에는 轉出元法人 및 轉出先法人에

대해서는 그 轉出者에 대해 그 轉出者가 支給받는 賞與額 中에서 各 法人이 負擔하는 部分의 金額을 基礎로 法 第54條〈賞與充當金〉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다음과 같은 것은 各各 이와 같다〔1980 直法 2－8 追加〕.

(1) 令 第103條 第2項〈支給對象期間 基準에 의한 算入限度額〉의 規定에 의해 算入限度額을 計算하는 境遇에 當該 轉出者에 關聯된 賞與의 支給對象期間은 各 法人이 負擔하는 部分 金額의 그 負擔基礎로 하는 支給對象期間에 의한다.

(2) 轉出先法人이 轉出元法人에 對해 支出하는 賞與에 關聯된 負擔金에 대해서는 轉出元法人이 當該 負擔金에 關聯된 轉出者에 對해 賞與를 支給했을 때에 轉出先法人이 賞與로서 支給한 것으로 한다. 단, 轉出先法人이 繼續하여 當該 負擔金額을 支出했을 때에 賞與를 支給한 것으로 計算하고 있는 境遇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會社分割 等의 境遇 賞與의 支給實績)

11－4－14 하나의 事業所를 分割하여 新會社를 設立하고 그 事業所에 勤務하는 使用人 等을 新會社에 轉籍시킨 境遇와 같이 法人의 使用人 等 大部分이 他의 法人轉籍者인 境遇에는 當該 他의 法人이 當該 轉籍者에게 支給한 賞與額에 대해 當該 法人이 支給한 賞與인 것으로 令 第103條 第1項 및 第2項〈賞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의 「支給한 賞與의 額」을 計算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第 5 節　退職給與充當金

1. 退職給與規程

(勞動協約에 의한 退職給與規程)

11－5－1 令 第105條 第 1 號(勞動協約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에서 規定하는 規程에 關해서는 다음에 留意한다〔1973 直法 2－81 改正〕.

(1) 勞動協約에 의해 定해져 있는 退職給與規程은 勞動組合法(1949年 法律 第174號) 第 5 條 第 1 項(勞動組合으로 設立된 것의 取扱)의 規定에 의한 手續을 거치지 않은 勞動組合과의 사이에 締結한 것이라도 여기에 該當한다.

(2) 勞動協約에 의해 定해진 退職給與規程은 勞動協約에 의한 協定事項의 1條項(그 條項에 根據하여 따로 規程이 定해져 있는 境遇의 規程을 포함)으로 定해진 것인가와 退職給與의 支給에 關한 事項만의 協約에 의한 것인가는 묻지 않으나 勞動協約에서 단순히 「退職給與의 支給에 대하여는 就業規則에서 定하는 바에 따름」이라는 趣旨만을 規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就業規則에 있는 退職給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은 여기에 該當되지 않는다.

(稅務署長에 届出한 退職給與規程의 改正 效力)

11－5－2 稅務署長에게 미리 届出한 退職給與의 支給에 關한 規程에 의해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을 設定한 法人이 當該 規程을 改正한 것으로 인해 그 改正에 關聯된 令 第109條 第 2 項 〈改正 等이 있은 境遇의 退職給與規程에 關한 書類의 提出〉에서 規定하는 書類를 稅務署長에게 提出하는 境遇에 當該 書類를 그 提出의 基因이 되는 事實이 생긴 事業年度에 關聯된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까지 提出한 때에는 그 提出期限에 關聯된 事業年度

以後의 各事業年度 算入限度額은 그 提出한 書類에 記載된 바에 의해 計算한다〔1975 直法 2－21 改正〕.

(退職給與規程에 關聯된 書面의 提出)

11－5－2의 2 法人이 令 第109條 第2項〈改正 等이 있은 境遇의 退職給與規程에 關한 書類의 提出〉의 規定에 의해 同項에서 規定하는 書類를 提出하는 境遇에 있어서 令 第106條 第2項〈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 規定의 適用을 받으려고 할 때에 同項에서 規定하는 書面을 當該書類에 添附할 必要가 있으나 當該 書面을 當該 書類 提出後에 提出한 境遇에는 當該 書面의 提出後 最初로 到來하는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에 關聯된 事業年度 以後의 各事業年度에 대해 同項의 規定을 適用한다〔1975 直法 2－21 追加〕.

(最低限度의 支給率 等이 定해져 있지 않은 境遇의 適用)

11－5－3 退職給與規程에 있어서 退職給與의 支給率 또는 支給額에 대하여 「何% 以內를 支給한다」, 「減額할 수 있다」 等과 같이 그 最低限度가 定해져 있지 않은 境遇에는 法 第55條 〈退職給與充當金〉의 規定에 適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

2. 退職給與充當金의 算入

(自己事情에 의해 退職하는 境遇의 退職給與額 計算)

11－5－4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退職給與發生額 基準〉에서 規定하는 自己事情에 의해 退職하는 것이라고 假定할 境遇의 退職給與額을 計算할 때에는 退職給與規程에 自己事情에 의한 退職에 대해 「病患 때문」, 「結婚 때문」 等의 細目이 定해져 있을 때에는 退職給與額은 그 中의 無條件

任意退職의 境遇의 支給率 또는 支給額에 의해 計算한다.

(支給基準 等이 改正된 境遇의 算入限度額의 計算)

11－5－5 退職給與의 支給基準 또는 給與베이스 改正이 있었던 境遇에는 그 改正의 效果가 前事業年度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의 2 〈前期末의 要支給額〉의 前事業年度 終了時의 退職給與額(以下 이 節에서 「前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이라 함)은 改正前의 支給基準 또는 給與베이스에 의해 計算한다.

(勞動協約에 의한 退職給與規程과 就業規則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이 있을 境遇의 算入限度額의 計算)

11－5－6 使用人의 一部에 대해서는 勞動協約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있고 他의 使用人에 대해서는 就業規則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있은 境遇에는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에서 規定하는 金額은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다른 使用人마다 各 退職給與規程에 根據하여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就業規則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있는 使用人에 대해서는 同條 第2項 〈給與總額 基準〉의 規定을 準用한다.

(註) 令 第106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는 境遇의 그 計算의 基礎가 되는 給與의 總額은 就業規則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있는 使用人에 關聯된 給與의 合計額에 限定된다.

(使用人의 一部에 대하여 就業規則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이 適用되는 境遇의 算入限度額의 計算)

11－5－7 使用人의 一部에 대해서는 勞動協約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있고 他의 使用人에 대해서는 就業規則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있는 境遇에 있어서도 各各의 退職給與規程의 內容이 同一한 것이고

또, 當該 勞動協約의 適用이 있는 使用人의 數가 勞動組合法 第17條 〈一般的 拘束力〉에서 定하는 數 以上일 때에는 就業規則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의 適用이 있는 使用人에 대해서도 勞動協約에 의한 退職給與規程이 있는 것으로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에서 規定하는 金額을 計算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算入限度額의 簡便計算)

11-5-8 法人이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에서 規定하는 退職給與額의 計算을 簡便化하기 위해 退職給與規程에서 定하는 退職給與額의 計算基準에 따라 使用人을 適宜의 그룹으로 區分하여 그 區分마다 一括하여 計算하는 方法을 採用하는 境遇에 있어서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 및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 대해 當該 區分된 그룹에 屬하는 使用人에 關聯된 給與額의 總額에 當該 使用人에 適用하는 基準 中에서 가장 낮은 基準(예를 들어 在職年數를 基準으로 하는 境遇에는 가장 짧은 在職年數)을 適用하여 計算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退職給與의 支給對象이 되는 使用人의 範圍)

11-5-9 令 第106條 第2項 〈給與總額 基準〉에서 規定하는 使用人에는 退職給與의 支給對象이 되는 在職年限에 達하지 않기 때문에 退職給與가 支給되지 않는 者도 包含된다.

(退職金共濟契約 等에 根據하여 給付金만을 받는 者)

11-5-10 法人이 그 使用人을 위해 令 第108條 第1項 〈退職金共濟契約 等을 締結하고 있는 境遇의 算入限度額의 特例 等〉에서 規定하는 退職金共濟契約 또는 適格退職年金契約 等을 締結하고 있는 境遇에 있어서 이들 契約에 根據하여 給付金만 支給받는 者는 令 第108條 第2項 〈給與總額

基準〉에서 定하는 「退職給與의 支給對象이 되지 않는 者」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한다.

(給與總額에 算入하는 外販員의 報酬 等)

11－5－11 法人이 그 使用人인 外販員, 集金人 等으로 固定給과 販賣配當額을 支拂받는 者에 對해 退職給與을 支給하려고 하는 境遇에 있어서 法人이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算入限度額의 計算上 當該 外販員 等과 他의 使用人을 區分하여 各各에 대해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및 第2項 〈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當該 外販員 等에 關聯된 同條 第2項의 金額은 所得稅法 第204條 各號 〈源泉徵收義務〉에서 列擧하는 報酬 等으로 치는 金額을 給與에 包含하여 計算할 수 있다〔1984 直法 2－3 改正〕.

3. 退職給與充當金의 解體

(支給基準 等이 거슬러올라가 改正된 境遇의 解體)

11－5－12 退職給與의 支給基準 또는 給與베이스의 改正이 있었던 境遇에는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까지 退職한 使用人에 關聯된 令 第107條 第1項 第2號 〈退職한 境遇의 解體〉에서 定하는 退職給與充當金計定金額의 解體는 그 改正의 效果가 前事業年度에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니냐에 不拘하고 改正前의 規程 또는 給與베이스에 根據하여 前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 의한다.

(適格退職年金契約 等에의 移行年度에 있어서의 解體)

11－5－12의 2 法人이 그 使用人에게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額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해 適格退職年金契約에 根據하여 給付金 또는 厚生年金基金

으로부터 給付金에 移行한 境遇에도 그 移行한 날이 屬한 事業年度에 使用人이 退職한 때에는 令 第107條 第1項 第1號 〈退職한 境遇의 解體〉의 規定에 의해 그 移行前의 退職給與規程에 根據하여 當該 使用人에 關聯된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 相當하는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을 解體하지 않게 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追加〕.

(使用人이 任員이 된 境遇의 解體)

11-5-13 法人의 使用人이 任員으로 된 境遇에 있어서 그때 使用人分의 退職給與를 支給하지 않을 때에는 그 者에 關聯된 그 任員이 된 날이 屬한 事業年度의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는 令 第107條 第1項 第1號 〈退職한 境遇의 解體〉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者가 退職給與를 支給받을 때까지는 退職給與充當金計定金額을 解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解體를 하지 않을 때에는 當該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을 令 第106條 第1項 第2號 〈累積限度額 基準〉 및 第107條 第1項 第2號에서 規定하는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 包含할 수 있다.

(退職給與를 支給하지 않는 正當한 理由의 範圍)

11-5-14 令 第107條 第1項 第3號 〈正當한 理由없이 退職給與를 支給하지 않는 境遇의 解體〉의 正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예를 들어 使用人에게 不正이 있는 것 等으로 인해 解雇한 때와 같이 社會通念上 退職給與를 支給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認定되는 境遇가 여기에 該當한다.

(要支給額을 넘어서 退職給與를 支給하는 境遇의 解體)

11-5-15 法人이 使用人이 退職할 때에 그 退職한 使用人에 關聯된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을 넘어 退職給與充當金計定金額을 解體한 境遇에 있어서도 그 解體한 金額이 實際로 支給한 退職給與額에 相當하는 金額

以下일 때에는 그 解體는 令 第107條 第1項 第7號 〈目的外 解體〉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算入限度超過額의 認容)

11－5－16 法人이 退職給與充當金計定金額에 대해 令 第107條 第1項 〈退職給與充當金計定金額의 解體〉의 規定에 의해 解體해야 할 金額을 넘어 解體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退職給與充當金計定金額 中에서 算入限度超過額이 있기 때문에 그 넘는 部分의 解體額 中에서 算入限度超過額에 達할 때까지의 金額을 確定申告書에 損金額으로 算入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4. 退職年金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境遇의 算入限度額 等

(退職一時金과 退職年金과의 選擇制의 境遇 退職給與의 要支給額)

11－5－17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의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 및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을 計算하는 境遇에 있어서 使用人이 退職一時金의 支給과 退職年金의 支給과의 어느 것인가를 選擇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들 要支給額은 退職一時金을 支給하는 것으로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

(年金支給의 境遇 退職給與의 要支給額)

11－5－18 法人이 退職給與規程에 있어서 退職給與의 支給 대신 또는 이것과 합쳐서 退職年金 支給을 規定하고 있을 境遇에는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의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 및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은 退職年金의 總額을 退職給與額으로 간주하여 計算한다. 이 境遇에 있어 退職年金의 總額은 有期退職年金에 있어서는 그 定해진 期間에 支給해야 할 退職年金의 總額에 의해 終身退職年金을 退職時로

부터 一定期間退職年金을 支給하는 等 所謂 保證期間의 規定이 있는 것에는 그 保證期間에 支給해야 할 退職年金의 總額에 의한다.

(据置年金의 境遇 退職給與의 要支給額)

11－5－19 退職給與規程에 의해 退職年金을 支給하는 規定이 있는 法人의 退職年金의 支給始期가 年金受給者의 退職時부터 一定期間 据置하여 開始하거나 또는 受給者가 一定年齡에 達했을 때에 開始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境遇에는 當該 退職年金에 대해서는 그 退職年金의 總額은 11－5－18에 不拘하고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算式)

$$\text{退職年金의 總額} = \text{支給期間中의 年金總額} \times \frac{1}{(1+i)^n}$$

(註) i＝利率(半年複利에 의한 年 6分으로 한다)

n＝据置期間(6月을 單位로 計算하고 6月 未滿의 端數는 잘라버림)

(退職年金受給者가 있는 境遇의 累積限度額)

11－5－20 法人이 退職한 使用人에 對해 退職年金을 支給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年金受給者는 各事業年度 終了時에 在職하는 使用人에 該當되지 않으나 令 第106條 第1項 第2號〈累積限度額 基準〉및 第107條 第1項 第2號〈累積限度額을 넘는 境遇의 解體〉의 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는 그 年金受給者의 退職日이 屬한 事業年度의 前期末退職給與의 要支給額(當該 年金이 所謂 据置年金일 때에는 11－5－19에 의해 計算된 金額으로 하고 退職年金의 支給을 開始한 날이 屬한 事業年度 以後의 各事業年度에 있어서는 當該 要支給額에서 11－5－21에 의해 解體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包含할 수 있다.

(退職年金을 支給하는 境遇의 解體方法)

11－5－21 退職한 使用人에게 退職年金을 支給할 境遇에 退職給與充當

金計定金額의 解體에 대해서는 다음 (1) 또는 (2) 어느 것인가에 따를 수 있다.

(1) 當該 使用人에 關聯된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退職一時金을 支給한 境遇에는 그 支給額을 控除한 金額. 以下 (2)에 있어서도 같음)에 當該 使用人에게 支給해야 할 退職年金의 總額에 對한 當該 事業年度에 支給한 退職年金額의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當該 退職年金의 支給時마다 解體한다.

(2) 當該 使用人에 關聯된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 達할 때까지 退職年金의 支給時마다 그 支給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解體한다.

(註) 退職한 使用人에게 退職年金外에 退職一時金을 支給하는 境遇에는 當該 使用人에 關聯된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 中에서 退職一時金에 相當하는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을 解體하는 것에 留意한다.

(再移行이 있은 境遇의 調整前 累積限度超過額)

11－5－22 令 第108條 第1項 第3號 〈調整前 累積限度超過額의 7年均分解體〉의 規定을 適用받고 있는 法人에 대해 再退職給與規程의 改正 等에 의해 移行이 있었던 境遇에는 그 移行이 있었던 날이 屬한 事業年度에 同號에 規定하는 調整前 累積限度超過額을 改訂計算하여 그 改訂된 調整前 累積限度超過額에 대해 同號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에 留意한다.

5. 使用人이 轉籍 또는 轉出한 境遇의 算入限度額 等 〔1980 直法 2－8 改正〕

(轉籍者에 關聯된 退職給與의 要支給額)

11－5－23 轉籍者에 대하여 轉籍後의 法人이 轉籍前의 法人에서의 當該 轉籍者의 在職年數를 通算하여 退職給與額을 支給하는 趣旨를 退職給與規程에서 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當該 轉籍者에 대해서는 그 轉籍時를 前事業

年度 終了時로 간주하여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의 金額을 計算한다〔1980 直法 2－8 改正〕.

(轉籍者에 關聯된 退職給與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引受한 境遇에 있어서 退職給與의 要支給額)

11－5－24 11－5－23의 適用이 있는 境遇에 使用人이 轉籍할 때 轉籍後의 法人이 轉籍前의 法人으로부터 當該 轉籍者에 대해 退職給與規程의 定하는 바에 의해 計算되는 退職給與額의 全部 또는 一部에 相當하는 金錢을 引受했을 때에는 當該 轉籍日이 屬한 事業年度의 當該 轉籍者에 關聯된 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의 金額은 11－5－23에 不拘하고 다음에 列擧하는 金額 中에서 적은 金額으로 한다〔1970 直審(法) 58, 1976 直法 2－39, 1980 直法 2－8 改正〕.

(1) 當該 轉籍者가 當該 轉籍日이 屬한 事業年度 終了時에 있어서 自己의 事情에 의해 退職하는 것으로 假定한 境遇에 그때 現在에 定해져 있는 退職給與規程에 의해 計算되는 退職給與額에 相當하는 金額

(2) 當該 轉籍者에 대하여 當該 轉籍前의 法人이 11－5－25에 의해 解體된 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 相當하는 金額과 11－5－23에 의해 計算한 金額(當該 轉籍後의 法人이 令 第106條 第2項 〈給與總額 基準〉의 規定을 適用받을 境遇에 있어서 그 金額이 當該 事業年度에 當該 轉籍者에게 支給한 給與 合計額의 6% 相當額을 넘을 때에는 當該 6% 相當額)과의 合計額

(註) 轉籍日이 屬한 事業年度에 令 第106條 第2項 〈給與總額 基準〉의 規定 適用에 있어서는 轉籍者를 除外하고 計算한다.

(轉籍前의 法人에서의 退職給與充當金의 解體)

11－5－25 使用人이 轉籍한 境遇에는 轉籍前의 法人은 轉籍時가 屬한 事業年度에 當該 轉籍時의 退職給與充當金計定金額 中에서 當該 轉籍者에

關聯된 前期末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 達할 때까지의 金額을 解體하여 益金額에 算入해야 하지만 轉籍前의 法人이 그 轉籍者에 關聯된 退職給與에 充當하기 위해 轉籍後의 法人에 金錢을 支出했을 境遇에 있어서 그 轉籍時에 所有한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 中에서 그 支出한 金錢에 相當하는 金額을 解體했을 때에는 다음에 列擧하는 條件 모두를 具備하고 있을 때에 限해 그 解體를 認定한다〔1980 直法 2－8 改正〕.

(1) 하나의 事業所를 分割하여 新會社를 設立하고 그 事業所에 勤務하는 使用人을 新會社에 轉籍시킨 境遇와 같이, 轉籍後 法人 使用人의 相當數가 轉籍에 의한 것일 것

(2) 轉籍後 法人에서의 轉籍者의 退職給與額이 轉籍前 法人의 在職年數를 通算하여 計算된 것이라고 되어 있을 것

(3) 轉籍後 法人에 支出한 金額이 轉籍前 法人이 所有하는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 中에서 轉籍者에 對應하는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일 것

(退職給與의 負擔區分이 定해져 있는 境遇의 退職給與充當金의 取扱)

11－5－26 轉籍前의 法人 및 轉籍後의 法人이 各 退職給與規程에서 轉籍者가 轉籍後의 法人을 退職한 때에 各 法人에서의 在職期間을 通算하여 退職給與를 支給하는 趣旨 및 各 法人이 負擔해야 할 退職給與額의 計算方法을 合理的으로 定하고 있을 境遇에는 轉籍前의 法人에 있어서도 當該 轉籍者를 계속하여 在職하는 使用人으로 간주하여 自己가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額을 基礎로 令 第106條 第1項 〈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의 金額을 計算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當該 轉籍者가 轉籍後의 法人을 退職할 때까지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을 解體하지 않을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註) 轉籍前의 法人과 轉籍後의 法人이 負擔해야 할 退職給與額의 計算方法에 대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負擔區分은 合理的인 것으로 한다.

1. 當該 轉籍者가 轉籍後의 法人을 退職할 때에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額(以下 11－5－26에서 「要支給額」이라 함)을 各 法人에서의 在職期間의 比에 의해 負擔하는 方法
2. 要支給額 中에서 轉籍時에 當該 轉籍者에 關聯된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에 相當하는 金額 또는 當該 金額에 當該 轉籍者가 轉籍後의 法人에 在職한 期間에 맞는 通常의 金利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을 轉籍前의 法人이 負擔하는 方法

(轉出者에 關聯된 退職給與充當金의 算入)

11－5－27 退職給與規程에 의해 退職給與를 支給해야 할 使用人이 轉出한 境遇에는 轉出元法人에 있어서는 설령 그 支給해야 할 退職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別途 轉出先法人에 負擔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을 때에도 當該 轉出者에 대해 그 退職給與規程에 根據하여 退職給與充當金의 算入을 할 수 있으므로 留意해야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1. 轉出元法人이 轉出先法人으로부터 支拂받는 轉出者에 關聯된 退職給與의 負擔金은 그 支拂받아야 할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2. 轉出元法人 및 轉出先法人이 各 退職給與規程에서 定하는 負擔區分에 根據하여 轉出者에 關聯된 退職給與額을 負擔하려고 하는 境遇에 있어서 退職給與充當金의 取扱에 대해서는 11－5－26의 例에 의한다.

(轉出先法人이 通算支給하는 境遇의 退職給與充當金의 取扱)

11－5－28 法人의 使用人이 轉出한 境遇에 轉出元法人 및 轉出先法人의 退職給與規程에 의해 그 轉出者에 對한 退職給與額을 轉出先法人이 轉出元法人에서의 在職年數를 通算하여 支給해야 될 때에는 當該 轉出者에 關聯된 退職給與充當金의 取扱에 대해서는 11－5－23부터 11－5－25까지의 例에 의할 수가 있다〔1980 直法 2－8 追加〕.

(轉出者 等이 任員에 昇格한 境遇의 退職給與充當金의 取扱)

11－5－29 轉出者 또는 轉籍者가 그 轉出 또는 轉籍日이 屬한 轉出先法人 또는 轉籍後의 法人의 事業年度에 그 任員이 된 境遇(任員이 된 때에

그 使用人이었던 期間에 關聯된 退職給與를 支給하지 않은 境遇에 限함)에는 이들 法人에서는 이 者들에 대해 任員이 된 때를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로 간주하여 11－5－23, 11－5－24 및 11－5－28의 取扱을 適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第 6 節　特別修繕充當金

(對象資產을 賃借하고 있는 境遇의 特別修繕充當金計定에의 算入)

11－6－1 法人이 令 第111條 各號〈特別修繕充當金의 對象資產 및 特別修繕의 範圍〉에서 列擧하는 資產을 賃借하고 있는 境遇에 當該 資產의 特別修繕 때문에 소요하는 費用을 負擔하는 契約을 하고 있을 때에는 當該 資產을 所有하는 境遇에 準하여 特別修繕充當金計定에의 算入을 할 수 있다.

(船舶의 定期檢査 修繕)

11－6－1의 2 法人이 그 所有하는 船舶에 대해 船舶安全法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기 위해 修繕을 한 境遇에 있어서도 當該 修繕 中에서 明白하게 當該 定期檢査와 關係가 없는 修繕은 令 第111條 第 1 號〈船舶의 特別修繕〉에서 規定하는 修繕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追加〕.

(鎔鑛爐, 熱風爐 等의 特別修繕의 範圍)

11－6－2 令 第111條 第 2 號에서 第 4 號까지〈鎔鑛爐 等의 特別修繕〉에서 規定하는 修繕이란 다음에 列擧하는 爐, 球形의 가스 홀더 또는 貯油槽의 區分에 따라 各各 다음에 列擧하는 修繕을 말한다〔1974 直法 2－71, 1980 直法 2－15, 1986 直法 2－12, 1990 直法 2－1 改正〕.

(1) 銑鐵製造用의 鎔鑛爐 爐體의 벽돌 및 몰탈 交換 또 爐頂 裝入裝置(高壓操業裝置 및 무버블 아머를 包含), 羽口, 冷却裝置, 羽口주위 鐵物類, 爐體鐵皮, 爐體주위 給排水裝置, 出銑홈통, 광재홈통, 水平존데, 配管 및 配線類 各各 部分的 交換 또는 補修로 爐體벽돌의 交換과 함께 꼭 해야 하는 것

(2) 銑鐵製造用의 熱風爐 當該 爐體의 벽돌, 모르타르, 벽돌鐵物, 熱風爐鐵皮, 弁類, 配管 및 配線類의 交換 또는 補修

(3) 유리製造用의 連續式 鎔解爐 當該 爐體(蓄熱室을 包含)의 벽돌 및 모르타르의 交換 또 原料投入機, 백스테이, 各種 鐵物 및 支持金物類, 가스 및 空氣交換機, 送風機, 計測器, 自動調節器類, 電極裝置, 熱風發生裝置, 配管 및 配線類의 各 部分的 交換 또는 補修로 爐體벽돌의 交換과 함께 꼭 해야 하는 것

(4) 플로 方式에 의한 連續式 板유리 製造用의 플로 버스, 當該 爐體(보텀, 루프, 사이드씰), 히터, 라디에이션 게이트, 에지 롤 머신, 出入口씰 및 디·드롯서의 交換 또는 補修 및 버스케이스(보텀, 루프, 사이드씰), 리니어 모터, 送風機器, 計測器, 雰圍氣가스供給裝置, 配管 및 配線類의 各 部分的 交換 또는 補修로 爐體의 交換과 함께 꼭 해야 하는 것

(5) 球形의 가스홀더 當該 가스홀더本體, 階段類, 支持構造部, 弁類, 配管, 드레인 빼는 設備, 伸縮管繼手 및 制振裝置의 各 部分的 交換 또는 補修로 社團法人 日本瓦斯協會가 定하는 指針에 根據하여 行하는 檢査를 받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것

(6) 貯油槽 當該 貯油槽本體, 泡消火裝置, 液面計, 配管 및 弁類 等의 各 部分的 交換 또는 補修로 危險物의 規則에 關한 規則 第62條의 5 〈定期點檢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期 等〉의 規定에 따라 行하는 內部點檢을 받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것

(註) (1), (3), (4) 및 (6)에서 列擧하는 修繕 때문에 所要하는 費用에는 爐 또는 槽의 內容物의 排出 때문의 費用이 包含된다.

(特別修繕完了日 및 築造完了日)

11－6－3 令 第112條 第1項 및 令 第113條 第1項〈特別修繕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 等〉의 特別修繕이 完了한 날이란 資產의 區分에 따라 各各 다음에 열거하는 날을 말한다.

令 第112條 第1項 第1號 ②의 築造의 完了日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1986 直法 2－12, 1990 直法 2－1 改正〕.

(1) 船舶 定期檢査를 한 船舶에 대한 새 船舶檢査證書의 交付日

(2) 鎔鑛爐, 熱風爐 또는 連續式鎔解爐 特別修繕을 한 爐에 對해 修繕後 最初로 火入을 한 날

(3) 球形의 가스홀더 特別修繕을 行한 球形가스홀더에 對해 修繕後 最初로 供給用 가스를 封入한 날

(4) 貯油槽 內部點檢를 한 貯油槽에 대해 새 完成檢査證의 交付日

(鎔鑛爐 等의 長期稼動休止期間中에 있어서 特別修繕充當金의 算入停止)

11－6－4 令 第111條 第2號〈特別修繕充當金의 對象資產〉에서 列擧하는 鎔鑛爐 等이 長期에 걸쳐 稼動을 休止하고 있을 境遇에는 그 稼動休止期間中은 當該 鎔鑛爐 等에 대해 特別修繕充當金計定에의 算入을 行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令 第112條 第1項 第1號 ②〈特別修繕充當金의 算入의 基礎가 되는 期間〉에서 規定하는 期間中에 長期에 걸쳐 稼動休止期間이 있을 境遇에는 當該稼動休止期間을 制한 것에서부터 同號 ②에서 規定하는 期間을 計算할 수 있다.)

(充當金設定資產을 賃貸한 境遇의 解體)

11－6－5 法人이 特別修繕充當金計定을 設定하고 있는 資產을 賃貸한 境遇에 있어서 그 契約에 의해 賃借人이 當該 資產의 特別修繕 때문에 所要

하는 費用을 負擔하는 것을 定하고 있을 때에는 充當金設定資產을 所有하고 있지 않게 된 것으로서 令 第113條 第1項 第3號(充當金設定資產을 所有하고 있지 않게 된 境遇의 解體)의 規定에 의해 當該 資產에 關聯된 特別修繕充當金計定의 金額을 解體하는 것으로 한다.

第7節 製品保證 等 充當金

(建設業의 意義)

11－7－1 法 第56條의 2 第1項(製品保證 等 充當金)에서 規定하는 建設業이란 建設業法(1949年 法律 第100號) 第11條 第2項 〈定義〉에서 規定하는 建設業을 말한다〔1971 直審(法) 21 改正〕.

(對象法人의 範圍)

11－7－2 第56條의 2 第1項 〈製品保證 等 充當金〉의 規定은 法人이 同項의 建設業 또는 政令으로 定한 製造業을 主로 하는 事業으로 營爲하는가 어떤가를 不問하고 適用하는 것에 留意한다〔1971 直審(法) 21 改正〕.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하는 設置工事)

11－7－3 機械設備 等의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製造한 機械設備 等을 販賣한 것과 함께 그 設置工事를 한 境遇에 있어서 2－1－10에 의해 그 設置工事에 關聯된 代價額과 機械設備 等에 關聯된 販賣代金과를 區分하여 그 收益計上을 하고 있을 때에는, 法 第56條의 2 第1項 〈製品保證 等 充當金〉의 規定適用上 當該 設置工事는 同項에서 規定하는 請負에 該當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1980 直法 2－8 改正〕.

(船舶의 製造에 該當하는 修理)

11－7－4 船舶의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다음에 列擧하는 事項의 變更이 생긴 船舶의 修理를 할 境遇에는 當該 船舶의 修理에 대해서는 船舶의 製造에 該當하는 것으로 法 第56條의 2 〈製品保證 等 充當金〉의 規定을 適用할 수가 있다〔1971 直審(法) 21, 1974 直法 2－71, 1990 直法 2－6 改正〕.

(1) 主機關의 種類, 數 또는 連續 最大出力

(2) 길이, 幅 또는 깊이

(3) 旅客船, 貨客船, 貨物船, 油送船, 特殊貨物船 또는 母船式 漁業에 있어서 母船의 用途別

(自動車의 範圍)

11－7－5 令 第113條의 2 第1項 第2號 〈自動車製造業〉에서 規定하는 自動車란 耐用年數 省令別表 第1에 있어서 自動車(2輪 또는 3輪自動車 또 特殊自動車 및 乘合自動車를 包含)로 區分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포크리프트와 같이 自走能力을 가지고 있어도 自動車로 區分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包含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3 直法 2－81 追加〕.

(走行距離에 의한 保證期間)

11－7－6 令 第113條의 2 第2項 第2號 〈製造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法人〉에서 規定하는 要件 中에서 自動車에 關聯된 保證條件에 대해서는 走行距離가 2만 킬로미터 또는 이것을 넘는 一定의 距離에 達할 때까지 無償으로 補修해야 할 것만을 定하고 있는 境遇에 있어서도 同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것으로 하나, 1年 미만의 期間과 一定의 走行距離에 達할 때까지의 期間과 어느 것이건 빨리 經過하는 期間을 無償으로 補修하

는 것을 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走行距離가 2만 킬로미터 以上이라도 同號의 要件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3 直法 2－81 追加〕.

(팩시밀리裝置의 範圍)

11－7－6의 2 令 第113條의 2 第1項 第3號 〈팩시밀리裝置의 製造業〉에서 規定하는 팩시밀리裝置에는 팩시밀리 專用의 同報裝置, 畫像蓄積裝置 및 回線自動交換裝置가 包含된다〔1983 直法 2－11 追加〕.

(電氣冷藏庫의 範圍)

11－7－7 令 第113條의 2 第1項 第7號 〈電氣冷藏庫의 製造業〉에서 規定하는 電氣冷藏庫에는 電氣冷凍庫 및 冷凍 쇼우케이스 및 冷藏 쇼우케이스 中에서 다음에 列擧하는 構造 또는 機能을 가진 것 以外의 것을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1973 直法 2－81 追加, 1983 直法 2－11 改正〕.

(1) 自動販賣機로서의 機能을 함께 가진 것

(2) 冷凍機를 內藏하고 있지 않은 것

(3) 에어·카텐方式을 採用하고 있는 所謂 오픈型의 것

(4) 賣場面積 等에 맞추어 複數의 캐비닛을 組立하는 所謂 유니트形式의 構造를 가진 것

(룸 쿨러의 範圍)

11－7－8 令 第113條의 2 第1項 第8號 〈룸 쿨러의 製造業〉에서 規定하는 룸 쿨러란 冷凍機를 利用한 室內冷房用의 器具이고 윈도우타입, 페케지타입 또는 簡易한 세퍼레트타입인 것(暖房用을 兼한 것을 包含. 製品으로서 當初부터 닥트를 設置하는 構造로 되어 있는 것을 除外).

따라서 建物附屬設備 또는 機械 및 裝置에 該當하는 冷暖房設備, 通風設備 및 溫濕度調整機 等은 여기에 包含되지 않는다〔1973 直法 2－81 追加,

1980 直法 2－15, 1983 直法 2－11 改正〕.

(製造業者로서 取扱하는 브랜드메이커)

11－7－9 法人이 他者의 製造에 關聯된 令 第113條의 2 第1項 各號〈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製造業 等의 範圍〉에서 列擧하는 製造業에 關한 完成品을 買入하여 이것을 自己商標에 의해 販賣할 境遇에는 當該 法人은 이들 製品의 製造業을 營爲하는 者에는 該當하지 않으나 當該 法人이 製品의 規格, 性能, 方法 等에 대해 當該 他者에 指示하여 그 指示에 根據하여 製造하게 하는 등 當該 法人 스스로 製造하고 있는 것과 같은 境遇에는 當該 他者가 11－7－10의 2의 適用을 받는 境遇를 빼고 法 第56條의 2 〈製品保證 等 充當金〉의 規定의 適用上 當該 法人을 이들 製品의 製造業을 營爲하는 者로 取扱할 수 있다〔1971 直審(法) 21, 1973 直法 2－81, 1977 直法 2－33, 1980 直法 2－15 改正〕.

(連名에 의한 保證書의 取扱)

11－7－10 令 第113條의 2 第2項 第2號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法人〉에서 規定하는 「保證書」에는 同條 第1項 各號 〈製造業의 範圍〉에서 列擧하는 製造業에 關聯된 製品의 製造者가 單獨으로 發行하고 있는 境遇外에 當該 製造者가 當該 製品의 販賣를 하는 者와 連名으로 發行하고 있는 境遇의 그 保證書를 包含하는 것으로 한다〔1973 直法 2－81 追加〕.

(他者의 名義로 保證書를 發行하는 境遇)

11－7－10의 2 法人이 令 第113의 2 第1項 各號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製造業의 範圍〉에서 列擧하는 物品에 關聯된 完成品을 製造하여 他者를 通해 이것을 販賣하는 境遇에 있어서 同條 第2項

第2號〈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法人〉에서 規定하는 保證書는 當該 他者가 發行하나 當該 他者와 當該 法人과의 契約에 의해 當該 保證書에 根據하여 補修를 當該 法人이 負擔하려고 할 때에는 當該 法人이 實質的으로 當該 保證書를 發行하고 있는 것으로 法 第56條의 2 第1項〈製品保證 等 充當金〉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補修費의 範圍)

11－7－10의 3 法人이 令 第113條의 2 第2項 各號〈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法人〉에서 規定하는 契約書 또는 保證書에서 定하는 補修 以外의 補修를 無償으로 한 境遇에 있어서도 當該 補修는 法 第56條의 2 第1項〈製品保證 等 充當金〉에서 規定하는 補修에는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단, 當該 契約書 또는 保證書에서 定하는 補修와 當該 補修 以外의 無償 補修를 합쳐서 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無償 補修에 關聯된 部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區分하는 것이 困難한 때에는 그 區分하기가 困難한 部分에 대해서도 當該 契約書 또는 保證書에서 定한 補修인 것으로 令 第113條의 3 第2項〈補修費의 支出比率〉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80年 直法 2－15 追加〕.

(他者에 補修費의 一部를 負擔시키고 있는 境遇의 收益額의 區分計算)

11－7－11 建設業 또는 令 第113條의 2 第1項 各號〈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製造業의 範圍〉에서 列擧하는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그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目的物의 缺陷을 他者의 負擔으로 補修시키는 境遇에는 當該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目的物 中에서 當該 他者의 負擔으로 補修시키는 것의 收益額에 대해서는 製品保證 等 充當金의 對象으로 될 수 없는 것에 留意한다. 단, 다음에 列擧하는 境遇에는 그 金

額을 令 第113條의 3 第1項 또는 第2項 第1號〈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收益의 合計에 包含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71 直審(法) 21, 1973 直法 2－81, 1980 直法 2－15 改正〕.

(1) 이들 法人이 下請業者 等과의 契約에 根據하여 當該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目的物 中에서 當該 下請業者 等이 請負 또는 製造를 한 部分의 缺陷에 대해서는 그 下請業者 等의 負擔으로 補修시키는 境遇(當該 下請業者 等이 11－7－10의 2의 適用을 받는 境遇를 除外) 當該 目的物에 關聯된 收益額에서 當該 下請業者 等에 支拂하는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

(2) 令 第113條의 2 第1項 各號에서 列擧하는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販賣業者 等과의 契約에 根據하여 當該 販賣業者 等에 그 製造에 關聯된 目的物 缺陷의 補修에 所要한 費用의 一部를 負擔시키려는 境遇, 當該 目的物에 關聯된 收益額에서 當該 收益額에 그 契約에서 定하는 當該 販賣業者 等의 補修費의 負擔比率(特定 費目의 補修費를 販賣業者 等에게 負擔시키는 境遇에는 當該 事業年度에 當該 目的物에 대해 所要한 補修費의 合計額에 對한 當該 販賣業者 等이 負擔한 金額의 合計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控除한 金額

(補修費用의 負擔이 實績에 根據하지 않은 境遇의 適用)

11－7－12 令 第113條의 2 第1項〈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製造業의 範圍〉에서 列擧하는 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이 그 製造에 關聯된 目的物 缺陷의 補修를 販賣業者 等에게 一任하고 그 補修費用에 充當하기 위해 金錢 또는 物品交付 等을 하는 境遇에 있어서도 그 交付 等이 當該 販賣業者 等으로부터의 補修實績에 의한 請求에 根據하지 않은, 다음에 列擧하는 것일 때에는 當該 目的物은 令 第113條의 3 第1項〈製品

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自己負擔으로 補修해야 할 것」에는 該當하지 않으므로 當該 目的物에 關聯된 收益額은 同項 또는 同條 第2項에서 規定하는 收益額의 合計額에 包含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1 直審(法) 21, 1973 直法 2－81 改正〕.

(1) 補修費用에 充當하기 위해 去來高 等에 따라 金錢을 交付하는 等 單純한 賣上리베이트 等으로 認定되는 境遇

(2) 補修費用에 充當하는 것으로 補修部品 等을 製品에 添加하거나 또는 補修前에 미리 補修部品 等을 交付하고 그 精算을 하지 않기 위해 單純한 添加物로 認定되는 境遇

(3) 補修費用으로 充當하는 것으로 目的物의 決算價額을 引下하는 單純한 引下로 認定되는 境遇

(리베이트가 있는 境遇의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收益額)

11－7－13 令 第113條의 3 第1項 또는 第2項 第1號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目的物의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收益額을 計算하는 境遇에 있어서 當該 目的物의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代價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에 있어서 리베이트를 한 金額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控除한다〔1971 直審(法) 21, 1973 直法 2－81 改正〕.

(延拂基準을 適用한 境遇의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 等)

11－7－14 法人이 延拂條件附請負 또는 延拂條件附讓渡에 關聯된 收益額 및 費用額의 計上에 대해 延拂基準의 方法에 의해 經理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目的物의 引渡를 한 날이 屬한 事業年度 以後 그 賦拂期間에 關聯된 各事業年度(令 第113條의 2 第2項 各號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을 設定할 수 있는 法人〉에서 規定하는 契約書 또는 保證書에서 定하는 補修期間의 末日을 包含한 事業年度前의 各事業年度에 限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令 第113條의 3 第1項 및 第2項 第1號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에서 規定하는 目的物의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收益額은 當該 各事業年度에 있어서 益金額에 算入한 收益額에 의함〔1971 直審(法) 21, 1973 直法 2－81, 1980 直法 2－15 改正〕.

(註) 法人이 延拂基準方法에 의한 經理에 대해 目的物의 引渡를 한 날이 屬한 事業年度에 當該 請負 또는 讓渡에 關聯된 收益額 및 費用額의 全部를 計上한 위에 未實現利益을 順延하는 方法에 의할 境遇에 있어서도 當該 事業年度에 그 計上한 請負 또는 讓渡에 關聯된 收益額의 全部를 對象으로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을 할 수 없는 것에 留意한다.

(工事進行基準을 適用한 境遇의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 等)

11－2－15 法人이 長期工事의 請負에 關聯된 收益額 및 費用額의 計上에 대해 工事進行基準의 方法에 의해 經理하고 있는 境遇에는 當該 長期工事의 請負에 關聯된 目的物의 引渡가 있던 날이 屬한 事業年度에 여기에 대해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令 第113條의 3 〈製品保證 等 充當金計定에의 算入限度額〉의 規定適用에 대하여는 當該 長期工事의 請負에 關聯된 代價額을 同條 第1項 및 第2項 第1號의 目的物의 請負 또는 製造에 關聯된 收益額으로 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追加〕.

第 12 章　移越缺損金

第 1 節　靑色申告事業年度의 缺損金

(移越缺損金의 損金算入의 順序)

12－1－1 法 第57條 第 1 項 〈靑色申告書를 提出한 事業年度의 缺損金의 移越〉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額의 損金算入은 當該 事業年度에 移越된 缺損金額이 2 以上의 事業年度에 생긴 것으로 이루어진 境遇에는 그 中 가장 오래된 事業年度에 생긴 缺損金額에 相當하는 金額부터 順次損金算入하는 것에 留意한다.

(資本積立金額 等에 의해 補塡한 缺損金額)

12－1－2 法人이 資本積立金額 또는 利益積立金額에 의해 各事業年度에 생긴 缺損金額을 補塡하고 移越缺損金으로 表示하지 않는 境遇에 있어서도 當該 補塡한 缺損金額이 各事業年度 開始日前 5年 以內에 開始한 事業年度에 생긴 것이고, 法 第57條 第 2 項 〈移越缺損金의 損金算入의 要件〉에서 規定하는 要件에 該當할 때에는 當該 補塡한 缺損金額은 損金額에 算入되는 것에 留意한다.

第 2 節　災害損失金

(滅失損 等의 計上時期)

12－2－1 令 第116條 第 1 號 〈災害에 의한 滅失 等의 損失額〉에서 列擧

하는 損失額은 災害가 發生한 날이 屬한 事業年度 또는 災害가 끝난 날이 屬한 事業年度에 損金經理를 한 金額에 限함. 단, 同號에서 規定하는 解體費 等에 대해서는 災害가 끝난 날의 翌日부터 1年을 經過한 날의 前日까지에 支出한 것을 當該 支出日이 屬한 事業年度에 損金經理를 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移越損失金의 損金算入의 順序 等)

12－2－2 12－1－1 및 12－1－2 〈移越缺損金의 損金算入의 順序 等〉는 法 第58條 〈靑色申告書를 提出하지 않은 事業年度의 災害에 의한 損失金의 移越〉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3節 私財提供 等이 있은 境遇의 移越缺損金

(整理開始의 命令에 準하는 事實 等)

12－3－1 令 第117條 第4號 〈整理開始의 命令에 準하는 事實 等〉에서 規定하는 「前 3號에 列擧하는 事實에 準하는 事實」이란 다음에 列擧하는 事實을 말한다.

(1) 同條 第1號에서 第3號까지에 列擧하는 事實 以外에 있어서 法律이 定하는 手續에 의한 資產의 整理가 있었던 것

(2) 主務官廳의 指示에 根據하여 再建整備 때문에 一連의 手續을 包含한 一定의 計劃을 作成하여 이것에 따라 하는 資產의 整理가 있었던 것

(3) (1) 및 (2) 以外의 資產整理에서 예를 들어 親子會社間에 있어서 親會社가 子會社에 對해 所有한 債權을 單純히 免除하는 것이 아니고, 債務의 免除 等이 多數의 債權者에 의해 協議上 決定되는 等 그 決定에 대해 恣

意性이 없고, 또 그 內容에 合理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資產의 整理가 있었던 것

(前事業年度 以前의 事業年度에서 移越된 缺損金額의 合計額)

12－3－2 令 第118條 〈缺損金額의 範圍〉에서 規定하는 「前事業年度 以前의 事業年度에서 移越된 缺損金額의 合計額」이란 當該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에 添附하는 法人稅 申告書 別表 5(1)의 「利益積立金額의 計算에 關한 明細書」에 期首現在 利益積立金額의 合計額으로 記載되어야 할 金額으로 當該 金額이 負(마이너스)일 境遇의 當該 金額에 의함〔1980 直法 2－15 改正〕.

第 13 章　借地權의 設定 等에 따른 所得의 計算

(他人에게 借地權에 關聯된 土地를 使用케 하는 行爲의 範圍)

13－1－1 令 第137條 〈土地의 使用에 따른 代價에 대한 所得의 計算〉에서 規定하는 「他人에게 借地權에 關聯된 土地를 使用케 하는 行爲」에는 예를 들어 借地權에 關聯된 土地를 地下鐵 等의 構築物 建設을 하게끔 그 土地의 地下를 使用케 하는 行爲 또는 特別高壓架空電線의 架設 等을 하게끔 그 土地의 위 空間을 使用케 하는 行爲가 該當된다.

(使用의 代價로서의 相當의 地代)

13－1－2 法人이 借地權의 設定 等(借地權 또는 地役權의 設定에 의해 土地를 使用케 하거나 또는 借地權의 轉貸其他人에 借地權에 關聯된 土地를 使用하게 한 行爲를 말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음)에 의해 他人에게 土地를 使用하게 한 境遇에 이것으로 인해 收受하는 地代額이 當該 土地의 更地價額(權利金을 收受하고 있을 때 또는 特別한 經濟的인 利益額이 있을 때에는 이를 控除한 金額)에 對해 대략 年 8% 程度일 때에는 그 地代는 令 第137條 〈土地의 使用에 따른 代價에 대한 所得의 計算〉에서 規定하는 相當의 地代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1991 課法 2－4 改正〕.

(註) 1. 「土地의 更地價額」은 그 借地權의 設定 等을 할 때에 있어서 當該 土地의 更地로서의 通常의 去來價額을 말하는 것이나, 이 取扱의 適用上은 課稅上 弊害가 없는 限 當該 土地에 대해 그 近傍類地의 公示價格 等(地價公示法 第 8 條 〈不動產鑑定士 等의 土地에 대해서 鑑定評價의 準則〉에서 規定하는

公示價格 또는 國土利用計劃法施行令 第9條 第1項〈基準地의 標準價額〉에서 規定하는 標準價格을 말함)에서 合理的으로 算定한 價額 또는 1964年 4月 25日付 直資 56·直審(資) 17「財産評價基本通牒」第2章〈土地 및 土地 위에 있는 權利〉의 例에 의해 計算한 價額에 의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本文의 괄호 書에 의해 土地의 更地價額에서 控除해야 할 金額이 있을 때에는 當該 金額은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算式)

$$\text{그 權利金 또는 特別한 經濟的 利益} \times \frac{\text{當該 算定하거나 또는 計算한 價額}}{\text{當該 土地의 更地로서 通常의 去來價額}}$$

2. 借地權의 轉貸의 境遇에는「土地의 更地價額」이라는 것은「借地權의 價額」으로,「當該 土地의 更地로서의 通常의 去來價額」이라는 것은「當該 借地權의 通常의 去來價額」으로 各各 바꿀 수 있다.

(相當의 地代에 미치지 않는 地代를 收受하고 있는 境遇의 權利金 認定)

13－1－3 法人이 借地權의 設定 等에 의해 他人에게 土地를 使用하게 한 境遇에 이것으로 인해 收受하는 地代額이 13－1－2에서 定하는 相當의 地代額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13－1－7의 取扱에 의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에서 實際로 收受하고 있는 權利金 및 特別한 經濟的 利益을 控除한 金額을 借地人 等에 對해 贈與(當該 借地人 等이 當該 法人의 任員 또는 使用人인 境遇에는 給與의 支給으로 한다. 以下 13－1－14까지 같음)한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1981 直法 2－16 改正〕.

(算式)

$$\text{土地의 更地價額} \times \left\{1 - \frac{\text{實際로 收受하고 있는 地代의 年額}}{\text{13－1－2에서 定하는 相當의 地代年額}}\right\}$$

(註) 1. 算式의「13－1－2에서 定하는 相當의 地代年額」은 實際로 收受하고 있는 權利金 또는 特別한 經濟的 利益이 있는 境遇라도 이들 金額이 없는 것으로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

2.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이 通常 收受해야 할 權利金을 넘을 때에는 當該 權利金에 그친다.

(相當의 地代를 引下한 境遇의 權利金 認定)

13－1－4 法人이 借地權의 設定 等으로 인해 他人에게 土地를 使用케 하여 이것으로 相當 地代를 收受했을 境遇에 있어서도 그후 그 地代를 引下했을 때에는 그 引下가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될 때를 除外하고 原則的으로 그 引下했을 때의 當該 土地의 價額을 基礎로 13－1－3의 算式에 準하여 計算한 金額(이미 權利金의 一部를 收受하고 있는 境遇 또는 13－1－3에 의해 贈與가 있었던 것으로 計算된 金額이 있을 境遇에는 이들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借地人 等에 對해 贈與한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通常 權利金을 收受하지 않는 土地의 使用)

13－1－5 法人이 權利金을 收受하지 않고 他人에게 土地를 使用케 한 境遇에 이것으로 인해 收受하는 地代額이 13－1－2에서 定하는 相當의 地代額에 미치지 않을 때에 있어도 그 土地의 使用目的이 單純히 物品置場, 駐車場 等으로 土地를 更地 그대로 使用하거나 또는 假營業所, 假店鋪 等 簡易한 建物의 敷地로 使用하는 等, 그 土地의 使用이 通常 權利金의 收受를 同伴하지 않는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13－1－3에 不拘하고 權利金을 認定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이 境遇 法人이 實際로 收受하고 있는 地代額이 그 土地의 使用目的에 비추어 通常 收受해야 할 地代額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 充足치 않은 것에 대해 相當 理由가 있다고 認定될 때를 除外하고는 그 充足치 않은 部分의 金額을 借地人 等에 對해 贈與한 것으로 한다.

(共同빌딩 建築의 境遇)

13－1－6 一團의 土地區域內에 土地를 所有하는 2 以上의 者가 當該 一團의 土地上에 共同으로 建物을 建築하여 當該 建物을 區分所有하는 境遇에 各人이 所有하는 部分의 바닥面積比(當該 建物階 其他 部分마다 利用效

用이 다를 때에는 當該 部分마다 그 다른 効用에 關聯된 適正한 比率을 勘案하여 算定한 床面積의 比로 한다. 以下 13－1－6에 있어서 같음)가 當該 各人의 所有地의 面積比 또는 價額比와 대략 같을 때에는 相互 借地權의 設定 等은 없었던 것으로 取扱한다.

當該 2 以上의 者가 當該 建物을 共有하는 境遇에도 마찬가지이다〔1980 直法 2－15 追加〕.

(註) 各人이 所有하는 部分의 床面積比가 當該 各人의 所有地의 面積比 또는 價額比와 相當 程度 以上 다를 境遇에는 그 差에 對한 部分의 土地에 대해 借地權의 設定 等이 있었던 것으로 取扱하기 때문에 留意한다.

(權利金의 認定比較)

13－1－7 法人이 借地權의 設定 等으로 인해 他人에게 土地를 使用하게 한 境遇(權利金을 收受한 境遇 또는 特別한 經濟的 利益을 받은 境遇를 除外)에 이것으로 인해 收受하는 地代額이 13－1－2에서 定하는 相當의 地代額에 미치지 않을 때(13－1－5의 取扱의 適用이 있을 때를 除外)라도 그 借地權의 設定 等에 關聯된 契約書에 將來 借地人 等이 그 土地를 無償으로 返還하는 것이 定해져 있고, 또 그 趣旨를 借地人 等과의 連名의 書面에 의해 遲滯없이 當該 法人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 所管法人에서는 管轄國稅局長. 以下 13－1－14까지 같음)에게 届出했을 때에는 13－1－3에 不拘하고 當該 借地權의 設定 等을 한 날이 屬한 事業年度 以後의 各事業年度에 13－1－2에 準하여 計算한 相當의 地代額에서 實際로 收受하고 있는 地代額을 控除한 金額을 借地人 等에 對해 贈與한 것으로 取扱한다.

使用貸借契約에 의해 他人에게 土地를 使用케 한 境遇(13－1－5의 取扱의 適用이 있는 境遇를 除外)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註) 本文의 取扱을 適用하는 境遇에 相當의 地代額은 대략 3年 以下의 期間마다 是正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13－1－2의 (註)1 中「借地權의 設定 等의 時」라는 것은「當該 事業年度 開始의 時」로 바꿀 수 있다.

(相當의 地代 改訂)

13－1－8 法人이 借地權의 設定 等에 의해 他人에게 土地를 使用케 한 境遇(13－1－5 또는 13－1－7의 取扱의 適用이 있는 境遇를 除外)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13－1－2에서 定하는 相當의 地代를 收受하기로 했을 때에는 그 借地權의 設定 等에 關聯된 契約書에 있어서 그 後 當該 土地를 使用케 하고, 있는 期間內에 收受하는 地代額의 改訂方法에 대해 다음 (1) 또는 (2)를 따를 것을 定하는 것과 함께 그 趣旨를 借地人 等과 連名의 書面에 의해 遲滯없이 當該 法人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 届出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그 届出이 없을 때에는 (2)의 方法을 選擇한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 그 借地權의 設定 等에 關聯된 土地의 價額 上昇에 따라 차례로 그 收受하는 地代額을 相當의 地代額(上昇한 後의 當該 土地의 價額을 基礎로 13－1－2에서 定하는 바에 準하여 計算한 金額을 말함)에 改訂하는 方法

(2) (1) 以外의 方法

(註) 13－1－7의 (註)는 法人이 (1)의 方法을 選擇한 境遇에 대하여 準用한다.

(建物 等의 區分所有에 關聯된 借地權比率의 計算)

13－1－9 令 第138條 第1項 第2號〈建物 等의 區分所有에 關聯된 借地權比率〉에서 列擧하는 比率은 法人이 建物 또는 構築物의 區分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借地權의 設定에 의해 그 所有하는 土地를 使用하게 한 境遇의 그 區分所有部分의 借地權 比率을 말하는 것이므로 同號 ②에서 정하는 殘額은 그 區分所有部分에 對한 土地에 대하여 計算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改正〕.

(借地權의 設定 等에 따른 保證金 等)

13－1－10 法人이 借地權의 設定 等에 있어 保證金, 賃貸保證金 等의 名義에 의한 金錢을 받은 境遇에 있어서도 그 引受한 金額이 그 土地가 있는 地域에서 通常 收受되는 程度의 保證金額(그 額이 明確하지 않을 때에는 借地權의 設定契約에 의한 地代의 3月分 相當額으로 한다) 以下일 때에는 當該 引受한 金額은 令 第138條 第2項 〈特別한 經濟的인 利益〉에서 規定하는 「特別히 有利한 條件에 의한 金錢의 貸付」에는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複利方法에 의한 現在 價値에 相當하는 金額의 計算)

13－1－11 令 第138條 第3項 〈特別한 經濟的인 利益의 計算〉에서 規定하는 「通常의 利率」은 年 1割, 「貸付를 받는 期間」은 1年을 單位로 計算한 期間(1年 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잘라버리고 計算한 期間), 複利의 方法으로 現在價値를 計算하는 境遇의 「複利現價率」은 小數點 以下 세 자리까지 計算한 率(네 자리를 끌어 올림)에 의한다〔1980 直法 2－15 改正〕.

(土地의 價額이 增加하는 事由)

13－1－12 令 第138條 第4項 〈特別한 經濟的 利益을 返還한 境遇의 土地 等의 帳簿價額〉에서 規定하는 「其他 土地 等의 價値의 增加가 있었을 때」에는 그 土地에 關聯된 賃貸借契約에 根據하여 借地權의 存續期間 滿了 等에 의한 建物 等의 買入 또는 地役權의 解除 等의 事實이 該當한다〔1980 直法 2－15 改正〕.

(更新料 等)

13－1－13 法人이 借地權의 設定 等에 關聯된 契約의 更新 또는 更改를 할 境遇에 있어서 當該 借地權에 關聯된 土地가 있는 地域에서 通常 更新料

또는 更改料를 授受하는 去來上의 慣行이 明確치 않기 때문에 그 授受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15 追加〕.

(借地權의 無償讓渡 等)

13－1－14 法人이 借地 위에 있는 自己의 建物 等을 借地權의 價額 全部 또는 一部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치 않은 價額으로 讓渡한 境遇 또는 借地의 返還에 있어서 通常 當該 借地權의 價額에 相當하는 立退料, 其他 여기에 類似한 一時金(이하 13－1－16까지 「立退料 等」이라 함)을 授受하는 去來上의 慣行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額 全部 또는 一部에 相當하는 金額을 收受하지 않은 境遇에는 原則的으로 通常 收受해야 할 借地權의 代價額 또는 立退料 等의 額과 實際로 收受한 借地權의 代價 또는 立退料 等과의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相對方에게 贈與한 것으로 取扱하지만 그 讓渡 또는 借地의 返還에 있어 通常 收受해야 할 借地權의 代價 또는 立退料 等에 相當하는 金額을 다음에 列擧하는 理由로 收受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借地權의 設定 等에 關聯된 契約書에 있어서 將來 借地를 無償으로 返還하는 것이 定해져 있을 것, 또는 그 土地의 使用이 使用貸借契約에 의한 것일 것(어느 것이건 13－1－7에서 定하는 바에 의해 그 趣旨가 管轄稅務署長에게 届出되어 있는 境遇에 限함).

(2) 土地의 使用目的이 單純히 物品置場, 駐車場 等으로 土地를 更地 그대로 使用하거나 또는 假營業所, 假店鋪 等의 簡易한 建物의 敷地로 使用하려고 하는 것

(3) 借地上의 建物이 顯著하게 老朽化했을 것, 其他 여기에 類似한 事由에 의해 借地權이 消滅하거나 또는 이것을 存續시키는 것이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事情이 생겼을 것

(相當의 地代로 賃借한 土地에 關聯된 借地權의 價額)

13－1－15 13－1－14의 境遇에 있어서 借地人인 法人이 13－1－2에서 定하는 相當의 地代에 의해 賃借한 土地에 關聯된 借地權을 讓渡하거나 또는 當該 土地를 地主에 返還했을 때에 通常 收受해야 할 借地權의 代價 또는 立退料 等의 金額은 原則的으로 다음에 列擧하는 境遇의 區分에 따라 各各의 金額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 그 支拂해야 할 地代額의 改訂方法에 대해 13－1－8의 (1)에서 列擧하는 方法에 의할 境遇는 零. 단, 當該 借地權의 設定 等에 있어 支拂한 權利金 또는 供與한 特別한 經濟的 利益이 있을 境遇에는 當該 權利金 또는 特別한 經濟的인 利益額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한다.

(2) (1) 以外의 境遇 － 區分에 따라 各各 다음 金額

① 그 支拂하고 있는 地代額이 一般地代額(通常 支拂해야 할 權利金을 支拂한 境遇에 當該 土地의 價額上昇에 따라 通常 支拂해야 할 地代를 말함)에 相當하는 金額이 되기 前에 그 讓渡 또는 返還이 이루어졌을 때 그 讓渡 또는 返還時에 當該 土地의 更地價額을 基礎로 13－1－3에서 定하는 算式에 準하여 計算한 金額

② ① 以外일 때 － 讓渡 또는 返還時에 있어서 當該 土地의 更地價額을 基礎로 通常 去來되는 借地權의 價額

(註) 이 取扱은 法人이 借地人으로부터 貸地를 返還받았을 때에 (1) 또는 (2)에서 列擧하는 金額의 立退料 等 외에 그 返還에 따라 借地人에게 생기는 費用 또는 損失의 補塡에 充當하기 위해 合理的인 金額 支拂을 防止하는 것이 아닌 것에 留意한다.

(貸地의 返還을 받은 境遇의 處理)

13－1－16 法人이 貸地의 返還을 받은 境遇에는 다음 어느 境遇에 該當하는가에 따라 各各에 列擧하는 金額을 그 返還을 받은 土地의 帳簿價額에

加算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無償으로 返還을 받은 境遇 － 그 土地에 대하여 借地權의 設定 等에 있어 令 第138條 第1項〈借地權의 設定 等에 의해 地價가 顯著하게 低下하는 境遇의 土地 等의 帳簿價額의 一部 損金算入〉 또는 法 第33條 第2項〈資産 評價損의 損金算入〉의 規定에 의해 損金額에 算入한 金額이 있을 때에는 그 損金額에 算入한 金額

(2) 立退料 等(其他 立退에 所要하는 費用을 包含. 以下 13－1－16에서 같음)만을 支拂한 境遇 － 그 支拂한 立退料 等과 (1)에서 列擧하는 金額 中에서 많은 金額

(3) 立退料 等을 支拂하는 것과 함께 土地 위에 있는 建物 等을 買入한 境遇 － 그 支拂한 立退料 等과 當該 建物 等의 買入價額 中에서 當該 建物 等의 價額을 넘는 部分의 金額과 合計額과 (1)에서 列擧하는 金額 中 많은 金額

(註) 法人이 貸地의 返還을 받을 때에 通常 支拂해야 할 立退料 等의 額 全部 또는 一部에 相當하는 金額을 支拂하지 않았을 境遇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 여기에 의한 經濟的 利益額은 없는 것으로 取扱한다.

第13章의 2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 等

第 1 節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

(所謂 外貨建 円拂의 債權債務)

13의 2－1－1 令 第139條의 2부터 第139條의 7까지 〈外貨建債務債權의 換算〉의 規定에 의한 円換算의 對象 外貨建債權債務는 外國通貨 表示, 또는 外國通貨로 支拂을 해야 하는 것인 金錢債權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外國通貨로 表示되어 있는 金錢債權債務라도 그 支拂이 本邦通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外貨建債權債務에는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9 直法 2－31 追加〕.

(外貨建社債)

13의 2－1－1의 2 法人이 發行하는 外貨建社債(轉換期間 滿了前의 轉換社債를 除外)에 대해서는 令 第139條의 2 〈用語의 定義〉에서 規定하는 外貨建債務(以下「外貨建債務」이라 함)에 包含되나 法人이 所有하는 外貨建社債에 대해서는 同條에서 規定하는 外貨建債權(이하 「外貨建債權」이라 함)에는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77 直法 2－33, 1979 直法 2－31 改正〕.

(前渡金 等)

13의 2－1－2 外貨建의 去來에 關하여 支拂한 前渡金 또는 收受한 前受金으로 資產의 賣買代金에 充當되는 것은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以下「外貨建債權債務」라 함)에는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

－21 追加〕.

(期限徒過의 外貨建債權)

13의 2－1－2의 2 外貨建債權으로 이미 그 支拂期限을 經過한 것은 令 第139條의 2 第3號 〈短期外貨建債權의 定義〉에서 規定하는 短期外貨建債權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取扱한다〔1980 直法 2－15 追加〕.

(取得時 換算法)

13의 2－1－3 取得時 換算法에 있어서 外貨建債權債務의 取得時 또는 發生의 円換算額은 區分에 따라 各各 다음과 같다〔1975 直法 2－21 追加, 1978 直法 2－24, 1979 直法 2－31, 1983 直法 2－3 改正〕.

(1) 收益, 費用 等에 關聯된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서는 13의 2－2－1과 13의 2－2－1의 2에 의해 收益, 費用 等으로 쳐야 할 本邦通貨額을 그 円換算額으로 한다.

(2) 貸付金 또는 借入金(社債를 包含. 以下 13의 2－1－3에서 같음)에 關聯된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① 本邦通貨에 의해 外國通貨를 購入하여 貸付하는 境遇의 그 貸付 또는 借入에 關聯된 外國通貨를 賣買하여 本邦通貨를 引受하는 境遇 그 借入金에 대해서는 現在 貸付金으로 支出하거나 또는 借入金으로 引受한 本邦通貨額을 그 円換算額으로 한다. 단, 借入金 中에서 그 借入을 한 날부터 本邦通貨를 引受한 날까지의 期間이 送金 等에 通常 要하는 期間을 넘는 것의 円換算額에 대해서는 다음의 ②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② 現在 保有하고 있는 外國通貨 또는 새로 借入 等에 의해 取得한 外國通貨에 의해 貸付한 境遇의 그 貸付金 또는 借入에 의해 取得한 外國通貨를 그대로 預金 等으로 保有하거나 또는 他에 貸付한 境遇의 그 借入金에 대해서는 그 貸付 또는 借入한 날의 外國換公認銀行의 對顧客直物電信賣時

勢(以下「電信賣時勢」라 함)와 對顧客直物電信買時勢(以下「電信買時勢」라 함)의 중간값(이하「電信賣買時勢의 중간값」이라 함)에 의해 換算한 金額을 그 円換算額으로 한다. 단, 繼續 適用을 條件으로, 貸付金에 대해서는 그 貸付한 날의 電信賣時勢에 의해 借入金에 대해서는 그 借入한 날의 電信買時勢에 의해 換算한 金額을 그 円換算額으로 할 수 있게 한다.

(註) 當該日의 電信賣時勢 및 電信買時勢에 대해서 다음에 列擧하는 境遇에는 各各 다음에 따른다. 以下 13의 2-2-9까지 같음.

1. 當該日에 이들 時勢가 없는 境遇에는 同日前의 가장 가까운 날의 時勢에 따른다.
2. 當該日에 이들의 時勢가 2 以上 있을 境遇에는 그 最終時勢에 다른다.
3. 當該日에 이들 時勢가 銀行마다 다를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當該 法人의 主되는 去來銀行의 시세에 따른다.

(期末時 換算法-事業年度 終了時 換時勢)

13의 2-1-4 法人이 短期의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期末時 換算法에 의해 円換算을 할 境遇의 外國換 賣買時勢(以下「換時勢」라고 함)는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의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繼續適用을 條件으로 外國通貨의 種類가 다른 것마다 當該 外國通貨에 關聯된 外貨建債權債務의 모든 것에 대하여 外貨建債權에 대해서는 電信買時勢에 의해, 外貨建債務에 대해서는 電信賣時勢에 의할 수 있다〔1975 直法 2-21 追加, 1978 直法 2-24, 1979 直法 2-31, 1982 直法 2-11 改正〕.

(註) 1.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의 電信賣買時勢의 중간값, 電信買時勢 또는 電信賣時勢는 繼續 適用을 條件으로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을 包含한 1月 以內의 一定期間에서의 各各의 平均値에 의할 수 있다.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의 電信買時勢 또는 電信賣時勢가 異常으로 高騰하거나 또는 下落하기 때문에 이들의 時勢 또는 그 중간값에 따르는 것이 適當하지 않다고 認定되는 境遇도 똑같이 한다.

2. 各事業年度 終了日에 있어서 外國通貨 및 外貨預金(그 滿期日이 當該 各事業年度 終了日의 翌日부터 起算하여 1年을 經過한 날 以後에 到來한 것(以

下 13의 2－1－4에서 「長期의 外貨預金」이라 함)을 除外)의 円換算에 대해서는 期末時 換算法을 適用하고 있는 短期外貨建債權의 例에 準하여 長期外貨預金의 円換算에 대해서는 取得時 換算法을 適用하고 있는 外貨建債權의 例에 準한다.

(期末時 換算法－換豫約이 있는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

13의 2－1－5 短期의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期末時 換算法을 選定하고 있는 境遇에 있어서 그 外貨建債權債務의 円換算額이 換豫約(本邦通貨에 의한 保證約款을 包含. 以下 13의 2－1－5 및 13의 2－2－1의 2에서 같음)에 의해 確定되었을 때에는 當該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서는 13의 2－1－4에 不拘하고 當該 豫約에 의해 確定된 円換算額을 가지고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換時勢에 의한 円換算額으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그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換豫約이 있는가 어떤가는 原則的으로 個個의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마다 判定하는 것이나 法人이 그 去來約定의 狀況에 따라 예를 들어 月別決濟見込額에 대하여 包括的으로 換豫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境遇에는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 있어서 所有하고 있는 外貨建債權債務에 關聯된 換豫約에 의해 確定하고 있는 円換算額은 當該 外貨建債權債務를 決濟月別로 區分하여 그 決濟月의 豫約額에 의한 円換算額으로 하는 등 合理的인 基準에 의해 算定하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79 直法 2－31 改正〕.

(期末時 換算法－換算差額의 一括表示)

13의 2－1－6 法人이 短期의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期末時 換算法을 選定하고 있는 境遇의 換算差額을 個個의 外貨建債權債務額에 加除算하지 않고 外上賣出金, 借入金 等의 各項目에 一括하여 加除算한 境遇에는 그 翌事業年度에 益金 또는 損金額에 戾入되는 것을 條件으로 그 計算을 認定한다. 이 境遇 貸損充當金 計算의 基礎가 되는 貸金은 當該 貸金에 對應하는

換算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除算하여 計算하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取得時 換算法－換時勢의 顯著한 變動이 있을 境遇의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

13의 2－1－6의 2 法人이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에 대해 取得時 換算法을 選定하고 있는 境遇에 있어서 當該事業年度 終了時에 所有하는 個個의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取得時 換算法을 選定하고 있는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에 限함. 以下 13의 2－1－6의 2에서 같음) 中에서 當該 個個의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에 대해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比率이 대략 15%에 相當하는 比率 以上이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當該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에 대해서는 令 第139條의 3 第2項 第1號 〈取得時 換算法의 特例〉에서 列擧하는 事實이 있는 것으로 同項의 規定에 의한 円換算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79 直法 2－31 追加〕.

當該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 額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의 換時勢에 의해 換算한 本邦通貨額	－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에 있어 當該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의 帳簿價額
當該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額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의 換相場에 의해 換算한 本邦通貨額		

(註) 1. 算式 中의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의 換時勢」는 13의 2－1－4에서 定하는 바에 따름. 단, 이 境遇에는 13의 2－1－4의 (註)1은 適用하지 않는다.

2. 多數의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를 所有하고 있어 個個의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別로 算式에 의한 比率을 計算하기가 困難한 境遇에는 外國通貨의 種類를 같이 하는 外貨建債權 또는 外貨建債務의 合計額을 基礎로 그 計算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外國通貨의 種類를 같이 하는 外貨建債權 및 外貨建債務 中에서 算式에 의해 計算한 比率이 대략 15%에 相當하는 比率 以上이 되는 것이 2 以上 있

을 境遇에는 그 一部에 대해서만 同項의 規定에 의한 円換算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適正한 円換算을 하고 있지 않은 境遇의 處理)

13의 2－1－7 法人이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 所有한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따라야 할 方法에 의한 円換算을 하고 있지 않은 境遇에는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上 따라야 하는 方法에 의해 換算한 金額과 그 帳簿價額과의 差額은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한다. 단, 그 差額을 損金額에 算入하지 않은 것에 대해 法 第129條 第2項 〈更正에 關한 特例〉의 規定適用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렇지 않다〔1975 直法 2－21 追加, 1978 直法 2－24 改正〕.

(届出의 效力)

13의 2－1－8 法人이 短期의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方法을 그 外國通貨의 種類가 다른 것마다 届出한 境遇에 있어서 그 届出後 어느 쪽이건 外國通貨에 關聯된 外貨建債權債務를 所有하지 않게 되었어도 當該 外貨建債權債務에 關聯된 届出은 繼續하여 그 效力을 가지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78 直法 2－24 改正〕.

(註) 그후 當該 外國通貨에 關聯된 外貨建債權을 取得하거나 또는 外貨建債務가 發生한 境遇에 그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當該 届出에 의한 方法 以外의 方法에 의해 円換算을 하려고 할 때에는 令 第139條의 6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方法의 變更手續〉의 規定의 適用이 있다.

(合併에 의해 引受한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方法)

13의 2－1－9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으로부터 短期外貨建債權債務를 引受한 境遇에 當該 短期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方法 選定에 대해서는 그 合併時에 있어서 當該 合併法人이 그 短期外貨建債權을 取得하거나 또는 當該 合併法人에 대해 그 短期外貨建債務가 發生한 것으로, 令 第139條의 5

第 2 項 〈短期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方法의 選定〉의 規定을 適用한다〔1976 直法 2－39 追加, 1978 直法 2－24 改正〕.

(換算方法의 變更申請이 있는 境遇의 「相當期間」)

13의 2－1－10 일단 採用된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方法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繼續하여 適用해야 할 것이므로 法人이 現在 따르고 있는 換算方法을 變更하기 위하여 令 第139條의 6 第 2 項 〈外貨建債權債務의 換算方法의 變更手續〉의 規定에 根據하여 그 變更承認申請書를 提出한 境遇에 있어 그 現在 따르고 있는 換算方法을 採用하고 3年을 經過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變更이 合併에 따른 것이라든가 그 變更하는 것에 대하여 特別한 理由가 있을 때를 除外하고 同條 第 3 項의 相當期間을 經過하지 않았을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8 追加〕.

(註) 그 變更承認申請書의 提出을 現在 따르고 있는 換算方法을 採用하고서 3年이 經過한 後에 했을 境遇에라도 그 變更한 것에 대해 合理的인 理由가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變更을 承認하지 않을 수 있다.

第 2 節 外貨建去來에 關聯된 會計處理 等

(收益, 費用 等의 換算)

13의 2－2－1 外貨建의 去來에 關聯된 賣上金額 其他의 收入金額 또는 購入金額 其他의 費用額의 円換算은 法人이 이들 額으로 計上하는 날의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繼續 適用을 條件으로 賣上金額 其他의 收入金額에 대해서는 그 計上하는 날의 電信買時勢에 의해 購入金額 其他 費用에 대해서는 그 計上하는 날의 電信賣時勢에 따를수가 있다〔1975 直法 2－21 追加, 1979 直法 2－31 改正〕.

(註) 1. 이 境遇의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 電信買時勢 또는 電信賣時勢는 繼續 適用을 條件으로 다음의 어느 것엔가 該當할 수 있다.

(1) 去來日이 屬한 月 또는 週의 前月 또 前週의 末日 또는 當月 또 當週 初日의 電信買時勢 또 電信賣時勢 또는 이들의 中間값

(2) 去來日이 屬한 月의 前月 또는 前週의 平均時勢와 같이 1月 以內의 一定期間에 있어서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 電信買時勢 또는 電信賣時勢의 平均値

2. 去來價額은 外國通貨로 表示되어 있으나 그 支拂이 本邦通貨에 의해 行하여지게 되어 있는 去來, 去來價額은 本邦通貨로 표시되어 있으나 外國通貨에 의한 保證約款이 붙어 있는 去來 等은 여기서 말하는 外貨建의 去來에는 該當 안되나 이들 去來에 關聯된 賣上金額 其他의 收入金額 또는 購入金額 其他의 費用으로 計上해야 할 金額에 대해서도 外貨建의 去來에 關聯된 收入金額 또는 費用額의 円換算의 例에 準하여 見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그 見積額과 當該 去來에 關聯된 債權債務의 實際 決濟額과의 사이에 差額이 생길 때에는 그 差額은 13의 2－2－9에 의해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되는 部分의 金額을 除外하고 當該 債權債務의 決濟를 한 날(同日前에 그 決濟額이 確定하는 境遇에는 그 確定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한다.

(換豫約이 있을 境遇의 收益, 費用 等의 換算)

13의 2－2－1의 2 外貨建의 去來에 關聯된 賣上金額 其他의 收入金額 또는 購入金額 其他의 費用에 대해 円換算을 할 境遇에 當該 收入金額 또는 費用에 關聯된 本邦通貨額이 그 計上을 해야 할 날까지 換豫約에 의해 確定되어 있을 때에는 그 收入金額 또는 費用額에 대해서는 13의 2－2－1에 不拘하고 그 確定된 本邦通貨額을 가지고 그 円換算額으로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 그 收入金額 또는 費用額이 換豫約에 의해 確定되었나 어떤가는 個個의 去來別로 判定하는 것으로 한다〔1979 直法 2－31 追加〕.

(前渡金 等의 對替)

13의 2－2－2 13의 2－2－1에 의해 円換算을 할 境遇에 있어서 그 去來에 關하여 引受한 前受金 또는 支拂한 前渡金이 있을 때에는 當該 前受金

또는 前渡金에 關聯된 部分에 대해서는 3의 2－2－1에 不拘하고 當該 前受金 또는 前渡金의 帳簿價額을 가지고 收入金 또는 費用 等으로 하고 다시 그 計上日의 換時勢에 의한 円換算을 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延拂基準 等의 適用)

13의 2－2－3 令 第124條 〈延拂基準의 方法〉의 規定에 의한 延拂基準의 方法을 適用하는 讓渡 等의 代價의 一部에 대해 前受金을 引受한 境遇에 있어서 그 代價 全額에 대해 13의 2－2－1에 의해 円換算을 하여 이것을 根據로 延拂基準을 適用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當該 前受金의 帳簿價額과 當該 前受金에 대해서 円換算額과의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當該 讓渡日이 屬한 事業年度의 益金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

令 第119條 〈割賦基準의 方法〉의 規定에 의한 割賦基準을 適用하는 割賦販賣 等의 代價의 一部에 대해 前受金을 引受한 境遇에 대해서도 같다〔1975 直法 2－21 追加〕.

(延拂條件附讓渡 等에 關聯된 債權 等에 대해 換算差損益을 計上한 경우의 未實現 利益順延額의 修正)

13의 2－2－4 延拂條件附讓渡 等에 대하여 債權總額을 計上하는 것과 함께 그 未實現利益을 順延計上하는 經理를 하고 있는 法人이 當該 延拂條件附讓渡 等에 關聯된 長期外貨建債權에 대해 令 第139條의 3 第2項 〈取得時 換算法의 特別〉의 規定에 의해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換時勢에 의한 円換算을 行한 境遇에 있어 그 円換算에 의해 換算差損益額이 생겼을 때에는 當該 順延經理를 한 未實現利益額을 調整하는 것으로 한다.

割賦販賣 等에 關聯된 長期外貨建債權에 대해서도 같다〔1975 直法 2－21 追加〕.

(註) 延拂條件附讓渡 等 또는 割賦販賣에 關聯된 短期外貨建債權에 대해 計上한 換算差損益에 대하여 法人이 繼續하여 未實現利益額을 調整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海外支店 等의 資產 換算의 特例)

13의 2－2－5 法人이 國外에 支店 等을 所有하는 境遇에 있어서 當該 支店 等의 外國通貨로 表示되어 있는 財務諸表를 本店의 財務諸表에 合併하는 境遇의 円換算額에 대해서는 當該 支店 等의 財務諸表項目의 모든 것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換時勢에 의한 円換算額을 붙일 수가 있다〔1975 直法 2－21 追加, 1983 直法 2－3 改正〕.

(換算差益을 計上한 境遇의 資產의 取得價額의 不修正)

13의 2－2－6 資產의 取得에 所要한 外貨建債務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의 換時勢에 의한 円換算을 하였기 때문에 換算差益이 생긴 境遇라도 當該 資產의 取得價額을 減額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83 直法 2－3 改正〕.

(外貨建으로 購入한 原材料의 引受差額)

13의 2－2－7 法人이 外貨建으로 購入한 原材料에 대하여 購入金額의 換算을 所謂 社內루트에 의해 行하는 等 13의 2－2－1 및 13의 2－2－1의 2에서 定하는 方法 以外의 方法에 의해 行하고 있을 境遇에는 13의 2－2－1 또는 13의 2－2－1의 2에서 定하는 方法에 의해 換算한 金額과 當該 法人이 計上한 金額과의 差額은 原材料引受差額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79 直法 2－31, 1983 直法 2－3 改正〕.

(註) 當該 差額에 대하여는 5－3－8 〈原材料 引受差額 處理의 簡便計算方式〉을 適用할 수 있다.

(外貨建의 有價證券의 時價)

13의 2－2－8 外國의 證券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外貨建의 有價證券에 대해 低價法을 適用하는 境遇에 令 第34條 第1項 第1號 ②〈低價法〉에서 規定하는「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 그 取得 때문에 通常 所要하는 價額」은 當該 外國의 規則 第22條〈有價證券의 價額〉에서 定하는 最終價格에 相當하는 價額(購入手數料, 其他 當該 有價證券을 取得하기 위하여 所要하는 費用을 加算한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 終了日의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에 의해 換算한 本邦通貨額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979 直法 2－31 追加, 1983 直法 2－3 改正〕.

(製造業者 等이 負擔하는 換損失 相當額 等)

13의 2－2－9 製造業者 等이 商社 等을 通한 輸出入 等의 去來에 關하여 생기는 換損益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製造業者 等에게 負擔시키거나 또는 歸屬시키는 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境遇의 商社 및 製造業者 等의 取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75 直法 2－21 追加, 1976 直法 2－39 改正〕.

(1) 商社 等에 대하여 短期의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期末時 換算法을 選定하고 있는 境遇(取得時 換算法을 選定하고 있는 境遇에 있어서 令 第139條의 3 第2項〈取得時 換算法의 特例〉의 規定을 適用받았을 때를 包含)에 限해 當該 契約에 關聯된 短期의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各事業年度 終了時에 그 決濟가 이루어진 것으로 假定한 境遇에 製造業者 等에게 負擔시키거나 또는 歸屬시키게 되어 있는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益金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

(2) 製造業者 等에 대해서는 모든 商社 等에 對한 當該 契約에 關聯된 金錢債權 또는 金錢債務(當該 製造業者 等의 各事業年度 終了日부터 1年以內에 支拂期限이 到來한 것에 限함)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 그

決濟가 이루어진 것으로 假定한 境遇에 負擔하거나 또는 歸屬하게 되는 金額을 當該 各事業年度의 損金 또는 益金에 算入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管轄稅務署長(調査課 所管法人에서는 管轄國稅局長)의 確認을 받은 境遇에 限해 負擔하거나 또는 歸屬하게 되는 金額을 當該 各事業年度의 損金 또는 益金에 算入한다.

第 14 章　特殊한 損益의 計算

第 1 節　特殊한 團體의 損益

1. 組合事業에 의한 損益

(任意組合으로부터 받는 利益 等의 歸屬時期)

14－1－1 法人이 組合員으로 되어 있는 組合의 利益金額 또는 損失金額 中에서 組合契約 또는 民法 第674條 〈損益分配의 比率〉의 規定에 의해 利益의 分配를 받아야 할 金額 또는 損失의 負擔을 해야 할 金額은 설령 現實로 利益分配 받거나 또는 損失의 負擔을 하지 않는 境遇라도 當該 組合의 計算期間 終了日이 屬한 當該 法人 事業年度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한다. 단, 組合이 每年 1回 以上 一定時期에 있어서 組合事業의 損益을 計算하지 않은 境遇에는 當該 法人의 各事業年度의 期間에 對應하는 組合事業의 損益을 計算하여 當該 法人의 當該 事業年度의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한다.

(註) 同業者의 組織團體로 營業活動을 하지 않는 것은 이 取扱이 適用되지 않는다.

(任意組合으로부터 分配를 받는 利益 等의 金額計算)

14－1－2 法人이 組合員이 되어 있는 組合으로부터 分配를 받아야 할 利益額 또는 負擔해야 할 損失額을 14－1－1에 의해 各事業年度의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하는 境遇에 있어 다음 어느 것인가 한 方法으로 繼續하여 그 利益額 또는 損失額을 計算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15 改正〕.

(1) 當該 組合에 대하여 計算되는 利益額 또는 損失額을 그 分配比率에 따라 各 組合員에 分配 또는 負擔시키는 方法

이 方法에 따를 境遇에는 各組合員은 當該 組合의 去來 等에 대하여 受取配當 等의 益金不算入, 所得稅額의 控除, 充當金의 算入, 準備金의 積立 等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는다.

(2) 當該 組合의 收入金額, 그 收入金額에 關聯된 原價額 및 費用額 또 損失額을 그 分配比率에 따라 各組合員의 이들 金額으로 計算하는 方法

이 方法에 의할 境遇에는 各組合員은 當該 組合의 去來 等에 대하여 受取配當 等의 益金不算入, 所得稅額의 控除 등의 規定은 適用되나 充當金 算入, 準備金의 積立 等의 規定은 適用 안된다.

(3) 當該 組合의 收入金額, 支出金額, 資產, 負債 等을 그 分配比率에 따라 各組合員의 이들 金額으로 計算하는 方法

(註) 1. (1)의 方法에 의할 境遇에 있어서 當該 組合의 支出金額 中에서 寄附金 또는 交際費가 있을 때에는 當該 組合을 資本 또는 出資가 없는 法人으로 간주하여 法 第37條〈寄附金의 損金不算入〉 또는 措置法 第62條〈交際費 等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을 適用하려 했을 때에 計算되는 利益額 또는 損失額을 根據로 그 分配 또는 負擔시키는 金額을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

2. (2) 또는 (3)의 方法에 의한 境遇에는 組合員에 關聯된 것으로 計算되는 收入金額, 支出金額, 資產, 負債 等의 金額은 組合員에 있어서 固有의 이들 金額에 包含치 않고 別個로 計算할 수 있다.

(匿名組合契約에 關聯된 損益)

14－1－3 法人이 匿名組合員인 境遇에 그 匿名組合營業에서 생긴 利益額 또는 損失額에 대해서는 現實的으로 利益 分配를 받거나 또는 損失을 負擔하지 않는 境遇라도 匿名組合契約에 의해 그 分配를 받거나 또는 負擔해야 할 部分의 金額을 그 計算期間의 末日이 屬한 事業年度의 益金額 또는 損金額에 算入하여 法人이 營業者인 境遇에 그 匿名組合營業에 대해 생긴 利益額 또는 損失額에 대해서는 그 利益額 또는 損失額에서 匿名組合契約

에 의해 匿名組合員에 分配해야 할 利益 또는 負擔시켜야 할 損失을 控除한 殘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益金 또는 損金으로 算入한다〔1980 直法 2－15 改正〕.

(註) 14－1－2 (註)1은 이 取扱을 適用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2. 從業員團體의 損益

(福利厚生 等을 目的으로 組織된 從業員團體의 損益의 歸屬)

14－1－4 法人(法別表 第1 및 別表 第2에서 列擧하는 法人을 除外)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 組織한 團體가 이 者들의 親睦, 福利厚生에 關한 事業을 主로 하고 있는 境遇에 있어서 그 事業經費의 相當部分을 當該 法人이 負擔하고 있고, 또 다음에 列擧하는 事實 中 어느 것이든 한가지 事實이 있을 때에는 原則的으로 當該 事業에 關聯된 收益, 費用 等에 대해서는 그 全額을 當該 法人의 收益, 費用 等에 關聯된 것으로 計算한다〔1971 直審(法) 20 改正〕.

(1) 法人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 一定의 資格을 가진 者가 그 資格을 當然히 當該 團體의 任員으로 選出되게 되어 있는 것

(2) 當該 團體의 事業計劃 또는 事業의 運營에 關한 重要案件의 決定에 대해 當該 法人의 許諾을 要하는 等 當該 法人이 그 業務의 運營에 參劃하고 있는 것

(3) 當該 團體의 事業에 必要한 施設의 全部 또는 大部分을 當該 法人이 提供하고 있는 것

(從業員 負擔이 있는 境遇의 從業員團體의 損益歸屬의 特例)

14－1－5 14－1－4에 該當하는 從業員團體에 대하여 그 團體 等의 損益이 예를 들어 當該 法人으로부터 醵出된 部分과 構成員으로부터 收入한 會

費 等의 部分과 案分하는 等 14－1－2의 方法에 準하여 適正하게 區分經理되어 있는 境遇에는 14－1－4에 關係없이 그 區分된 바에 따라 當該 法人에 歸屬해야 될 收益, 費用 等을 計算할 수 있다.

第 2 節 協同組合 等의 事業分量 配當 等 및 特別賦課金

1. 事業分量 配當 等

(事業分量 配當의 對象이 되는 剩餘金)

14－2－1 法 第61條 第 1 項 第 1 號 〈事業分量 分配金〉에서 規定하는 事業分量에 따른 分配는 그 剩餘金이 協同組合과 組合員, 其他의 構成員과의 去來 및 그 去來를 基礎로 하여 이루어지는 去來로 생긴 剩餘金으로 이루어지는 部分의 分配에 限하는 것이므로 固定資產의 處分 等에 의한 剩餘金, 自營事業을 營爲하는 協同組合 等의 當該 自營事業에서 생긴 剩餘金과 같이 組合員, 其他의 構成員과의 去來에 根據하지 않은 去來에 의한 剩餘金의 分配는 여기에 該當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註) 事業分量 配當 또는 從事分量 配當에 該當하지 않는 剩餘金의 分配는 組合員等에 대해서는 配當에 該當한다.

(從事分量 配當의 對象이 되는 剩餘金)

14－2－2 法 第61條 第 1 項 第 2 號 〈從事分量 配當〉에서 規定하는 從事分量에 따른 分配는 그 剩餘金이 農業, 漁業 또는 林業의 經營에 의해 생긴 剩餘金으로 이루어지는 部分의 分配에 限하는 것이므로 固定資產의 處分 等에 의해 생긴 剩餘金의 分配는 여기에 該當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漁業協同組合 等의 組合員 以外의 者에 對한 剩餘金의 分配)

14－2－3 漁業協同組合, 漁業協同組合聯合會, 水產加工業協同組合 및 水產加工業協同組合聯合會가 組合員 以外의 者에 對하여 支出하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해서는 法 第61條 第1項 〈協同組合 等의 事業分量 配當 等의 損金算入〉의 規定에 適用이 안되는 것이나 그 分配金이 當該者의 事業의 利用量에 따라, 또 組合員에 對한 分配金과 대략 같은 基準에 의해 計算되고 있는 等으로 인해 事業의 利用者에 對한 利用料 等의 리베이트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當該 分配金相當額은 그 計算의 基礎가 된 剩餘金이 생긴 事業年度의 損金額에 算入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改正〕.

(農業協同組合 組合員의 家族 等에 對한 剩餘金의 分配)

14－2－3의 2 農業協同組合이 農業協同組合法 第10條 第1項 第2號 〈組合員의 貯金 等의 引受〉에서 列擧하는 事業에 關해 同條 第11項 〈利用制限의 除外〉의 規定에 의해 組合員이라고 간주되는 者에 對해 當該者의 事業利用量에 따라 行하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해서는 組合員에 對해 事業의 利用量에 따라 行하는 剩餘金의 分配와 같이 法 第61條 第1項 〈協同組合 等의 事業分量 配當 等의 損金算入〉의 規定의 適用이 있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990 直法 2－6 改正〕.

(漁業生產組合 中에서 協同組合으로 되는 것의 判定)

14－2－4 漁業生產組合, 生產組合인 森林組合 또는 農事組合法人으로 協同組合 等으로 法 第61條 〈協同組合 等의 事業分量 配當 等의 損金算入〉의 規定의 適用이 있는 것은 이들 組合 또는 法人의 事業에 從事하는 組合員에 對해 給料, 賃金, 賞與, 其他 이같은 性質을 가진 給與를 支給하지 않는 것에 限定되는 것이나 그 判定에 있어서는 다음에 따른다.

(1) 그 事業에 從事하는 組合員에는 이들 組合의 任員 또는 事務에 從事

하는 使用人인 組合員을 包含하지 않으므로 이들 任員 또는 使用人인 組合員에 對해 給與를 支給하여도 協同組合 等에 該當되는지의 判定에는 關係가 없다.

(2) 그 事業에 從事하는 組合員에 對해 그 事業年度에 當該 事業年度分에 關聯된 從事分量 配當金으로 確定해야 할 金額을 맞추어 金錢을 支給하고 當該 事業年度의 剩餘金 處分에 의해 그 從事分量 配當金이 確定할 때까지의 假拂金, 貸付金 等으로 經理한 境遇에는 當該 假拂金 等으로 經理한 金額은 給與로 支給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3) 그 事業에 從事하는 組合員에 對해 通常의 自家消費程度를 넘어 生産物 等을 支給한 境遇에 그 支給이 給與支拂을 대신한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이들 組合 또는 法人은 協同組合 等에 該當하지 않는다.

(消費生活協同組合 剩餘金 리베이트 積立金의 損金算入)

14－2－5 消費生活協同組合 및 消費生活協同組合聯合會(以下 本文에서 「消費生活協同組合 等」이라 함)가 消費生活協同組合의 剩餘金 리베이트에 關한 省令(以下 「剩餘金 리베이트 省令」이라 함) 第3條 〈利用分量 리베이트金의 積立〉의 規定에 의해 積立된 利用分量 리베이트金(以下 「리베이트 積立金」이라 함)은 當該 리베이트 積立金이 各組合員別로 計算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關係없이 그 積立한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다. 단, 그 積立한 金額 中에서 剩餘金 리베이트 省令 第4條 第3項 〈리베이트 積立金의 利益算入〉의 規定에 의해 利益金에 算入한 리베이트 積立金으로 이루어진 部分의 金額이 包含되어 있을 境遇에는 當該 包含되어 있는 部分의 金額은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다.

(리베이트 積立金의 益金算入)

14－2－6 리베이트 積立金을 積立하고 있는 消費生活協同組合 等이 다

음에 列擧하는 境遇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그 積立하고 있는 리베이트 積立金 中에서 다음에 列擧하는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그 該當하게 된 날이 屬한 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한다.

(1) 剩餘金리베이트省令 第4條 第1項〈리베이트의 期限〉의 規定에 의한 리베이트 積立金의 解體를 하지 않고 利用分量 리베이트를 한 境遇, 그 利用分量 리베이트를 한 金額

(2) 리베이트 積立金을 利用分量 리베이트의 支出 以外의 目的으로 解體한 境遇, 그 解體한 金額

(3) 리베이트 積立金을 積立한 事業年度의 翌事業年度 開始日부터 2年을 經過한 날의 前日에 있어 當該 리베이트 積立金 殘額이 있을 境遇, 그 리베이트 積立金 殘額

(利用分量 리베이트의 基準에 該當하는가의 判定)

14－2－7 剩餘金리베이트省令 第2條〈利用分量 리베이트의 基準〉에서 規定하는「領收書 等에 의해 確認할 수 있는 利用分量의 總額이 當該 組合의 事業總額의 5割 以上」인가 어떤가는 그 事業(同條 괄호 書에서 規定하는 事業別로 計算하는 境遇에는 各各의 事業) 中에서 一部에 대하여 리베이트 안한 것이 있어도 그 리베이트 하지 않은 部分의 利用分量을 利用分量의 總額 및 事業總額에 包含하여 判定하는 것이나 그 事業 中에서 米穀類의 販賣業 또는 담배의 販賣業에 대하여 그 利用分量 分配를 하지 않는 境遇에는 그 部分의 利用量을 利用分量의 總額 및 事業總額의 雙方에서 除外하여 計算할 수 있다.

(領收書 等의 交付의 省略)

14－2－8 組合員이 利用한 代價를 組合員의 勤務先의 給與로부터 控除決濟하는 等 外上販賣의 方法을 採用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領收書 等을 組

合員에게 交付하지 않아도 組合員의 利用量이 確認되게 되어 있는 消費生活協同組合 等에 대해서는 外上賣出臺帳 等에 의해 確認된 利用分量에 의해 剩餘金리베이트省令 第2條 〈利用分量 리베이트의 基準〉의 基準 判定 및 第4條 第2項 〈利用分量의 確認〉의 利用分量의 確認을 할 수 있다.

2. 特別賦課金

(協同組合 等의 特別賦課金)

14－2－9 協同組合 等이 組合員에 對해 敎育事業 또는 指導事業의 經費支出에 充當하기 위해 賦課金을 賦課한 境遇에 있어서 賦課目的이 된 事業全部 또는 一部가 翌事業年度에 移越되었기 때문에 當該 賦課金에 대해 剩餘가 생겼을 때에도 그 剩餘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目的에 따라 翌事業年度中에 支出하는 것이 確實하기 때문에 그 支出한 것이 確實하다고 認定되는 部分의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에 假受金 等으로 經理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1980 直法 2－15 改正〕.

第3節 會社更生法의 適用에 따른 損益

1. 更生會社의 損益 等

(更生會社의 事業年度)

14－3－1 更生會社의 事業年度는 會社更生法 第269條 第2項 〈更生會社의 事業年度〉의 規定에 의해 更生計劃認可時 또는 更生手續 終了日에 終了하지만, 이 境遇에 更生手續 終了日이란 다음에 列擧하는 날을 말한다〔1974 直法 2－71 追加〕.

(1) 同法 第51條 〈開始決定의 取消〉의 規定에 의한 更生手續 開始決定의 取消의 決定이 있던 날

(2) 同法 第232條 〈更生計劃의 認否〉의 規定에 의한 更生計劃의 不認可의 決定이 있던 날

(3) 同法 第273條에서 第274條까지(更生計劃 認可前의 廢止)의 規定에 의한 更生手續의 廢止決定이 있던 날

(註) 更生計劃의 認可決定後에 更生會社의 事業年度는 同法 第272條 〈更生手續의 終結〉의 規定에 의한 更生手續終結의 決定 또는 同法 第277條 〈更生計劃認可後의 廢止〉의 規定에 의한 更生手續의 廢止決定과는 關係없이 當該 更生會社의 定款에서 定하는 事業年度 終了日에 終了하는 것에 留意한다.

(財産의 評價換에 의한 益金)

14－3－1의 2 會社更生法 第269條 第3項 〈債務免除益 等의 課稅特例〉에서 規定하는 財産評價換에 의한 益金이란 同法 第178條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의 作成〉 및 第181條 〈그후의 報告 等〉의 規定에 의해 更生手續開始時 또 更生計劃 認可時 및 裁判所가 定하는 時期에 作成되는 貸借對照表에 記載된 同法 第177條 〈財産의 價額評定〉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評價額을 基礎로 計算되는 評價益(當該 貸借對照表에 記載된 資産의 評價額을 基礎로 計算되는 評價損이 있을 境遇에는 當該 評價損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말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留意한다〔1977 直法 2－33 追加, 1980 直法 2－15 改正〕.

(債務의 消滅에 의한 益金)

14－3－1의 3 會社更生法 第269條 第3項 〈債務免除益 等의 課稅特例〉에서 規定하는 債務의 消滅에 의한 益金에는 認可決定을 받은 更生計劃에 定해진 債務의 免除 또는 잘라버리는 것으로 인한 것 외에 更生債權으로 指定된 期限까지 裁判所에 届出하지 않았기 때문에 債務가 消滅한 것으로 인

한 益金도 包含되나 更生計劃이 定하는 바에 따라 更生債權者 等에 交付한 新株引受權에 대하여 拂入期日까지 拂入이 없었기 때문에 債務가 消滅한 것으로 인한 益金은 包含되지 않는다〔1974 直法 2－71, 1977 直法 2－33, 1980 直法 2－15 改正〕.

(更生會社가 받는 私財提供)

14－3－1의 4 會社更生法의 適用을 받고 있는 法人이 그 認可된 更生計劃에 根據하여 任員 또 株主 또는 歷任者로부터 金錢, 其他의 資產贈與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 贈與에 의한 益金은 同法 第269條 第3項〈債務免除益 等의 課稅特例〉에서 規定하는 債務의 消滅에 의한 益金에 包含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改正〕.

(更生手續 開始前부터 移越되고 있는 缺損金額)

14－3－1의 5 會社更生法 第269條 第3項〈債務免除益 等의 課稅特例〉에서 規定하는 「更生手續開始前부터 移越되고 있는 法人稅法 第2條 第20號〈定義〉에서 規定하는 缺損金額」은 更生手續開始決定時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確定申告書에 添附하는 法人稅申告書 別表 5(1) 「利益積立金額의 計算에 關한 明細書」에 翌期首現在利益積立金의 合計로 記載되어야 할 金額으로 當該 金額에 의한다〔1980 直法 2－15 追加〕.

(更生手續 開始前의 缺損金의 損金算入)

14－3－1의 6 更生會社에 대해 會社更生法 第269條 第3項〈債務免除益 等의 課稅特例〉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 財產의 評價換 또는 債務의 消滅에 의한 益金(以下 14－3－1의 6에서 「評價益 等」이라 함)이 생긴 날이 屬한 事業年度에 移越된 過去의 缺損金 中에서 更生手續 開始前부터 移越된 것(法 第57條 第1項 또는 第58條 第1項〈靑色申告書를 提出한

事業年度의 缺損金 移越 等〉의 規定을 適用받는 것을 除外)이 있을 때에는 當該 缺損金額은 當該 評價益 等의 金額 範圍內에서 損金에 算入하는 것으로 한다〔1991 課法 2－4 改正〕.

(更生會社가 新會社를 設立한 境遇의 缺損金의 引繼)

14－3－2 更生計劃이 定하는 바에 의해 設立된 新會社(以下 이 節에서 「新會社」라 함)가 그 設立에 있어 更生會社로부터 缺損金에 相當하는 金額을 營業權 等으로 引繼한 境遇에는 4－2－8(合併할 때 營業權을 計上한 境遇의 處理)에 準하여 取扱한다.

(新會社가 負擔한 舊會社의 租稅公課)

14－3－3 新會社가 更生計劃의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設立으로 인해 解散한 會社가 納付해야 할 法人稅, 事業稅, 其他의 租稅公課를 負擔했을 때에는 이들 稅額(解散한 會社에 未拂金, 充當金으로 處理한 것을 除外)은 新會社의 法人稅, 其他의 租稅公課에 準하여 取扱한다.

(解散한 會社로부터 引受한 減價償却資產의 耐用年數의 見積 等)

14－3－4 新會社가 更生計劃의 定하는 바에 따라 減價償却資產을 引受한 境遇에는 그 資產에 대해 耐用年數省令 第3條 第1項〈中古資產의 耐用年數 等〉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으나 解散한 會社에 그 資產에 대해 適用을 받고 있던 措置法 第45條의 2 第3項, 第47條 또는 第48條〈老人保健施設用 建物의 割增償却 等〉에서 規定하는 特別償却에 대해서는 설령 適用期間이 經過하지 않은 것이라도 新會社에서는 그 適用이 없는 것에 留意한다〔1974 直法 2－71, 1979 直法 2－31, 1980 直法 2－15, 1991 課法 2－4 改正〕.

(解散한 會社의 貸損充當金 等의 新會社에의 引繼)

14－3－5 新會社가 更生計劃의 定하는 바에 따라 解散한 會社가 가지고 있는 貸損充當金 等, 法에서 規定하는 充當金을 新會社에 引繼했을 때에는 合併의 境遇에 準하여 取扱하는 것으로 한다.

2. 債權者 等의 損益

(債權의 辨濟 대신에 取得한 新株의 取得價額)

14－3－6 更生會社에 對해 債權을 所有한 法人(以下 「債權法人」이라 함)이 更生計劃의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更生會社가 發行하는 新株(新會社의 株式을 包含)를 새로 拂入하지 않고 取得한 境遇에는 當該 新株를 取得한 때의 價額을 그 取得價額으로 할 수 있다.

(非更生債權 等의 處理)

14－3－7 債權法人이 更生會社에 對해 所有한 債權으로 指定된 期限까지 裁判所에 届出하지 않았기 때문에 更生債權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金額을 當該 更生計劃의 認可決定이 있던 날에 貸損할 수 있다.

更生計劃의 定하는 바에 따라 交付를 받은 新株引受權에 대하여 拂入期日까지 拂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消滅하게 된 債權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

第 15 章　公益法人 및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의 收益事業課稅 〔1981 直法 2－16 改正〕

第 1 節　收益事業의 範圍 〔1981 直法 2－16 改正〕

1. 共通事項〔1981 直法 2－16 改正〕

(公益法人 等의 本來의 事業이 收益事業에 該當하는 경우)

15－1－1 公益法人 等(人格이 없는 社團 等을 포함. 以下 이 節에 있어 같음)이 令 第5條 第1項 各號 〈收益事業의 範圍〉에서 열거하는 事業에 該當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영위하는 事業이 當該 公益法人 等의 本來의 目的인 事業일지라도 當該 事業에서 생기는 所得에 대해서는 法人稅가 과세되는 것에 留意해야 한다〔1981 直法 2－16 追加〕.

(委託契約 等에 의한 事業)

15－1－2 公益法人 等이 하는 事業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그 公益法人 等이 스스로 收益事業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取扱하는 것이 되므로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 公益法人 等이 收益事業에 該當하는 事業에 관련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託計劃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하게 하는 경우

(2) 公益法人 等이 收益事業에 該當하는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組合契約(匿名組合契約을 包含), 其他 여기에 유사한 契約에 근거하여 當該 事業에

關한 費用 및 損失을 負擔하거나 또는 그 收益의 分配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스스로 當該 事業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公益法人 等이 그 財産의 信託(合同運用信託, 證券投資信託 및 法 第84條 第1項 〈退職年金 等 積立金의 計算〉에서 規定하는 適格退職年金契約 等에 관련된 信託을 除外)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當該 信託에 관련된 受託者의 當該 財産의 運用에 관련된 行爲가 令 第5條 第1項 各號 〈收益事業의 範圍〉에 열거하는 事業의 어딘가에 該當할 때

(共濟事業)

15－1－3 公益法人 等이 소위 共濟事業으로 하는 事業에 대해서도 當該 事業의 內容에 따라 그 全部 또는 一部가 收益事業에 該當하는가 아닌가의 判定을 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事業場을 설치하여 영위하는 것)

15－1－4 法 第2條 第13號 〈收益事業의 意義〉의 「事業場을 設置하여 영위하는 것」에는 常時店鋪, 事務所 等 事業活動의 據點이 되는 一定의 場所를 設定하고 그 事業을 영위하는 것 외에 必要에 따라 隨時 그 事業活動을 위해 場所를 설치하거나 또는 旣存의 施設을 利用하여 그 事業活動을 하는 것이 包含된다. 따라서 移動販賣, 移動演劇興行 等과 같이 그 事業活動을 하는 場所를 轉하며 移動하는 것이라도 「事業場을 設置하여 영위하는 것」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改正〕.

(繼續하여 營爲하는 것)

15－1－5 法 第2條 第13號 〈收益事業의 意義〉의 「繼續하여… 營爲하는 것」에는 各事業年度의 全期間을 通하여 繼續하여 事業活動을 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改正〕.

(1) 예를 들어 土地의 造成 및 分讓, 全集 또는 事典의 出版 等과 같이 通常 하나의 事業計劃에 根據하여 事業의 遂行에 相當期間을 要하는 것

(2) 예를 들어 海水浴場에서의 席貸 等 또는 참배날에 物品販賣와 같이 通常 相當期間에 걸쳐 繼續하여 行하는 것. 또는 定期的으로 또 不定期的으로 反復하여 行하는 것

(註) 公益法人 等이 令 第5條 第1項 各號〈收益事業의 範圍〉에 열거하는 事業의 어디엔가에 該當하는 事業(以下 15－1－5에서 「特揭事業」이라 함)과 이것에 類似한 事業으로 特揭事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과를 營爲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는 特揭事業이 繼續하여 營爲되고 있는가 어떤가는 이들 事業이 全體的으로 繼續하여 營爲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勘案하여 判定한다.

(附隨行爲)

15－1－6 令 第5條 第1項 〈收益事業의 範圍〉에서 規定하는 「그 性質上 그 事業에 附隨하여 行하는 行爲」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通常 그 收益事業에 關聯된 事業活動의 一環으로, 또는 여기에 關聯하여 行하는 行爲를 말한다〔1981 直法 2－16 改正〕.

(1) 出版業을 營爲하는 公益法人 等이 行하는 그 出版에 관련된 業務에 關係하는 講演會의 開催 또는 當該 業務에 관련된 出版物에 揭載하는 廣告의 引受

(2) 技藝敎授業을 營爲하는 公益法人 等이 行하는 그 技藝의 敎授에 관련된 敎科書, 其他 여기에 類似한 敎材의 販賣 및 바자회의 開催

(註) 敎科書, 其他 여기에 類似한 敎材 以外의 出版物, 其他 物品의 販賣에 관련된 收益事業의 判定에 대해서는 15－1－10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3) 旅館業 또는 料理店業을 營爲하는 公益法人이 그 旅館 等에서 열리는 會議를 위한 席貸

(4) 興行業을 營爲하는 公益法人 等이 放送會社에 對해 그 興行에 관련된 開催物의 放送을 하는 것을 許諾하는 行爲

(5) 公益法人 等이 收益事業에서 생기는 所得을 預金, 有價證券 等으로 運用하는 行爲

(6) 公益法人 等이 收益事業에 屬한 固定資産 等을 處分하는 行爲

(收益事業의 所得의 運用)

15－1－7 公益法人 等이 收益事業에서 생기는 所得을 預金, 有價證券 等에 運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當該 預金, 有價證券 等에서 當該 收益事業의 運營 때문에 通常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金額에 맞는 것 以外의 것에 대해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屬하는 資産으로 區分經理를 했을 때에는 그 區分經理에 관련된 資産을 運用하는 行爲는 15－1－6에 불구하고 收益事業에 附隨하여 行하는 行爲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이 경우 公益法人 等(人格이 없는 社團 等을 除外)의 그 區分經理를 한 金額에 대해서는 法 第37條第4項〈公益法人 等의 간주 寄附金〉의 規定의 適用이 있다.

(身體障碍者 等 從事比率의 判定)

15－1－8 公益法人 等을 營爲하는 事業에 대해 令 第5條 第2項 第1號〈身體障碍者 等을 雇用하는 경우의 非課稅〉의 規定의 適用이 있는가 어떤가를 判定하는 경우에 있어서 當該 事業에 從事하는 身體障碍者 等(同號①에서 ⑤까지 列擧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15－1－8에 있어서 같음)의 數가 當該 事業에 從事하는 者의 總數의 半數 以上을 차지하는지의 여부는 當該 事業年度에 있어 當該 事業에 從事한 者의 延人員에 의해 判定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當該 事業에 從事하는 身體障碍者 中에서 一般의 從業員에 比해 勤務時間이 짧은 者가 있을 때에도 當該者에 대해서는 通常의 勤務時間 當該 事業에 從事하는 것으로 그 判定을 할 수 있다〔1981 直法 2－16 追加〕.

2. 物品販賣業〔1981 直法 2－16 改正〕

(物品販賣業의 範圍)

15－1－9 令 第5條 第1項 第1號 〈物品販賣業〉의 物品販賣業에는 公益法人 等이 自己가 栽培, 採取, 捕獲, 飼育, 繁殖, 養殖, 其他 이것들에 類似한 行爲(以下 15－1－22에 있어서 「栽培 等」이라 함)에 의해 取得한 農產物 等(農產物, 畜產物, 林產物 또는 水產物을 말함. 以下 15－1－27까지 같음)을 그대로 또는 加工한 뒤에 直接 不特定 多數에게 販賣하는 行爲가 포함되나, 當該 農產物 等(出荷 때문에 最小限 必要한 簡易 加工을 加한 것을 포함함)을 特定의 集荷業者 等에게 팔아 넘기기만하는 行爲는 여기에 該當 안된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1. 同號 괄호안의 「通常物品이라고 하지 않는 것」에는 動植物 외에 郵便우표, 收入印紙, 物品交換券 等이 包含되나, 有價證券 및 어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公益法人 等이 一定의 時期 또는 一定의 條件下에서 販賣할 目的으로 特定의 物品을 取得하여, 이것을 保有하는 소위 備蓄事業 等에 관련된 業務는 物品販賣業에 包含된다.

3. 公益法人 等이 그 會員에 對해 有償으로 物品 頒布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當該 物品의 頒布가 當該 物品의 用途, 頒布價額 等으로 보아 오로지 會員으로부터 그 事業規模 等에 따라 會費를 徵收하는 手段으로 行하고 있는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當該 物品의 頒布는 物品販賣業에 該當하지 않는다.

(宗敎法人, 學校法人 等의 物品販賣)

15－1－10 宗敎法人, 學校法人 等이 行하는 物品의 販賣가 令 第5條 第1項 第1號 〈物品販賣業〉의 物品販賣業에 該當하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81 直法 2－16 改正〕.

(1) 宗敎法人에 있어서 부적, 선물, 제비뽑기 等의 販賣와 같이 그 賣價와 購入原價와의 關係로 보아 그 差額이 通常의 物品販賣業의 賣買利潤이 아니고 實質은 喜捨金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販賣는 物品販賣業에 該當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宗教法人 以外의 者가 一般의 物品販賣業이 販賣할 수 있는 性質을 가진 것(예를 들어 그림엽서, 寫眞帖, 달력, 線香, 초, 供花 等)을 이들 一般의 物品販賣業者와 대략 같은 價格으로 參詣人 等에서 販賣하는 경우는 物品販賣業에 該當한다.

(2) 學校法人 等이 行하는 教科書, 其他 이것과 類似한 教材 以外의 出版物의 販賣는 物品販賣業에 該當한다.

(註) 여기서 말하는 「教科書, 其他 이것과 類似한 教材」란, 教科書, 參考書, 問題集 等이고 學校 指定에 근거하여 授業에서 教材로써 쓰기 위해 當該 學校의 學生, 生徒 等을 對象으로 販賣되는 것을 말한다.

(3) 學校法人 等이 行하는 노트, 筆記具 等의 文房具, 천, 실, 편물실, 食料品 等의 材料 또는 미싱, 編物機械, 廚房用品 等의 用具의 販賣는 설령 이들의 物品이 學校의 指定에 根據하여 授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 경우에라도 物品販賣業에 該當한다.

(4) 學校法人 等이 行한 制服, 制帽 等의 販賣는 物品販賣業에 該當한다.

(5) 學校法人 等이 行하는 바자회로 年 12回 開催되는 程度인 것(15－1－6의 (2)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은 物品販賣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文部大臣이 指定한 學校給食會)

15－1－11 令 第5條 第1項 第1號 〈非課稅는 學校給食用 物資의 販賣業〉에서 規定하는 「日本體育·學校健康센터法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部大臣의 指定을 받은 法人」은 現在는 都道府縣마다 設立된 都道府縣學校給食會뿐이기 때문에 市町村를 單位로 하는 學校給食會은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1982 直法 2－11, 1988 直法 2－1 改正〕.

3. 不動產販賣業〔1981 直法 2－16 改正〕

(不動產販賣業의 範圍)

15－1－12 公益法人 等이 土地(借地權을 包含. 以下 15－1－12에서 같음)를 讓渡하는 데 있어서 當該 土地에 集合住宅 等을 建築하거나 또는 當該 土地에 대해 區劃形質을 變更한 뒤에 이것을 分讓하는 行爲는 原則的으로 令 第5條 第1項 第2號 〈不動產販賣業〉의 不動產販賣業에 該當하는 것이나 當該 土地가 相當期間에 걸쳐 固定資產으로 保有되어 있던 것이고 또 그 建築 또는 變更에서 分讓에 이르는 一連의 行爲가 오로지 當該 土地의 讓渡를 容易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當該 土地의 讓渡는 不動產販賣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그 區劃形質의 變更에 의해 附加된 價値에 對한 部分의 讓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만은 않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土地의 分讓 대신에 當該 土地에 借地權을 設定한 경우에 있어서 그 借地權의 設定에서 令 第138條 第1項 〈借地權의 設定 等으로 인해 地價가 현저히 低下하는 경우의 土地 等의 帳簿價額의 一部 損金算入〉의 規定의 適用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本文의 取扱에 따른다.

(特定法人의 範圍)

15－1－13 令 第5條 第1項 第2號 ① 〈非課稅되는 特定法人이 하는 不動產販賣業〉의 「그 業務 當該 地方公共團體의 管理下에 運營되고 있음」이란, 그 法人의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策定 및 그 實施가 當該 法人의 出資者인 地方公共團體의 監督下에 이루어지고, 또 豫算 및 決算에 대하여 當該 地方公共團體의 承認을 必要로 하는 등 當該 法人의 業務運營이 當該 地方公共團體에 의해 實質的으로 管理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1976 直法 2－39 追加, 1981 直法 2－16, 1990 直法 2－1 改正〕.

(註) 當該 地方公共團體가 當該 法人의 業務運營을 管理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當該 地方公共團體에 確認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金錢貸付業〔1981 直法 2－16 改正〕

(金錢貸付業의 範圍)

15－1－14 令 第5條 第1項 第3號 〈金錢貸付業〉의 金錢貸付業은 그 貸付先이 不特定 多數者인 金錢의 貸付에 한정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여기서 말하는 「金錢의 貸付」에는 어음의 할인이 포함되나, 公益法人 等이 餘裕資金의 運用 等으로 하는 소위 有價證券의 現先去來에 관련된 行爲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金錢貸付業에 該當하지 않는 共濟貸付)

15－1－15 公益法人 等이 그 組合員, 會員 等의 醵出에 관련된 資金을 主되는 原資로 當該 組合員, 會員 等을 對象으로 金錢을 貸付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貸付에 관련된 貸付金의 利率이 전부 年 7.3% 以下일 때에는 當該 組合員, 會員 等에 對한 金錢의 貸付는 15－1－14에 불구하고 令 第5條 第1項 第3號 〈金錢貸付業〉의 金錢貸付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取扱한다〔1981 直法 2－16 改正〕.

5. 物品貸付業〔1981 直法 2－16 改正〕

(物品貸付業의 範圍)

15－1－16 예를 들어 旅館에 있어서 遊技用具의 貸付, 골프演習場, 스케이트場 等에서 用具의 貸付, 遊園地의 貸與보트 等과 같이 旅館業, 遊技所業 等에 관련된 施設內에서 使用되는 物品의 貸付는 各各의 旅館業, 遊技所

業 等의 範圍에 包含되고 令 第5條 第1項 第4號 〈物品貸付業〉의 物品貸付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著作權, 工業所有權, 노하우 等은 同號의 「通常 物品이라 하지 않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6. 不動產貸付業〔1981 直法 2－16 改正〕

(不動產貸付業의 範圍)

15－1－17 令 第5條 第1項 第5號 〈不動產貸付業〉의 不動產貸付業에는 店鋪의 一劃을 他人에게 繼續的으로 使用케 하는 소위 케이스貸 및 廣告等으로 인해 建物, 其他의 建造物의 屋上, 壁面 等을 他人에게 使用하게 하는 行爲가 포함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他人에게 不動產을 使用하게 하는 行爲라도 同項 第9號 〈倉庫業〉, 第14號 〈席貸業〉, 第27號 〈遊技所業〉 또는 第31號 〈駐車場業〉에서 열거하는 事業 중에 該當하는 것은 不動產貸付業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非課稅로 되는 墳墓地의 貸付)

15－1－18 令 第5條 第1項 第5號 〈非課稅되는 墳墓地의 貸付業〉의 規定에 의해 收益事業으로 되지 않는 墳墓地의 貸付業에게 同號 ④에서 規定하는 法人이 소위 永代使用料를 徵收하는 墳墓地의 貸付가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非課稅되는 나라 등에 對한 不動產의 貸付)

15－1－19 令 第5條 第1項 第5號 〈非課稅되는 나라 등에 對한 不動產의 貸付業〉의 規定에 의해 收益事業으로 되지 않는 나라 또는 地方公共團體(以下 이 節에 있어서 「나라 等」이라 함)에 對한 不動產의 貸付는 나라 등에 의해 直接使用되는 것을 目的으로 當該 나라 등에 대해 直接貸付가

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公益法人 等이 나라 등에 대해 不動産을 貸付한 경우에 있어서도 當該 不動産이 나라 등 以外의 者에 轉貸되고 있을 때에는 當該 不動産의 貸付는 여기에 該當되지 않는다〔1981 直法 2－16 改正〕.

(非課稅되는 住宅用地의 貸付)

15－1－20 令 第5條 第1項 第5號 〈非課稅되는 住宅用地의 貸付業〉에서 規定하는 「主로 住宅用으로 提供되는 土地」란 그 床面積의 2분의 1 以上이 居住用(貸家住宅用을 包含, 別莊用은 除外)에 제공되는 家屋의 敷地로 使用되고 있는 土地 中에서 그 面積이 當該 家屋의 床面積의 10倍에 相當하는 面積 以下일 때를 말한다〔1974 直法 4－71 追加, 1981 直法 2－16 改正〕.

(低廉貸付의 判定)

15－1－21 公益法人 等이 行하는 土地의 貸付가 規則 第4條의 2 〈非課稅되는 住宅用地의 貸付 要件〉의 要件에 該當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81 直法 2－16 改正〕.

(1) 土地의 貸付가 同條의 要件에 該當하는가 어떤가는 各各 貸付別로 判定한다.

(2) 同條에서 規定하는 貸付期間에 관련된 收入金額은 當該 期間에 대해 經常的으로 收受하는 地代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契約의 締結, 更新 또는 更改에 따라 收受하는 權利金, 其他의 一時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同條에서 規定하는 固定資產稅 및 都市計劃稅額은 當該 土地에 관련된 固定資產稅 또는 都市計劃稅가 특별히 減免되고 있는 경우라도 그 減免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 이들 稅額에 의한다.

7. 製造業〔1981 直法 2－16 改正〕

(製造業의 範圍)

15－1－22 公益法人 等이 製造場, 作業場 等의 施設을 設置하여 自己의 栽培 等에 의해 取得한 農産物에 대해 出荷 때문에 最小限 必要한 簡易한 加工의 程度를 넘는 加工을 加하거나 또는 이것을 原材料로 物品을 製造하여 都賣하는 行爲는 令 第5條 第1項 第6號 〈製造業〉의 製造業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追加〕.

(研究試作品 等 販賣)

15－1－23 公益法人 等이 그 研究의 成果에 근거하여 製作한 試作品 等을 他人에 讓渡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讓渡를 反復 또는 繼續하여 行하는 등 事業으로 인정되는 程度의 것일 때에는 그 製作 및 讓渡는 令 第5條 第1項 第6號 〈製造業〉의 製造業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追加〕.

8. 通信業〔1981 直法 2－16 改正〕

(通信業의 範圍)

15－1－24 令 第5條 第1項 第7號 〈通信業〉의 通信業(放送業을 包含)이란 他人의 通信을 媒介, 介助하거나 또는 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提供하는 事業 및 多數人에 의해 直接 受信되는 通信을 送信하는 事業을 말하는 것이므로 無線呼出業務, 電報 또는 郵便物의 集配業務, 公衆電話서비스業務(소위 公衆電話 等) 및 共同聽取聽視業務(소위 共同안테나)에 관련된 事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9. 運送業〔1981 直法 2－16 追加〕

(運送業의 範圍)

15－1－25 令 第5條 第1項 第8號 〈運送業〉의 運送業에는 리프트, 로프웨이 等의 索道事業이 包含되나, 自動車道事業, 運河業 및 棧橋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1981 直法 2－16 追加〕.

10. 倉庫業〔1981 直法 2－16 追加〕

(倉庫業의 範圍)

15－1－26 令 第5條 第1項 第9號 〈倉庫業〉의 倉庫業에는 寄託을 받은 物品을 保管하는 業이 包含되므로 手荷物, 自轉車 等의 保管業 및 保護預託施設에 의한 物品 等의 保管業(貸金庫 또는 貸락카를 除外)도 여기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貸金庫 또는 貸락카는 同項 第4號 〈物品貸付業〉의 物品貸付業에 該當한다.

11. 請負業〔1981 直法 2－16 追加〕

(請負業의 範圍)

15－1－27 令 第5條 第1項 第10號 〈請負業〉의 請負業에는 事務處理의 委託을 받는 業이 包含되므로 他人의 委託에 근거하여 하는 調査, 硏究, 情報의 蒐集 및 提供, 어음交換, 換業務, 檢査, 檢定 等의 事業(나라 等 委託에 根據하여 行하는 이들 事業을 包含, 同號 ①에서 ③까지 열거하는 것을 除外)은 請負業에 該當되나, 農産物 等의 原産地證明書의 交付 等 단순히 알고 있는 事實을 證明하는 것만의 行爲는 여기에 包含되지 않는다〔1981 直法 2－16 追加〕.

(實費辨償에 의한 事務處理의 受託 等)

15－1－28 公益法人 等이 事務處理 受託의 性質을 가진 業務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當該 業務가 法令 規定, 行政官廳의 指導 또는 當該 業務에 關한 規則, 規約 또 契約에 근거하여 實費辨償(그 委託에 의해 委託者로부터 받는 金額이 當該 業務 때문에 必要한 費用을 超過하지 않는 것을 말함)에 의해 行하여지는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해 미리 一定의 期間(대략 5年 以內의 期間으로 한다)에 限해 管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 所管法人에 있어서는 管轄國稅局長. 以下 15－1－53에 있어서 같음)의 確認을 받았을 때에는 그 確認을 받은 期間에 대해서 當該 業務는 委託者의 計算에 관련된 것으로 當該 公益法人 等의 收益事業으로 하지 않는다〔1981 直法 2－16 改正〕.

(請負業과 他의 特揭事業과의 關係)

15－1－29 公益法人 等이 하는 事業이 請負 또는 事務處理의 受託으로서의 性質을 가진 것일 경우에 있어서도 그 事業이 그 性格으로 보아 令 第5條 第1項 各號 〈收益事業의 範圍〉에서 열거하는 事業 中에서 同項 第10號 以外의 號에서 열거하는 것(以下 15－1－29에 있어서 「他의 特揭事業」이라 함)에 該當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收益事業을 判定해야 할 때 또는 他特揭事業과 一體不可分인 것으로 課稅해야 하는 것으로 認定되었을 때는 그 事業은 同項 第10號 〈請負業〉의 請負業에는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2. 印刷業〔1981 直法 2－16 追加〕

(印刷業의 範圍)

15－1－30 令 第5條 第1項 第11號 〈印刷業〉의 印刷業에는 謄與印刷

業, 타이프孔版印刷業 및 複寫業外에 製版業, 植字業, 鉛版 等 製造業, 銅版 또는 木版彫刻業, 製本業, 印刷物加工業 等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13. 出版業〔1981 直法 2－16 追加〕

(出版業의 範圍)

15－1－31 令 第5條 第1項 第12號 〈出版業〉의 出版業에는 各種 名簿, 統計數値, 企業財務에 關한 情報 等을 印刷物 等으로 刷成하여 이것을 販賣하는 事業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1. 他者가 出版하는 出版物의 編輯, 監修 等을 인수하는 事業은 同項 第10號 〈請負業〉의 請負業에 該當한다.

2. 出版物의 仲介를 하는 事業은 同項 第1號 〈物品販賣業〉의 物品販賣業 또는 同項 第20號 〈都賣業〉의 都賣業에 該當한다.

(特定의 資格)

15－1－32 令 第5條 第1項 第12號 〈出版業〉에서 規定하는 「特定의 資格」이란, 特別히 定해진 法律上의 資格, 特定의 過去 經歷으로 하는 資格, 其他 이들에 準하는 資格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該當되는 것을 가지고 그 會員의 資格으로 하려는 法人은 特定의 資格을 가진 者를 會員으로 하는 法人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留意해야 한다〔1981 直法 2－16 改正〕.

(1) 年齡, 性別 또는 姓名이 같은 것

(2) 趣味 또는 嗜好가 같은 것

(3) 其他 (1) 또는 (2)에 準하는 것

(會報에 準하는 出版物)

15－1－33 令 第5條 第1項 第12號 〈出版業〉에서 規定하는 「여기에

準하는 出版物」이란, 會報 대신 또는 會報에 準하여 出版되는 出版物로 主로 會員에게만 必要하다고 할 수 있는 特殊한 記事를 內容으로 하는 出版物을 말한다. 따라서 會員名簿 또는 會員의 消息, 其他 여기에 準하는 것을 記事의 內容으로 하는 것은 會報에 準하는 것에 該當되나, 소위 單行本, 月刊誌와 같이 書店 等에서 通常 商品으로 販賣되는 것과 같은 內容의 것은 여기에 該當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改正〕.

(出版物을 主로 會員에게 配布하는 것)

15－1－34 令 第5條 第1項 第12號 〈出版業〉에서 規定하는 「主로 會員에 配布하는 것」이란 會報, 其他 여기에 準하는 出版物을 會員에 配布하는 것을 目的으로 刷成하여 그 部數의 大部分(8轄 程度)을 會員에게 配布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會員이 아닌 者로 그 會에 特別한 關係를 가진 者에게 代價를 받지 않고 配布한 部數는 會員에 配布한 것으로 取扱한다〔1981 直法 2－16 改正〕.

(會報를 오로지 그 會員에 配布하는 것)

15－1－35 令 第5條 第1項 第12號 〈出版業〉에서 規定하는 「會報를 오로지 그 會員에 配布하는 것」이란, 會報를 會員에게만 配布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會員이 아닌 者로 그 會에 特別한 關係를 가진 者에게 代價를 받지 않고 配布하는 것은 會員에게 配布한 것으로 取扱한다〔1981 直法 2－16 改正〕.

(代價 대신에 會費를 徵收하는 出版物의 發行)

15－1－36 公益法人 等이 行하는 出版物의 配布가 令 第5條 第1項 第12號 〈出版業〉의 出版業에 該當하는 경우에 있어서 該當 出版物의 代價가 會費 等의 名目으로 徵收되고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1981

直法 2－16 改正〕.

(1) 會員으로부터 出版物의 代價를 徵收하지 않고 별도로 會費를 徵收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會費 中에서 當該 出版物의 代價相當額을 出版業에 관련된 收益으로 한다.

(2) 會員 以外의 者에게 配布한 出版物에 대하여 代價를 徵收하지 않고 會費 等의 名目으로 金錢을 收受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收受한 金額을 出版業에 關聯된 收益으로 한다.

14. 寫眞業〔1981 直法 2－16 追加〕

(寫眞業의 範圍)

15－1－37 令 第5條 第1項 第13號 〈寫眞業〉의 寫眞業에는 他者가 撮影한 寫眞필름의 現像, 인화 등(代理店을 包含)을 行하는 事業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15. 席貸業〔1981 直法 2－16 追加〕

(席貸業의 範圍)

15－1－38 令 第5條 第1項 第14號 ① 〈席貸業〉에서 規定하는 「不特定 또는 多數者의 娛樂, 遊興 또는 慰安用으로 提供하기 위한 席貸業」에는 興行(15－1－53의 興行業에 該當되지 않는 것을 包含)을 目的으로 集會場, 野球場, 테니스코트, 體育館 等을 利用하는 者에 對하여 그 貸付를 行하는 事業(不動產貸付業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이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註) 展覽會 等을 위한 席貸는 同號의 ①의 娛樂, 遊興 또는 慰安用으로 提供하기 위한 席貸에 該當한다.

(會員에 準하는 者)

15－1－38의 2 令 第5條 第1項 第14號 ② (4) 〈非課稅가 되는 會員等을 對象으로 하는 席貸業〉에서 規定하는 「會員, 其他 이것에 準하는 者」에는 公益法人 等의 正會員外에 準會員, 贊助會員 等으로 當該 公益法人 等의 業務運營에 參與하고 그 業務運營의 費用 一部를 負擔하고 있는 者, 當該 公益法人 等이 複數의 團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組織인 경우의 그 間接의 構成員 等이 包含되는 것으로 한다〔1984 直法 2－3 追加〕.

(利用의 代價가 實費의 範圍를 넘지 않는 것)

15－1－38의 3 公益法人 等이 하는 席貸業이 令 第5條 第1項 第14號 ② (4)에서 規定하는 「그 利用의 代價가 實費의 範圍를 넘지 않는 것」에 該當하는가는 過去의 實績 等에 비추어 當該 事業年度에 있어 會員, 其他 이것에 準하는 者에 對한 席貸에 關聯된 收益과 費用이 대략 均衡하다고 認定될 만한 利用料金이 設定되어 있나 어떤가에 따라 判定한다〔1984 直法 2－3 追加〕.

16. 旅館業〔1981 直法 2－16 追加〕

(旅館業의 範圍)

15－1－39 令 第5條 第1項 第15號 〈旅館業〉의 旅館業에는 下宿營業外에 旅館業法에 의한 旅館業의 許可를 받지 않고 宿泊시켜 宿泊料(實質的으로 宿泊料인 것으로 認定되는 것을 包含. 以下 15－1－42까지 같음)를 받는 事業이 包含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宗教法人이 宿泊施設을 가지고 信者 또는 參詣人을 宿泊시켜 宿泊料를 받는 것 같은 行爲도 15－1－42에 該當하는 것을 빼고 旅館業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改正〕.

(公益法人 等의 經營에 관련된 學生寮)

15－1－40 學生 또는 生徒의 就學을 援助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公益法人 等이 經營하는 學生寮(地方稅法施行令 第51條의 8 各號 〈固定資產稅가 非課稅되는 寄宿舍〉에서 열거하는 要件의 모든 것에 該當하는 것에 한함)는 令 第5條 第1項 第15號 〈旅館業〉의 旅館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71 直審(法) 21, 1981 直法 2－16 改正〕.

(學校法人 等이 經營하는 寄宿舍)

15－1－41 學校法人 等이 오로지 그 學校에 在學하는 者를 宿泊시키기 위해 行하는 寄宿舍의 經營은 令 第5條 第1項 第15號 〈旅館業〉의 旅館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令 第5條 第1項 第30號 〈技藝敎授業〉의 技藝敎授業을 營爲하는 公益法人 等이 當該 技藝敎授業에 附隨하여 行하는 寄宿舍의 經營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1981 直法 2－16 改正〕.

(低廉한 宿泊施設)

15－1－42 公益法人 等이 오로지 會員의 硏修, 其他 그 主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收益事業에 該當하는 事業을 除外. 以下 15－1－42에 있어서 같음)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로써 設置한 宿泊施設로 다음 要件 모두를 충족시키는 經營은 15－1－41의, 단 書에서 該當하는 것을 빼고 令 第5條 第1項 第15號 〈旅館業〉의 旅館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 그 宿泊施設의 利用이 오로지 該當 公益法人 等의 主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의 遂行에 關聯하여 行하여지는 것일 것

(2) 그 宿泊施設이 多數人으로 共用하는 構造 및 設備를 主로 하는 것일 것

(3) 利用者로부터 받는 宿泊料가 모든 利用者에 대해 1泊 1,000円(食事를 提供하는 것에 대해서는 2食 提供에 1,500円) 以下일 것

17. 飮食店業〔1981 直法 2－16 追加〕

(飮食店業의 範圍)

15－1－43 令 第5條 第1項 第16號 〈飮食店業〉의 料理店業, 其他 飮食店業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달을 받아 飮食物을 提供하는 자가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學校法人이 設置한 小學校, 中學校, 盲學校 等에서 學校給食法 等의 規定에 根據하여 行하는 學校給食事業은 料理店業 및 其他의 飮食店業에 該當하지 않는다.

18. 周旋業〔1981 直法 2－16 追加〕

(周旋業의 範圍)

15－1－44 令 第5條 第1項 第17號 〈周旋業〉의 周旋業이란 他者를 위해 商行爲 以外의 行爲의 媒介, 代理, 仲介 等을 行하는 事業을 말하며, 例를 들어 不動產仲介業, 債權徵收業, 職業紹介所, 結婚相談所 等에 관련된 事業이 이것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9. 代理業〔1981 直法 2－16 追加〕

(代理業의 範圍)

15－1－45 令 第5條 第1項 第18號 〈代理業〉의 代理業이란 他者를 위해 商行爲를 代理하는 事業을 말하며, 例를 들어 保險代理店, 旅行代理店等에 관련된 事業이 이것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追加〕.

20. 仲介業〔1981 直法 2－16 追加〕

(仲介業의 範圍)

15－1－46 令 第5條 第1項 第19號 〈仲介業〉의 仲介業이란 他者를 위

해 商行爲의 仲介를 行하는 事業을 말하며, 例를 들어 商品賣買, 用船契約 또는 金融(어음割引을 包含) 等의 仲介 또는 알선을 하는 事業이 여기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追加〕.

21. 都賣業〔1981 直法 2－16 追加〕

(都賣業의 範圍)

15－1－47 令 第5條 第1項 第20號 〈都賣業〉의 都賣業이란 自己 이름으로 他者를 위해 賣買 및 其他의 行爲를 行하는 事業(소위 取次業), 예를 들어 商品取引員, 出版仲介業(物品販賣業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 廣告代理店 等에 關聯된 事業이 여기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追加〕.

22. 鑛業 및 土石採取業〔1981 直法 2－16 追加〕

(鑛業 및 土石採取業의 範圍)

15－1－48 令 第5條 第1項 第21號 〈鑛業〉의 鑛業에 請負契約에 의해 探鑛, 坑道掘削, 鑛石의 搬出 等을 作業하는 事業 以外에 自身은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로서의 登錄은 받지 않았으나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와의 契約에 根據하여 鑛業經營에 關한 費用 및 損失을 負擔하고 採掘된 鑛物(當該 鑛物에 關聯된 收益을 包含)의 配分을 받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鑛業을 經營한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그 事業이 包含된다.

同項 第22號 〈土石採取業〉의 土石採取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1981 直法 2－16 追加〕.

23. 浴場業〔1981 直法 2－16 追加〕

(浴場業의 範圍)

15－1－49 令 第5條 第1項 第23號 〈浴場業〉의 浴場業에는 소위 사우

나, 모래찜질의 特殊浴場業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1988 直法 2－1 改正〕.

24. 理容業〔1981 直法 2－16 追加〕

(理容業의 範圍)

15－1－50 理容學校를 經營하는 公益法人 等이 理容所를 設置하여 不特定 多數에 對하여 理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혹 그 理容서비스의 提供이 敎育實習의 一環으로 行하여 지는 것이고, 또 그 理容學校에서의 技藝의 敎授가 令 第5條 第1項 第30號 (4) 〈非課稅로 되는 理容 또는 美容의 敎授〉의 規定에 따라 收益事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될 때라도 當該 理容서비스의 提供은 同項 第24號 〈理容業〉의 理容業에 該當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988 直法 2－14 改正〕.

25. 美容業〔1981 直法 2－16 追加〕

(美容業의 範圍)

15－1－51 令 第5條 第1項 第25號 〈美容業〉의 美容業에는 마사지, 팩, 美容體操 等의 方法에 의해 全身美容의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 以外에 개, 고양이 等의 愛玩動物에게 샴푸, 트리밍 等을 行하는 事業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15－1－50은 美容學校를 經營하는 公益法人 等이 美容所를 設置하여 不特定 또는 多數人에 對하여 美容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準用한다.

26. 興行業〔1981 直法 2－16 追加〕

(興行業의 範圍)

15－1－52 令 第5條 第1項 第26號 〈興行業〉의 興行業에는 자신은 興

行主로는 되지 않으나 他의 興行主 等을 위해 映畵, 演劇, 演藝, 舞踊, 舞踏, 音樂, 스포츠, 볼거리 等의 興行을 行하는 事業 및 興行의 仲介 또는 仲介를 行하는 事業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常設의 美術館, 博物館, 資料館, 寶物館 等에서 주로 그 所藏品(保管의 委託을 받은 것을 包含)을 觀覽시키는 行爲는 興行業에 該當하지 않는다.

(慈善興行 等)

15－1－53 다음에 열거할 興行(여기에 準하는 것을 包含)에 該當하는 것에 대해 管轄稅務署長의 確認을 받은 것은 令 第5條 第1項 第26號 〈興行業〉의 興行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991 直法 2－1 改正〕.

(1) 興行에 관련된 純益의 全額이 敎育(社會敎育을 包含), 社會福祉 等을 위해 支出된 것이고 또 當該 興行에 參加하거나 또는 關係하는 것이 報酬도 받지 않는 소위 慈善興行

(2) 學生, 生徒, 兒童 및 其他 興行에 參加하는 것을 業으로 하지 않는 者를 參加者 또는 出演者 等으로 하는 興行(그 興行收入의 相當部分을 企業의 廣告宣傳을 위한 支出에 依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해 剩餘金이 생기지 않는 것에 限하는 것으로 하고 其他의 興行에 대해서는 그 興行을 위해 直接 필요한 會場費, 人件費 및 其他의 經費를 充當할 程度의 低廉한 入場料에 의한 것에 限한다)

27. 遊技所業〔1981 直法 2－16 追加〕

(遊技所業의 範圍)

15－1－54 令 第5條 第1項 第27號 〈遊技所業〉의 遊技所業이란 野球場, 테니스코트, 골프場, 射擊場, 낚시터, 碁會所 및 其他의 遊技場을 設置

해 그것을 그 用途에 따라 他者에게 利用하게 하는 事業(席貸業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을 말하며 소위 會員制가 包含된다〔1981 直法 2－16 改正〕.

28. 遊覽所業〔1981 直法 2－16 追加〕

(遊覽所業의 範圍)

15－1－55 令 第5條 第1項 第28號 〈遊覽所業〉의 遊覽所業이란 展望臺, 파노라마, 遊園地, 庭園, 動植物園, 海中公園 等과 같이 오로지 不特定 또는 多數의 사람들에게 一定한 場所를 遊步하게 하고 天然 또는 人工物, 景觀 等을 觀覽하게 하는 事業을 말한다〔1981 直法 2－16 追加〕.

29. 醫療保健業〔1981 直法 2－16 追加〕

(醫療保健業의 範圍)

15－1－56 令 第5條 第1項 第29號 〈醫療保健業〉의 醫療保健業에는 療術業, 助產婦業, 看護業, 齒科技工業, 獸醫業 等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改正〕.

(日本赤十字社 等이 行하는 醫療保健業)

15－1－57 令 第5條 第1項 第29號 ①에서 ⑩까지 및 ⑫에서 ⑭ 〈非課稅로 되는 醫療保健業〉에 열거한 公益法人 等에 대해서는 그 行하는 醫療保健業의 모두가 收益事業으로 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984 直法 2－3 改正〕.

(病院에서의 給食事業)

15－1－58 收益事業에 該當하지 않는 醫療保健業에 관련된 醫療의 一環으로 行하는 患者를 위한 給食일지라도 그 給食이 當該 醫療保健業을 經營

하는 公益法人 以外의 公益法人에 의해 行하여지는 경우에는 當該 給食에 관련된 事業은 當該 醫療保健業에는 包含되지 않으나, 나라 등 또는 收益事業에 該當하지 않는 醫療保健業을 經營하는 公益法人을 經營하는 病院에서 患者 給食을 주된 目的으로 設立된 公益法人이 이들 病院에 醫療의 一環으로 오로지 그 病院의 患者를 위해 行하는 給食은 收益事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收益事業에 該當하지 않는 醫療保健業을 經營하는 公益法人 等이 그 患者를 對象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日用品의 販賣, 크리닝의 仲介, 公衆電話서비스業務 等의 行爲는 收益事業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한다.

(오로지 學術의 研究를 行하는 公益法人)

15－1－59 令 第5條 第1項 第29號 ⑪ 〈非課稅로 되는 學術研究에 附隨하여 行하는 醫療保健業〉에서 規定하는 「民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해 設立된 法人으로 專門學術을 研究하는 자가 그 學術의 研究에 附隨하여 行하는 醫療保健業」이란 오로지 學術을 研究하는 者로서 文部大臣의 許可를 얻어 設立한 法人에서 學術研究를 위해 專門 研究員을 써서 常時研究를 하는 자가 그 研究의 過程 또는 結果를 實證하는 등의 必要上 附隨하여 行하는 醫療保健業을 말한다〔1981 直法 2－16 改正〕.

(診療所의 範圍)

15－1－60 規則 第5條 第3號 〈非課稅로 되는 오픈病院 等〉의 「診療所」에는 巡廻診療버스 等의 臨時로 開設된 診療所가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臨床檢査센터)

15－1－61 規則 第5條 第3號 〈非課稅는 오픈病院 等〉의 「오로지 臨床檢査를 그 業務로 하는 者」에 가래, 血液, 尿 等의 檢體를 集中的으로 檢査

하는 것을 業務로 하는 소위 臨床檢査센터가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改正〕.

(地域醫師 等에 의한 利用)

15－1－62 規則 第5條 第3號 〈非課稅되는 오픈病院 等〉의 地域醫師 等에 의한 「利用」에는 當該 地域醫師 等이 同號에서 規定한 病院 等으로 同項 第1號에서 規定한 醫師會法人 等(以下 15－1－63에 「醫師會法人 等」이라 한다)이 開設한 것(以下 15－1－63에서 「醫師會病院 等」이라 한다)에 患者를 轉院하는 등의 方法에 의해 利用하는 것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地域醫師 等에 의한 繼續診療)

15－1－63 規則 第5條 第4號 〈非課稅되는 오픈病院 等〉의 「地域醫師 等의 診療를 받은 患者로 그후 계속하여 當該 地域醫師 等에 의해 주로 診療되는 것」에는 그 醫師會病院 等에서 診療를 받은 患者로 그 受診時에 當該 醫師會病院 等을 開設한 醫師會法人 等이 組織되어 있는 區域 또는 隣接 地域에 住所 또는 居所를 가지고 있는 者가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1982 直法 2－11 改正〕.

(오픈病院 等의 健康保險診療報酬에 準하는 金額)

15－1－63의 2 規則 第5條 第5號 〈非課稅되는 오픈病院 等〉의 「이것에 準하는 金額」이란 다음에 열거한 것과 같은 法令의 規定 等에 의해 算定되는 診療報酬 또는 利用料를 말한다〔1984 直法 2－3 追加, 1988年 直法 2－14 改正〕.

(1) 公害健康被害의 補償 等에 關한 法律 第4條 第4項 〈認定 等〉에 規定한 被認定者에 관련된 診療報酬 等으로 同法 第22條 〈診療方針 및 診療

報酬〉의 規定에 의해 算定된 金額

(2) 勞動者災害補償保險法 第7條 第1項 第1號 〈保險給付의 種類〉에 規定된 業務災害 및 同項 第2號에 規定된 通勤災害를 입은 者에게 관련된 診療報酬 等으로 同法 第13條 또는 第22條 〈遼養給付〉의 規定에 의해 遼養의 給付에 필요한 것으로 1976年 1月 13日付 基發 第72號「勞災診療費 算定 基準에 대해」勞動省 通牒에 의해 算定된 金額

(非課稅되는 福祉病院 等의 判定)

15－1－64 公益法人 等이 行하는 醫療保健業이 規則 第6條 各號 〈非課稅되는 福祉病院 等〉의 전부에 該當하는가 아닌가의 判定은 公益法人 等에 대해 그 事業年度마다 行하는 것이므로, 同條 第4號의 厚生大臣의 證明에 대해서도 事業年度마다 證明을 必要로 하나 한번 證明된 事實에 異動이 없는 경우에는 同號 ④ 및 ⑤에 열거한 事項 以外에 대해서는 當該 證明을 省略할 수 있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1. 同條 第4號 厚生大臣의 證明은 그 證明해야 할 事項에 關해 厚生大臣의 權限을 受任한 都道府縣知事의 證明으로 充分하다.

2. 厚生大臣이 證明한 事項이 事實과 다르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厚生大臣(厚生大臣의 委任에 따라 都道府縣知事가 證明한 것에 대해서는 그 證明한 都道府縣知事)과 協議하여 處理한다.

(災害 等이 있었던 경우의 特例)

15－1－65 規則 第6條 第2號 또는 第4號 ①에서 ③까지 〈非課稅로 되는 福祉病院 等〉의 要件에 該當하는가 아닌가를 判定하는 경우에 災害 및 其他 特別한 事情이 發生하여 一時的으로 이들의 要件에 該當하지 않는 期間이 생겨도 그후 신속하게 復舊한 때 또는, 復舊할 것이 確實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 事業年度를 通하여 이들의 要件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1981 直法 2－16 改正〕.

(福祉病院 等의 健康保險診療報酬에 準하는 金額)

15－1－65의 2 15－1－63의 2 〈오픈病院 等의 健康保險診療報酬에 準하는 金額〉의 取扱은 規則 第6條 第1號 〈非課稅되는 福祉病院 等〉에 規定한 公益法人 等이 行하는 醫療保健業에 관련된 診療報酬 또는 利用料가 同條 第3號에 規定한 「이들에 準하는 金額」에 該當하는가 아닌가의 判定에 대해 準用한다〔1984 直法 2－3 追加〕.

30. 技藝敎授業〔1981 直法 2－16 追加〕

(技藝敎授業의 範圍)

15－1－66 令 第5條 第1項 第30號 〈技藝敎授業〉의 「技藝의 敎授」에는 자신은 技藝의 習得에 關한 敎授를 行하지 않고 同號에 規定한 技藝에 關한 免許의 附與 等만을 行하는 行爲가 包含되나, 同號에 規定한 技藝 以外의 技藝에 關한 免許의 附與 等은 이것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1. 同號의 「免許의 附與 및 其他 이것에 類似한 行爲」에는 卒業資格, 段位, 級, 師範, 예명허가 등의 一定한 資格, 稱號 等을 附與하는 行爲가 包含된다.

2. 同號에 規定한 技藝의 敎授 또는 免許의 附與 等의 一環으로 또는 이들에 附隨하여 行하는 講習會 等은 설혹 一般敎養의 講習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라도 同號의 「技藝의 敎授」에 該當한다.

(公開模擬學力試驗)

15－1－67 令 第5條 第1項 第30號 〈技藝敎授業〉의 「公開模擬學力試驗」에는 그 公開模擬學力試驗을 行하는 豫備校 等의 學生이 그 選擇에 따라 受驗料를 負擔하여 參加하는 경우에 그 參加에 관련된 部分이 包含된다〔1981 直法 2－16 追加〕.

(授業時間數의 判定)

15－1－67의 2 公益法人 等이 行하는 技藝 또는 學力의 敎授에 관련된 授業時間이 規則 第7條 第2號 및 第7條의 2 各號 〈非課稅로 되는 技藝敎授 等〉에 定한 所定의 時間數 以上인가 아닌가의 判定은 다음과 같다〔1984 直法 2－3 追加〕.

(1) 이들 各號에 規定한 授業時間數에는 正味의 授業時間 以外에 授業과 授業 사이에 通常의 休憩時間(점심을 위한 休息時間을 除外)이 包含되는 것으로 한다.

(2) 學力의 敎授에 관련된 敎科 또는 課程의 授業時間數가 規則 第7條의 2 各號에 規定한 時間數 以上인가 아닌가는 受講者의 募集 區分別(科目別로 選擇하여 受講하게 하고, 該當 科目別로 定해진 受講料를 收受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科目別로 한다)의 授業時間數에 따른다.

(大學入試를 위한 學力의 敎授의 範圍)

15－1－67의 3 規則 第7條의 2 第1號 〈非課稅되는 學力의 敎授〉에 規定한 「大學의 入學者를 選拔하기 위한 學力試驗에 直接 대비하기 위한 學力의 敎授」란,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및 高等學校의 第3學年(定時制의 高等學校에 대해서는 第4學年)에 在籍하는 者를 주된 對象者로 하여 行하는 大學의 入學試驗에 대비하기 위한 學力의 敎授를 말한다〔1984 直法 2－3 追加〕.

31. 駐車場業〔1981 直法 2－16 追加〕

(駐車場業의 範圍)

15－1－68 令 第5條 第1項 第31號 〈駐車場業〉의 駐車場業에는 駐車場所로서의 土地의 貸付가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改正〕.

32. 信用保證業〔1981 直法 2－16 追加〕

(低廉保證料의 判定)

15－1－69 規則 第8條의 2 第2項〈非課稅로 되는 信用保證業〉에 定하는 保證料가 年 2% 以下일 것이라는 要件에 대해서는 保證契約別로 當該 保證契約에 定해져 있는 것에 根據하여 判定한다. 이 경우에 通常 徵收하는 保證料는 年 2% 以下이지만, 一定한 條件에 該當할 때 年 2%를 넘어 保證料를 徵收할 경우에는 그 保證契約에 關聯된 保證料가 同項에서 定한 要件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76 直法 2－39 追加, 1981 直法 2－16 改正〕.

33. 其他〔1981 直法 2－16 追加〕

(學校法人等이 實習의 一環으로 行하는 事業)

15－1－70 收益事業에 該當하지 않는 技藝를 敎授하는 學校法人 등이 그 敎育實習의 一環으로 行하는 다음과 같은 行爲일지라도 繼續하여 事業場을 設置하여 行하는 등 事業으로 認定될 程度의 것일 때에는 그 行爲가 收益事業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改正〕.

(1) 洋裁學校가 他人의 要求에 따라 行하는 縫製加工(製造業)

(2) 타이피스트學校가 行하는 印書의 引受(請負業 또는 印刷業)

(3) 音樂學校 等이 行하는 演藝會 等으로 15－1－53에 該當하지 않는 것(興行業)

(4) 寫眞學校가 行하는 撮影 等의 引受(寫眞業)

(神前結婚 等의 경우의 收益事業의 判定)

15－1－71 宗敎法人이 神前結婚, 佛前結婚 等의 禮式을 行하는 行爲로

本來의 宗教活動의 一部로 認定되는 것은 收益事業에 該當하지 않으나 禮式後의 披露宴에서 飮食物의 提供, 禮式을 위한 衣裝 및 其他 物品의 貸付, 記念寫眞의 撮影 및 이들 行爲의 斡旋 및 用途에 提供하기 위한 不動産貸付 및 席貸 事業은 收益事業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改正〕.

第 2 節 收益事業에 關聯된 所得의 計算 等 〔1981 直法 2－16 改正〕

(所得에 關한 經理)

15－2－1 令 第 6 條 〈收益事業을 經營하는 法人의 經理 區分〉의 「所得에 關한 經理」란 단순히 收益 및 費用에 關한 經理만이 아니고, 資産 및 負債에 關한 經理를 包含하는 것에 留意한다〔1981 直法 2－16 改正〕.

(註) 하나의 資産이 收益事業用과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用으로 共用되고 있는 경우(각각의 事業別로 專用되는 部分이 明白한 경우를 除外)의 當該 資産에 대해서는 收益事業에 屬하는 資産으로서의 區分經理는 하지 않고, 그 償却費 및 其他 當該 資産에 대해 생기는 費用 中 收益事業에 關聯된 部分의 金額을 當該 收益事業에 關聯된 費用으로 經理하게 된다.

(固定資産의 區分 經理)

15－2－2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用으로 提供한 固定資産을 收益事業用에 提供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收益事業에 屬하는 資産으로 區分經理를 한 경우는 그 收益事業用에 提供하도록 된 때의 當該 固定資産의 帳簿價額에 따라 그 經理를 行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當該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그 區分經理를 할 때 미리 當該 固定資産에 대해 評價換을 行하고 그 帳簿價額의 增額을 한 때라도 그 增額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1981 直法 2－16 追加〕.

(註) 本文에 따라 收益事業에 屬하는 것으로 區分經理를 한 固定資產에 관련된 그후의 償却限度額 計算에 대해서는 7－4－3에서 7－4－4의 3까지 〈償却方法을 變更한 경우의 償却限度額〉의 例에 의한다.

(收益事業의 資本)

15－2－3 令 第6條 〈收益事業을 經營하는 經理區分〉의 規定에 의해 收益事業을 한 날에 收益事業에 屬하는 것으로 區分된 資產의 合計額에서 外部負債額의 合計額을 控除한 殘額은 資本의 元入額으로 한다.

그후의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서 收益事業에 支出된 金錢 및 他資產의 價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1981 直法 2－16 改正〕.

(公益法人 等의 看做 寄附金)

15－2－4 公益法人 等이 收益事業에 屬하는 金錢 및 其他 資產에 대해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屬하는 것으로 區分經理를 한 경우에도, 그 한편에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서 收益事業에 그 金錢 等에 합당한 金額에 相當하는 資本의 元入이 있었던 것으로 經理하는 등, 實質的으로 收益事業에서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으로 金錢 等의 支出이 없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 區分經理를 한 金額에 대해서는 法第37條 第4項 〈公益法人 等의 看做 寄附金〉의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追加, 1981 直法 2－16 改正〕.

(註)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收益事業에 屬하는 資產에 대해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屬하는 것으로써 區分經理를 한 경우에도 그 區分經理를 한 金額에 대해서는 同項의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費用 또는 損失의 區分 經理)

15－2－5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收益事業과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경우의 費用 또는 損失額의 區分經理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다〔1981 直法 2－16 改正〕.

(1) 收益事業에 대해 直接 필요한 費用 또는 收益事業에 대해 直接 생긴 損失額은 收益事業에 關聯된 費用 또는 損失額으로 經理한다.

(2) 收益事業과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共通하는 費用 또는 損失額은 繼續的으로 資產의 使用比率, 從業員의 從事比率, 資產의 帳簿價額의 比, 收入金額의 比 및 其他 當該 費用 또는 損失의 性質에 따라 合理的인 基準에 의해 收益事業과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配賦하고 그것에 根據하여 經理한다.

(註)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屬하는 金錢 및 其他의 資產을 收益事業을 위해 使用한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 收益事業에서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賃貸料, 支拂利子 等을 支拂하는 것으로 해서 그 金額을 收益事業에 관련된 費用 또는 損失로서 經理할 수는 없다는 것에 留意한다.

(收益事業에 專屬한 借入金 等의 利子)

15－2－6 公益法人 等이 法令의 規定, 主務官廳의 指導 等에 의해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에 關聯된 資金의 運用方法 等이 規制되어 있기 때문에 收益事業의 遂行上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外部에서의 借入金 等에 의해 변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當該 借入金 等에 관련된 利子 中 當該 收益事業의 遂行上 通常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部分의 金額은 收益事業에 대해 直接 필요한 費用으로 할 수 있다〔1981 直法 2－16 追加〕.

(退職給與充當金 計定에서의 算入額 等의 配賦)

15－2－7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收益事業 및 收益事業 以外의 事業 雙方에 걸쳐 그 業務에 從事하는 使用人을 對象으로 退職給與充當金 計定에서 算入하는 경우에는 이들 事業의 全部가 收益事業인 것으로 해서 損金에 算入되는 退職給與充當金 計定에서의 算入額을 計算하고,

이것을 當該 事業年度 人件費의 比 및 其他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配分하여 收益事業에 관련된 損金算入額을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

使用人의 退職에 따라 令 第107條 第1項 第1號 〈使用人이 退職한 경우의 退職給與充當金 計定의 解體〉의 規定에 따라 退職給與充當金 計定 金額을 解體할 경우에 그 解體해야 할 金額의 計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1981 直法 2－16 追加〕.

(賞與充當金 計定에의 算入額의 配賦)

15－2－8 15－2－7의 前段의 取扱은 賞與充當金 計定에의 算入額을 收益事業에 關聯된 費用으로 配賦하는 경우에 대해 準用한다〔1981 直法 2－16 追加〕.

(低廉讓渡 等)

15－2－9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通常의 代價에 미치지 않는 代價에 의한 資產의 讓渡 또는 役務를 提供한 경우에도 그 資產의 讓渡 等이 當該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의 本來 目的인 事業의 範圍內에서 이루어지는 限 그 資產의 讓渡 等에 대해서는 法 第37條 第7項 〈低廉讓渡 等〉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1 直法 2－16 追加, 1988 直法 2－1 改正〕.

(收益事業에 屬하는 固定資產의 處分損益)

15－2－10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收益事業에 屬하는 固定資產에 대해 讓渡, 除却 및 其他의 處分을 한 경우에 그 處分을 한 것에 의한 損益은 原則的으로 收益事業에 관련된 損益으로 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損益(當該 事業年度에 2 以上의 固定資產의 處分이 있었을 때는 그 모두에 關聯된 損益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이것을 收益事業에 관련된 損益

에 包含하지 않을 수 있다〔1981 直法 2－16 改正〕.

(1) 相當 期間에 걸쳐 固定資產으로 保有한 土地(借地權을 包含), 建物 또는 構築物에 대해 讓渡(令 第138條 第1項〈借地權의 設定 等에 의해 地價가 현저하게 低下한 경우의 土地 等의 帳簿價額의 一部 損金算入〉의 規定의 適用이 있는 借地權의 設定을 包含), 除却 및 其他 處分을 한 경우에 그 處分을 한 것에 의한 損益(15－1－12〈不動產販賣業의 範圍〉의 但書의 適用이 있는 部分을 除外)

(2) (1) 以外에 收益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廢止하고 그 廢止에 관련된 事業에 屬하는 固定資產에 대해 讓渡, 除却 및 其他의 處分을 한 경우에 그 處分을 한 것에 의한 損益

(借地權利金 等)

15－2－11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이 固定資產인 土地 또는 建物을 貸付한 것으로 인해 收受하는 權利金 및 其他 一時金의 取扱은 각각 다음과 같다〔1981 直法 2－16 追加〕.

(1) 그 土地의 貸付에 의해 令 第138條 第1項〈借地權의 設定 等에 의해 地價가 현저하게 低下한 경우의 土地 等의 帳簿價額 一部의 損金算入〉의 規定에 該當하게 된 경우에 그 貸付에 따라 收受하는 權利金 및 其他의 一時金은 土地의 讓渡에 의한 收益으로서 15－2－10에 따른다.

(2) 土地 또는 建物의 貸付時에 收受하는 權利金 및 其他의 一時金으로 (1)에 該當하지 않는 金額 및 土地 또는 建物의 貸付에 關聯된 契約의 更新 또는 更定에 의해 收受하는 소위 更新料 等의 金額은 不動產의 貸付에 관련된 收益으로 한다.

(補助金 等의 收入)

15－2－12 收益事業을 經營하는 公益法人 等 또는 人格이 없는 社團 等

第16章 稅額의 計算

第1節 同族會社의 特別稅率

1. 特別稅率의 適用을 받는 同族會社의 範圍

(特別稅率이 適用되지 않는 同族會社의 範圍)

16－1－1 法 第67條 第1項 〈同族會社의 特別稅率〉에 規定한 「同族會社가 아닌 法人」에는 非同族會社를 同族會社인가 아닌가의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等에 選定함으로써 同族會社로 되는 경우의 同族會社(以下 16－1－1에서 「非同族會社의 子會社」라 한다), 當該 非同族會社의 子會社를 同族會社인가 아닌가의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等에 選定함으로써 同族會社로 되는 경우의 同族會社(以下 16－1－1에서 「非同族會社의 孫會社」라 한다), 當該 非同族會社의 孫會社를 同族會社인가 아닌가의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等에 選定함으로써 同族會社로 되는 경우의 同族會社 等 非同族會社의 直接 또는 間接의 同族會社도 포함한다.

(自己株式을 保有하기 때문에 同族會社로 判定되는 法人에 對한 特別稅率의 適用)

16－1－2 自己株式을 保有하는 法人에 대해 1－3－2(自己株式을 保有하는 法人에 대한 同族會社의 判定)에 따라 同族會社에 該當하는가 아닌가를 判定한 結果 同族會社인 경우, 그 同族會社에 대해서는 法 第67條 〈同族會社의 特別稅率〉의 規定이 適用되는 것에 留意한다.

(註) 여기에 該當하는 同族會社를 同族會社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等으로 한 경우에 同族會社가 되는 그 同族會社(子會社)에 대해서도 同條의 規定이 適用된다.

(相互株式을 가지고 있을 경우의 留保金 課稅)

16－1－3 同族會社인 法人이 다른 法人과 相互 株式 또는 出資를 가지고 있고, 當該 他法人을 當該 法人의 同族會社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等에 包含하여 判定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該當할 때에는 當該 法人에 대해 法 第67條 第1項 〈同族會社의 特別稅率〉의 規定을 適用한다.

(1) 當該 法人이 當該 他法人 以外의 法人으로 同項의 「同族會社가 아닌 法人」에 該當하는 것을 同族會社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等에서 除外하고 判定한 경우에 同族會社로 될 것.

(2) 當該 他法人이 當該 法人 以外의 法人으로 同項의 「同族會社가 아닌 法人」에 該當하는 것을 同族會社 判定의 基礎가 되는 株主 等에서 除外하고 判定한 경우에 同族會社로 될 것.

2. 留保金額의 計算

(賞與를 받은 者別로 債務가 確定되지 않은 賞與의 處分)

16－1－4 法 第67條 第2項 〈留保金額〉의 當該 事業年度 確定 決算에서 利益의 處分에 따른 經理를 한 賞與 中에 그 利益의 處分을 確定한 날에 當該 賞與를 받은 者別로 債務가 確定되지 않은 金額은 當該 事業年度의 利益積立金에 包含되는 것으로 하고, 當該 事業年度後의 事業年度에 當該 賞與를 받은 者別로 債務가 確定된 때에는 그 確定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利益處分에서 當該 賞與額의 社外流出處分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還付金額이 所得 等의 金額에 算入되는 時期)

16－1－5 法 第67條 〈同族會社의 特別稅率〉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法第79條 〈所得稅額의 還付〉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額 等의 還付金額 또는 法 第81條 〈缺損金의 還付〉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額의 還付金額은 그 金額

이 確定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所得 等의 金額에 包含한다.

(註) 所得稅額 等의 還付金額으로 確定申告에 의한 것은 그 確定申告書 提出日, 更正에 의한 것은 그 更正이 있었던 날에 그 金額이 確定된다.

(期末利益積立金)

16－1－6 法人이 事業年度 中途에 利益積立金을 解體한 경우 또는 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서 損金에 算入되지 않은 償却超過額, 充當金, 準備金의 算入超過額 等을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한 경우에는 그 해체한 金額 또는 損金에 算入한 金額은 法 第67條 第3項 第3號 〈積立金 基準額〉에 規定한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 等의 金額에 관련된 部分의 金額」에 該當한다. 따라서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利益積立金은 合併에 의해 利益積立金의 引繼를 받은 경우 減資에 의해 利益積立金을 還拂한 경우 또는 資本 編入에 의해 利益積立金을 資本에 編入한 경우를 除外하고 當該 事業年度開始時의 利益積立金과 同額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1991 課法 2－4 改正〕.

(註) 當該 事業年度 利益의 處分에서 商法 第293條의 2 〈利益의 資本編入〉의 規定에 의해 資本에 編入된 金額은 法 第67條 第2項에 規定한 「所得 等의 金額 中 留保한 金額」에 包含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移越 缺損金이 있는 경우의 留保金額의 計算)

16－1－7 法 第67條 第3項 〈留保控除額〉의 規定에 의해 留保控除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資本 또는 出資金額의 25% 相當額에서 控除해야 할 때의 利益積立金이 缺損金일 때에는 當該 資本 또는 出資金額의 25% 相當額에 그 缺損金을 加算한 金額을 同項 第3號에 規定한 金額으로 取扱한다.

(留保金額의 端數計算)

16－1－8 法 第67條 〈同族會社의 特別稅率〉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의

端數計算은 다음과 같다.

(1) 課稅의 對象이 되는 留保金額에 1,000엔 未滿의 端數가 있는 때는 그것을 捨한다.

(2) 事業年度의 期間이 1年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年 1億엔에 相當하는 金額에 1,000엔 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는 그것을 捨한다. 단, 當該 切捨되는 端數의 金額이 (1)에 의해 切捨되는 端數의 金額보다 많을 때는 그것을 切上한다.

第 2 節 所得稅額의 控除〔1983 直法 2－3 改正〕

(利拂期前의 公債 等을 賣却한 경우의 控除)

16－2－1 法人이 利拂期前의 公債 또는 社債를 賣却한 경우에 所有한 期間의 利子에 對한 所得稅에 相當하는 金額을 事實上 負擔한 때에도 當該 法人이 所得稅를 納付한 것이 아니므로 當該 所得稅에 相當하는 金額은 當該 法人의 法人稅額에서 控除하지 않는다.

(名義變更 失念株의 配當에 對한 所得稅의 控除)

16－2－1의 2 法人이 保有하는 株式을 讓渡한 경우에 讓受人이 名義變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當該 株式에 관련된 利益配當額으로 그 讓渡後에 이루어진 配當決議에 關聯된 것을 받았을 때 當該 利益의 配當額은 株主 地位에 根據하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부과된 所得稅額에 대해서는 當該 法人에 대해 法 第67條 〈所得稅額의 控除〉의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다. 단, 配當權利落後 配當決議日 사이에 讓渡한 株式에 대해 當該 配當決議에 관련된 利益配當額을 받았을 때의 配當額에 대해 부과되는 所得

稅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1980 直法 2－8 追加〕.

(未收利子 또는 未收配當 等에 對한 所得稅의 控除)

16－2－2 法人이 各 事業年度終了日까지 支拂을 받지 않은 法 第68條〈所得稅額의 控除〉에 規定한 利子 및 配當 等을 當該 事業年度의 確定한 決算에서의 收益으로 計上하고 當該 利子 및 配當 等(利子 等에 대해서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 그 利拂期가 到來한 것에 限함)에 대해 納付해야 할 所得稅額을 當該 事業年度의 法人稅額에서 控除하거나 控除하고 남는 金額에 相當하는 所得稅의 還付를 請求한 경우에는 그 控除 또는 請求를 認定한다.

(支拂請求에 根據하여 支拂한 所得稅의 控除)

16－2－3 法人이 그 事業年度 開始日前에 支拂을 받은 法 第68條〈所得稅額의 控除〉에 規定한 利子 및 配當 等에 對한 所得稅에 相當하는 金額에 대해 所得稅法 第222條〈不徵收稅額의 支拂金額에서의 控除 및 支拂請求等〉의 規定에 따른 控除 또는 支拂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 그 控除된 또는 그 請求에 對해 支拂을 한 所得稅額에 대해서는 그 控除 또는 支拂을 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 法 第68條 規定을 適用한다.

(1年決算法人에서의 配當에 關聯된 所得稅 控除額의 所有期間 配分)

16－2－4 法人이 商法 第293條의 5 第1項〈中間配當〉의 規定에 의해 定款에 中間配當을 한다고 定해 놓은 法人에서 利益配當의 支拂을 받은 경우에 當該 利益의 配當에 관련된 令 第140條의 2 第2項〈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所得稅額의 計算〉에 規定하는「配當 等의 計算의 基礎로 된 期間」은 當該 中間配當을 한다고 定해 놓은 法人이 當該 利益의 配分을 한 事業年度에 中間配當의 支拂을 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同項에 規定한 일정한

날의 翌日부터 當該 事業年度終了日까지의 期間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1975 直法 2－21 追加〕.

(合併法人이 被合併法人에서 引繼한 公債 等에 관련된 控除所得稅額의 計算)

16－2－5 公債, 社債, 株式, 出資 또는 證券投資信託의 受益證券이 그 利子配當等(令 第140條의 2 第1項 第1號 〈法人稅額에서 控除한 所得稅額의 計算〉에 規定한 利子配當 等을 말한다)의 計算期間 中途에 合併에 의해 被合併法人에서 合併法人으로 引繼된 경우에 合併法人이 當該 期間에 관련된 利子配當 等에 對한 所得稅에 대해 同條의 規定에 의해 控除해야 할 所得稅額을 計算할 때에는 다음과 같다〔1975 直法 2－21 改正〕.

(1) 同條 第2項의 元本을 所有했던 期間에는 被合併法人이 所有했던 期間을 包含한다.

(2) 同條 第3項 第2號 (1)의 利子配當 等의 計算의 基礎가 되는 期間의 開始時에 所有했던 元本의 數(公債 및 社債에 대해서는 額面金額)에는 被合併法人이 當該 時에 所有하고 있던 當該 元本의 數를 包含한다.

(國外公社債 等의 利子, 國外證券投資信託의 配當 및 國外株式의 配當에 關聯된 所得稅控除額의 所有期間 配分)

16－2－5의 2 措置法 第3條의 3 第3項 〈國外에서 發行된 公社債의 利子所得의 分離課稅 等〉, 同法 第8條의 3 第2項 〈國外에서 發行된 證券投資信託 收益의 分配에 관련된 配當所得의 分離課稅 等〉 또는 同法 第9條의 2 第1項 〈國外에서 發行된 樣式 配當所得의 源泉徵收 等의 特例〉의 規定에 의해 부과된 國外公社債 等의 利子 等, 國外證券投資信託의 配當 等 및 國外株式의 配當 等에 對한 所得稅額에 대해 法 第68條 〈所得稅額의 控除〉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當該 所得稅額 中 令 第140條의 2 第2項 또는 第3項 〈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所得稅額의 計算〉의 規定에 따라 計算한 그

元本所有期間에 대한 部分의 金額이 控除 對象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1985 直法 2－11 追加, 1988 直法 2－14 改正〕.

(利子計算期間 中途에 登錄을 한 公社債에 관련된 控除所得稅額의 計算)

16－2－6 措置法 第8條 第1項〈金融機關 等이 받는 利子所得에 對한 源泉徵收의 不適用〉에 規定한 金融機關 및 同條 第2項에 規定한 證券業者 等(以下 16－2－6 및 16－2－9에서 「金融機關 等」이라 한다)이 同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하는 登錄한 公社債에 대해 利子의 支拂을 받은 경우에 當該 公社債가 그 利子의 計算期間 中途에서 取得되고, 또 登錄된 때에는 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所得稅額으로 當該 公社債에 關聯된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와 같다〔1975 直法 2－21, 1979 直法 2－31, 1988 2－14, 1990 2－1 改正〕.

(1) 當該 公社債의 登錄이 그 取得日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利子의 計算期間中 그 取得日前의 期間에 대해 부과된 所得稅額은 令 第140條의 2 第2項〈元本을 所有하지 않았던 期間의 所得稅額의 除外〉의 規定에 따라 法人稅額에서 控除한 所得稅額에 包含하지 않는다.

(2) 當該 公社債의 登錄이 그 取得日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法人稅額에서 控除한 所得稅額으로 當該 公社債에 關聯된 것은 그 利子의 計算期間에 關聯된 利子에 對한 所得稅額을 다음의 ①에 열거한 日數로 나누고 그것에 ②에 열거한 日數를 곱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① 利子 計算期間의 開始日에서 登錄을 한 날의 前日까지의 日數

② 取得한 날에서 登錄을 한 날의 前日까지의 日數

(註) 金融機關 等이 措置法令 第2條의 3 第5項〈國外發行公社債 等의 利子 等에 對한 源泉徵收의 不適用〉의 規定에 따라 保管의 委託을 한 同條 第9項에 規定하는 國外發行公社債 等에 대해 利子 等의 支拂을 받을 경우에 當該 國外發行公社債 等이 그 利子 等의 計算期間의 中途에 取得되고 또 保管이 委託되었던 것일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한다.

(公益法人 等의 公社債 等에 관련된 控除所得稅額의 計算)

16－2－6의 2 16－2－6의 取扱은 公益法人 等이 支拂을 받는 다음에 열거하는 公社債 等의 利子 또는 收益의 分配에 관련된 控除所得稅額의 計算에 대해 準用한다〔1990 直法 2－1 追加〕.

(1) 所得稅法 第11條 第4項 〈公共法人 等에 關한 非課稅〉의 規定에 따라서 保管의 委託 또는 登錄을 한 同條 第1項에 規定하는 公社債 等으로 그 利子 또는 收益 分配의 計算期間 中途에 取得되고, 또 保管의 委託 또는 登錄이 된 것.

(2) 措置法令 第2條의 3 第5項 〈國外發行公社債 等의 利子 等에 對한 源泉徵收의 不適用〉의 規定에 따라 保管의 委託을 한 同條 第9項에 規定한 國外發行公社債 等으로 그 利子 또는 收益 分配의 計算期間 中途에 取得되고, 또 保管이 委託된 것.

(割引債에 關聯된 利子의 計算期間)

16－2－7 法人이 保有한 割引債의 償還(買入償却을 包含)을 받은 경우에 措置法 第41條의 12 第4項 〈償還差益에 대한 看做 源泉所得稅〉의 規定에 따라 償還時에 徵收된 所得稅로 간주되는 額이 있을 때는 措置法令 第26條의 12 第1項 〈償還差益에 對한 所得稅額의 法人稅額에서의 控除〉 및 令 第140條의 2 〈法人稅額에서 控除한 所得稅額의 計算〉의 規定에 따라 法人稅額에서 控除한 所得稅額을 計算하지만 소위 1年物일 때에는 令 第140條의 2 第2項의 「利子配當 等의 計算의 基礎로 된 期間의 月數」는 이것을 12月로 하여 計算하는 것으로 한다〔1975 直法 2－21, 1988 直法 2－14 改正〕.

(證券投資信託 收益의 計算期間)

16－2－8 證券投資信託(日決算을 하고 그때마다 그 決算收益의 全額을

未拂收益分配金計定에 對替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除外) 收益의 分配에 對한 所得稅額에 대해 令 第140條의 2 第2項 또는 第3項〈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所得稅額의 計算〉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이들 項의 利子配當計算의 基礎 期間은 다음 期間을 말한다〔1975 直法 2－21, 1980 直法 2－8 改正〕.

(1) 信託期間中의 決算分配金 分配에 대해서는 그 計算期間

(2) 信託의 一部 解約에 따른 收益의 分配에 대해서는 當該 信託의 開始日에서 그 解約日까지의 期間

(3) 信託의 終了에 따른 收益의 分配에 대해서는 當該 信託의 開始日에서 終了日까지의 期間

(註) 日決算을 하고 그때마다 그 決算收益의 全額을 未拂收益分配金計定에 對替하도록 되어 있는 證券投資信託 收益의 分配金에 대해 賦課된 所得稅額은 항상 그 全額이 同條 第1項 第1號에 열거한「그 元本을 所有하고 있었던 期間에 對應하는 것으로 計算되는 所得稅額」에 該當한다.

(登錄을 한 公社債 等이 있는 경우 控除所得稅額의 簡便計算)

16－2－9 公債 및 社債의 利子 및 證券投資信託 收益의 分配에 關聯된 所得稅에 대해 令 第140條의 2 第3項〈控除所得稅額의 簡便計算〉의 規定에 따라 控除所得稅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金融機關 또는 公益法人 等이 保有한 公債 또는 社債, 證券投資信託의 受益證券 中에 그 利子 또는 收益 分配의 計算期間 中途에 登錄 또는 保管 委託을 한 것(16－2－6 또는 16－2－6의 2의 適用을 받는 것에 限함)이 있을 때는 그 登錄 또는 保管 委託을 한 公債, 社債 또는 證券投資信託의 受益證券 以外의 것에 대해 同項의 規定을 適用한다〔1973 直法 2－81 追加, 1975 直法 2－21, 1979 直法 2－31, 1988 直法 2－14, 1990 直法 2－1 改正〕.

(轉換社債의 轉換에 의해 取得한 株式의 所有期間)

16－2－10 法人이 轉換社債(利益의 配當에 대해 商法 第222條의 6 但書 規定에 의해 轉換 請求가 있었던 날이 屬하는 發行法人에 關聯된 事業年度의 直前 事業年度終了日에 轉換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限함)의 轉換을 請求하여 株式을 取得한 경우에 그 轉換 請求를 한 날이 屬하는 當該 發行法人의 事業年度에 關聯된 利益의 配當에 대해 부과된 所得稅額에 대해 法 第68條 〈所得稅額의 控除〉의 適用을 받을 때는 그 轉換이 있었다고 간주되는 날(그날이 當該 轉換社債의 取得日 前인 경우에는 그 取得日)에서 그 轉換에 따라 取得한 株式을 所有하고 있었던 것으로 하여 令 第140條의 2 〈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所得稅額의 計算〉의 規定을 適用한다〔1973 直法 2－81 追加, 1975 直法 2－21 改正〕.

(新株引受權附社債에 關聯된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取得한 株式의 所有期間)

16－2－10의 2 16－2－10 新株引受權附社債(當該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法人이 利益의 配當에 대해 商法 第341條의 8 第2項 第7號의 規定에 따라 그 拂入이 있었던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直前 事業年度終了日에 拂入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限함)에 관련된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株式을 取得한 경우 令 第140條의 2 〈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所得稅額의 計算〉 規定의 適用을 準用한다〔1982 直法 2－11 追加〕.

(信用去來 等에 의한 買附株式이 있는 경우 控除所得稅額의 簡便計算)

16－2－10의 3 配當 等에 關聯된 所得稅에 대해 令 第140條의 2 第3項 〈控除所得稅額의 簡便計算〉의 規定에 의해 控除所得稅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法人이 보유한 株式 中에 證券去來法 第49條 第1項 〈信用去來 等에서 保證金의 預託〉의 規定에 따른 信用去來 또는 發行日去來에 의해 買入한 株式으로 그 決濟가 未了된 것이 있을 때 當該 株式의 數는 令 第140條의

2 第3項 各號에 規定하는 「元本의 數」에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982 直法 2－11, 1990 直法 2－6 改正〕.

(註) 法人이 信用去來 또는 發行日去來의 方法으로 買入한 株式을 現物로 인수하는 것으로 決濟를 한 경우에는 當該 株式을 그 買入을 한 때로부터 所有한 것으로 하여 令 第140條의 2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第 3 節 外國稅額의 控除〔1983 直法 2－3 追加〕

1. 通則〔1983 直法 2－3 追加〕

(外國法人稅의 一部에 대해 控除申告를 한 경우의 取扱)

16－3－1 內國法人이 當該 事業年度에 納付하는 外國法人稅額(法 第69條 第1項 〈外國稅額의 控除〉에 規定하는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에 限함, 以下 16－3－1에서 同一)의 一部에 대해 同條 規定의 適用을 받는 경우에는 法 第41條 〈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外國稅額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에 의해 當該 外國法人稅額의 全部가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註) 內國法人이 當該 事業年度에 納付하는 外國法人稅의 一部에 法 第69條의 規定을 適用하고 다른 外國法人稅에 대해 同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고 損金에 算入하여 申告한 경우에 그 申告를 한 것이 當該 損金에 算入한 外國法人稅에 대해 同條 第1項에 規定한 外國法人稅에 該當하는가 아닌가가 明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同條 第9項에 規定한 「부득이한 事情」이 있는 것으로 取扱할 수 있다.

(使用人의 範圍)

16－3－2 令 第142條 第3項 第2號 〈國外所得金額의 計算〉에 規定한 「使用人」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1990 直法 2－1 追加〕.

(1) 使用人은 常用 또는 日雇用을 區分하지 않으나 使用人兼務任員은 包含하지 않는다.

(2) 소위 駐在員事務所, 買入事務所, 情報收集事務所 等으로 令 第142條 第8項 〈國外事業所 等〉에 規定한 國外事業所 等(以下 이 節에서 「國外事業所 等」이라 한다)에 該當하지 않는 施設에 就勞하는 使用人은 國外事業所 等의 使用人에 該當하지 않는다.

(3) 國外事業所 等을 通하여 行하는 事業에 귀속될 수 있는 國外源泉所得(令 第142條 第3項에 規定하는 國外源泉所得을 말한다. 以下 이 節에서 同一)에 대해 外國法人稅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 國家 또는 地域에 있는 國外事業所 等에 就勞한 使用人은 國外事業所 等의 使用人에 該當한다.

(4) 法 第141條 第3號 〈外國法人에 關聯된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한 法人稅의 課稅標準〉에 規定한 代理人 等에 相當하는 者로 國外에 있는 者는 國外事業所 等의 使用人에 該當한다.

(國外使用人 比率의 計算 特例)

16－3－3 令 第140條 第3項 第2號 〈國外所得金額의 計算〉에 規定한 國外使用人 比率은 그 事業年度終了時에 國外事業所 等의 使用人 및 그 法人使用人의 總數에 根據하여 計算하지만 法人이 이들의 人數에 대해 當該 事業年度에서의 延人員 等 當該 事業年度에 從事한 使用人의 數에 根據하여 合理的인 人數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繼續適用을 條件으로 그것을 認定한다〔1990 直法 2－1 追加〕.

2. 外國法人稅의 直接控除〔1983 直法 2－3 追加〕

(源泉徵收의 外國法人稅 等)

16－3－4 日本에서의 利子, 配當 等에 對한 所得稅와 같이 所得에 대신

해 收入金額 또는 이것에 一定한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源泉徵收되는 稅는 令 第141條의 第2項 第3號 〈外國法人稅의 範圍〉에 열거한 稅에 該當하나,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의 配當所得에 對한 소위 源泉控除와 같이 外國法人으로부터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以下 이 節에서 「配當 等」이라 한다)의 支拂을 받을 때, 當該 外國法人의 配當 等의 金額 支拂의 基礎가 되는 所得金額에 對하여 부과된 外國法人稅額에 充當하기 위해 當該 配當 等의 金額에서 控除되는 金額은 同號에 열거한 稅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註) 소위 源泉控除에 따라 配當 等의 金額에서 控除된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控除後의 金額이 法 第69條 第4項 〈外國稅額의 間接控除〉에 規定된 配當 等의 金額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

(外國稅額控除의 適用時期)

16－3－5 法 第69條 第1項 또는 第2項 〈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에 의한 外國稅額의 控除는 外國法人稅를 納付하게 되는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 適用한다. 內國法人이 繼續하여 그 納付하는 것이 確定된 外國法人稅額을 費用으로 計上한 날(그 計上한 날이 外國法人稅를 納付한 날 및 其他 稅務上 認定되는 合理的인 基準에 該當하는 경우에 限한다)이 屬하는 事業年度에 이들 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그 計算을 認定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豫定納付 等을 한 外國法人稅에 대한 稅額控除의 適用時期)

16－3－6 內國法人이 소위 豫定納付 또는 見積納付 等(以下 이 節에서 「豫定納付 等」이라 한다)을 한 外國法人稅額에 대해서도 16－3－5에 定한 事業年度에서 法 第69條 第1項 또는 第2項 〈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을

適用하게 되나 當該 內國法人이 繼續하여 當該 外國法人稅額을 그 豫定納付 等에 관련된 事業年度의 外國法人稅에 대해 確定申告 또는 確定賦課 等이 있을 때까지는 假拂金 等으로 經理하고 그 確定申告, 確定賦課 等이 있었던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서 이들 項의 規定을 適用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計算을 認定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國外로부터의 利子, 配當 等에 대해 送金許可되지 않는 경우의 外國稅額控除)

16－3－7 國外者로부터 支拂받은 利子, 配當 等 또는 使用料(以下 16－3－7에서 「國外로부터의 利子, 配當 等」이라 한다)에 대해 그 送金이 許可되지 않기 때문에 2－1－31 〈送金이 許可되지 않는 利子, 配當 等의 歸屬時期의 特例〉에 따라 그 送金이 許可될 때까지 收益計上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當該 國外로부터의 利子, 配當 等에 대해 부과된 外國法人稅額에 대해서는 그 後 送金이 許可된 사실 및 其他의 理由에 의해 當該 國外로부터의 利子, 配當 等의 額을 收益으로 計上하게 되는 날까지는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 法 第69條 第1項 및 第2項 〈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註) 國外者로부터 支拂을 받은 配當 等의 金額에 대해 本文의 取扱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同條 第4項 〈外國稅額의 間接控除〉 規定의 適用年度도 그 配當 等의 金額을 收益으로 計上하게 되는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 以後의 事業年度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

(租稅條約에 의한 限度稅率超過稅額)

16－3－8 內國法人이 日本과 租稅條約을 締結한 나라에 源泉이 있는 所得을 保有한 경우의 當該 所得에 대해 當該 租稅條約에 定하는 限度稅率(租稅條約에서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 對한 相對國의 課稅에 대해 一定한

稅率 또는 一定한 比率로 計算한 金額을 넘지 않는 경우에 그 一定한 稅率 또는 一定한 比率을 말한다. 以下 16－3－8에서 같다)을 넘는 稅率에 의해 外國法人稅를 부과받을 때는 當該 外國法人稅額 中 限度稅率에 의해 計算한 稅額을 넘는 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原則的으로 還付를 받기까지는 假拂金 等으로서 損金에 算入하지 않고, 法 第69條 第1項 또는 第2項 〈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國外所得金額의 計算)

16－3－9 法 第69條 第1項 〈外國稅額의 控除〉에 規定한 控除限度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令 第142條 第1項 〈控除限度額의 計算〉에 規定한 當該 事業年度의 國外所得金額(以下 이 節에서 「國外所得金額」이라 한다)은 現地에서 外國法人稅의 課稅上 그 課稅標準으로 된 所得의 金額 그 자체는 아니고 當該 事業年度에 생긴 法 第138條 〈國內源泉所得〉에 規定한 國內源泉所得(以下 이 節에서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 以外의 所得에 관련된 當該 事業年度의 國外所得 金額(當該 事業年度에 생긴 國外源泉所得에 관련된 所得의 計算에 대해 法(措置法 및 其他 法人稅에 關한 法令으로 法 以外의 것을 包含)의 規定을 適用하여 計算한 경우에 當該 事業年度의 課稅標準으로 되어야 할 所得의 金額을 말한다)에 令 第142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한 후의 金額을 말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國外所得金額의 計算에서의 缺損金 移越控除의 適用)

16－3－10 國外所得金額은 法 第57條 또는 第58條 〈靑色申告書를 提出한 事業年度 缺損金의 移越 等〉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고 計算하였을 때의 金額에 의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國際海上運輸業에서의 運送原價 配分)

16－3－11 國內및 國外에 걸친 船舶에 의한 運送事業(以下 16－3－11에서 「國際海上運輸業」이라 한다)을 經營하는 內國法人의 國外所得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는 運送의 原價額은 原則的으로 個個의 運送別로 計算해야 하지만, 그 計算이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繼續하여 다음의 算式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當該 運送의 原價額으로 할 수 있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改正〕.

(算式)

$$\frac{\text{國際海上運輸業에 관련된 當該 事業年度의 運送의 原價額 合計額} \times \text{分母의 金額 中 國外에 源泉이 있는 것}}{\text{國際海上運輸業에 관련된 當該 事業年度의 運送收入額의 合計額}}$$

(註) 算式의 「當該 事業年度의 運送 原價額의 合計額」에는 그 運送을 위해 使用한 費用 中 當該 內國法人이 2－2－10 〈運送收入에 對한 原價額〉에 따라 그 支出日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計算한 金額이 包含된다.

(販賣費, 一般管理費 等의 配分)

16－3－12 當該 事業年度의 販賣費, 一般管理費 및 其他 費用(法에 規定한 充當金計定에의 算入額 및 措置法에 規定한 準備金의 積立額을 除外, 以下 16－3－12에서 同一) 中 令 第142條 第6項 〈共通費用의 配分〉에 規定한 共通費用(負債의 利子를 除外, 以下 16－3－14까지 「共通費用」이라 한다)의 金額을 同項의 規定에 따라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을 생기게 해야 하는 業務(以下 이 節에서 「國內業務」라 한다)와 國外源泉所得에 관련된 所得을 생기게 해야 하는 業務(以下 이 節에서 「國外業務」라 한다)에 配分하는 경우에 個個의 費目別로 計算하는 것이 困難하다고 認定될 때에

는 原則的으로 모든 共通費用을 一括하여 當該 事業年度의 賣上 總利益額(利子, 配當 및 使用料에 대해서는 그 收入金額으로 한다. 以下 16－3－12에서 같다) 中에 國外業務에 관련된 賣上 總利益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사용하여 國外業務에 關聯된 損金으로 配分해야 할 金額을 計算한다〔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註) 內國法人(金融 및 保險業을 주로 經營하는 法人을 除外)의 國外業務에 관련된 收入金額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利子, 配當 等 또는 使用料이고, 또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 中에 國外所得金額이 占하는 比率이 낮거나 하여 課稅上 弊害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該 事業年度의 販賣費, 一般管理費 및 其他 費用 中 國外業務에 關聯되는 것이 明白한 費用(例를 들면 國外의 關聯會社를 管理하는 部門의 人件費, 國外의 子會社로의 전출자에 관련된 給與의 較差 補塡金 等)만이 共通費用으로써 國外業務에 관련된 損金으로 配分해야 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負債利子의 配分)

16－3－13 當該 事業年度에 생긴 負債의 利子(社債發行差金의 償却額, 어음의 割引料, 貿易商社에서의 輸入決濟어음 借入金의 利子 等을 包含) 中 國外事業所 等의 國外業務를 위해 直接 관련하여 생긴 負債의 利子(以下 16－3－13에서 「直接利子」라 한다)에 該當하는 것 以外의 것(以下 16－3－14까지 「共通利子」라 한다)의 額에 대해서는 原則的으로 그 內國法人이 經營하는 주된 事業이 다음 중 어느 것에 該當하는가에 따라 각각 國內業務와 國外業務에 適正하게 配分한다〔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1) 都賣業 및 製造業 —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國外業務에 관련된 損金額으로 한다.

(算式)

$$\text{當該 事業年度에 생긴 共通利子額의 合計額} \times \frac{\text{分母의 各 事業年度終了時에서의 國外業務에 관련된 資產(國外事業所 等을 保有하지 않는 法人에 대해서는 國外源泉所得 發生의 源泉이 되는 貸付金, 有價證券 等으로 한다)의 帳簿價額(直接利子의 元本인 負債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除外)의 合計額}{\text{當該 事業年度終了時 및 當該 事業年度의 直前事業年度終了時에서의 總資產의 帳簿價額(直接利子의 元本인 負債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除外)의 合計額}}$$

(2) 銀行業 —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國外業務에 관련된 損金으로 한다.

(算式)

$$\text{國外源泉所得 發生의 源泉이 되는 貸付金, 有價證券 等(國外事業所 等이 屬하는 것을 除外) 當該 事業年度中의 平均殘高} \times \frac{\text{當該 事業年度에 생긴 共通利子額의 合計額}}{\text{預金, 借入金 等(直接利子의 元本인 負債를 除外)의 當該 事業年度中의 平均殘高} + \left\{\text{當該 事業年度終了時 및 當該 事業年度의 直前事業年度終了時에서의 自己資本額의 合計額} - \text{左의 各 事業年度終了時에서 固定資產 帳簿價額의 合計額}\right\} \times \frac{1}{2}}$$

(3) 其他의 事業 — 그 事業의 性質에 따라 (1) 또는 (2)에 열거한 方法에 準하는 方法에 의해 計算한 金額을 國外業務에 관련된 損金으로 한다.

(註) 1. 算式의 「國外業務에 관련된 資產」 및 「國外源泉所得 發生의 源泉이 되는 貸付金, 有價證券 等」에는 當該 事業年度에서 收益에 計上해야 할 利子, 配當 等의 額이 없었던 貸付金, 有價證券 等을 包含하지 않을 수 있다.

2. 算式의 「總資產의 帳簿價額」은 令 第22條 第1項 第1號 〈株式 等에 관련된

負債의 利子 計算〉 規定의 例에 따라 計算한 金額에 同項에 規定한 特定利子의 元本인 負債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에 의한다.

3. 算式의 「自己資本의 額」은 確定한 決算에 根據하여 貸借對照表의 資本部에 計上되어 있는 金額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또 「固定資產의 帳簿價額」은 當該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어 있는 法 第2條 第23號 〈固定資產의 定義〉에 規定된 固定資產의 帳簿價額에 따른다.

(確認에 의한 共通費用 等의 配分方法 選擇)

16－3－14 當該 事業年度의 共通費用 또는 共通利子額 中 國外業務에 관련된 損金으로 配分해야 할 金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16－3－12 또는 16－3－13에 따르는 것이 그 內國法人의 業務 內容에 適合하지 않다고 認定될 때에는 미리 管轄稅務署長(國稅局의 調査課 所管法人에 대해서는 管轄國稅局長)의 確認을 받아 當該 共通費用 또는 共通利子額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해 收入金額, 直接經費, 資產價額, 使用人의 數 및 其他 基準 中 業務의 內容에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基準에 따라 計算을 할 수 있도록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充當金 算入額 等의 配分)

16－3－15 法에 規定한 充當金計定에의 算入額 및 措置法에 規定한 準備金(特別償却準備金을 包含, 以下 16－3－16까지 同一)의 積立額 中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해야 할 金額의 計算은 대략 다음에 열거한 것에 따른다〔1983 直法 2－3 追加, 1988 直法 2－14, 1990 直法 2－1 改正〕.

(1) 貸損充當金計定에의 算入額은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의 貸金 中 國外事業所 等에 屬하는 것(國內 事業所 等에 屬하는 代金으로 國外源泉所得 發生의 源泉이 되는 것을 包含)의 金額의 比에 따른다.

(2) 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의 算入額은 當該 事業年度 退職給與의 要支給額의 增加額(令 第106條 第1項 第1號 〈退職給與發生額 基準〉에 열거한 金

額을 말한다) 中 當該 事業年度終了時에 國外事業所 等에 勤務하는 使用人에 관련된 部分의 金額의 比에 따른다.

(3) 海外投資 損失準備金의 積立額은 國外事業所 等에 屬하는 特定株式等 또는 特定海外債權(措置法 第55條 第1項 또는 同法 第55條의 2 第1項〈海外投資 損失準備金〉에 規定한 特定株式 또는 特定海外債權을 말한다)에 대해 積立한 金額을 國外所得金額 計算上의 損金으로 한다.

(4) (1)에서 (3)까지 열거한 充當金 또는 準備金 以外의 充當金 또는 準備金의 算入額 또는 積立額에 대해서는 그 充當金 또는 準備金의 性質 또는 目的에 따른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國外所得金額 計算上의 損金으로 한다.

(註) 國內의 事業所 等에 屬하는 國外者에의 貸付金, 外國株式 中 當該 事業年度 收益에 計上해야 할 利子, 配當額이 없는 것에 對應한 充當金 計定에의 算入額 또는 準備金의 積立額은 當該 事業年度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지 않을 수 있다.

(充當金 解體額 等의 配分)

16－3－16 當該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서 그 算入額 또는 積立額을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한 充當金 또는 準備金의 解體 等에 따른 益金算入額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益金算入額 中 그 算入을 하거나, 또는 積立을 한 事業年度에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한 金額에 對한 部分의 金額을 當該 解體 等에 관련된 事業年度의 國外所得金額 計算上의 益金으로 하게 되나, 使用人이 退職한 경우의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解體에 의한 益金算入額에 대해서는 當該 事業年度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는 退職給與額의 比率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 國外所得金額 計算上의 益金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評價損 等의 配分)

16－3－17 다음에 열거하는 金額은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 또는 益金에 算入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2－1 改正〕.

(1) 國外事業所에 屬하는 資産에 대해 評價換을 함에 따라 생긴 損失額(補修用部品 在庫調整計定에의 算入額을 包含)

(2) 國外事業所에 屬하는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해 생긴 換差損益(換算差損益을 包含)

(3) 國外事業所에 屬하는 代金 等에 대해 생긴 貸損損失額(債權償却 特別計定에의 算入額을 包含)

(技術 等 海外去來所得의 特別控除額 配分)

16－3－18 措置法 第58條 第1項〈技術 等 海外去來에 관련된 所得의 特別控除〉의 規定에 따라 當該 事業年度 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는 金額이 있을 경우에는 當該 損金에 算入하는 金額 中 同條 第2項에 規定한 技術 等 海外去來에 의한 收入金額으로 國外源泉所得에 관련된 것에 對한 部分의 金額은 當該 事業年度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는 것이므로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寄附金, 交際費 等)

16－3－19 當該 事業年度에 支出한 寄附金額 中에 法 第37條 第2項〈寄附金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에 의해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金額 中에 國外業務에 관련된 寄附金額에 對한 部分의 金額은 當該 事業年度 國外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다.

當該 事業年度의 交際費 等에 措置法 第62條 第1項 4〈交際費 等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에 의해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金額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缺損金의 되풀이에 의한 還付가 있었던 경우의 處理)

16－3－20 當該 事業年度前의 事業年度에 法 第69條 第1項에서 第3項까지 〈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의 適用 對象인 外國法人稅額의 全部 또는 一部가 法 第81條 第1項 〈缺損金의 되풀이에 의한 還付〉의 規定에 類似한 制度에 根據하여 還付된 경우에는 그 還付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 當該 外國法人稅額에 대해 減額이 있었던 것으로 하여 法 第26條 第2項 〈還付金等의 益金不算入〉및 法 第69條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外國法人稅를 賦課하지 않는 意義)

16－3－21 令 第142條 第5項 各號 〈外國法人稅가 부과되지 않는 國外源泉所得〉에 規定한 「外國法人稅를 賦課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令 第142條의 3 第3項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에 規定한 看做 納付外國法人稅額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租稅條約의 規定에 따라 外國法人稅가 賦課되지 않는 경우가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90 直法 2－1 追加〕.

(外國法人稅額의 高率負擔部分 判定)

16－3－22 內國法人이 納付하는 外國法人稅額 中에 令 第142條의 3 第1項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에 規定한 「所得에 對한 負擔이 高率인 部分의 金額」(以下 16－3－23에서 「高率負擔部分」이라 한다)이 있는가 아닌가는 外國法人稅別로 또, 當該 外國法人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別로 判定하는 것에 留意한다〔1990 直法 2－1 追加〕.

(豫定納付等을 한 경우의 高率負擔部分의 判定)

16－3－23 內國法人이 豫定納付 等을 한 外國法人稅額에 대해서는 16－

3－22에 불구하고 當該 外國法人稅額에 관련된 高率負擔部分은 없는 것으로 하여 法 第69條 第1項〈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 當該 豫定納付 等을 外國法人稅에 관련된 確定申告 또는 確定賦課에 의해 納付한 金額에 대해 同項 規定의 適用을 받을 때는 當該 確定申告 또는 確定賦課에 따라 確定한 外國法人稅額(豫定納付 等을 한 外國法人稅額을 控除하기 前의 金額을 말한다. 以下 16－3－23에서 同一)에 根據하여 第142條의 3 第1項〈控除對象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의 規定을 適用한다〔1990 直法 2－1 追加〕.

(註) 이 取扱을 適用함으로써 當該 確定된 外國法人稅額에 대해 高率負擔部分의 金額이 생기고 또 當該 高率負擔部分의 金額이 確定申告 또는 確定賦課에 의해 納付한 金額을 넘을 때에는 當該 超過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金額이 令第150條 第1項〈外國法人稅가 減額되는 경우의 特例〉에 規定한 減額控除對象外國法人稅額인 것으로 하여 同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外國法人稅額에 增額 等이 있는 경우)

16－3－24 內國法人이 外國法人稅額에 대해 法 第69條 第1項에서 第3項까지〈外國稅額의 控除〉規定의 適用을 받는 경우에 그 適用을 받은 事業年度後의 事業年度에 當該 外國法人稅額의 增額이 있고, 또 同條 第1項에서 第3項까지 規定의 適用을 받을 때는 當該 外國法人稅에 대해 그 增額後의 金額에 根據하여 法 第69條 第1項에 規定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以下 이 節에서 「控除對象國 法人稅額」이라 한다)을 再計算하여 增額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은 當該 外國法人稅額의 增額이 있었던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서 새로 생긴 것으로 하여 同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990 直法 2－1 追加〕.

(1) 增加하게 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이 增加한 外國法人稅額 以下인 경우 — 增加하게 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當該 事業

年度의 所得 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다.

(2) 增加하게 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이 增加한 外國法人稅額을 넘는 경우 — 增加하게 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 中 增加한 外國法人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當該 事業年度 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當該 增加한 外國法人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넘는 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上 益金에 算入한다.

(註) 外國法人稅額의 減額이 있었던 경우에 當該 外國法人稅에 대해 減額된 外國法人稅額을 넘어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을 減額하게 될 때에는 當該 超過部分의 控除對象에 대해서는 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에 대해서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한다.

(貸付金에 準하는 것)

16－3－25 令 第2條의 3 第2項 〈利子 等의 範圍〉에 規定한 「貸付金 및 其他 이것에 準하는 것」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90 直法 2－1 追加〕.

(1) 預金 中 預貯金 以外의 것

(2) 保證金, 賃貸保證金, 其他 이들과 類似한 債權

(3) 前渡金 및 其他 이들과 類似한 債權

(4) 他人을 위해 代替 支拂한 경우의 代替金

(5) 去來의 代價에 관련된 延拂債權

(6) 保證債務를 履行함에 따라 取得한 求償權

(7) 損害賠償金에 관련된 延拂債權

(8) 當座貸越에 관련된 延拂債權

(外國法人稅額에서 控除되는 것)

16－3－26 令 第142條의 3 第2項 〈利子 等에 관련된 控除對象 外國法

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에 規定한 利子 等의 收入金額을 課稅標準으로 源泉徵收 方法과 類似한 方法에 의해 賦課되는 外國法人稅(以下 16－3－26에서 「源泉徵收 外國法人稅라 한다) 中 當該 源泉徵收 外國法人稅가 賦課되는 國家 또는 地域에서 法 第68條 〈所得稅額의 控除〉의 規定과 類似한 制度에 의해 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 中 하나를 選擇 適用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當該 源泉徵收 外國法人稅에 대해 損金에 算入한 경우라도 令 第142條의 3 第2項의 規定은 適用하지 않는다〔1990 直法 2－1 追加〕.

(事業의 區分)

16－3－27 內國法人이 주로 經營하는 事業이 令 第142條의 3 第2項 第1號에서 第3號까지 〈利子 等에 관련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에 열거한 事業에 該當하는가 아닌가는 대략 日本標準產業分類(總務廳)의 分類를 基準으로 判定한다. 이 경우에 當該 法人이 두 가지 以上의 事業을 兼營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의 事業에 屬하는 收入金額 等 事業의 規模를 나타내는 事實로 判定한다〔1990 直法 2－1 追加〕.

(註) 日本標準產業 分類의 「大分類 J金融·保險業」의 「中分類67保險業」 中 「673 共濟事業」을 經營하는 法人은 生命共濟事業 및 損害共濟事業에 屬하는 收入金額의 合計額 等 이들 共濟事業의 規模를 나타내는 事實에 의해 同項 第2號 및 第3號에 열거한 生命保險事業 및 損害保險事業을 주로 경영하는 法人인가 아닌가를 判定한다. 이 경우에 當該 法人이 生命共濟事業 및 損害共濟事業을 兼營하고 있을 때는 當該 法人에 관련된 同項 第1號에 規定한 總收入金額의 合計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規則 第29條 第1項 第1號, 第2號 및 同條 第2項 第2號에 열거한 金額의 合計) － (規則 第29條 第1項 第3號 및 同條 第2項 第3號에 열거한 金額의 合計)

(所得率이 變動한 경우의 取扱)

16－3－28 內國法人이 外國法人稅額에 대해 法 第69條 第1項에서 第3

項까지 〈外國稅額의 控除〉 規定의 適用을 받은 경우에 그 適用을 받은 事業年度(以下 16－3－28에서 「適用事業年度」라 한다)에 관련된 所得率(令 第142條의 3 第2項 〈利子 等에 관련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에 規定한 所得率을 말한다. 이하 16－3－30까지 同一) 또는 同項 第4號 〈利子收入比率〉에 規定한 比率에 移動이 생겨 當該 外國法人稅額에 관련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에 移動이 생긴 때(16－3－24의 適用이 있는 경우를 除外)는 當該 適用事業年度에 當該 外國法人稅額에 대해 그 移動後의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에 根據하여 法 第69條 〈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에 留意한다〔1990 直法 2－1 追加〕.

(總收入金額)

16－3－29 所得率 計算의 基礎가 되는 令 第142條의 3 第2項 第1號 〈利子 等에 관련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에 規定한 納付事業年度 및 當該 納付事業年度開始日前 2年 以內에 開始한 各 事業年度(以下 16－3－29에서 「最近 3年 以內의 各 事業年度」라 한다)의 總收入金額(以下 16－3－30에서 「總收入金額」이라 한다)이란 令 第142條의 3 第2項 및 規則 第29條 第1項 또는 第2項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의 計算에 관련된 總收入金額 等〉 및 이 節에서 別段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 最近 3年 以內의 各 事業年度에서 益金에 算入되어야 할 收入金額의 合計額을 말하는 것에 留意한다〔1990 直法 2－1 追加〕.

(內部去來에 의한 益金額의 收入金額에서의 除外)

16－3－30 所得率을 計算하는 경우에서 充當金計定 또는 準備金計定의 解體에 의한 益金算入額, 法 第48條 〈保險差益 等에 관련된 特別計定 金額의 損金算入〉의 規定에 의한 特別計定의 益金算入額 및 措置法 第65條의 7 第4項 〈特定資產 買換의 경우 課稅의 特例〉의 規定에 의한 買換資產을 事

業用에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益金算入額 및 資產의 評價換에 의한 益金 等 內部去來에 관한 益金額은 規則 第29條 第1項 또는 第2項 〈總收入金額의 合計額에 相當하는 金額의 計算〉에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 總收入金額에 算入한다〔1990 直法 2－1 追加〕.

(資產의 賣却에 관련된 收入金額)

16－3－31 令 第142條의 3 第2項 第1號 및 規則 第29條 第1項 第1號 〈金融業 等에 관련된 總收入金額의 計算〉에 規定한 有價證券 및 固定資產(以下 16－3－31에서 「資產」이라 한다)의 賣却에 관련된 收入金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1990 直法 2－1 追加, 1990 直法 2－6 改正〕.

(1) 法 第50條 第1項 〈交換에 의해 取得한 資產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한 取得資產의 價額(當該 取得資產과 함께 取得한 令 第92條 第2項 第1號 〈交換에 의해 생긴 差益金額〉에 規定한 交換差金 等의 金額을 포함)

(2) 措置法 令 第64條 第1項 또는 第65條 第1項 〈收用換地 等에 따라 資產을 取得한 경우의 課稅 特例〉에 規定하는 補償金 또는 淸算金(收用 等의 代價에 該當하는 것에 限함)의 金額 또는 代替資產 또는 交換取得資產의 價額

(3) 措置法 第65條의 9 〈特定한 資產을 交換한 경우의 課稅 特例〉의 規定에 따라 交換日에 그 資產 價額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讓渡한 것으로 간주되는 同條 第1號에 規定한 交換讓渡資產의 價額

(4) 借地權의 讓渡代價額

(5) 令 第138條 第1項 〈借地權의 設定 等에 의해 地價가 현저하게 低下한 경우 土地 等의 帳簿價額의 一部 損金算入〉의 規定에 該當하는 경우 借地權의 設定 等에 따라 收受한 權利金 等의 金額

(6) 法 第51條 第1項 〈特定한 現物出資에 의해 取得한 有價證券 壓縮額

의 損金算入〉에 規定한 特定出資에 의해 取得한 株式(出資를 包含) 中 現物出資를 한 有價證券 및 固定資產에 관련된 取得時 價額의 合計額

(註) 1. 法 第47條 第1項 〈保險金 等으로 取得한 固定資產 等의 壓縮額 損金算入〉에 規定한 保險金 等은 資產의 賣却에 관련된 收入金額에 包含되지 않는다.
2. 不動產賣買業을 經營하는 法人이 소유한 土地 또는 建物일지라도 當該 法人이 使用하거나 또는 他에 貸付한 것(販賣 目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一時的으로 使用하거나 他에 貸付한 것을 除外) 또는 當該 法人이 使用을 豫定하여 長期間에 걸쳐 所有하고 있는 것이 明白한 것은 固定資產에 該當한다.

(資產의 取得價額)

16－3－32 令 第142條의 3 第2項 第1號 〈利子 等에 관련된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 및 規則 第29條 第1項 第1號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의 計算에 관련된 總收入金額〉에 規定하는 「資產의 取得價額」이란 當該 資產의 賣却直前 帳簿價額을 말하는 것이므로 留意한다〔1990 直法 2－1 追加〕.

(在庫資產의 販賣에 의한 收入金額)

16－3－33 規則 第29條 第3項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의 計算에 관련된 賣上 總利益額〉에 規定하는 「在庫資產의 販賣에 의한 收入金額」에는 在庫資產의 販賣에 관련된 契約이 解除된 것에 의해 收受한 違約金額은 포함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90 直法 2－1 追加〕.

(在庫資產의 販賣 以外의 事業에 관련된 收入金額)

16－3－34 規則 第29條 第3項 〈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되지 않는 것의 計算에 관련된 賣上 總利益額〉에 規定한 「當該 事業에 관련된 收入金額」은 同項에 規定한 賣上 總利益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收入金額에 限하는 것이므로 營業外損益 및 特別損益에 屬하는 收入金額은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1990 直法 2－1 追加〕.

3. 外國子會社에 관련된 外國法人稅의 間接控除 〔1983 直法 2－3 追加〕

(配當 等에 포함되는 것)

16－3－35 法 第69條 第4項 〈外國稅額의 間接控除〉의 「外國子會社로부터 받은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는 商法 第293條의 5 第1項 〈中間配當〉에 規定한 金錢의 分配와 類似한 것(以下 16－3－38까지 「中間配當」이라 한다) 및 法 第24條 〈配當額으로 간주되는 金額〉의 規定에 의해 配當額으로 간주되는 것(以下 16－3－40에서 「看做配當」이라 한다)이 包含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本店所在地國 以外의 國家 또는 地域에 賦課된 外國法人稅)

16－3－36 法 第69條 第4項 〈外國稅額의 間接控除〉의 「外國子會社의 所得에 對하여 賦課된 外國法人稅額」에는 同項에 規定한 外國子會社(以下 이 節에서 「外國子會社」라 한다)가 그 本店 또는 주된 事務所가 所在한 國家 또는 地域(以下 16－3－36에서 「本店所在地國」이라 한다)에서 부과된 外國法人稅額 이외에 當該 本店所在地國 以外의 國家 또는 地域에서 부과된 外國法人稅額(以下 16－3－36에서 「本店所在地國 以外 國家의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 當該 外國子會社가 當該 本店所在地國의 外國法人稅 課稅上, 當該 本店所在地國 以外 國家의 外國法人稅額에 대해 同條의 規定에 유사한 制度에 근거하여 稅額控除의 適用을 받고 있을 때는 그 控除後의 稅額이 當該 本店所在地國에서 부과되는 外國法人稅額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註) 本文의 「本店所在地國 以外 國家의 外國法人稅額」이란, 當該 外國子會社가 納付한 日本의 法人稅, 所得稅,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都民稅를 包含, 均等割에 관련된 것을 除外)額이 包含되는 것으로 한다.

(配當 等을 받게 되는 날)

16－3－37 法 第69條 第4項 〈外國稅額의 間接控除〉의 規定은 外國子會社에서 配當 等을 받게 되는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 以後의 事業年度에서 適用되는 것이나, 이 경우의 配當 等을 받게 되는 날은 2－1－27 또는 2－1－28 〈利益 配當 等의 所屬 時期〉에 따라 當該 配當金을 收益으로 計上하게 되는 날에 따른다. 단, 內國法人이 外國子會社에서 中間配當을 받은 경우에는 當該 中間配當을 받은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에서 當該 中間配當額에 대해 同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고, 當該 中間配當額에 관련된 外國子會社의 事業年度의 所得으로부터 나오는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以下 16－3－38까지 「確定配當」이라 한다)를 받게 되는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 以後의 事業年度에서 當該 中間配當額과 當該 確定配當額과의 合計額을 同項에 規定한 配當額으로 한다. 또 當該 中間配當에 관련된 外國源泉稅額(令 第147條 第1項 第1號 (2) 〈外國子會社의 配當 等에 관련된 外國法人稅額의 計算〉에 規定한 外國源泉稅額의 計算에 規定한 外國源泉稅額을 말한다. 以下 16－3－37에서 같다)과 當該 確定配當에 관련된 外國源泉稅額과의 合計額을 法 第69條 第4項에 規定한 配當額에 관련된 外國源泉稅額으로 同項의 規定을 適用받도록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認定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註) 本文 但書에 의한 경우에도 當該 中間配當額은 그것을 받게 되는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서 생긴 國外源泉所得으로 同條 第1項에 規定한 控除限度額의 計算에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

(中間配當이 있었던 경우의 配當事業年度)

16－3－38 內國法人이 外國子會社로부터 받는 中間配當額과 當該 中間配當額에 관련된 當該 外國子會社의 事業年度의 所得으로부터 나온 確定配當額에 대해 각각 事業年度를 다르게 하여 法 第69條 第4項 〈外國稅額의

間接控除〉 規定의 適用을 받는 경우에서의 令 第147條 〈外國子會社의 配當 等에 관련된 外國法人稅額의 計算〉 規定의 適用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1) 中間配當에 대해서는 當該 中間配當額 計算의 基礎가 된 期間을 同條 第2項 第1號 (1)에서 規定한 配當事業年度(以下 16－3－40까지 「配當事業年度」라 한다)로 하고 當該 期間에 대해 豫定納付 等을 한 外國法人稅額을 同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한 配當額에 관련된 事業年度의 外國法人稅額으로 한다.

(2) 確定配當에 대해서는 當該 確定配當額과 當該 中間配當額과의 合計額에 대해 當該 合計額의 計算에 基礎가 된 期間을 當該 合計額에 관련된 配當事業年度로 하여 同條 第3項 〈配當額에 관련된 事業年度에 두 가지 以上의 外國法人稅가 賦課되는 경우 等의 調整〉의 規定을 適用한다.

(配當 等에 充當할 수 있는 部分의 金額)

16－3－39 令 第147條 第2項 第1號 (1) 〈外國子會社의 配當 等에 관련된 外國法人稅額의 計算〉의 「配當額에 充當할 수 있는 部分의 金額」이란, 同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해 計算한 配當額에 관련된 事業年度의 所得 金額에서 다음과 같은 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말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1) 當該 所得의 金額에 對해 부과된 外國法人稅額

(2) 同項 第2號에 規定한 優先配當의 金額

(3)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租稅公課額으로 外國法人稅 以外의 것, 損金額에 算入되지 않는 任員賞與額 및 其他 當該 所得의 金額에서 社外에 流出한 金額(配當 等의 金額을 除外)

(4) 當該 外國子會社에 관련된 關係會社 所得의 全部 또는 一部가 當該

外國子會社의 所得인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當該 所得 金額이 增加한 경우에 그 增加한 部分의 金額

(看做配當에 관련된 配當 事業年度)

16－3－40 內國法人이 外國子會社로부터 看做配當을 받은 경우에 當該 看做配當額에 관련된 配當事業年度는 當該 外國子會社의 當該 看做配當額에 관련된 2－1－27의 (4) 〈利益 配當 等의 所屬 時期〉에 定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直前의 事業年度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配當金에 관련된 事業年度의 所得 金額)

16－3－41 令 第147條 第1項 〈外國子會社의 配當 等에 관련된 外國法人稅額의 計算〉에 規定한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 金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同條 第2項 第4號 規定의 適用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1) 同號의 「外國子會社가 當該 配當金을 算出하는 基礎로서 計算한 所得金額」은 當該 外國子會社가 그 決算에서 計上한 利益額(當該 利益額의 計算上 費用으로 控除한 法人稅에 相當하는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으로 한다.

(2) 同號의 「本店所在地國의 外國法人稅에 關한 法令에 의해 計算된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 金額」은 當該 所得 金額의 計算上 法 第57條에서 第59條까지 〈靑色申告書를 提出한 事業年度의 缺損金 移越 等〉의 規定과 類似한 制度에 의해 損金에 算入된 缺損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當該 缺損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3) 同號 (1)의 「法人稅에 相當하는 稅」에는 外國法人稅 以外에 外國法人稅에 附帶하여 부과되는 附帶稅에 相當하는 稅 및 其他 이것에 類似한 稅가

包含된다.

(4) 同號 (2)의 「外國法人稅를 부과하지 않도록 된 所得」에는 非課稅所得外에 益金에 算入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配當金이 包含된다.

4. 其他〔1983 直法 2－3 追加〕

(外國法人稅의 換算)

16－3－42 法 第69條 〈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의 外國法人稅額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에 열거한 外國換의 賣買時勢(以下 16－3－42에서 「換時勢」라 한다)에 따라 換算한 円換算額에 따른다〔1975 直法 2－21 追加, 1979 直法 2－31, 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1) 源泉徵收에 관련된 外國法人稅((3)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 —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換時勢

① 利子, 配當 等을 收益에 計上해야 할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終了日까지에 當該 利子, 配當 等에 부과된 外國法人稅에 대해서는 當該 利子, 配當金의 換算에 適用한 換時勢(利子에 대해 1의 計算期間에 관련된 利子를 2 以上의 事業年度에 걸쳐 收益에 計上하는 경우에는 當該 2 以上의 事業年度中 그 外國法人稅를 부과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 관련된 利子 金額의 換算에 適用한 換時勢)

② 利子, 配當 等을 收益에 計上해야 할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終了日後에 當該 利子, 配當 等에 부과된 外國法人稅에 대해 그 부과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서 外貨建의 去來에 關聯된 費用의 金額 換算에 適用하는 換時勢

(2) 國內에서 送金하는 外國法人稅((3)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 — 納付가 確定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에서 外貨建의 去來에 관련된 費用의 換算에

適用하는 換時勢. 단, 그 送金이 顯著하게 遲延되어 이루어질 경우를 除外하고, 그 送金日의 電信賣時勢(13의 2－1－3 〈取得時 換算法〉의 (2)의 ②에 定한 電信賣 時勢를 말한다)에 따를 수가 있다.

(3) 國外事業所得에 대해 納付하는 外國法人稅 — 納付가 確定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本支店 合併損益計算書 作成의 基準이 된 換時勢

(4) 外國子會社의 配當金에 관련된 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해 부과되는 外國法人稅 中 當該 外國子會社에 관련된 內國法人이 納付했다고 간주되는 것 — 다음 區分에 따라 각각 열거한 換時勢

① 外國子會社로부터 配當 等을 받은 날이 屬하는 當該 內國法人의 事業年度終了日까지에 當該 外國子會社에 對해 부과된 外國法人稅額 中 當該 內國法人이 納付했다고 간주되는 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當該 配當 等의 金額 換算에 適用한 換時勢

② 同日後에 當該 外國子會社에 對해 부과된 外國法人稅額 中 當該 內國法人이 納付했다고 간주되는 部分의 金額에 대해서는 그 부과된 날이 屬하는 當該 內國法人의 事業年度終了日의 電信賣買時勢의 중간값(13의 2－1－3의(2) ②에 定하는 電信賣買時勢의 중간값을 말한다. 以下 16－3－43에서 같다). 단, 繼續適用을 條件으로 하여 ①의 換時勢에 따를 수가 있다.

(註) 外國子會社에 부과된 外國法人稅額 中 內國法人이 納付했다고 간주되는 部分의 金額 計算은 當該 外國子會社가 그 會計帳簿의 作成에서 使用하는 外國通貨表示 金額에 의해 行하는 것으로 한다.

(5) 租稅條約에 따라 納付했다고 간주되는 外國法人稅. 그 外國法人稅를 納付한 것으로 한 경우에 適用해야 할 (1)에서 (4)까지에 열거한 換時勢

(外國子會社의 外國法人稅가 減額된 경우의 換算)

16－3－43 內國法人이 外國子會社에서 받은 配當金에 관련된 當該 外國

子會社의 外國法人稅額에 대해 法 第69條 第4項〈外國稅額의 間接控除〉規定의 適用을 받은 事業年度後의 事業年度에서 當該 外國法人稅額이 減額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令 第150條의 2〈外國子會社의 所得에 부과된 外國法人稅가 減額된 경우의 特例〉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同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해 減額控除對象 外國法人稅額으로 간주되는 金額의 計算은 當該 外國子會社가 그 會計帳簿의 作成에 있어서 使用하는 外國通貨表示의 金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그 計算된 金額의 円換算은 그 減額이 있었던 날의 電信賣買時勢의 중간값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1979 直法 2－31 追加, 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註) 內國法人이 納付한 外國法人稅額이 減額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令 第150條 規定을 適用받는 경우에서 그 減額에 관련된 還付金額의 円換算은 13의 2－2－1〈收益, 費用 等의 換算〉에 定하는 것에 따르므로 留意한다.

(國外所得金額 等의 計算 明細書의 添附)

16－3－44 內國法人이 法 第69條〈外國稅額의 控除〉의 規定에 適用을 받는 경우에는 確定申告書에 國外所得金額의 計算에 關한 明細를 記載한 書類를 添附해야 한다.

令 第147條 第2項 第4號〈外國子會社의 配當 等에 관련된 外國法人稅額의 計算〉에 規定한 外國子會社의 所得金額 計算의 明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1983 直法 2－3, 1990 直法 2－1 改正〕.

(外國法人稅를 부과한 것을 증명하는 書類)

16－3－45 規則 第29條의 2 第7號 및 第9號〈外國稅額控除를 받기 위한 書類〉의 「稅를 부과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稅에 관련된 書類」에는 申告書의 複寫 또는 現地의 稅務官署가 發行한 納稅證明書外에 更正 또는 決定에 관련된 通知書, 賦課決定通知書, 納稅告知書, 源泉徵收의 外國法

人稅에 관련된 源泉徵收票 및 其他 이에 準하는 書類 또는 이들 書類의 複寫가 包含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第 4 節 所得金額의 端數計算〔1991 課法 2－4 追加〕

(法人의 年 800萬엔 以下 所得金額의 端數計算)

16－4－1 法 第66條 第4項 〈事業年度가 1年에 미치지 않는 法人의 年 800萬엔 以下의 所得金額〉에 規定한 事業年度가 1年에 미치지 않는 法人이 同條 第2項 〈年 800萬엔 以下의 所得金額에 對한 輕減稅率〉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 同條 第4項에 規定한 「800萬엔을 12로 나누고, 그것에 當該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하여 計算한 金額」에 1,000엔 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는 그것을 切捨한다. 단, 當該 切捨하는 端數의 金額이 當該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대해 切捨되는 金額보다 많을 때는 그것을 切上한다〔1991 課法 2－4 追加〕.

第17章 申告, 納付 및 還付

第1節 申告 및 納付

(申請期限後에 災害 等이 생긴 경우 申告書 提出期限의 延長)

17-1-1 法人의 事業年度終了後日에서 45日을 經過한 후에 災害 및 其他 피할 수 없는 理由가 생겨서 決算이 確定되지 않음으로써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까지 確定申告書를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는 法 第75條 第1項(確定申告書 提出期限의 延長)의 規定에 準하여 取扱한다. 이 경우에는 確定申告書 提出期限 延長의 申請書는 當該 理由의 發生後 즉시 提出하는 것으로 하고, 當該 申請이 있었던 날부터 150日 以內에 承認 또는 却下가 없었던 때에는 稅務署長이 指定한 날로 하여 그 承認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申告書 提出期限의 延長 再承認)

17-1-2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 延長의 承認을 받은 法人이 指定된 提出期限까지 決算이 確定되지 않아서 確定申告書를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는 法人의 申請에 따라 그 指定日을 變更할 수 있다.

(通則法 第11條에 의한 提出期限의 延長과의 關係)

17-1-3 通則法 第11條 〈災害 等에 의한 期限의 延長〉의 規定에 根據하여 通則法令 第3條 第1項 〈地域指定에 의한 期限의 延長〉의 規定에 의한 期限 延長이 있었던 경우에, 災害 및 其他 피할 수 없는 理由에 의해 決算이 確定되지 않아서 確定申告書를 그 延長된 期限까지에 提出할 수가 없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該 期限을 法 第75條 第2項 〈確定申告書 提出期限의

延長〉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의 提出期限으로 同條 〈第5項을 除外〉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 稅務署長은 遲滯없이 延長 또는 却下의 處分을 하고, 또 同條 第7項 規定의 適用에 대해서는 同項 第7項 規定의 適用에 대해서는 同項 中「當該 事業年度終了日의 翌日 以後 2月을 經過한 날에서 同項」이라고 하는 것은,「國稅通則法 施行令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해 指定된 期限의 翌日에서 第1項」으로 解析한다.

(申告書 提出期限 延長의 特例 適用이 있는 法人)

17－1－4 法 第75條의 2 第1項〈確定申告書 提出期限 延長의 特例〉에 規定한「其他 이것에 유사한 理由」에 의해 決算이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에서 2月 以內에 確定되지 않는 法人이란 다음과 같은 法人을 말한다〔1975直法 2－21 追加〕.

(1) 會計監査人의 監査를 必要로 하지 않으나, 定款에서 事業年度終了日 3月 以內에 株主總會를 開催한다는 것을 定해 놓은 法人

(2) 保險業法 第15條의 2〈株主名簿의 閉鎖, 基準日의 特例〉의 規定에 따라, 事業年度終了後 4月 以內에 株主總會 開催가 認定되어 있는 保險株式會社

(3) 外國法人으로 그 本社의 決算確定手續이 事業年度終了後 2月 以內에 完了되지 않는 것

(4) 外國株主와의 關係로 決算確定까지에 時間이 소요되는 合併會社

(5) 會社 以外의 法人으로 當該 法人의 支部 또는 加入者인 單位協同組合等의 數가 많다는 것, 監督官廳의 決算承認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決算確定까지 時間이 소요되는 全國組織의 共濟組合, 協同組合聯合會 等

第2節 還　　付

(還付金額의 計算)

17－2－1 法 第81條 第1項 〈缺損金의 되풀이에 의한 還付〉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還付請求가 있었던 경우에 當該還付請求에 대해 還付해야 할 金額은 當該 金額의 算定을 한 때에서 確定되어진 還付所得事業年度의 所得 金額 또는 法人稅額 및 缺損事業年度의 缺損金額(當該 缺損金額이 請求에 관련된 還付金額 計算의 基礎로서 法人이 還付請求書에 記載한 缺損金額을 넘는 경우에는 그 記載한 金額)을 基礎로 하여 同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

(還付請求書만이 期限後에 提出된 경우의 特例)

17－2－2 法人이 法 第74條 〈確定申告〉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書를 期限內에 提出하고, 當該 申告書에 記載된 缺損金額에 根據하여 法人稅의 還付請求書를 期限後에 提出한 경우에 그 期限後의 提出이 錯誤에 의한 것 등 期限後의 提出에 대해 稅務署長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理由가 있다고 認定될때는 法第81條(缺損金이 되풀이에 의한 還付)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도록 한다.

(更生手續의 開始 意義)

17－2－13 法 第81條 第4項 〈缺損金의 되풀이에 의한 還付의 特例〉에 規定한 「更生手續의 開始」란, 會社更生法의 規定에 의한 更生手續의 開始申請(同法 第38條 〈手續開始의 條件〉의 規定에 따라 更生手續의 開始申請이 棄却된 경우 그 申請을 除外)이 있었던 것을 말한다〔1977 直法 2－33 追加〕.

第 18 章　退職年金 等 積立金額의 計算 〔1980 直法 2－15 改正〕

(財産計算時)

18－1－1 令 第157條 第1項 〈適格退職年金 契約에 관련된 退職年金 積立金額〉에 規定한 財産計算時란 年金信託契約書에 定해져 있는 收益計算期를 말한다.

(退職年金業務 等에 관련된 信託財産에 屬하는 有價證券의 評價 方法)

18－1－2 令 第84條 第1項 〈退職年金 等 積立金額의 計算〉에 規定한 退職年金業務(以下 第18章에서 「退職年金業務」라 한다)를 하는 信託會社는 그 保有한 各 適格退職年金契約, 各 厚生年金基金契約, 各 勤勞者財産形成給付契約 또는 各 勤勞者財産形成基金給付契約別로 그 契約에 관련된 信託財産에 屬하는 有價證券에 대해 當該 信託會社의 固有財産에 屬하는 有價證券과는 別個로 그 評價 方法을 選定하는 것에 留意한다〔1980 直法 2－15 改正〕.

(信託財産에서 控除하는 收益의 分配額)

18－1－3 令 第157條 第1項 第3號 〈信託財産에서 控除하는 收益의 分配額〉에 열거한 金額에는 다음이 包含된다.

(1) 當該 財産計算時에 事業主에 返還이 確定된 返還額 또는 賦金充當額

(2) 令 第159條 第7號 〈適格退職年金契約의 要件〉에 열거한 超過留保額의 返還額 또는 賦金充當額

(信託財産에서의 信託報酬 控除)

18－1－4 令 第157條 第1項, 第2項 또는 第4項 〈適格退職年金契約〉의 適格退職年金契約,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 勤勞者財産形成給付契約 또는 勤勞者財産形成基金給付契約에 관련된 信託財産의 「最終 財産計算時에 第1號 및 第2號에 열거된 金額의 合計額」에는 그 契約에 관련된 信託報酬로 그 計算期間이 當該 信託財産計算時에 終了하는 金額은 包含하지 않는다〔1980 直法 2－15 改正〕.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 判定의 基礎가 되는 賦金 等)

18－1－5 退職年金業務를 하는 法人이 締結한 各 厚生年金基金契約이 令 第156條의 2 第8號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의 意義〉에 規定한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에 該當하는가 아닌가를 判定하는 경우에 그 判定의 基礎가 되는 同號 (1)의 「通常賦金額」 또는 「厚生年金基金 水準 賦金額」은 當該 法人의 當該 事業年度開始日(退職年金業務를 하는 信託會社의 경우에는 同日前에 到來한 最終 信託財産計算時)의 直前 1月分으로 計算되는 이들 賦金額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1981 直法 2－16, 1988 直法 2－14 改正〕.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에 관련된 退職年金積立金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賦金 等)

18－1－6 退職年金業務를 하는 法人이 令 第157條 第2項 또는 第158條 第2項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에 관련된 退職年金積立金額〉의 規定에 따라 課稅厚生年金基金契約에 관련된 退職年金積立金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그 計算의 基礎가 되는 「通常賦金額」, 「厚生年金基金 水準 賦金額」, 「統合賦金額」 또는 「過去勤務賦金額」은 18－1－5에 準하여 計算할 수 있다〔1980 直法 2－15, 1988 直法 2－14, 1990 直法 2－6 改正〕.

(註) 이 경우에는 當該 契約이 令 第157條 第2項 第3號 (2) 또는 (3)에 該當하는 것

일 때(令 第158條 第2項 第2號 (2)에서 이들 規定의 例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는 當該 統合賦金額 및 過去勤務賦金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調整過去勤務賦金額은 令 第157條 第2項 第3號 (2) 또는 (3)의 規定에 따라 計算한 調整過去勤務賦金額의 2分의 1에 相當하는 金額에 따른다.

第 19 章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및 繼續하는 경우의 課稅 特例

第 1 節　解散하는 경우의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淸算中의 各 事業年度에서의 控除不足 所得稅額의 損金不算入)

19－1－1 淸算中의 內國普通法人이 淸算中의 各 事業年度에 대해 淸算事業年度 豫納申告書를 提出한 경우에, 法 第102條 第1項 第5號 〈控除를 다하지 못한 所得稅額 等〉에 規定된 控除不足額으로서 當該 申請書에 記載해야 할 金額이 있을 때에는 그 記載해야 할 金額은 當該 事業年度의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다.

(法人이 營業讓受를 위해 株式을 取得한 경우의 淸算所得의 計算 特例)

19－1－2 令 第162條 〈解散한 內國普通法人의 株式을 取得한 경우 解散에 따른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의 規定은 株主 1人 및 그 者와 令 第4條 〈同族關係者의 範圍〉에 定한 特殊한 關係 및 其他 그것에 準하는 關係가 있는 者에 의한 株式 또는 出資의 取得이 法人의 解散前이거나 解散後이거나를 不問하고 모두 適用한다는 것에 留意한다.

(營業承繼를 위해 取得한 株式의 平均取得價額 計算)

19－1－3 令 第162條 〈解散한 內國普通法人의 株式을 取得한 경우 解散에 따른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에 規定한 「株式 또는 出資의 一株 또는 1人當의 平均取得價額」은 法人의 事業에 全部 또는 重要部分을 承繼할 目的을 가지고 取得한 株式 또는 出資의 取得價額의 加重平均에 의한다.

(同族會社 等의 殘餘財産 確定)

19－1－4 解散한 同族會社 等으로 그 資産, 負債의 一切를 首腦者 等이 引繼하여 事業을 繼續하여 實質的으로 營業讓渡를 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그 引繼가 있었던 때에 殘餘財産이 確定된 것으로 取扱한다.

第2節 合併하는 경우의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合併時에 資本編入이 있었던 경우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 計算)

19－2－1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金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合併法人이 合併時에 被合併法人의 資本積立金額 또는 利益積立金額을 資本에 編入했기 때문에 被合併法人의 株主 等이 交付한 株式의 價額 및 金錢額의 合計額이 被合併法人의 合併當時 資本金額을 넘을 때 그 초과한 金額이 이들 積立金額 中 어느 部分에 속하는가는 令 第9條 〈合併差益金 中 被合併法人의 資本積立金額 및 合併減資益金에 속하는 金額〉의 規定에 따라 計算한 것에 따른다〔1975 直法 2－21 改正〕.

(配當 等으로 交付된 金額이 있는 경우 被合併法人의 益金積立金額 計算)

19－2－2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金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合併交付金 中에 被合併法人의 株主에 對한 利益 配當 等으로 交付된 金額이 있을 때는, 被合併法人의 合併時에서의 利益積立金額은 當該 金額에서 利益 配當 等으로 交付된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하는 것에 留意한다.

(合併時에 一株未滿 株式의 讓渡代金을 被合併法人의 株主에게 交付한 경우의 淸算所得 計算)

19－2－3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金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合併法人이 合併時에 被合併法人의 株主에게 交付하는 新株에 1株 未滿 株式이 생겨 그 1株 未滿 株式의 合計數에 相當하는 新株를 他에 讓渡하고, 그 讓渡代價를 1株 未滿 株式의 株主에게 交付한 때에는 그 1株 未滿 株式의 株主에 對해 그 1株 未滿 株式에 相當하는 新株를 額面金額에 따라 交付한 것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11 改正〕.

(看做交付金의 計算)

19－2－4 合併法人이 納付하는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等은 合併交付金으로 看做하여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金額을 計算하게 되므로 看做交付金이 增加하면 淸算所得金額도 增加하고 看做交付金과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와는 서로 循環的으로 增加하는 關係에 있으나, 이 경우의 看做交付金額은 다음의 算式에 의해 計算된 金額에 따른다〔1980 直法 2－15 改正〕.

(算式)

$$\text{淸算所得金額} \times \frac{\text{統合稅率}}{1-\text{統合稅率}}$$

(註) 1. 算式의 「淸算所得金額」은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等의 金額을 合併交付金額으로 간주하지 않고 計算한 경우의 淸算所得金額으로 한다.

2. 算式의 「統合稅率」은 다음에 열거한 率의 合計에 따른다.

(1)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率(法 第115條의 稅率)

(2) (1)의 法人稅率에 淸算所得에 對한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都民稅를 包含)의 稅率(均等割을 除外)을 곱한 率

(3) 淸算所得에 對한 事業稅의 稅率

(土地讓渡 利益金額이 있는 경우의 看做交付金의 計算)

19－2－4의 2 合併法人이 措置法 第62條의 3 第2號 第1號 (措置法令

第38條의 5 第1項 第4號 또는 同令 第38條의 6 第2項의 規定에 따라 代入 적용한 同令 第38條의 5 第1項 第4號를 包含) 〈土地重課의 適用이 있는 土地 等의 合併受入〉에 열거한 行爲를 한 경우에 當該 行爲에 의해 措置法令 第38條의 4 第4項 第4號(同令 第38條의 5 第3項 또는 同令 第38條의 6 第3項의 規定에 의해 準用되는 경우를 包含) 및 同令 第38條의 4 第5項 第4號(同令 第38條의 5 第3項 또는 同令 第38條의 6 第3項의 規定에 의해 準用되는 경우를 包含) 〈被合併法人에 관련된 土地讓渡利益金額의 計算〉의 規定을 適用하여 計算한 被合併法人에 관련된 土地讓渡利益金額이 있는 때는 當該 土地讓渡利益金額에 대해 措置法 第62條의 3 第1項, 第63條 第1項 또는 第63條의 2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여 算出한 法人稅額 및 當該 法人稅額에 관련된 道府縣民稅 및 市町村民稅(都民稅를 包含하고 이들의 稅에 관련된 均等轄을 包含하지 않는다. 以下 19－2－4의 2에서 「土地讓渡利益金額에 對한 法人稅額 等」이라 한다)는 法 第113條 〈合併의 경우의 看做交付金〉의 規定에 의해 合併交付金으로 간주되는 것에 留意한다. 이 경우에 19－2－4에 定하는 算式의 適用에 대해서는 當該 算式을 다음의 算式에 代入 適用하는 것으로 한다〔1980 直法 2－15 追加, 1988 直法 2－14, 1991 課法 2－4 改正〕.

(算式)

$$\left(\begin{array}{c}\text{淸算}\\ \text{所得}\\ \text{金額}\end{array} + \begin{array}{c}\text{土地讓渡}\\ \text{利益金額에}\\ \text{對한 法人}\\ \text{稅額 等}\end{array}\right) + \frac{\text{統合稅率}}{1-\text{統合稅率}} + \begin{array}{c}\text{土地讓渡}\\ \text{利益金額에}\\ \text{對한 法人}\\ \text{稅額等}\end{array}$$

(註) 算式의 「淸算所得金額」 및 「統合稅率」은 19－2－4의 註에 定하는 것에 따르는 것에 留意한다.

(併合 合併의 看做交付金 規定의 適用)

19－2－5 同令 第170條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被合併法人의 株式을 取得한 경우 合併에 따른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의 規定은 新設合併의 경우에서 合併에 의해 消滅한 法人이 合併에 의해 消滅한 다른 法人의 株式을 取得했을 때에도 適用하는 것으로 한다.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取得한 被合併法人의 株式에 대해 新株를 割當한 경우의 淸算所得)

19－2－6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取得한 被合併法人의 株式에 대해 合併時에 新株의 割當을 한 경우에도 그 取得에 의해 淸算所得이 不當하게 減少한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取得價額에서 割當된 新株의 額面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合併交付金으로 간주하고 令 第170條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被合併法人의 株式 等을 取得한 경우의 合併에 따른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의 規定을 適用한다.

(併合 合併에 관련된 看做交付金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 경우)

19－2－7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被合併法人의 株式(出資를 包含, 以下 19－2－7에서 같음)을 取得한 경우에도 當該 合併法人에 對해 當該 株式을 讓渡한 者가 그 讓渡에 대해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課稅를 받았을 때는 當該 株式에 대해서는 同令 第170條 〈合併法人이 合併前에 被合併法人의 株式 等을 取得한 경우의 合併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 단, 當該 株式의 全部 또는 一部가 當該 讓渡를 한 者에게 의해 合併을 豫期하여 他者로부터 取得한 것이고, 또 當該 他者(當該 他者의 事情을 알고 當該 株式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한 他者를 包含)의 當該 株式의 讓渡에 대해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課稅를 받지 않는 경우에 그 課稅를 받지 않는 部分의 株式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1980 直法 2－15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第 20 章　外國法人의 納稅義務 〔1983 直法 2－3 追加〕

第 1 節　國內源泉所得〔1983 直法 2－3 追加〕

1. 國內에서 行하는 事業所得〔1983 直法 2－3 追加〕

(製造 等에 해당하는 行爲)

20－1－1 同令 第176條 第1項 第1號 〈販賣業 所得의 源泉地〉에 規定한 「製造, 加工, 育成 및 其他의 價値를 增加시키기 위한 行爲」 및 同項 第2號에 規定한 「採取」에는 다음과 같은 行爲가 포함된다〔1983 直法 2－3 追加〕.

(1) 自己의 計算으로 原材料를 購入하고 그것을 미리 指示한 條件에 따라 下請加工시켜서 完成品으로 하는 소위 製造都賣業者가 하는 行爲

(2) 自己가 製造한 物品에 他로부터 購入한 物品 等을 加하여 組立하거나 또는 組合하는 行爲 中, 組立을 하거나 組合을 하여 物品에 自己가 製造했다는 表示를 하거나 하여 그 行爲가 製造라고 認定되는 경우의 當該 行爲

(3) 動植物을 栽培, 採取, 捕獲, 飼育 또는 養殖(繁殖을 包含)하는 行爲

(4) 鑛物(土石을 包含)을 採掘 또는 採取하는 行爲

(製造 等에 該當하지 않는 行爲)

20－1－2 令 第178條 第1項 第1號 〈販賣業의 所得 源泉地〉에 規定한

「製造, 加工, 育成 및 其他의 價値를 增加시키기 위한 行爲」에는 다음과 같은 行爲는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하나의 設備를 構成해야 할 機械, 裝置 또는 하나의 機械를 構成해야 할 部品 또는 附屬品을 購入하여 단순히 한 곳에 모으는 行爲

(2) 他로부터 購入한 物品에 단순히 손질, 整理, 選別 等을 하는 行爲

(3) 他에서 購入한 物品에 自己의 商標, 이름 等을 기입할 뿐인 行爲

(4) 미리 自己의 指示에 따라 自己의 商標, 이름 等을 表示할 것을 약속하여 製造하게 한 物品을 購入하는 行爲(20－1－1의 (1)에 열거한 行爲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

(製造所得과 販賣所得의 區分)

20－1－3 令 第176條 第1項 第2號 〈製造業의 所得 源泉地〉에 規定한 「國內業務에 대해 생겨야 하는 所得」을 計算하는 경우에 그 計算의 基礎가 되는 在庫資產의 通常 去來條件에 의한 去來價格(同項에 規定한 法人의 業務를 國內業務와 國外業務로 區分하고, 이들 業務를 각각 獨立한 事業者가 行하고 또 이들 事業者間에 通常의 去來 條件에 따라 當該 在庫資產의 讓渡가 行하여졌을 경우의 그 去來價格을 말한다. 以下 20－1－4에서 「通常의 去來價格」이라 한다)은 當該 法人의 業種, 業態 및 當該 在庫資產의 性質 等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價格을 參酌하여 合理的으로 算定한 金額에 따른다〔1983 直法 2－3 追加〕.

(1) 當該 在庫資產과 同種 또는 類似한 在庫資產에 대해 獨立한 事業者間에 去來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通常 成立한다고 認定되는 都賣價格

(2) 當該 在庫資產의 他者에 對한 讓渡價額에서 그 讓渡를 위해 通常 必要한 販賣費, 一般管理費, 其他 費用과 그 讓渡에 관련된 通常 利潤額의 合計額을 控除하여 計算한 價格

(3) 當該 在庫資產의 國內 또는 國外에서의 製造 等의 原價額에 그 製造 等에 관련된 通常 利潤額을 加算하여 計算한 價格

(製造所得과 販賣所得 區分의 特例)

20－1－4 令 第176條 第1項 第2號 〈製造業의 所得 源泉地〉에 規定한 「國內業務에 대해 생겨야할 所得」을 計算하는 경우에, 그 在庫資產의 性質 等으로 보아 20－1－3에 의해 當該 在庫資產에 관련된 通常의 去來價格을 算定하는 것이 현저하게 困難하기 때문에 外國法人이 繼續하여 當該 事業年度에 當該 在庫資產의 讓渡에 따라 생긴 所得을 製造 等의 原價額과 讓渡에 관련된 業務를 위해 사용한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其他 費用과의 比, 國內業務에 관련된 資產 價額과 國外業務에 관련된 資產 價額과의 比, 其他 基準 中 그 外國法人의 業務 內容 等에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所得을 각각 製造 等에 관련된 所得 또는 讓渡에 관련된 所得으로 하고 있을 때는 課稅上 弊害가 없는 한 그 計算을 認定한다〔1983 直法 2－3 追加〕.

(本支店間의 內部利子 等)

20－1－5 令 第176條 第3項 第2號 〈內部利子 等〉의 規定은 예를 들면 外國法人이 本店의 事業資金을 國內에 있는 支店의 事業用으로 提供하고, 그것에 대해 本支店間에서의 金錢 貸借로 하여 支店에서 本店에 支拂利子를 計上한 경우와 같이 同號에 規定한 資產을 國內 또는 國外에서 行하는 事業用으로 提供함으로써 本支店間 또는 支店相互間에 소위 內部利子, 內部使用料 等을 計上한 경우일지라도 이들 內部去來로부터는 所得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定한 것임을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國內에 있는 在庫資產의 讓渡)

20－1－6 外國法人이 讓渡한 在庫資產에 대해 令 第176條 第4項 第1號〈國內에서의 在庫資產의 讓渡〉에 열거한 事實이 있는 경우에는 同項 第2號 또는 第3號에 열거한 事實의 有無에 關係없이 國內에서의 當該 在庫資產의 讓渡가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예를 들면 外國法人의 國外에 있는 事業所 等이 國外에서 그 讓渡에 관한 契約을 締結하기 위한 注文의 取得, 協議 其他 그 契約締結에 이르기까지 一切의 行爲를 行한 경우일지라도 當該 外國法人의 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이 當該 在庫資產을 國內에서 購入하고 그것을 直接 國外의 讓受人에게 送付한 것과 같은 때(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이 그 送付를 他者에게 代行시켰을 때를 包含)은 當該 在庫資產의 讓渡에 의한 所得은 그 全部가 國內源泉所得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在庫資產의 購入에 관련하여 받는 리베이트 等)

20－1－7 外國法人이 國內에서 購入한 在庫資產의 購入 또는 移送에 관하여 받는 購入리베이트, 運賃리베이트 等은 當該 在庫資產의 讓渡에 의해 생기는 所得에 包含되고 令 第176條 第5號〈國內에 源泉이 있는 所得〉에 열거한 所得에는 包含되지 않는다〔1983 直法 2－3 追加〕.

(國內에서 行하여진 契約의 締結 等)

20－1－8 令 第176條 第4項 第2號 또는 第3號〈契約의 締結地 等〉에 規定한 契約의 締結, 契約을 締結하기 위한 注文의 取得, 協議, 其他의 行爲中 重要한 部分이 國內에서 行하여진 경우에는 이들의 行爲가 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을 通하여 行하여진 것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同項의 規定을 適用한다〔1983 直法 2－3 追加〕.

(註) 同項 第2號 또는 第3號에 열거한 事實이 있는가 없는가의 判定上, 이들 號에 規定한 契約의 締結, 契約을 締結하기 위한 注文의 取得, 協議, 其他의 行爲 中

重要한 部分이 外國法人 自身에 의해 行하여 졌는가 또는 그 代理人 等에 의해 行하여 졌는가는 判定에 關係가 없는 것에 留意한다.

2. 國內에 있는 資産의 所得〔1983 直法 2－3 追加〕

(國內에 있는 資産)

20－1－9 法 第138條 第1號〈國內에 있는 資産 所得 等〉規定의 適用上, 外國法人이 保有한 資産(在庫資産인 動産을 除外, 以下 20－1－9에서 같다)가 國內에 있는가 아닌가는 令 第177條〈國內에 있는 資産의 所得〉에 定해져 있는 것에 따르는 것 이외에 大略 다음에 열거한 資産의 區分에 따라, 각각 다음에 열거한 場所가 國內에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判定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動産－그 住所. 단, 國外 또는 國內를 向하여 輸送中인 動産에 대해서는 그 目的地로 한다.

(2) 不動産 또는 不動産 위에 존재하는 權利－그 不動産의 所在

(3) 登錄된 船舶 또는 航空機－登錄機關의 所在

(4) 鑛業權, 租鑛權 또는 採石權(이들 權利와 類似한 權利를 包含)－그 權利에 관련된 鑛區 또는 採石場의 所在

(登錄公社債)

20－1－10 令 第177條 第1項 第1號〈國內에 있는 資産 所得〉에 열거한 債券에는 社債 等 登錄法의 規定에 따라 登錄되었기 때문에 債券이 發行되지 않는 公社債가 包含된다〔1983 直法 2－3 追加〕.

(資産의 運用 또는 保有에 의해 생기는 所得)

20－1－11 法 第138條 第1號〈國內에 있는 資産 所得〉에 規定한 國內

에 있는 資產의 運用 또는 保有에 의해 생기는 所得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該當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88 直法 2－1 改正〕.

(1) 公社債를 國內에서 貸付한 경우의 貸付料 및 令 第177條 第1項 第1號 〈國內에 있는 資產 所得〉에 열거한 國債, 地方債 또는 債券에 관련된 償還差益 또는 發行差金

(2) 同項 第2號에 열거한 債權의 利子 및 當該 債權 또는 法 第138條 第6號에 規定한 貸付金에 관련된 債權을 그 債權金額에 미치지 않는 價額으로 取得한 경우에 그 미치지 않는 部分의 金額

(3) 國內에 있는 供託金에 대해 받는 利子

(4) 個人으로부터 받는 動產(當該 個人이 國內에서 生活用으로 사용하는 것에 限함)의 使用料

(註) 令 第177條 第1項 第4號에 열거한 權利는 匿名組合契約 中 令 第184條 各號 〈匿名組合契約 等의 範圍〉에 열거한 것 以外의 것에 根據하여 利益의 分配를 받는 權利에 限하는 것에 留意한다.

3. 人的役務提供事業의 所得〔1983 直法 2－3 追加〕

(旅費, 滯在費 等)

20－1－12 法 第138條 第2號 〈人的役務提供事業의 所得〉에 열거한 代價에는 外國法人이 同號에 規定한 人的役務를 提供하기 위해 필요한 往復旅費, 國內滯在費 等의 全部 또는 一部를 當該 代價의 支拂者가 負擔하는 경우에 그 負擔하는 金額이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藝能人 等의 役務 提供에 관련된 代價의 範圍)

20－1－13 令 第179條 第1號 〈人的役務의 提供을 主된 內容으로 하는

事業의 範圍〉에 열거한 藝能人 또는 職業運動家의 役務 提供을 主된 內容으로 하는 事業에 관련된 法 第138條 第2號 〈人的役務提供事業의 所得〉에 열거한 代價에는 國內에서 當該 事業을 行하는 外國法人이 當該 藝能人 또는 職業運動家의 實演 또는 實技, 當該 實演 또는 實技의 錄音·錄畫에 대한 放送·放映 其他 이들과 類似한 것의 代價로서 支拂을 받는 것으로 當該 實演 또는 實技에 관련된 役務의 提供에 對한 代價와 함께 支拂받는 것이 包含된다〔1983 直法 2－3 追加〕.

(機械設備의 販賣 等에 附隨하여 行하는 技術役務의 提供)

20－1－14 令 第179條 第3號 〈人的役務의 提供을 주된 內容으로 하는 事業의 範圍〉에 規定하는 「機械設備의 販賣 其他事業을 行하는 者의 主된 業務에 附隨하여 行하여지는 경우에서의 當該 事業」이란 다음과 같은 行爲에 관련된 事業을 말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機械設備의 販賣業者가 機械設備의 販賣에 따라 그 販賣先에 對해 當該 機械設備의 設置, 組立, 試運轉 等을 위해 技術者 等을 派遣하는 行爲

(2) 工業所有權, 노하우 等의 權利者가 그 權利의 提供을 主된 內容으로 하는 業務를 行하는 것에 따라 그 提供先에 對해 그 權利의 實施를 위해 技術者 等을 派遣하는 行爲

(註) 本文에 열거한 것과 같은 行爲로 國內에서 行하여지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所得은 法 第138條 第1號 〈國內에서 行하는 事業의 所得 等〉에 規定한 國內에서 行하는 事業으로부터 생기는 所得에 包含된다.

4. 不動産 等의 貸付에 의한 所得〔1983 直法 2－3 追加〕

(船舶 또는 航空機의 貸付)

20－1－15 法 第138條 第3號 〈船舶 等의 貸付에 의한 所得〉에 열거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貸付에 의한 代價란, 船體 또는 機體의 賃貸借인 소위 裸用船(機)契約에 根據하여 支拂을 받는 代價를 말하며 乘組員과 함께 船體 또는 機體를 利用하게 하는 소위 定期用船(機)契約 또는 航海用船(機)契約에 根據하며 支拂을 받는 代價는 이것에 該當하지 않는다〔1983 直法 2－3 追加〕.

(註) 1. 소위 定期用船(機)契約 또는 航海用船(機)契約에 根據하여 支拂을 받는 用船料는 運送事業에 의해 생기는 所得에 該當하는 것으로 하고, 當該 用船料에 관련된 所得 中 國內業務에 대해 생겨야 할 所得 區分은 令 第176條 第1項 第4號 〈國際運輸業 所得의 源泉地〉의 規定에 따른다.

2. 外國法人이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 對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貸付(소위 裸用船(機)契約에 의한 것에 限함)에 根據하여 支拂을 받는 代價는 설혹 當該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이 그 貸付를 받은 船舶 또는 航空機를 오로지 國外에서 事業用으로 提供하는 경우라도 法 第138條 第3號에서 열거하는 國內源泉所得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한다.

(船舶 等의 貸付에 따른 技術指導의 代價)

20－1－16 外國法人이 法 第138條 第3號 〈船舶 等의 貸付에 의한 所得〉에서 規定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貸付함에 따라 當該 船舶 또는 航空機의 運航 또는 整備에 必要한 技術指導를 하기 위해 役務를 提供한 경우에는 그 貸付에 관련된 契約書 等에서 그 貸付에 관련된 代價額과 當該 役務의 提供에 관련된 代價額이 明確하게 區分되어 있는 때를 除外하고 그 代價額의 全部가 船舶 또는 航空機의 貸付에 의한 代價額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5. 債券의 利子 等〔1983 直法 2－3 追加〕

(登錄公社債)

20－1－17 20－1－10은 法 第138條 第4號 (1) 〈債券의 利子 等의 所得〉에서 열거하는 債券의 範圍에 대하여 準用한다〔1983 直法 2－3 追加〕.

6. 貸付金利子의 所得〔1983 直法 2－3 追加〕

(國內業務에 관련된 貸付金의 利子)

20－1－18 다음에 열거하는 貸付金의 利子는 그 貸付를 받은 者의 國外에서 行하는 業務에 明確하게 관련된 것을 除外하고 原則的으로 法 第138條 第6號 〈貸付金利子의 所得〉에서 規定하는 貸付金의 利子에 該當하는 것으로 取扱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에 對해 提供된 貸付金의 利子

(2) 國內에서 業務를 行하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對해 提供된 貸付金의 利子로 다음 중 어느 것인가에 該當하는 것

① 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을 通해 提供된 貸付金의 利子

② 當該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 관련된 所得金額의 計算上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는 것

(註) 本文의 取扱에 따라서는 同號에서 規定하는 貸付金의 利子에 該當하지 않는 利子라 해도 令 第176條 第5項 〈國際投資業의 所得源泉地〉에서 規定하는 所得에 該當하는 것은 國內源泉所得으로 되는 것에 留意한다.

(貸付金에 準하는 것)

20－1－19 國內에서 業務를 行하는 者에 對한 債權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法 第138條 第6號 〈貸付金利子의 所得〉에서 規定하는 「이것에 準

하는 것」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預置金 中에서 同條 第4號 ② 〈預貯金 利子 等의 所得〉에서 열거하는 預貯金 以外의 것

(2) 保證金, 賃貸保證金, 其他 이와 類似한 債權

(3) 前渡金, 其他 이와 類似한 債權

(4) 他人 때문에 代替支拂을 한 境遇의 代替金

(5) 去來의 代價에 關聯된 延拂債權

(6) 保證債務를 履行함에 따라 取得한 求償權

(7) 損害賠償金에 關聯된 延拂債權

(8) 當座貸越에 關聯된 債權

7. 使用料 等의 所得〔1983 直法 2－3 追加〕

(國內業務에 關聯된 使用料 等)

20－1－20 다음에 列擧하는 資產의 使用料 또는 代價는 그 提供을 받은 者의 國外에서 하는 業務에 明確하게 關聯된 것을 빼고 原則的으로 法 第138條 第7號 〈使用料 等의 所得〉에서 規定하는 使用料 또는 代價에 該當하는 것으로 取扱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에 對하여 提供된 同號 ①부터 ③까지에 列擧하는 資產의 使用料 또는 代價

(2) 國內에서 業務를 하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對하여 提供된 當該資產의 使用料 또는 代價로서 다음 중 어느 것인가에 該當하는 것

① 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을 通해 提供된 資產의 使用料 또는 代價

② 當該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 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金額의 計算上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는 것

(註) 예를 들어 外國法人이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에 提供한 工業所有權이 國外에서 業務를 하는 他者(以下 20－1－20에서 「再實施權者」라 함)의 當該 國外에서의 業務用에 提供되는 것으로 인해 當該 外國法人이 當該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으로부터 支拂받는 使用料 中에서 再實施權者의 使用에 關聯된 部分의 使用料(支拂받을 使用料가 當該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이 再實施權者로부터 受領하는 使用料를 넘을 때에는 그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이 受領하는 使用料에 達할 때까지의 部分의 金額에 限함)는 本文의 「國外에서 하는 業務에 關聯된 것이 明確한 것」에 該當한다.

(工業所有權者 等의 意義)

20－1－21 法 第138條 第7號① 〈使用料 等의 所得〉의 「工業所有權, 其他 技術에 關한 權利, 特別한 技術에 의한 生產方式 또는 이것들에 準하는 것」(以下 20－1－23까지 「工業所有權者」라 함)이란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의 工業所有權 및 그 實施權 외에 이들 權利의 目的은 아니나 生產 및 其他 業務에 關해 反復하여 使用할 수 있을 程度로 形成된 創作 즉, 特別한 原料·處方·機械·器具·工程에 의하는 등 獨自的인 考案 또는 方法을 使用한 生產에 대한 方式, 여기에 準하는 秘訣·祕傳 및 其他 特別한 技術的 價値를 가진 知識 및 意匠 等을 말한다. 따라서 노하우는 물론 機械, 設備 等의 設計 및 圖面 等에 體化된 生產方式, 디자인도 여기에 包含되나 海外에서의 技術의 動向, 製品의 販路, 特定한 品目의 生產高 等의 情報 또는 機械, 裝置, 原材料 等의 材質의 鑑定 또는 性能의 調査, 檢査 等은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다〔1983 直法 2－3 追加〕.

(使用料의 意義)

20－1－22 法 第138條 第7號① 〈使用料 等의 所得〉 工業所有權 等의 使用料란 工業所有權 等의 實施, 使用, 採用, 提供, 傳授 또는 그와 關聯된 實施權 또는 使用權의 設定, 許諾 또는 그 讓渡의 承諾에 대해 支拂받는 代價의 一切을 말하고 同號 ②의 著作權의 使用料란 著作物(著作權法 第2條

第1項 第1號〈定義〉에서 規定하는 著作物을 말한다. 以下 20－1－22에서 같음)의 複製, 上演, 演奏, 放送, 展示, 上映, 飜譯, 編曲, 脚色, 映畫化 및 其他 著作物의 利用 또는 出版權의 設定에 대해 支拂받는 代價의 一切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들 使用料에는 契約을 締結하는 데 있어 支拂받는 所謂 契約金, 權利金 외에 이들을 提供하거나 傳授하기 위해 所要되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해 支拂받는 것도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人的役務 等의 提供代價와 使用料와의 區分)

20－1－23 工業所有權 等을 提供하거나 傳授하기 위해 圖面, 紙型, 見本等의 物 또는 人的役務를 提供하고, 또 그 提供 또는 傳授 代價의 모든 것을 그 提供한 物 또는 人的役務 提供의 代價로 支拂받는 境遇에는 當該 代價로 支拂받는 것 中에서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該當하는 것은 法 第138條 第7號① 〈使用料 等의 所得〉에 列擧하는 使用料에 該當하는 것으로 하고 其他의 것은 當該 物 또는 人的役務 提供의 代價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當該 代價로써 支拂받는 金額이 그 提供하거나 傳授한 工業所有權 等을 使用한 回數, 期間, 生產高 또는 그 使用에 의한 利益額에 따라 算定되는 것

(2) (1)에 列擧하는 것 외에 當該 代價로써 支拂받는 金額이 當該 圖面, 其他 物의 作成 또는 當該 人的役務의 提供 때문에 所要한 經費에 通常의 利潤額을 加算한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넘는 것

(註) 本文의 物 또는 人的役務 提供의 代價에 該當하는 것은 通常 그 圖面, 等이 作成되거나 또는 人的役務 提供이 이루어지는 場所에 源泉이 있는 所得이 된다. 또, 이들 所得 中에서 國內源泉所得이 되는 것은 同條 第1號 또는 第2號에 列擧하는 所得에 該當한다.

(備品範圍)

20－1－24 令 第181條 第1項〈國內業務에 關聯된 使用料 等〉에서 規定하는 器具 및 備品에는 美術工藝品, 古代의 遺物 외에 觀賞用, 興行用, 其他 이에 準하는 用途로 提供되는 生物이 包含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8. 其他〔1983 直法 2－3 追加〕

(損害賠償金 等)

20－1－25 法 第138條 第2號에서 第11號까지〈國內源泉所得〉에서 列擧하는 代價, 利子, 使用料 等(以下 20－1－25에서 「代價 等」이라 함)에는 이들 代價 等에 대신하는 性質을 가진 損害賠償金, 其他 이와 類似한 것(債務의 履行遲滯에 의한 損害金을 包含)이 包含되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88 直法 2－1 改正〕.

第 2 節 課稅標準〔1983 直法 2－3 追加〕

1. 國內에 支店 等을 가진 外國法人〔1983 直法 2－3 追加〕

(支店, 出張所 等에 準하는 것)

20－2－1 令 第185條 第1項 第3號〈支店, 其他 事業을 하는 一定 場所〉의 「前2號에서 列擧하는 場所에 準하는 것」에는 農園, 養殖場, 植林地, 빌딩 等 외에 外國法人이 國內에서 그 事業活動의 據點으로 하는 호텔의 1室, 展示賣場, 其他 이와 類似한 場所가 包含된다〔1983 直法 2－3 追加〕.

2. 國內에서 長期建設作業 等을 하는 外國法人 〔1983 直法 2－3 追加〕

(1年을 넘는 建設作業 等)

20－2－2 外國法人이 國內에서 하는 法 第141條 第2號 〈國內에서 長期建設作業 等을 하는 外國法人〉에서 規定하는 建設作業 等이 다음에 列擧하는 境遇에 該當할 때에는 同號 規定의 適用上 當該 建設作業 等은 1年을 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그 建設作業 等에 所要되는 期間이 1年을 넘는 것이 契約 等으로 보아 明白한 境遇

(2) 하나의 契約에 根據하여 建設作業 等에 所要되는 期間이 1年 以下인 境遇라도 여기에 繼續하여 他의 契約 等에 根據하여 建設作業 等을 하여 이에 所要하는 期間이 通算하여 1年을 넘을 때

(機械設備 等의 販賣에 따른 設置工事 等)

20－2－3 法 第141條 第2號 〈國內에서 長期建設作業 等을 하는 外國法人〉에서 規定하는 建設作業 等은 그 建設作業 等을 獨立 事業으로 하는 것에 限定한 것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外國法人이 機械設備 等을 販賣한 것으로 인해 그 設置工事를 國內에서 行한 境遇에 그 設置工事 等에 通常 必要한 期間이 1年을 넘을 때에는 當該 外國法人은 同號에 列擧한 外國法人에 該當하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建設作業 等에 關聯된 事業에 歸屬되는 所得)

20－2－4 法 第141條 第2號② 〈國內에 長期建設作業 等을 하는 外國法人〉의 「國內에서 行하는 建設作業 等에 關聯된 事業에 歸屬되는 所得」에는 예를 들면 다음에 列擧한 것과 같은 所得이 該當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當該 事業에 關聯된 資金의 運用으로 國內에서 行하는 有價證券의 保有, 預貯金의 預入 또는 金錢의 貸付에 의해 생기는 所得

(2) 當該 事業의 遂行에 關聯하여 國內에서 下請業者 等에 工業所有權 等을 提供하거나 機械裝置 等을 貸付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3. 國內에 代理人 等을 둔 外國法人〔1983 直法 2－3 追加〕

(常習代理人의 範圍)

20－2－5 令 第186條 第1號〈常習代理人〉의 「外國法人을 위해 ……契約을 締結하는 權限을 保有하고 또, 이것을 常習的으로 行使하는 者」(以下 20－2－7까지 「常習代理人」이라 한다)에는 契約書에 調印하는 權限은 주어져 있지 않으나 契約內容에 대해 實質的으로 合意할 수 있는 權限을 받은 者는 包含된다〔1983 直法 2－3 追加〕.

(註) 常習代理人은 特定 外國法人을 위해서만 同號에 規定하는 權限을 行使하는 者에 限定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常習的으로 行使하는 것의 意義)

20－2－6 令 第186條 第1號 〈常習代理人〉의 常習代理人에는 長期 代理契約에 根據하여 外國法人 때문에 同號에서 規定하는 權限을 行使하는 者 외에 個個의 代理契約은 短期的이나 2 以上의 代理契約에 根據하여 反復 또는 繼續하여 하나의 外國法人 때문에 當該 權限을 行使하는 者가 包含된다〔1983 直法 2－3 追加〕.

(常習代理人에서 除外되는 者)

20－2－7 令 第186條 第1號 〈常習代理人〉 「그 外國法人의 事業과 同一 또는 類似한 事業을 營爲하고 또한 그 事業의 性質上 빠뜨릴 수가 없는 必要에 根據하여 그 外國法人 때문에 當該 契約의 締結에 關聯된 業務를 하는

者」에는 國際運輸業을 營爲하는 航空會社가 國際航空運送協會(IATA)에 加盟하는 등 國際的 運航協約에 의해 서로 다른 加盟航空會社의 代理店으로 運送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境遇의 當該 航空會社가 該當한다〔1983 直法 2－3 追加〕.

(註) 主로 國內에서 運送業(運送取扱業을 包含)을 營爲하는 者가 國際運輸業을 營爲하는 特定 外國法人과의 契約에 根據하여 當該 外國法人을 위하여 同號에서 規定하는 權限을 行使할 境遇에 當該 者는 同號에서 規定하는 者에 該當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

(在庫代理人의 範圍)

20－2－8 令 第186條 第2號 〈在庫代理人〉의 「外國法人을 위해 ……資產을 保管하고 ……顧客의 要求에 따라 引渡하는 者」에는 예를 들어 石油販賣業을 營爲하는 外國法人을 위해 常時 國內 空港에서 航空燃料를 保管하고 當該 外國法人과의 사이에 燃料의 供給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航空會社에 對해 그 要求에 따라 隨時 給油를 하는 者가 該當된다〔1983 直法 2－3 追加〕.

(代理人 等을 通해 하는 事業에 歸屬되는 所得)

20－2－9 20－2－4는 法 第141條 第3號 〈國內에 代理人 等을 두는 外國法人〉에서 列擧하는 外國法人의 同號 ② 規定의 適用에 대하여 準用한다〔1983 直法 2－3 追加〕.

4. 國內에 恒久的 施設을 가지지 않은 外國法人 〔1983 直法 2－3 追加〕

(其他 여기에 準하는 關係가 있는 者의 範圍)

20－2－10 6－3－2 〈其他 여기에 準하는 關係가 있는 者의 範圍〉는 令

第187條 第4項 〈特殊關係株主 等의 範圍〉에서 規定하는 「其他 여기에 準하는 關係가 있는 者」의 範圍에 대하여 準用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1 課法 2－4 改正〕.

(增資 等이 있는 境遇에 株式의 讓渡比率 判定)

20－2－11 令 第187條 第5項 〈事業讓渡에 類似한 株券 等의 讓渡〉에서 規定하는 讓渡事業年度의 中途에 增資 等으로 인해 株式 發行法人의 發行 株式 總數에 異動이 있는 境遇에는 同項 第2號에서 規定하는 特殊關係株主 等의 讓渡한 株式 總數가 當該 發行株式 總數의 5% 以上이 되는가 어떤가는 當該 株式을 讓渡할 때마다 그 讓渡를 한 때(그 讓渡를 한 때가 增資에 關聯된 新株 割當의 基準이 된 날 以後 當該 增資에 關聯된 新株의 發行前일 때에는 當該 新株의 發行 直後)에 當該 發行法人의 發行株式 總數 中에서 차지하는 讓渡 株式 數의 比率을 算出하여 그 算出한 比率의 合計에 의해 判定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1 課法 2－4 改正〕.

5. 其他〔1983 直法 2－3 追加〕

(外國法人에 對한 法人稅 및 源泉所得稅 課稅關係)

20－2－12 外國法人에 對한 法人稅 및 源泉徵收에 關聯된 所得稅 課稅關係의 槪要는 다음 表와 같다〔1983 直法 2－3 追加, 1988 直法 2－1, 1990 直法 2－6, 1991 課法 2－4 改正〕.

<table>
<tr><th colspan="2">外國法人의 區分
國內源泉所得의 種類</th><th>國內에 支店 等을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
(法141의 1)</th><th>國內에서 長期建設作業 等을 하는 外國法人 또는 國內에 代理人 等을 두는 外國法人(法141의 1, 2)</th><th>左의 어느 것에도 該當하지 않는 外國法人
(法141의 4)</th><th>所得稅의 源泉徵收</th></tr>
<tr><td>事業所得</td><td>法138의 1</td><td></td><td></td><td></td><td rowspan="4">無(注)</td></tr>
<tr><td>資產의 運用 또는 保有에 의한 所得</td><td>法138의 1</td><td></td><td></td><td></td></tr>
<tr><td>資產의 讓渡에 의한 所得</td><td>法138의 1</td><td></td><td></td><td>不動產의 讓渡에 의한 所得및 令1871 ①~④에 열거하는 所得</td></tr>
<tr><td>다른 國內源泉所得(令 178에 열거하는 것)</td><td>法138의 1</td><td></td><td></td><td></td></tr>
<tr><td>人的役務提供事業의 所得</td><td>法138의 2</td><td></td><td></td><td></td><td rowspan="12">有</td></tr>
<tr><td>不動產 等의 貸付에 의한 所得</td><td>法138의 3</td><td></td><td></td><td></td></tr>
<tr><td>債券, 預貯金 等의 利子 所得</td><td>法138의 4</td><td></td><td rowspan="10">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사업</td><td colspan="2" rowspan="10">源泉所得稅
(分離課稅)</td></tr>
<tr><td>配當 等의 所得</td><td>法138의 5</td><td></td></tr>
<tr><td>貸付金利子 等의 所得</td><td>法136의 6</td><td></td></tr>
<tr><td>使用料 等의 所得</td><td>法138의 7</td><td></td></tr>
<tr><td>廣告宣傳의 賞金 所得</td><td>法138의 8</td><td></td></tr>
<tr><td>生命保險契約에 根據한 年金 等의 所得</td><td>法138의 9</td><td></td></tr>
<tr><td>定期積金 또는 相互掛金의 給付補塡金, 抵當證券의 利子, 貴金屬 等의 되사는 條件附賣買에 根據한 利益, 外貨建預貯金의 換差益 및 一時拂 養老保險 等에 根據한 差益</td><td>法138의 10</td><td></td></tr>
<tr><td>匿名組合契約 等에 根據한 利益分配의 所得</td><td>法138의 11</td><td></td></tr>
</table>

註 : 1) □ 의 部分이 法人稅의 課稅範圍이다.
2) 資產의 讓渡에 의한 所得 中에서 國內에 있는 土地 또는 土地 위에 존재하는 權利 또는 建物 및 그 附屬設備 또는 構築物의 讓渡에 의한 代價(所得稅法 施行令 第281條의 2에 規定하는 것을 除外)에 대해서는 所得稅의 源泉徵收가 行하여짐.

第 3 節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 金額의 計算〔1983 直法 2－3 追加〕

1. 通則〔1983 直法 2－3 追加〕

(外國法人의 損金經理 等)

20－3－1 外國法人이 그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 金額을 計算할 境遇에는 예를 들어 減價償却費, 充當金 또는 準備金 算入額 等의 損金算入, 延拂基準의 方法에 의한 收益 및 費用의 計上과 같이 法 또는 措置法의 規定에 따라 確定한 決算에서 經理하는 것을 要件으로 適用하는 것에 대해서는 當該 外國法人이 國內에서 하는 事業 等에 關하여 作成하는 帳簿 및 當該 帳簿에 根據하여 作成하는 規則 第61條 第2項 第1號 〈外國法人의 申告書 添附書類〉에서 規定하는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에 計上하는 것으로 그 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取扱한다〔1983 直法 2－3 追加〕.

2. 損金의 計算〔1983 直法 2－3 追加〕

(國際海上運輸業의 運送原價 計算)

20－3－2 16－3－11 〈國際海上運輸業에 있어 運送原價의 配賦〉는 國內 및 國外에 걸쳐 船舶에 의한 運送事業을 營爲하는 外國法人의 當該 事業年度의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되는 運送 原價額의 計算에 대하여 準用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0 直法 2－1 改正〕.

(固定資產을 讓渡할 境遇에 損金에 算入하는 金額)

20－3－3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이 國內에 있는 固定資產의 處分에 의해 생긴 境遇에는 그 讓渡原價 또 當該 事業年度에서 當該 資產의 處分 및 保有 때문에 直接 所要한 費用(當該 固定資產에 대해 생긴 損失을 包含) 以外의 費用 및 損失額은 當該 事業年度의 當該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 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損金에 算入되는 販賣費, 一般管理費 等의 範圍)

20－3－4 外國法人의 各 事業年度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 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되는 販賣費, 一般管理費, 其他 費用(以下 20－3－4에서 「販賣費 等」이라 함)은 當該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을 생기게 하는 業務(以下 20－3－12까지 「國內業務」라 함)에 關聯하여 생긴 것은 國內 또는 國外의 어느 것 때문에 支出된 것인가를 따지지는 않으나 國內에서 支出된 販賣費 等이라도 다음에 列擧하는 것과 같은 國內業務에 該當하지 않는 行爲에 關聯하여 생긴 費用은 當該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의 金額計算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1) 오로지 國外의 事業所 等 國內에서 資產을 購入하거나 또는 保管하는 行爲

(2) 오로지 國外의 事業所 等을 위해 國內에서 하는 廣告, 宣傳, 情報의 提供, 市場調査, 基礎的 硏究, 其他 그 事業의 遂行에 있어 補助的인 機能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行爲

(販賣費, 一般管理費 等의 配賦)

20－3－5 外國法人의 當該 事業年度의 販賣費, 一般管理費, 其他 費用

中에서 國內業務와 其他 業務 雙方에 關聯하여 생긴 額을 令 第188條 第1項 第1號〈外國法人의 販賣費, 一般管理費 等의 配分〉의 規定에 따라 當該 國內業務와 其他 業務를 配分하는 境遇에 個個의 費目別로 그 計算이 困難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原則的으로 16－3－12 및 16－3－13〈販賣費, 一般管理費 等의 配賦〉의 取扱에 準하여 計算을 한다〔1983 直法 2－3 追加, 1991 直法 2－1 改正〕.

(在外資產의 減價償却費 等)

20－3－6 外國法人이 國外에 있는 減價償却資產에 關聯된 償却費 中에서 國內業務에 關聯된 部分의 金額을 令 第188條 第1項 第1號〈外國法人의 販賣費, 一般管理費 等의 配分〉의 規定 또는 20－3－5에 의해 當該 國內業務에 配分하는 境遇에, 그 配分의 基礎가 되는 償却費에 대해 當該 外國法人의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가 所在하는 國家의 法人稅에 相當하는 稅(以下 20－3－6에서 「外國法人稅」라 함)에 關한 法令(當該 外國法人稅에 關한 法令이 2 以上 있을 境遇에는 그 中에서 主된 外國法人稅에 關한 法令으로 한다)의 規定 適用上 認定되는 方法에 의해 計算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認定한다. 단, 當該 償却費가 令 第48條 第1項 第5號〈營業權의 自由償却〉에서 列擧하는 方法에 의해 計算된 境遇에는 當該 償却費 中에서 法 第31條〈減價償却資產의 償却費 計算 및 그 償却 方法〉의 規定의 例에 따를 境遇에 損金에 算入되는 金額을 넘는 部分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外國法人이 國外에서 支出한 費用으로 順延資產이 되어야 할 것의 償却費 計算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1983 直法 2－3 追加〕.

(外國法人의 總資產價額 等의 計算)

20－3－7 外國法人에 대해 法 第37條〈寄附金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을

準用하는 境遇에 令 第188條 第1項 第8號 〈外國法人 寄附金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의 適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1983 直法 2－3 追加〕.

(1) 同號에서 規定하는 「그 外國法人의 總資産 價額」은 當該 事業年度의 決算에 根據한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어 있는 外國通貨表示 金額을 當該 事業年度終了日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13의 2－1－3 〈取得時 換算法〉 (2)의 ②에서 定하는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을 말한다. 以下 20－3－14까지에서 같음)에 의해 換算한 円換算額에 의함. 단, 當該 事業年度 確定申告書의 提出期限까지 本店의 決算이 確定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認定될 境遇에는 當該 事業年度 直前 事業年度의 決算에 根據한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어 있는 金額이 當該 事業年度의 當該 金額으로 할 수 있다.

(2) 同號에서 規定하는 「國內에 있는 總資産의 價額」은 當該 事業年度 終了時에서의 稅務計算上의 帳簿價額에 의함

(國內業務를 廢止한 境遇의 事業稅 特例)

20－3－8 外國法人이 國內事務를 全部 廢止한 境遇에는 廢止한 날이 屬한 事業年度(以下 20－3－8에서 「國內業務廢止年度」라 함)의 所得에 대해 課稅되는 事業稅額에 대해서는 9－5－1 및 9－5－2 〈租稅의 損金算入 時期 等〉에 不拘하고 當該 國內業務 廢止年度의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損金에 算入하는 事業稅額(以下 20－3－8에서 「事業稅의 課稅豫想額」이라 함)의 計算算式은 다음과 같다〔1983 直法 2－3 追加〕.

(算式)

$$\frac{\text{當該 國內業務 廢止年度의 事業稅課稅標準이 되는 所得 金額(事業稅의 課稅豫想額을 損金에 算入하지 않고 計算한 境遇의 金額으로 한다)}}{(1+\text{事業稅의 稅率})} \times \text{事業稅의 稅率}$$

(損金에 算入되는 貸損損失 等)

20－3－9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 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되는 貸損損失額(債權償却特別計定에의 算入額을 포함)은 原則的으로 當該 外國法人의 國內에 있는 事業所 等에 屬한 貸金 等에 대해 發生한 것에 限하는 것으로 한다.

外國法人이 所有하는 外貨建債權債務에 대하여 發生한 換差損(換算差損을 包含)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1983 直法 2－3 追加〕.

(租稅條約 等에 의해 法人稅가 課稅되지 않는 所得에 關聯된 缺損金)

20－3－10 外國人 等의 國際運輸業 關聯 所得에 對한 所得稅 等의 非課稅에 關한 法律 第1條〈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非課稅〉의 規定 또는 租稅條約에 의해 法人稅가 課稅되지 않는 所得에 대하여 缺損金額이 생기는 境遇에도 當該 缺損金額은 當該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關聯 所得의 金額計算上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本店配賦費用의 立證方法)

20－3－11 外國法人이 國內業務에 關聯된 것으로 本店 等에서 配分을 받는 費用을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에 算入하는 境遇에는 本店의 當該 事業年度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其他 規則 第33條 또는 第35條〈申告書의 添附書類〉에서 規定하는 書類를 基礎로 作成한 規則 第61條 第2項 各號〈外國法人 申告書의 添附書類〉에서 規定하는 明細書의 添附에 의해서 그 內容을 明確하게 하는 외에 管轄稅務署長(國稅局調査課 所管法人은 管轄國稅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指示를 했을 때에는 證據書類의 提示, 其他 合理的인 方法에 의해 이것을 證明하는 것으로 한다. 이 境遇에 當該 外國法人이 正當한 理由가 없이 添附 또는 證明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添附 또는 證明을 하지 않은 費用에 대해서 그 添附

또는 證明이 있을 때까지는 當該 國內源泉所得에 關聯된 所得金額 計算上 損金額에 算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983 直法 2－3 追加〕.

3. 其他〔1983 直法 2－3 追加〕

(在日支店 資產 等의 円換算)

20－3－12 外國法人의 國內 事業所 等에 關聯된 外貨建의 資產, 負債 等의 円換算 대해서는 13의 2－1－1에서 13의 2－2－4까지 또 13의 2－2－6에서 13의 2－2－9까지 〈外貨建債權債務 等의 換算〉의 取扱에 準한다. 이 境遇에 그 國內業務와 關聯하여 本店으로부터 配分받는 費用의 円換算은 原則的으로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의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에 의하는 것으로 하나 當該 外國法人이 當該 費用의 全部에 대해 當該 事業所 等의 會計帳簿에 그 額으로 計上하는 날의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에 의해 円換算을 하고 있을 때에는 繼續適用을 條件으로 이것을 認定한다〔1983 直法 2－3 改正〕.

(註) 13의 2－1－3의 (註), 13의 2－1－4의 (註)1 및 13의 2－2－1의 (註)1은 本文 電信賣買時勢의 中間값에 대하여 準用한다.

(本店計定의 円換算)

11－3－13 外國法人의 國內 事業所 等이 計上하는 本店計定의 金額은 그 計上時의 換時勢(13의 2－1－4 〈期末時 換算法－事業年度 終了時의 換時勢〉에서 定하는 換時勢를 말한다)에 의해 円換算한 金額에 의하는 것이나 當該 事業所 等이 本店에 送金으로 인해 本店計定의 金額을 減額할 境遇의 그 減額 金額은 原則的으로 다음 算式에 의해 計算한 金額에 의한다. 단, 그 送金 等이 本店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 中에서 特定한 것에 대해서 行한 것이고 또, 當該 金額의 그 計上時 円換算額이 明

確할 때에는 當該 円換算額에 根據하여 그 減額을 할 수 있다〔1983 直法 2－3 追加〕.

(算式)

$$\text{送金 等을 한 外國通貨額} \times \frac{\text{送金 等을 한 날에 있어서 本店計定의 円表示額}}{\text{分子 金額의 外貨表示額}}$$

(資本金 等의 円換算)

20－3－14 外國法人에 대해 各 事業年度終了時에 資本金, 出資金額 또는 資本 等의 金額(以下 20－3－14에서 「資本金 等」이라 함)을 基礎로 또는 措置法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에 當該 資本金 等에 대해서는 當該 事業年度終了日의 電信賣買時勢의 중간값에 의해 換算한 円換算額에 의한다〔1983 直法 2－3 追加〕.

第 4 節 稅額의 計算 等〔1983 直法 2－3 追加〕

(配當 等에 關聯된 所得稅額에 對한 稅額控除의 不適用)

20－4－1 外國法人이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所得稅法 第161條 第5號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 等〉에서 列擧하는 配當 等에 대해 同法의 規定에 의해 課稅되는 所得稅額에 대해서는 法 第144條 〈外國法人의 所得稅額 控除〉의 規定에 따라 法 第68條 〈所得稅額의 控除〉 規定의 適用이 없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註) 이 境遇에서도 當該 所得稅額에 대해서는 法 第40條 〈所得稅額의 損金不算入〉의 準用에 關한 令 第188條 第1項 第10號 〈外國法人稅額에서 控除하는 所得稅額의 損金不算入〉의 規定에 의해 損金에 算入되지 않는다.

(外國稅額控除의 不適用)

20－4－2 外國法人에 대해서는 法 第69條〈外國稅額의 控除〉規定의 適用이 없는 것에 留意한다〔1983 直法 2－3 追加〕.

附　　則

(施行期日)

1. 法人稅 基本通牒(以下「基本通牒」이라 함)은 196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適用時期의 原則)

2. 基本通牒은 別段의 規定이 있는 것을 빼고 基本通牒의 施行日(以下「施行日」이라 함) 以後에 處理되는 法人稅에 대하여 適用한다.

(適用時期의 特例－1)

3. 基本通牒 中에서 다음에 列擧하는 事項의 適用에 대해서는 各各 다음과 같다.

(1) 2－3－1〈未成工事支出金計定에서 控除하는 假設材料의 價額〉은 시행일 이후의 建設工事 등에 대해 새로 그 用途로 提供하는 假設材料에 대하여 適用하고 同日前에 建設工事 等의 用途로 提供된 假設材料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에 따른다.

(2) 4－3－1 및 4－3－2〈廣告宣傳用 資產의 受贈益 等〉은 施行日 以後에 取得하는 廣告宣傳用 資產에 대하여 適用하고 同日前에 取得한 廣告宣傳用 資產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를 따른다.

(3) 8－1－2, 8－2－3 및 8－2－4〈共同的 施設의 設置 또는 改良 때문에 支出하는 費用 等〉은 施行日 以後에 設置되는 施設 等에 대해 同日 以

後에 支出하는 負擔金에 대하여 適用하고 同日前의 設置에 關聯된 施設 等에 대해 支出하는 負擔金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에 따른다.

(4) 10－7－7 〈特定出資에 의해 引受한 減價償却資產의 耐用年數 見積等〉의 割增償却 適用에 關한 部分은 施行日 以後의 特定出資에 關聯된 新築貸家住宅의 割增償却 等에 대하여 適用하고 同日前의 特定出資에 關聯된 新築貸家住宅의 割增償却 等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에 따른다.

(5) 11－5－21 〈退職年金을 支給할 境遇의 解體方法〉은 施行日 以後의 退職에 關聯된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 解體에 대하여 適用하고 同日前의 退職에 關聯된 退職給與充當金計定의 金額의 解體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에 따른다.

(適用時期의 特例－2)

4. 7－1－2 〈貴金屬 素材의 價額이 大部分을 차지하는 固定資產〉, 15－2－4, 15－2－8, 15－2－15 및 15－2－16 〈金錢貸付業의 範圍 等〉은 法人의 施行日 以後에 開始하는 事業年度 法人稅에 대하여 適用하고 法人의 同日前에 開始한 事業年度 法人稅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에 따른다.

(適用時期의 特例－3)

5. 11－3－2 〈외상賣出金의 範圍〉는 法人의 施行日 以後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法人稅에 대하여 適用하고 法人의 同日前에 終了한 事業年度의 法人稅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에 따른다.

(無形減價償却資產으로 하고 있던 노하우에 關한 經過的 取扱)

6. 노하우의 設定契約을 하기 위하여 所要한 費用으로 特許權에 準하여 取扱하던 것은 施行日 以後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8－1－4(令第14條 第1項 第9號③에서 規定하는 順延資產)에서 定하는 順延資產에 該

當하는 것으로 하고 8－2－3 〈順延資産의 償却期間〉에서 定하는 償却期間부터 償却하는 것으로 한다.

7. 削除〔1974 直法 2－71〕

附　則〔直法2－8(例規) 55, 5, 15〕

(經過的 取扱 ……商品交換券 等의 發行에 關聯된 收益의 歸屬時期에 關한 改正通牒의 適用時期 等)

이 通牒에 의한 改正後의 2－1－33 및 2－2－11의 取扱은 法人이 1980年 4月 1日 以後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以下「通牒適用 初年度」라 함)의 法人稅에서 適用한다. 이 境遇에 通牒適用 初年度開始時에 未交換券(2－2－11에서 定하는 未交換券을 말한다)이 있을 때 當該 未交換券에 關聯된 代價額 等의 處理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에 定하는 바에 따른다.

(1) 當該 未交換券에 關聯된 代價額의 全部 또는 一部가 通牒適用 初年度直前 事業年度終了時까지 益金에 算入되지 않았을 境遇－다음 區分에 따라 各各 다음과 같다.

① 通牒適用 初年度 以後의 各 事業年度에 商品交換券 等의 收益 計上方法에 대해 2－1－33의 本文에 의할 때 當該 未交換券에 關聯된 代價額으로 益金에 算入되지 않은 것의 合計額(以下「移越未計上額」이라 함) 中에서 通牒適用 初年度開始日前 3年 以內에 開始한 各 事業年度에 發行한 商品交換券 等에 關聯된 代價額의 合計額이 當該 各 事業年度에 回收된 商品交換券 等에 關聯된 代價額의 合計額을 超過할 境遇에 그 超過한 部分의 金額에 相當하는 部分의 金額을 通牒適用 初年度의 益金에 算入하는 것과 함께, 當該 移越未計上額 中에서 當該 益金에 算入되는 金額 以外의 金額에 대해서는 通牒

適用 初年度開始日 以後 4年 以內에 開始하는 各 事業年度(以下 「經過措置 適用年度」라 함)에 있어 均等割 以上의 金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② 通牒適用 初年度 以後의 各 事業年度에 商品交換券 等의 收益 計上 方法에 대해 2－1－33의 但書에 의할 때 移越未計上額 中에서 通牒適用 初年度開始日前 3年 以內에 開始한 事業年度前의 各 事業年度에 發行한 商品交換券 等에 關聯된 것에 대해서는 通牒適用 初年度의 益金에 算入

(2) (1)以外의 境遇－通牒適用 初年度의 直前事業年度에 當該 未交換券에 關聯된 費用으로 損金에 算入한 金額 中에서 當該 直前事業年度에 2－2－11을 適用하려는 境遇에 損金에 算入되는 金額을 넘는 部分의 金額은 經過措置 適用年度에 均等額 以上의 金額을 益金에 算入한다.